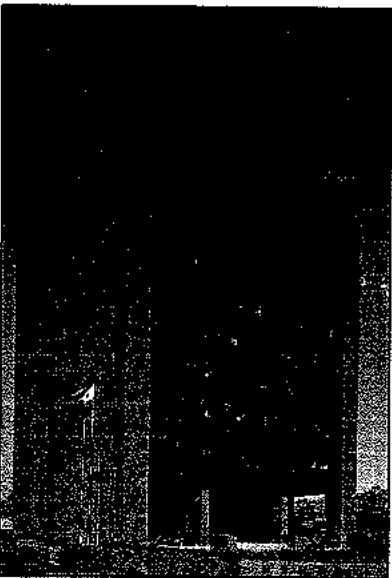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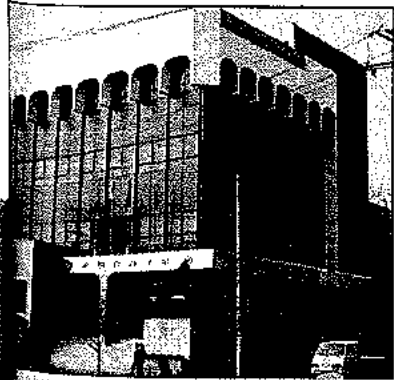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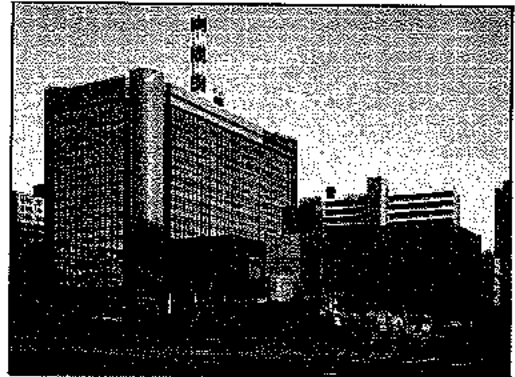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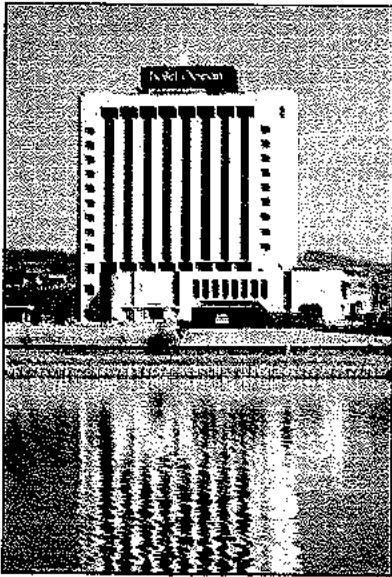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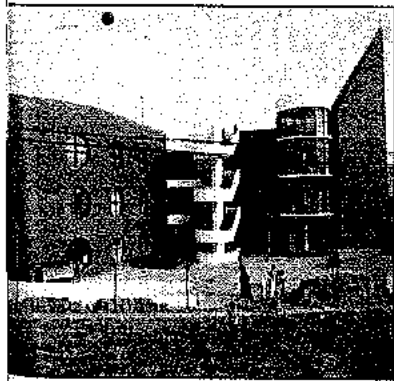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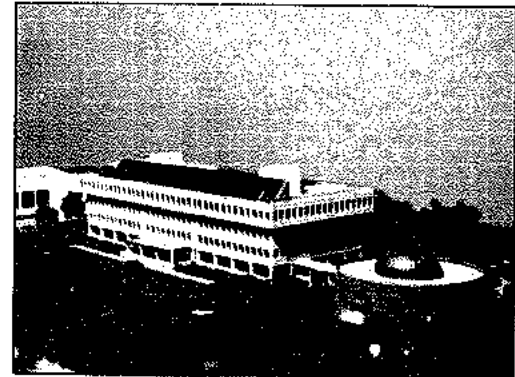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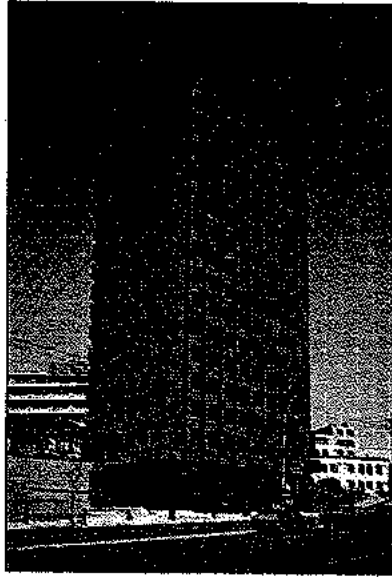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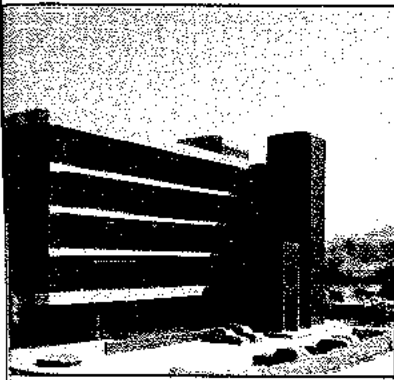


建築士

大韓建築士協會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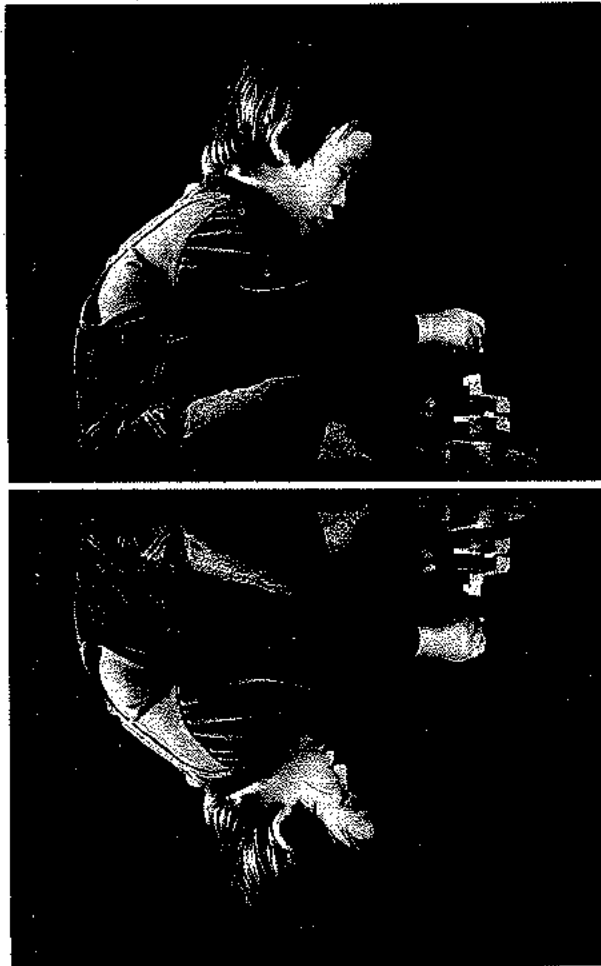
APRIL 1982, No. 157

KOREA ASSOCIATION OF REGISTERED ARCHITECTS



1982.4

플로트 공법의 도입으로 우리나라도 플로트 유리시대가 열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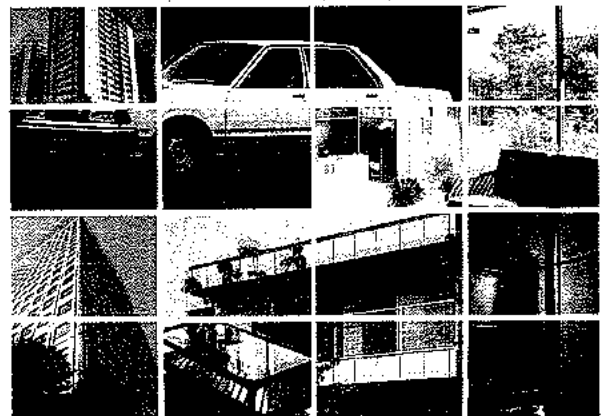
플로트 유리(Float Glass)란 인류가 발명해 낸 유리 중 가장 고급스런 품질의 유리로, 플로트 공법으로 만든 유리를 말합니다.

종래 멋진 환경을 꾸미시는 분, 품위있는 건물을 짓는 많은 분들이 찾았던 英國製 유리, 그것이 바로 플로트 유리로 韓國유리가 새로이 생산 공급하는 제품입니다.

영국의 필킹톤社(Pilkington Brothers Co.)가 개발하여 세계적 특허를 갖고 기술을 보급한 이 플로트 工法은, 금속욕조(Tin Bath)에 朱錫(Tin)을 녹여 그 위로 유리물을 水平으로 흘러보내 만드는 製造方法을 말합니다.

따라서 플로트 유리는 表面이 아주 고르며, 大型化가 가능하고 또 모든 工程을 컴퓨터로 조정하므로 결점없는 최고의 品質이 보장됩니다.

이 플로트 유리는 세계에서 10여개 국가만이 생산할 수 있을뿐인 세계적 제품입니다.



플로트 유리의 장점

1. 視覺 장애가 전혀 없습니다.
2. 모든 工程을 컴퓨터化 하여 품질이 우수하고 상대적으로 價格이 저렴합니다.
3. 모든 加工유리(복층유리, 강화유리, 접합유리, 製鏡유리, 기타)에 이상적입니다.
4. 厚板유리는 그 자체로서 防盜, 防熱의 효과를 냅니다.
5. 두께와 規格의 대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제품특성

두께 (mm)	투과특성					면적류율 Kcal m ² hr°C
	가시광선 투과율 (%)	가시광선 반사율 (%)	적외선 투과율 (%)	적외선 반사율 (%)	적외선 투과율 (%)	
3	90.1	8.0	7.4	84.9	7.7	5.88
5	89.1	7.9	11.5	81.1	7.4	5.78
6	88.6	7.9	13.5	79.3	7.2	5.75
8	87.6	7.8	17.2	75.8	7.0	5.59
10	86.7	7.7	20.6	72.6	6.8	5.56
12	86.7	7.6	23.8	69.6	6.6	5.46

두께별 최대규격

두께 (mm)	길이×폭 (m/m)	길이×폭 (inch)
3	2438×1220	96×48
5	3048×2134	120×84
6	3048×2438	120×96
8, 10	8380×3300	330×130
12, 15, 19	8380×3300	330×130

※ 15mm이상의 유리제품은 주문생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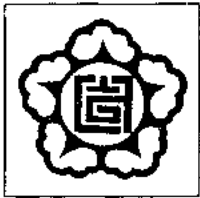


韓國유리工業株式會社
HANKUK GLASS INDUSTRY CO., LTD.

본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54

783-0311 · 0911 · 3711 · 3911

※ 자세한 문의는 당사 영업부나 대리점에 문의해 주십시오.



月刊 建築士

April 1982. No.157

U. D. C. 69/72(054-2) : 0612(519)

発行所：大韓建築士協會 / 서울特別市 鍾路區 瑞麟洞89 / 郵便番号：110
光化門郵便局 私書函 第795番 / 電話 723-9491 ~ 2, 723-4287, 724-1045
發行人 兼 編輯人：貝 琬 會 / 登錄番号：第21-1251 / 登錄：1967.3.23
發刊：1982.4.15 / 非売品 / 印刷人：金 允 坤 (福社文化社 / 265-7323)

KOREA ASSOCIATION OF REGISTERED ARCHITECTS

目次

1982.4

論 壇	“새 轉機 마련 위한 体制變化 時急”	貝琬會	2
臨時總會	1982年度 第1回 臨時總會開催		3

분류번호	建 築 士 誌
도서번호	통권 제 157 호
발행년월일	1982년 4월 15일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도지부

都市計劃의 새로운 展開	朴炳柱	15
서울都心部 不良建築物과 再開發	朱鍾元	18
公共「스페이스」의 바닥面 디자인	李廷德	24
自然型太陽熱住宅의 當面課題와 그 對策	李明浩	29

特 輯 82新春會員作品 35

● 地方行政會館	(공간연구소)金壽根	36
● MBC 여의도 스튜디오	(주·정림건축)金正澈	38
● 大田投資金融(株)社屋	(협창건축연구소)朴弘雨	40
● 祥明師大人文社會學館	(아름건축연구소)金琪碩	42
● 半月市廳舍	(주·임&이건축연구소)李珏杓·韓英宰	44
● 오우선관광호텔	(원도시건축연구소)尹承重·卞 鎔	46
● 寶映빌딩	(종합환경연구소일건)趙東榮	48
● 信用保證基金大邱支店	(우원건축연구소)趙成龍	50
● 쇼핑센터“太陽의 집”	(김중업합동건축연구소)金重業	52

巡訪報告	東南亞 各國의 建築團體를 巡訪 하고 [I]: 連載	金枝泰	10
	韓國建築概說 [II]: 連載	張起仁	32
✓	韓國建築의 絶對特殊性에 關한 考察 [I]: 連載	朴彦坤	55
✓	建築物의 斷熱施工法 [完]: 連載	李鍾寬	58
	建築工事示方書의 發展의 體系 [完]: 連載	李龍雲	66

海外特選	● YESHIVA 수도원 - Jerusalem, Israel	Yeshivat Porat Joseph	70
	● 國際觀光시설과 카지노 - Queensland, Australia		72
	● 콘더미니엄계획 - Singapore		74
칼 럽	“理想的인 建築士憲章을 期待하며	朴商浩	23

☐ 協會消息	3	☐ 稅務教室	100
☐ 建築界뉴스	76	☐ 건축자재해설	101
☐ 건축행정 / 질의응답	81	☐ 신입회원	105
☐ 법개정내용	86	☐ 회원동정	106

編纂委員會

委員長	朴商浩
委員	李明浩
“	姜健熙
“	朴勇煥
“	李榮一
“	金漢根
“	金基哲
“	姜哲求
“	趙東榮



표지설명
회원설계작품원색복합

“새 轉機 마련 위한 体制变化 時急”

具 玟 會

다음은 지난 3월30일 개최되었던 82년도 제1회 임시총회에서 具玟會회장이 행한 개회사를 옮긴 것이다.

- 發展 위한 体制变化 모색해야
- 주어진 權利 스스로 찾을 때
- 結束으로 난관극복 努力필요

오늘 1982년도 제1회 임시총회를 맞이하여 유서깊은 이곳 속리산에서 代議員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더 than 중 반갑습니다.

새로운 希望과 意慾으로 맞이했던 새 해도 어느덧 한 分期를 보내고 오늘 이 자리에서 2천여 회원들의 공동운명체인 協會의 나날 길을 보다 굳건히 하기 위해 여러분들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둘이켜 보건데 지난 해에는 근년에 없었던 극심한 불경기로 말미암아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 회원들은 사무실 운영마저 큰 위험을 받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協會를 求心점으로 힘을 합쳐 나름대로 난관 극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리 하지 않았으며, 특히 제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거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정화운동 및 청탁배격운동에 앞선해서 건축계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제반 부조리 추방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새 질서확립과 밝은 풍토조성에 힘썼던 때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새해에 접어들면서, 기대했던 건축경기의 재기는 바록 거대한 폭호황으로 치달지는 않고 있으나, 年初 당국이 발표한 각종 경기부양책과 더불어 제정적인 요인 등이 작용되어 다소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작품활동을 하기에는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실정으로 보다 과감한 當局의 政策的 배려와 우리 스스로의 진지한 努力이 要求되는 時期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5공화국의 出帆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새 풍토진작이 요구되는 時点에서 協會로서도 보다 發展의 見地에서 하나의 激動期를 맞이 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協會創立 17주년을 總決算하여 지난 歷史를 토대로 지속적인 發展을 위한 과감한 体制变化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時期的인 요구는 건축사의 社會的地位向上과 우리에게 주어진 權利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自覺과 아울러 社會적 責任을 다하고 나아가 투철한 國家觀을 확립하는 契機 마련이라는 觀點에서도 필요하며, 특히 4년여나 지속되고 있는 건축경기의 불황에 対処해 나가야 한다는 自求策을 모색한다는 側面에서도 切實하다고 하겠습니다.

해아려 보면 現 制度下에서의 協會 實情은 代議員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會員의 權益을 옹호하고 建築文化를 暢達하기 위한 충분한 與件을 사실상 갖추고 있지 못해 적 안타까운 형편입니다.

限定된 組織體制와 制限된 予算 등으로는 실제로 우리 會員모두가 願하는 能動的이고 活動的인 協會로서의 機能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은 周知의 일입니다.

한순간 무사안일하게 넘기면 만족한 責任이 必要치 않은 명에 任員制度라든가, 事務處의 제한된 人員으로는 날로 변화하는 世態 속에서 分明한 즐거움을 이루고 協會를 진정한 會員을 위한 協會로 이끌어 나가기에는 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強力한 推進力을 부여하고 機能性을 補強하기 위한 획기적인 作業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점을 고려해서 本會에서는 會員여러분들의 結束된 힘을 바탕으로 우리가 目標로 하는 會員權益伸張과 建築文化暢達을 위해 당해년도 실천방안으로 몇 가지 基本政策目標을 樹立하고,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합리적인 협회운영을 통한 활성화와 능률적인 상황 대처로 제반업무의 효율화에 최대 力點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협회업무의 기능성 부여를 위해 기존 3개위원회 외에 2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건축연구위원회의 경우는 기능별로 分科委員會를 細分化해서 종래의 2개 分科를 7개 分科로 크게 늘

려 소속위원도 모두 61명으로 구성해서 보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의식 고취와 活性化에 힘썼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우리의 본연의 업무인 작품설계에 따른 각종 기술, 정보 등을 보다 손쉽게 얻고자 협회내에 자료실을 마련하고 각종 도서자료를 입수해서 회원여러분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나아가 해외 기술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한 상호협조체질을 마련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원친목과 복지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밖에 협회 대변지인 “건축사”지의 혁신 발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協會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계획은 결국 우리 회원들의 自求的인 노력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일치된 호응과 밀발침이 되는 예산상의 지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면, 넓은 意味에서 우리 스스로의 노력은 결국 사회와 국가를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따라서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가운데 모 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조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周知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는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어 民生安定을 基調로 하는 기반구축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으며, 따라서 경제적 불안을 조장했던 3대부정심리를 추방하고자 力點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즈음하여 우리 회원들도 각자의 주변을 돌아보고 보다 긍정적으로 현실을 보는 시야를 넓혀야 할줄 믿습니다.

끝으로 협회를 책임맡아 운영함에 있어 본인은 회원제위의 여러가지 여의치 못한 실정을 감안하고 나아가 당국의 기본 정책에 호응한다는 관점에서 불요불급한 事項에 대해서는 예산의 절감을 꾀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꼭 필요한 부문에 예산을 안배해서 협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디 회원제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개회사에 대합니다. <*>

1982年度 第1回 臨時總會開催

속리산서 - 全國代議員參席

協會 현안문제 등 중점 論議

본회 82년도 제 1회 임시총회가 지난달 30일 속리산 관광호텔에서 전국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具琬會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이날 임시총회에서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82년도 제 1회 임시총회를 맞이하여 유서깊은 속리산에서 대의원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다고 전제하고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볼 때, 극심한 불경기라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 회원들은 사무실 운영마저 어려운 위협을 받았었으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협회를 구심점으로 힘을 합쳐 나름대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특히 제 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거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정화운동과 청탁배격운동에 순응해서 제반 부조리 추방과 새질서 확립에 힘썼던 한해였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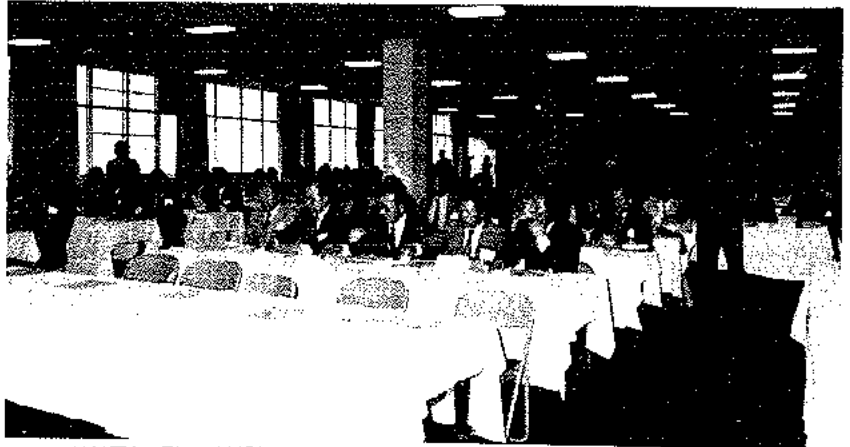
이어서 부회장은 "새해에 접어들면서 기대했던 만큼 전속경기가 호황으로 치달지는 않고 있으나 年初 當국이 발표한 각종의 경기 부양책과 더불어 계절적 요인이 작용되어 다소 회복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 회원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작품활동을 하기에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실정으로서 당국의 과감한 정책적 배려와 우리 스스로의 진지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음"을 강조하고 여러 회원들의 부단한 협동과 노력을 당부했다.

具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임시총회를 축하하고 협회발전을 바란다는 내용의 李丞雨한국건축가협회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서 진행된 임시총회는 먼저 주



□ 임시총회에서 개회사를 하는 具회장



□ 회의중인 전국대의원



□ 회의장앞에서의 기념촬영

대회원 추대로 65세 이상의 회원에 대한 추대에서 金萬盛(연합건축·서울) 회원을 비롯하여 崔龍禎(태평건축연주소·서울)회원, 史潤昌(창화건축·서울)회원, 柳光澤(오수건축설계사·부산)회원, 金世載(신도건축설계·경기)회원 등, 원로회원을 추대하고 추대증을 수여했다.

다음으로 회순에 따라 81년도 주요 업무 및 사업보고와 감사보고, 그리고 부의안건 처리에 들어 갔으며 尹鉦갑사와 李康植감사가 각각 업무 및 경리관계의 감사결과를 밝히고 참석 대의원들로부터 질의를 받았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支部別 독립예산제도를 비롯해서 의료보험제도, 보수요율문제, 그리고 특별전형 실기시험면제방안, 감리사무소의 실적회비징수문제, 행정조직 사면문제 등이 당면 관심사로 거론되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먼저 독립예산제도는 지난 3월 2일 건설부 당국에 본회 예산제도개선안 건의를 한 바, 현 제도는 건축사법 38조 2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승인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조직상 지부 자체가 독립된 법인체가 아니며 정관47조에 의해 협회에서 배정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그러나 支部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의료보험제도 실시는 의료보험법 시행령상 加入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는 전액 자비부담으로 하고 월수입액의 3%범위내에서 지불, 현재 문공부산하 의료보험조합인 예술인 의료보험조합에 특별회원자격으로 가입을 추진중에 있어 곧 제도실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보수요율문제는 82년도 법개정에 따라 총괄적으로 건설부와 철충협의키로 했으며, 특별전형에 있어서 실기시험면제문제는 현실적으로 면제는 불가능하며 다만 경력기준을 점수화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음을 밝혔다.

또 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무소의 실적회비징수방안은 정관규정개정 및

징수방법 문제 등이 남아있어 연구중에 있으며 건축사의 행정조치완화 및 사면문제는 건설부와 계속 협의해서 최선책을 강구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임시 총회에 앞서 사회정화 및 청탁배격을 활성화하고 생활화하는데 애심하고자 결의문을 채택했다.

채택된 결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正義社會實現의 役軍으로서 所任을 다하여 國民으로서의 信賴받는 建築士로서의 소임을 다한다.
2. 우리는 正直 秩序創造의 淨化 理念擴散과 諸託排弊의 率先垂範으로 如何한 不正과 不條理도 剔抉한다.
3. 우리는 會員 相互間의 國合과 親睦으로 和合하여 회원의 權益을 擁護하고 社會發展에 寄與한다.
4. 우리는 建築士로서의 本分을 다하기 위하여 建築技術의 開發과 創作活動을 꾸준히 하여 建築文化 暢達의 旗手가 된다.

事務局長 會議도 열어

임시총회가 끝난 지난달 30일 오후, 任仁燦본부사무처장의 주재로 각 시도별 사무국장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82년도 업무계획과



□ 한국유리 군산공장을 방문한 대의원

상조회 운영방안 등에 대한 협의회가 있었으며, 任仁燦사무처장은 "회원을 위한 협회가 되기 위해 모두가 盡力할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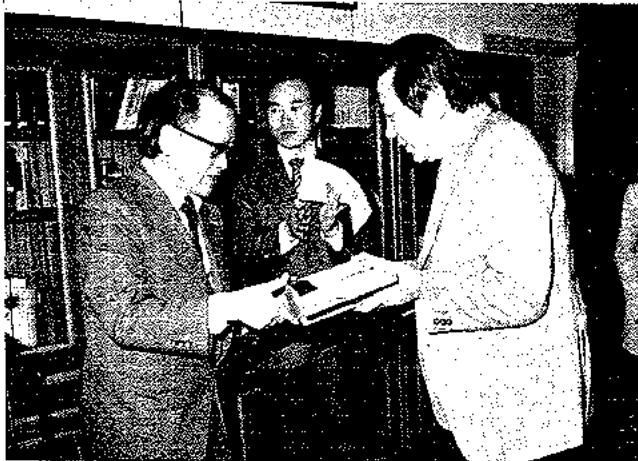
한국유리 군산공장 방문

82년도 제 1회 임시총회를 마친 다음날인 3월 31일, 전국 대의원들은 한국유리공업(주) 군산공장을 방문, 플로트 유리의 생산과정을 김 윤식한국유리 군산공장장의 안내로 살펴보았다.

이 자리에서 한국유리 총 매식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현황을 건축애로써 표상해 주시는 건축사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국내 대부분의 빈딩유리를 총당할 수 있는 플로트 유리를 군산공장에서 생산해 내고 있어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제 4 회 定期理事會





□ 具旻會 회장으로 부터 공로패를 받는 朴瑒夏 前理事(좌측)와 朴成圭 前 監事

제 4 회 정기이사회가 지난달 25일 본회의회의실에서 열렸다.

具旻會 회장 주재로 열린 이번 정기 이사회에서는 주요안건으로 임시총회에서 있을 추대화원 추대의 건을 비롯해서, 곧 시행 될 남세조합운영에 따라 전문적인 세무업무를 도와줄 자문 세무사추대의 건이 다루어졌다. 자문 세무사에는 김 기찬씨를 추대키로 했으며 그밖에 본회 제규정 개정안 등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기타사항으로는 경북지부 임시총회 승인이 있었으며 이에 앞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한편 具旻會 회장은 이사회에 이어 임기만료로 퇴임한 본회 前 任員 4 명에게 재임동안의 공로를 기리는 공로패를 전달했다. 前 任員 명단은 다음과 같다. □金正徹(前 理事·주) 정립건축) □朴瑒夏(前 理事·경신 건축공사) □朴來運(前 理事·우신건축공사) □朴成圭(前監事·합성건축기술공사)

任員 간담회 가져 당면문제등 의견 나눠

임원간담회가 지난 7 일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임시총회를 마치고 협회운영에 관한 당면문제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날 간담회는 具旻會 회장 주재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제 1 회 임시총회를 마친후의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시정

사항을 비롯해서 총회에서 거론된 내용에 대한 검토, 그리고 상반기중 부서별 업무내용 점검등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특히 임시총회시 거론된 사항중에

서는 독립예산제도에 관한 문제, 의료보험, 보수요율, 특별전형, 광고료미수, 감리사무소의 실적회비 징수, 건축사행정조직사면 문제등이 논의되었다.

會長團 東南亞 巡訪 신문보도

필리핀 BULLETIN TODAY紙에

다음은 지난 2월, 회장단 동남아 한 내용을 필리핀 英字신문 BULLETIN TODAY(2월 17일자)紙가 보도된 건축가연합회) 관계자들과 회의를 한 것을 옮긴 것이다.



RP/ KOREAN ARCHITECTS. 필리핀 건축가연합회 임원들은

한국의 건축사협회 회장단과 건축에 관한 제반 관심사와 건축교육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 왼쪽으로부터 Fellows 대학 빅터N.티오투코 회장, 그리고 필립M. 맨도자 필리핀 건축사 연합회 회장, 구 윤희 대한건축사협회장, 김 지태 서울자부장, 서있는 사람은 왼쪽부터 UAP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제로니모V. 마나한씨, PRC위원회 회장 케사르V. 칸셀러씨와 한사람 건너 두회장 후로라인N. 홍씨, 페르난도B. 아바드교수 그리고 박 현모(통역)씨 등이다.

필리핀 건축계 활동 활발 國際的 인정받고 政府서 지원

지난 2월, 본협회 회장단 일행이 동남아 순방길에 필리핀 건축계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필리핀의 건축계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특히 필리핀 대통령 영부인 이멜다女史가 필리핀 건축인연합(UAP)의 명예회원으로 추대되어 있어 건축관계 인사 등 140여명을 말라카낭宮 허러스홀로 초대하여 필리핀 건축인연합 회의를 주재하고 新5개년 建築進路를 제시하는 등 건축인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주고 있다.

필리핀 대통령 영부인 이멜다女史는 이 자리에서 "건축인은 건축설계



□ 필리핀 대통령 영부인 이멜다女史와 UAP 임원들

로서 文化와 世襲과 環境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역할자이기 때문에 서구문명에 의존하지 않는 진실한 필리핀 건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해 건축인의 사기진작과 건

築文化 창달에 기여하고 있음을 주시할 때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어 우리도 당국의 관심과 아울러 적극적인 지원이 아쉽다.

委員會

會館建立委員會

현재 재개발지구 내에 있는 본회 회관을 이전하기 위한 회관전립위원회가 열렸다.

지난달 23일 본회회의실에서 具琬會회장의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회관 이전의 불가피성이 논의되었으며 원칙적으로 이전하기로 의결, 준비작업착수키로 결의했다.

제4회 편찬위원회

4월 특집호 계획 수립

매번에 편찬위원회(위원장 朴商浩)가 지난달 29일 열렸다.

4월호 원색특집 편집계획을 확정키 위해 열린 이날 편찬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본회회의실에서 시작되었다.

먼저 지난 3월호에 대한 합평부터 진행되었는데 이날 합평에서는 ①次号부터 英文目次를 연구할 것과 ②題號의 統·化연구 ③레이아웃의 디자인화 ④회원설계작품선별제재 등이 논의되었다.



□ 제4회 편찬위원회

회원설계작품 원색특집이 게재될 4월호 계획에는 MBC여의도 스튜디오를 비롯한 모두 9개의 작품이 게재

되며 이와 병행해서 6개의 논문 등이 골격을 이룬 특집호를 발간하기로 의결했다.

司正업무 보완키로

금년도 본회 사정업무계획을 보완, 수행에 철저화를 기했다.

이번에 보완된 사정업무계획은 3대 부정심리 추방을 위한 세부 실천사항으로 자체정신교육강화와 계몽활동진개 등 2개 주요항목과 이에 따른 세부수칙 등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三大 不正心理 추방운동의 전개 (부정부패 심리·물가오름심리·무질

서심리)

(1) 자체정신교육=각급기관장(회장·지부장)에 의한 교육(월 1회), 각 부서장에게 의한 교육(월 1회), 외래 초빙강사에 의한 교육(반기 1회), 산하기관순회교육(〃), 시청각교육(슬라이드)

(2) 계몽활동전개=기관장의 서한 발송(년 2회), 간담회 개최, 유인물에 의한 대외홍보, 본부 및 각 지부 매월별정화추진과제로 선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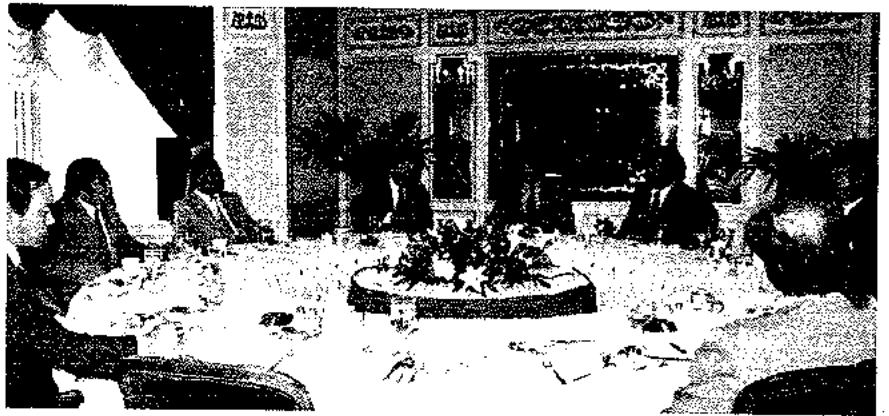
建築 3 團體 朝餐會

건축 3 단체 월례 조찬회가 지난 9 일 오전에 시내 호텔롯데에서 열렸다.

건축계 공동관심사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과 3 단체 육성발전을 위한 상호협력력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갖는 이 모임은 이날 본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具琬會 회장을 비롯해서 본회 임원, 건축학회 회장단과 건축가협회 회장단 등이 참석해서 건축계 현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러한 정기적인 모임을 앞으로는 수시로 갖고 3 단체 중심의 모



□ 호텔롯데에서 가진 건축 3 단체 조찬회

임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관계 당국자와도 자리를 함께 할 것을 계의했으며 그밖에 동남아 등지의 건축계 활동과 우리나라를 비교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공동 노력할 것을 논의했다.

또 86년 아시아 대회와 88년 올림픽

픽을 대비하기 위한 방안이 제기되었으며, UIA 국제건축가회의 관계와 오는 10월에 있을 건축대전전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선임 등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그밖에 경기침체에 대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 개진이 있었다.

支部消息

서울支部 산하에 연락소 설치

27 個에 소장任命 완료



□ 지부별 연락소장 임명식

서울支部는 會員業務의 능률화와 회원간의 유대강화를 위해 지부산하에 지역별로 연락소를 설치했다.

동支部 제16회총회 결의에 따라 지난달 19일 27개 연락소를 확정하고 연락소장에 대한 임명식을 마쳤다.

새로 임명된 연락소장은 회원관리에 따른 업무로 변동사항 등이 있을 때

는 소속 연락소장의 경유를 필한 다음에 지부에 신고해야하며 전입, 전출, 재가입, 폐업, 이전, 휴업, 신규입회 및 재입회 등이 이에 속하는 사항이다.

그밖에 정화추진업무, 반공에 관한 업무, 기타 지부시달사항 등을 관장하게 된다.

각 지역별 연락소장명단 및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 종로1지구: 모세용(삼흥건축 중, 신문로2가89-2 725-7702)

□ 종로2지구: 한충일(진양건축 중, 수송동 14 722-1481)

□ 종로3지구: 홍광표(상협건축 중, 관철동 252 720-8140)

□ 종로4지구: 홍순인(대우건축 중, 동숭동 1-141(디자인) 762-8913)

□ 중구1지구: 박동희(동남아건축 중, 다동 131(삼덕빌딩) 777-4353)

□ 중구2지구: 이정인(학동종합 중, 화현동 2가15 22-9638)

□ 중구3지구: 김 린(가전건축 중, 을

□ 자료기증 / 자료실

“감사합니다”

☞ 張起仁 회원

〈全訂版 建築施工學〉과 〈벽돌〉 각각 1 권씩, 82년에 발행한 위의 두권을 보내주셨습니다.

☞ 朴成圭 회원

〈일본 건축 문화〉 62년도부터 71년도까지 발행된 건축문화지 장정본 18 권을 보내 주셨습니다.

☞ 朱鍾元 교수

〈住宅設計〉 형설출판사에서 출판된 학생, 일반인, 설계자에게 필요한 책을 보내 주셨습니다.

☞ 技文堂

〈建築宣言文集〉 기문당에서 각종 건축선언문을 집대성한 도서를 보내주셨습니다.

協會消息

- 지로3가 5-2 269-9476)
- 중구4지구: 홍순덕(법한건축 중, 예관동 70-7 267-0467)
 - 중구5지구: 김수연(성신건축 중, 신당동 247-17 253-0604)
 - 강남1지구: 정정치(웅건건축 강남, 청담동 67-120 567-8189)
 - 강남2지구: 최정일(우일합동 강남, 학동 16-61 566-7544)
 - 강남3지구: 박희원(대흥건축 강남, 방배동 1770 591-2708)
 - 서대문지구: 강갑석(미주건축 서, 연희동 170-186 322-3074)
 - 은평지구: 최선규(은평건축 은, 용

- 암동 97-1 385-2088)
- 동대문지구: 이진학(아세아건축 동, 신설동 92-17 94-6656)
- 도봉지구: 김병완(도봉건축 도, 수유동 191-38 989-3635)
- 성북지구: 문창수(조양건축 성북, 삼선동 5가 299 93-4998)
- 성동지구: 김영창(태화건축 성동, 구의동 246-19 446-9344)
- 강동지구: 이종관(한국은성 강동, 성내동 319-33 478-2678)
- 용산지구: 우양근(반도건축 용, 동부이촌동 300-27 794-3373)
- 마포지구: 함정호(마포종합 마, 망

- 원동 474-15 323-4958)
- 영등포지구: 정만선(진전사 영, 당산동3가 326-3 633-9660)
- 여의도지구: 김창수(삼우종합 영, 여의도 1-154 782-0190)
- 강서지구: 김명선(강서종합 강서, 화곡동 981-1 603-0422)
- 동작지구: 송평문(삼성건축 동작, 사당동 708-103 591-4243)
- 구로지구: 강성영(영남종합 구로, 시흥동 530-1 856-1501)
- 관악지구: 이종업(아세아건축 관, 봉천동 421 877-6231)

건축상담실 放送소개

KBS서 생방송으로 진행



서울支部가 일반의 건축관계에 대한 각종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건축행정상담실이 방송공사(KBS)에 의해 생방송으로 소개되었다.

지난달 18일 회관 앞에서 중계차에 의해 직접 소개된 이날 방송은 상담실 설치목적과 연혁, 그리고 건축관계공무원 및 일반시민의 이용도 등을 김정원사무국장과 서울시 건축1계장의 대답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는 그동안의 성과와 사회에 미치는 기여도 등이 소개되었으며 상담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의 편의를 위해 상담실위치와 전화번호 등을 홍보하기도 했다.

서울福祉會 임시總會

年金배당 1인당 30만원씩



서울시建築士福祉會(회장 李奉魯)는 지난달 26일 시내 종근당빌딩 대강당에서 금년도 제 1회 임시총회를 열었다.

결산총회를 겸한 이날 회의에서는 개회사에 이어 지난 총회 회의록승인을 비롯, 업무보고, 감사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부의안건 토의에 들어가 지난해 결산이 승인되었으며, 퇴직연금 조성 연구위원회 구성은 회장과 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밖에 위원 구성은 복지회 운영위원이 위임토록 했다.

한편 임원보선에서는 공석 중인 감사에 許格(대방종합설계)회원을 선임했으며, 81년도 연금배당에서는 1인

당 30만원씩의 연금을 배당기로 의결했다.

班常會서 건축상담봉사

大邱支部 회원들 자진 참여

대구支部 회원 38명은 반상회를 이용, 시민들에게 건축상담을 해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달 25일 반상회날을 맞아 대구 시내 중구지역 19개동에 회원 2명을 1개조로 편성해서 각각 반상회에 참석, 건축분야에 관한 일반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줬다.

봄철을 맞아 가옥수리, 증축, 개축, 신축 등에 관한 행정 및 절차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대

구지부 회원들의 직접 상담으로 큰 도움을 얻었다고 말하고 크게 만족해 했다.

한편 대구지부는 이번 반상회를 통한 건축상담에 큰 호응도를 보임에 따라 이를 보다 확대해서 대구지역 전체로 넓히기로 하고 많은 회원들의 자진 참여를 바라고 있다.

정화결의대회열어

大邱, 회원간담회도

한편 동 支部는 지난달 26일에는 회원 116명이 참석한 가운데 3대 부정심리추방결의대회를 가졌다.

대구시내 기라성에서 연 이날 대회에서는 결의문채택은 물론 정화위원장의 정화 교육과 82년도 정화업무추진에 따른 방향 설명이 있었다.

또 29일 오후에는 동부건축 사무실에서 회원 간담회가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성구와 동구관내 회원 15명을 비롯해서 정화위원장, 부위원장, 정화핵심요원 그리고 수성구 건축과장이 참석했다.

이자리에서는 회원의 애로사항, 건

의사항등 회원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이 있었다.

경북支部 임시총회

결의대회도 함께

경북支部 임시총회가 지난 1일 구미시내 금오산관광호텔에서 열렸다.

소속회원을 비롯한 구미시장과 건설담당관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막을 연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보선과 감사패 및 표창패 수여가 있었다.

임원보선에는 대외원에 朴泰潤(신진건축설계사무소)씨와 간사에 兪龍成(내외영풍건축설계사무소)씨를 새 임원으로 선출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그동안 동지부발전에 힘써 준 구미시장과 건설담당관에게 감사패를 수여한데 이어 지부업무에 적극협조를 아끼지 않은 영주분소장인 金熙鍾(합동건축설계사무소)씨에게 표창패를 줬다.

또 회의를 앞서 3대 부정심리추방결의대회를 갖고 굳은 결의를 더욱 다지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부정심리 추방 결의

제주지부 토론회도 가져



3대 부정심리추방을 위한 제주지부 결의대회가 지난달 23일 동 지부회의실에서 열렸다.

19명의 회원 및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金守賢지부장의 정신훈화를 결한 대회사에 이어 결의문채택으로 부정심리추방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대회에 이어 정화추진방향 및 보조원 자질향상을 위한 건축강화실시계획에 따른 내용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建築. 그것은 가장 강력한 思考에서 태어난다. 인간에게 있어서 그것은 강제적인 것이다. 인간은 거기에 절식하던가 혹은 살아—내가 생각하는 의미로서의—갈 것이다. 건축은 대중의 원시적인 본능의 外皮가 아니다. 그것은 소수인의 힘과 憧憬의 구체화인 것이다. 그것은 벌써 일찍부터 예술을 이용하는 것을 그만둔 야성적인 사건이다. 그것은 愚者나 弱者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는다. 그것은 절대로 봉사하지 않는다. 그것

을 참아내지 못하는 자를 부셔버린다. 건축은 法을 믿지 않으나 그것을 만드는 자의 法인 것이다. 그것은 무기다. 건축은 그때 그때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無情하게 이용한다. 이제는 기계가 건축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인간은 지금에 와서는 겨우 건축의 영역 속에서 허용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絶對建築 / 발터·피클러 / 한스·홀러인 (Walter Pichler / Hans Hollern)

東南亞 各國의 建築團體를 巡訪하고〔I〕

金 枝 泰 — 서울特別市支部 支部長

다음은 東南亞 各國 建築士界와의 유대관계를 맺고 技術 및 情報交換과 아울러 國際 친선교류를 모색하기 위해 지난 2월 6個國을 돌아보고 귀국한 會長團의 巡訪記를 옮긴 것이다.

우리는 매일같이 업무에 쫓기고 雜務에 시달리다 보면 쟁겨야 할 일들을 까맣게 잊어 버리고 지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 주변의 변모해 가는 환경을 비롯해 모든 것들이 점차로 多樣化되어가고, 國際化의 물결이 거세게 밀어닥치는 이 時点에서 우리 建築士들도 時代潮流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널리 海外에 눈길을 돌려 世界 國의 韓國을 다시보고 韓國의 立場을 생각함으로써 쟁겨야 할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理解하게 되리라 본다. 즉 우물안 개구리格과 같은 처지를 벗어나 넓은 시야를 갖도록 노력함으로써 水準 向上의 거리를 좁힐 수 있다고 생각된다.

법에 의한 지난 1965년에 大韓建築士協會라는 하나의 技術團體로 創設된 이래 어언간 17년을 헤아리는 年輪 속에서 會員만도 2천여명을 포용한 規模있는 團體로서 꾸준히 성장발전해 왔으나, 그 外襟에 비해 內面的인 精神年齡은 뒤따르지 못한 점이 없지 않은 것이 協會實情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앞으로 協會의 體質改善과 活性化에 따른 進路方向뿐만 아니라 發展을 위한 里程標를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도 때늦은 감이 있지만 國際交流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時点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次元에서 具會長과 筆者는 海外交流에 대한 計劃을 모색하고 있던 터에 泰國과 台灣建築師公會의 초청도 있고 해서 此際에 交流를 위한 첫 걸음으로 友邦인 東南亞各國(TAIWAN, HONG KONG, PHILIPPINE, SINGAPORE, THAILAND, JAPAN 등 6개국)의 건축단체를 순방키로 결정했다.

협회 임원으로서의 첫 나들이인 우리로서는 순방에 앞서 國際적으로 交流가 별로 없는 협회의 형편이기 때문에 尋訪國의 건축단체와 會合을 가질 수 있도록 주선했을 것과 儀典上의 要式節次도 알아 봐 줄 것을 各國 주재 우리 대사관을 통해 미리 협조를 구했다.

출발 10여일 전에 이런 준비 등을 하고 필요한 公文도 띄웠다. 순방할 나라에 따라 1박2일 또는 2박3일 식의 ㅼㅅㅅ한 日程으로 모두 15일간 여행 計劃을 정하고 協會에서 贈呈하는 公式의인 贈物(李朝繪圖集, 족자, 각종책자, 訪問牌, ㅼㅅㅅ트 등)만을 제외하고는 各自 부담이라는 精神下에서 民間外交과 다를 바 없는 使命感마저 갖고 가벼운 마음으로 旅程에 올랐다.

■ 自由中國 / 台北

우리는 一行은 旅行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협회 임직원들과 親知들의 배웅을 받으며 2월 5일 오후 5시30분 CX411便(CATHAY PACIFIC)으로 출발했다.

비행기에 몸을 실은지 약 2시간 30분만에 靑島같은 어둠속에 첫 방문국

인 自由中國의 首都인 台北市 西北쪽에 위치한 中正國際飛行場(CHIANG KAI-SHEK INTERNATIONAL AIRPORT)에 도착했다.

불과 몇시간 전만 해도 겨울 코트를 입었던 필자 자신이 南國의 熱風에 몸을 맡기니 地球緯度의 차이점을 새삼 實感케 했다. 空港로비에서 알게된 호텔 안내인과 함께 車를 타고 市内를 向해 靑히 靑린 고속도로를 달렸다.

일정한 간격으로 서있는 가로등 불빛 밑에 常夏의 植物들이 밤바람에 춤을 추듯 흔들리는 것이 더 한층 南國의 정취를 자아 내게 했다. 30여분을 달리던 차는 靑황찬란한 네온사인인 명멸하는 市内中人거리에 위치한 호텔 앞에서 우리를 내려주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다.

異國에서의 첫날밤을 맞이한 우리는 여장을 풀고 旅路에서만 맛 볼 수 있는 약간의 흥분과 피로를 풀기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온누리에 퍼지고 現代의 造形美를 갖춘 最新 建物들이 즐비하게 치솟은, 혼탁한듯 하면서도 질서정연하게 靑동하는 市内의 모습을 車窓으로 바라보며 우리나라 大使館으로 向했다.

예정된 시간에 독특한 건물형태를 지닌 大使館을 찾은 우리는 대사님을 비롯한 外交官들의 성의있는 주선으로 台灣建築師公會任員들과 만날 수 있었다. 대사관에서는 우리가 출발전에 보낸 公文을 받아 봐서 방문계획을 알 수는 있었으나 혹시 예정시간이 변경되어 우리 일행이 오지 않

면 난처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했다고 우리 일행을 환영했다. 이는 國家的인次元에서 볼 때 各分野別로 미치지 못하는 外交面에서 우리의 巡訪行事は 일종의 民間外交 役割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처럼 적극적인 協助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라고 풀이 된다.

台灣建築師公會에서는 마침 週末인 데도 不拘하고 우리 일행을 맞이 하기 위해 다른 일을 제쳐놓고 최선을 다해 줬다. 약속된 오후 4시에 대사관에서 통역(中國語)으로 추천한 姜氏(우리나라 화교, 단국대졸업)의 案内로 台北市 長安末路一段에 있는 台北市建築師公會會館을 訪問했다.

건축관계인사 10여 명의 따뜻한 영접을 받으며 設計도서등록과를 통과해서 안내된 곳은 넓직한 會議室이었다. 곧이어 饕餮의인 饗宴의 入事紹介와 記念페넌트 교환을 하고 兩國의 共同관심사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會合에 들어갔다.

이자리에는 台北市 政府工務局副局長이며 中華民國 建築學會理事長(會長)인 黃南淵씨를 비롯해 台北市 政府工務局 都市計劃處長인 林將財씨, 台灣建築師로서 갈지의 人物인 高而潘 台北市建築師公會 理事長, 그리고 許坤南 台灣省建築師公會 理事長, 朱祖明 台北淡江大學建築科教授 이외에 建築師公會役員인 PROF; YUFN-C HEN YU, 候西泉, 謝國禎 및 事務所長 등이 참석했다.

台灣側의 高理事長의 정중하고도 友誼에 찬 환영인사에 이어 具瓊會회장은 歷史의으로도 유대가 깊은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또한 이번 尋訪에 이처럼 정중하고도 따뜻하게 환영해준데 대한 答禮를 한다음 본격적인 의견교환을 시작했다.

이번 巡訪日의은 各國의 共通事項이 되겠지만 앞으로의 交流를 위해서 첫째로 교섭團體의 確認과 그 實態와 약, 둘째, 交流를 통해 얻어야 할 資料蒐集 즉 ① 건축사 資格取得課程과 그 內容 ② 건축관계 許可制度에 관한 것 ③ 건축관계 法令 ④ 건축관계의 敎育制度 등이다. 세째는 交流를 통해 建築文化창달을 위한 技術情報 및 資料交換, 圖書出版物的 交換, 共同으로 技術開發調查研究, 그리고 앞으로 時期가 성숙해 지면 定期的인

親善訪問 또는 國際機構加入 문제 등이 協議된 內容이었다.

現在의 中華民國(自由中國)의 建築師公會組織은 日本의 建築士聯合會와 유사한 조직체계를 갖고 있으며 社團法人체로서 總本部인 中華民國建築師公會 全國聯合會산하에 台灣건축사공회가 있고 우리나라의 各市道支部格인 台北市건축사공회가 있다.

建築師의 級別은 없어졌으나 過去에 받은 2級건축사는 30여명 정도 남아 있고, 台北市에 등록된 건축사는 7백여명이다. 특이한 것은 건축직 公務員을 제외하고는 免許를 取得한 건축사는 대학교수라도 事務所를 開設할 수 있는 制度이다.

資格取得 과정은 大學을 졸업한 후 5年間의 實務경력을 쌓은 뒤에 시험에 합격해야 가능하다.

이번에 돌아 본 6개국에서 資格시험을 치루는 나라는 日本, 台灣, 香港과 우리나라 뿐이고 다른 나라는 大學을 졸업한 뒤 일정기간의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이 건축사가 되려면 官民合同으로 構成된 자격심의위원회(高位職建築公務員, 建築係大學敎수, 건축사와 기타 관계 인사 등)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인정받아야만 事務所를 開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건축사로서의 能力을 인정받지 못하면 建築의 創作活動은 할 수 없다는 制度이다. 어떤 制度가 건축사의 品位保全과 社會的地位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만한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2 시간 남짓한 會議에서 公式用語는 中國語였으나 參席者의 반수 이상이 日本語와 英語를 自由롭게 구사하므로 서로간의 意思 소통에 불편을 느끼지 않았다.

會議를 끝낼 무렵 많은 관계자들과 圖書を 기증받고, 우리가 가져고 온 선물은 追後에 大使館을 통해 증정하기로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의 交流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期約하면서 참석인사들과 記念촬영을 끝으로 和氣와 友誼가 넘쳐 흐른 會談을 마쳤다.

이어서 우리는 建築師公會가 마련한 만찬 장소인 一流요리점 “怡園”으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 會館을 떠났다.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正式北

京料理를 즐기며 환담을 나누고, 응송한 대접에 대한 謝意를 표한 후 아쉬움을 남긴채 밤 9시에 그들과 헤어졌다.

그들과의 會合은 기대 이상으로 좋은 成果를 거둘 수 있었으나,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준비한 선물들이 제때에 도착이 되어있지 않아 차후에 大使館을 통해 전달하겠다는 말로 대신해야 했던 웃지못할 缺禮가 있었다 이런 사례는 홍콩과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4개국에서 모두 말(言)로 선물을 대신 해야 했으니……/출발 7, 8일 전에 託送한 것이 제때에 도착하지 않아 결국 그후에 전달해줄 것을 부탁해 놓아서 모두 전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

다음날은 公休日로서 公式的인 스케줄을 끝낸 우리는 觀光이 主目的은 아니지만 남은 時間을 선용하기 위해 台北의 몇몇 名所를 찾기로 했다.

2次大戰後에 國共合作이 失敗로 돌아가자 1949年 恨스럽게도 中國本土에서 日本의 九州섬보다 약간 작은 고구마 모양의 대만섬으로 옮겨온 후 萬難을 극복하고 오늘과 같은 經濟富國을 이룩한 自由中國을 만든 것이다.

「處驚不變」이란 말은 대만의 自由中國을 부흥하는데 널리 使用된 口號라 하겠다. 統治의 象徵建物로 손색이 없는 붉은 벽돌색의 政府廳舍인 總統府와 푸른 樹木이 우거진 넓은 廣場을 돌아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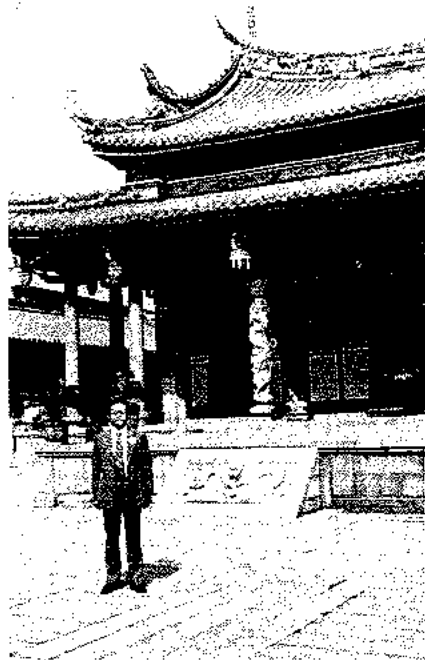
□ 대만 총통부청사 앞에서의 일행

이 곳에서 바다를 보이는 곳에 우뚝 솟아 있는 中正記念堂(CH-
ANG KAI-SHEK MEMORIAL
HALL)을 찾아갔다. 中國固有의 傳統
建築美를 加味한 이 記念堂의 외벽은
基壇에서부터 높은 지붕 추녀 밑까
지 푸른색의 大理石으로 裝飾했으며
지붕은 靑기와를 씌웠다. 주변 광장
에는 한쪽의 그림처럼 붉은 꽃밭으
로 調和있게 配列한 것이 눈에 띈다.



□ 中正記念堂앞에서

堂内部 홀로 들어가니 蔣總統의 座
像을 가운데에 두고 그 양쪽에 인형
처럼 서있는 正裝한 군인——儀仗兵
이 딱 인상적이었다. 특히 座像은 미
국 와싱턴의 링컨大統領 기념관의 링
컨座像과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 台北市內에 있는 孔子廟앞에서의 필자

설명에 따르면 그의 屍身도 堂内部地
下層에 안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공개된 지하층 내부는 蔣總統의 遺
品展示를 위한 공간으로 할당되어 있
었다. TOUR COURSE에 들어 있
는 孔子廟에 들어가 보니 용마루 양
쪽 끝이 하늘을 향하여 뾰족하게 치
솟은 형식과 중국의 傳統樣式의 木造
建築美를 뒷받침하는 강렬한 色調가
이곳이 중국임을 강조해 주고도 남음
이 있었다.

儀仗兵이 警備하고 있는 전물용사
들을 봉안한 忠烈祠 정문 앞에서 우
리 일행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넓
은 뜰 동편에 중국의 고유양식의 祠
堂建物이었다. 향을 피워 명복을 비
는 참배인의 모습에서 우리나라 국군
묘지를 연상케 했다.

오전 11시경, 우리의 TOUR BUS
는 台北市城區에 위치하여 그 내용
과 규모를 자랑하는 國立歷史博物館
(一名: 故宮博物館) 앞뜰에 도착하였
다. 중국의 5천년 역사를 한눈에 관
람할 수 있도록 진열한 유품 수만도
국보급이 12,000점에 이른다고 한다.
입장하여 평소에 걷는 템포로 관람하
는데 약 1시간 이상이 소요되었다.
(자세히 관람하려면 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蔣總統이 정부를 대만으로 옮겨올
때에 신명을 다하여 이 국보급의 유
물들을 무사히 운반하여 보존케한 것
은 널리 알려진 逸話이다. 박물관의
전시에 있어 관람자의 편의와 動線처
리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당
한 연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었다.
간단한 점심을 마치고 오후에는 台北
市內에서 27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우라이(烏來)라는 곳(대만의 원주민
이 살고 있는 高砂族의 村落)을 향해
출발하였다. 대만의 관광자원의 하나
인 이 高砂族의 風俗을 일반 관광객
에게 공개하고 있었다.

高砂族의 체구는 왜소한 편이고 피
부색은 약간 검은 편이나 여성들은
그렇지 않았다. 용모에서도 눈언저리
가 약간 들어간 것이 특징이랄까. 별
로 우리들과 다른 바가 없었다. 산악
지대의 울창한 숲속에 마을을 이루고
있는 高砂族들은 관광객을 환영한다
는 뜻에서 그들 고유의 무용을 보여
주고 관람료를 받고 있는 것이 이제

로왔다. 대만은 지형적인 혜택으로
광대한 原始林과 매력적인 관광지로서
많은 외국인에게 무한한 호기심을 불
러일으키기에 족한 나라였다.

이곳에서 숙소인 호텔로 돌아 온
것이 오후 6시가 조금 넘어서였다.
저녁노을로 붉게 물들인 市內商街建
物들이 들어서 있는 골목을 거닐다 보
니, 大陸의인 색채로 그 모습들은 달
라보이긴 하지만 뒷골목이나 식당거
리에는 아직도 日本色의 잔재가 물씬
풍기고 있었다.

짧은 2일간의 대만(FORMOSA—
常綠이라는 뜻) 체류에서 見聞한 것
들은 走馬看山格이고 단편적이긴 하
지만 필자의 뇌리 속에서 메어낼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香港에서——2일간의 대만 방문을
마치고 푸른 바다물결만이 출렁거리는
南支那海를 날고 있던 CX511便機
는 마침내 홍콩의 九龍半島의 租借
地에 위치한 啓德國際空港(KAITAK
INTERNATIONAL AIRPORT)에
우리 일행을 풀어 놓았다. 그 시각이
2월 8일 오후 2시 30분이었다. 대
만에서 약 1시간 40분의 비행시간이
된다. 알다시피 홍콩은 유럽이나 아
메리카로부터 동양에 이르는 海空路
의 要地이며 국제적으로도 특수한 地
位를 점하고 있는 도시이다.

세 계적인 美港에 든다는 홍콩의 첫
인상은 듣던 그대로, 중국에 위
치하면서도 중국이 아닌 西歐化된 國
際貿易都市임을 강렬하게 받았다. 공
항에서 약 8km 떨어진 九龍市內에 소
재한 그랜드 호텔에 집을 풀고 골비
로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다. HOTEL
OPERATOR에게 한국대사관의 전화
번호를 일러 주었더니 HONG KONG
SIDE 나고 되물어 새삼 어리둥절하고
말았다.

홍콩하면, 九龍半島와 香港島를 포
함하여 호칭하는데 전화에 있어서는
구분하여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
게 되었다. 촌놈이 따로 있는게 아니
로구나. 바로 우리가 국제적인 촌놈
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쓴웃음이
절로 나왔다.

대사관의 許領事任께서는,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홍
콩 建築師團體와의 연락 및 교섭이

미진하니 아무래도 홍콩에서 한국인으로서 오직 한분이며 건축 창작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한국 건축가협회 회원인 申鉉尙씨를 소개할 터이니 그분의 협조를 얻어 순방목적에 달성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것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오후 7시에 HONG KONG ISLAND 중심가에 있는 LEE GARDENS HOTEL 2층의 〈거주장〉이라는 한식집에서 許領事를 비롯하여 申씨와 우리 일행은 회식을 같이 하면서 내일에 있을 그곳 建築師團體와의 籌訪件에 대한 협의를 끝내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申씨의 안내로 그의 사무실에 들러 홍콩 건축사들의 활동상을 들었다.

申씨의 사무실은 25명 정도의 아파트를 건축가의 사무실로 개조한 것이었다. 건축가가 일하는 방담게 오밀조밀하면서도 차분한 분위기를 자아내게 하는 실내의 공간처리와 건물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 점, 그리고 방문객과 업무를 위한 동선에 따른 방배치의 솜씨에서 申씨를 이해하기가 한결 쉬웠다.

다음날 申씨의 수고로 香港建築師學會會長이며 亞洲建築師學會主席으로 있는 潘祖堯(Mr. POON)씨와의 상면 약속이 이루어져 그의 사무실에 도착한 것이 오전 11시였다. Mr. POON은 면담하기에 앞서 우리에게 양해를 구해왔다. 그것은 우리 쪽의 순방에 따른 공식적인 교섭이 잘 되지 않은 것과 兩國이 團體間의 正式交流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공식적인 회합은 차후로 밀고 다만 로저럼의 籌訪目的을 위해 우선 개인 자격으로 국한한다는 뜻을 밝혀 그렇게 하기로 합의한 다음 그를 만나러 갔다.

이러한 경우 불쾌하게 생각하기 쉬우나 오히려 우리 쪽의 미흡함을 인식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國家間의 團體交流에 있어 사전에 교섭을 통한 절차없이 公式會議를 갖기 힘들다는 것을 일깨워준 것이리라 하겠다.

아담하게 꾸며진 그의 사무실로 안내된 우리 일행은 美男型으로 생긴 靑眞의 중년신사인 Mr. POON의 따뜻한 영접을 받고 서로 인사소개를 한 후, 籌訪메시지와 가져간 선물을 증

정하자 무척 고마워했다. Mr. POON에 대하여는 申씨에게서 들었던 바와 같이 중후하면서도 매사에 활동적일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폭넓은 활약을 하고도 남을만한 능력의 소유자임을 그의 인품에서 엿볼 수 있었다.

벽에 걸린 액자 속의 英聯邦建築師學會行政顧問委員會會員證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이는 Mr. POON의 사회적 활약상의 일면을 과시하는 듯했다. 서로의 관심사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이야기가 끝난 것은 오후 12시 30분경이었다. 마침 점심시간이었으므로 식사초대를 했더니 Mr. POON 자신의 사정이 있어 함께 못함을 매우 죄송스럽게 여긴다면서, 앞으로 양국단체의 교류에 있어서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과 다시 만나기를 희망하며 석별의 인사를 나눴으로써 그곳에서의 巡訪旅程의 막은 내린 것이다.

그와의 대화 내용에서 香港의 建築團體는 建築師學會와 UIA 會員國으로서의 家協會만이 있다는 걸 알았다. 따라서 우리 協會와의 교류는 香港建築師學會가 될 것 같다.

이밖에 주목할 것은 2년 전에 창설했다는 亞洲建築師學會(ARCHITECTS REGIONAL COUNCIL ASIA)인 것이다. 회원국은 홍콩을 비롯하여 방글라데시·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파키스탄·필리핀·싱가폴·태국·스리랑카 등, 주로 동남아에 속하는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기구를 주관하는 사무국

은 홍콩에 두고 있다. 이 A.R.C.A의 設立目的은 建築文化 발전을 기하기 위한 각국의 建築團體와의 친목과 유대를 갖고 각종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총회는 해마다 각국 순번으로 개최하며, 1981년도 총회는 9월에 홍콩에서 성대하게 가졌다고 한다. 우리 협회도 가입하지 않겠느냐는 권유를 받은 바 있으나 이 문제는 協會公式機構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가입여부를 알려 주겠다고 했다. 사실 그러한 사항은 우리의 순방목적 중에서 국제교류의 실정을 알기 위한 정보이기도 했다.

홍콩의 建築師들은 우리 형편과는 판이할 정도로 사회적 지위가 확고한 것 같았다. 그 실례로서, 작년에 中國系의 미국인으로 유명한 건축가 아이엠 웨이가 홍콩을 방문했는데 그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뜻에서 대대적인 환영은 물론 VIP로서의 최상의 예우뿐 아니라 그의 신변의 안전에 대한 경호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듣고 볼 때, 홍콩 건축사들의 득의만만한 作品活動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밖에 建築學徒를 교육시키는 대학은 홍콩政府에서 주관하는 西歐式的 香港大學뿐이므로 입학하는데도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힘든 반면, 이 대학을 졸업한 건축학도의 장래는 사회적 배경에 힘입어 건축사로서 굳건한 기반을 다져가고 있음을



□ 홍콩市民홀에서 具坑會會長과 申鉉尙씨

알 수 있었다.

半日 밖에 남지않은 오후의 여가를 이용하기 위해 우리 일행은 申씨와 함께 市内 TOUR로 들어갔다. 동양의 진주라 불리우는 圓錐型的 香港섬은 동서로 길며 平地다운 평지가 적은 편이다. 섬의 최고봉은 標高 604m로서 PEAK라 부르며, 이 PEAK의 斜面은 계단식 또는 RAMP WAY처럼 형성되어 있어 발볼일만한 곳은 전부 건물들이 들어차 있었다.

超모던한 高層建物이 있는가 하면 전통적인 PAGODA나 성벽에 둘러싸인 예전 그대로의 건물도 볼 수 있는 홍콩 특유의 도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市民홀의 展示場에서는 때마침 BAUHAUS의 창설자인 WALTER GROPIUS 작품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었다. 이홀은 시민을 위한 집회와 전시장으로만 이용토록 한 건물인데 그 스케일이 크지도 적지도 않은 알맞은 규모의 것이었다.

시민 전시장을 빠져 나오면서 우리 일행은 大公便所(공원 관리상)가 따로 있다는 VICTORIA PEAK로 향했다. 香港섬의 최정상에서 내려다본 香港市와 KOWLOON반도의 전경은 일대 장관이 아닐 수 없었다. 높고 낮은 건물 사이로 보이는 검푸른 바다, 그 속에서 꿈꾸듯 조용히 정박하고 있는 무수한 선박들, 개미떼처럼 몰려 다니는 많은 차량의 무리, 그리고 斜面을 최대한도로 이용하여 형성된 圓型的 무한한 변화 속의 曲線道路는 울창한 나무숲 사이를 누비며 아래 쪽으로 퍼져 내려가고 있었다. 참으로 홍콩이 아니면 맞볼 수 없는 절경이었다. 홍콩의 명물인 海底터널(길이 1.5km)을 통과할 때에는, 바로 위에서 분주히 왕래하고 있을 선박들을 생각하며 인류의 과학문명의 극치를 보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굴 속을 질풍같이 달리던 택시는 九龍市内的 숙소 앞에 우리 일행을

떨구어 놓고는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다. 저녁식사를 끝내고 숙소 주변의 상가와 밤거리의 모습을 스냅하기 위해 우리 일행은 인파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밖의 활기를 불러 일으키는 온갖 비온과 조명의 엇갈림은 흥분과 자극의 교향곡이 되어 온 거리를 뒤 흔들고 있었다. 약 2시간 가량 밤거리의 TOUR를 끝낸 우리 일행은 깊어가는 홍콩의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내일의 출발 준비를 위해 호텔로 돌아왔다.

1841년, 아편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국이 中國淸朝로부터 얻어낸 땅이 홍콩인 것이다. 産業都市로서, 國際貿易都市로서, 또한 觀光都市로서의 풍모를 지닌 이 홍콩은 어떤 미스터리와 같은 것을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무한한 可能性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라고 여겨진다. <※>

모차르트의 작곡은 설계이다.

그것은 질서의 실행이다— 직관적

디자인은 그 이상의 디자인을 鼓舞한다.

디자인은 表象을 질서에서 얻어온다.

표상이란 기억이다— 형태 樣式이란 하나의 적용된 질서이다.

동일한 질서가 코끼리를 만들었고 인간을 창조했다.

그것들은 다른 디자인이다.

다른 열망에서 시작되어 다른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질서는 미를 함시하지 않는다.

같은 질서가 난쟁이와 아도니스를 만들었다.

디자인은 美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美는 선택에 의해서 생겨난다.

親和力과

完全化와

사랑에 의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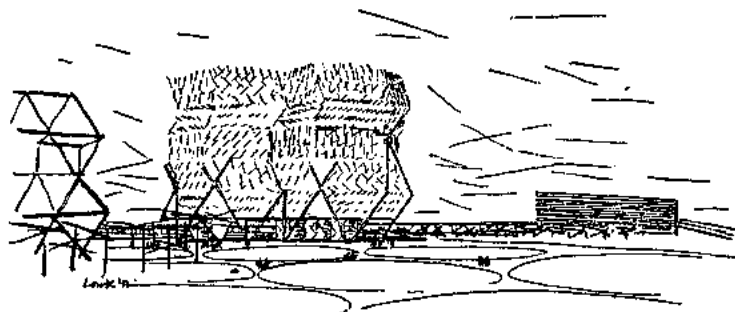
예술은, 질서속에서 하나의 형태·

만들기이다— 영혼의

질서란 만질 수 없는 것이다.

秩序(order)란... / 루이스 I. 칸

(Louis I. Kahn)



都市計劃의 새로운 展開

朴 炳 柱 — 弘益大學校 教授

THE NEW PROSPECT FOR CITY PLANNING

Park, Byung Joo — Hong Ik University Professor

머 리 말

요즘 都市計劃界에서도 <전환기에 선 도시계획>이라는 이름을 붙여 과거 도시계획의 평가와 앞으로 전개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근대적 도시계획의 역사가 앞은테 비해 짧은 기간에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속도로 급격한 都市化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도시문제의 근본적인 병폐를 치유하지 못한 채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70년대의 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우리나라도 세계적 추세의 일환으로 현대적 생활을 생각하게 되었고, 세계의 이모저모는 즉각 각 가정의 안방 텔레비전에 비쳐지고 있으니 우리의 생활환경의 낙후성이 두드러지게 문제시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인 생활환경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서울로만 집중되던 경향이 근년에 이르러 분화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서울의 인구분산정책이 서서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증거의 현상이라고 보며, 상대적으로 지방도시의 발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도시화율이 91년도에는 77%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国土計劃에서는 대도시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으면서 지방도시의 육성을 내걸고 균형있는 国土空間을 편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다. 우선은 대도시와 지방의 중소도시 사이에 都市施設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낙후지역에 도시시설의 투자를 적극 지원해야 지방정주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국가재정의 한계성으로 하여 단순하게 해결될 것 같

지는 않다.

도시계획·도시정책의 어려움이 사회적 요구나 경제적 여건의 괴리에 있음을 새삼 느끼게 한다.

本稿는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먼저 구미 선진국의 80년대 도시계획 동향부터 살펴보는 것이 우리나라 도시계획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OECD의 80년대 都市問題>를 요약해 보기로 한다. 다만 구미의 사정이 우리나라의 여건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본고는 우리나라의 土地利用에 관하여 고찰하고 건축과 관련시켜 보면서 우리나라 都市計劃의 당면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OECD의 80년대 都市問題

OECD(經濟協力開發機構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선진공업국의 대부분을 망라하여 경제성장, 발전도상국에의 원조, 국제무역 등, 국제경제 전반에 걸쳐 협의하기 위한 국제기구이며 최근에는 환경문제·에너지문제 등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 기구에서 80년대의 도시문제에 관해 토의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구미제국의 56개 주요도시에 관한 최근 10년간의 인구추이를 보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 결과, 都心地域에서의 失業問題의 현재화, 기존축적의 유흥화, 건물의 황폐, 범죄·파괴행위의 빈발 등, 광범위한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OECD제국에서의 60년대 및 70년대 전반의 도시문제는 급속한 경제성장에서 기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농촌에서의 인구유출에 따른 도시인구 증가에 대한 도시정비 대책과 소

득수준의 상승에 따른 도심부 주민의 교외이동의 대응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구체적인 문제로서는 大都市圈內的 자치단체 상호간의 사회적·경제적 대립, 공해·혼잡현상의 급증, 행정수요에 따를 수 없는 도시재정 운영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렇듯 급속한 경제성장이 도시문제의 원인인 한편, 문제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열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의 도시문제는 그 양상이 매우 달라지고 있다.

한마디로 사회적 요구에 비해 경제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기에는 너무나 큰 괴리가 생기고 말았다는데 문제의 중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80년대를 전망하는 OECD의 도시문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國際經濟構造의 변화에 따라 국내경제의 대폭적인 전환이 있어야 하겠고 이런 산업조정과정은 일국의 도시 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다.

2) 인플레이의 진행과 도시 서비스의 勞動集約의性格에 따라 도시재정에의 압박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3) 토지가격, 주택가격 및 도시 서비스가격의 상승에 따라 도시 경제의 효율적인 성장에 큰 지장이 생길 것이다.

4) 에너지 가격의 급성장은 도시교통 시스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며 자동차와 공공교통기관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5) 도시지역내에서의 사회적·경제적 불균형은 지역 상호간의 불균형과 더불어 큰 문제로서 대두될 것이다.

6) 대도시권에서의 도시화되는 고

용기회의 문제로 확대될 것이다.

7) 도시에 있어서의 인구분포 및 연령구조의 변화는 도시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와 같은 수요의 변화는 기존시설의 유지관리에의 요청과 더불어 도시재정을 크게 압박할 것이다.

또 에너지가격의 상승은 교외거주 패턴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상과 같은 OECD의 전망을 살펴보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도시쇠퇴〉의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생긴다.

2. 土地利用의 限界性を 再認識하자

우리나라의 도시는 1970년대의 경제의 고도성장기 동안에 급성장하였다.

도시화율의 진전통계를 보면 1960년의 35.8%, 1970년 49.8%, 1980년 66.7%로서 이런 급격한 도시화율의 성장은 선진 구미제국에서는 그 예를 찾을 수가 없을 정도이다.

그리고 10년 후인 1991년의 도시화율은 77%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수치를 인구수로 보면 1980년의 도시인구 2,540万人, 농촌인구 1,270万人에 대해 1991년에는 도시인구 3,450万人, 농촌인구 1,050万人이 되는 추세이다.

1980년 현재의 주거 및 商業用地는 1,721km²(전 국토의 1.74%)로서 총인구 3,812万人에 대한 인구밀도가 22,150인/km²(1인당 13.5평)가 되어 매우 고밀도인 상황에 놓여 있다.

1991년의 전국인구 4,500万人에 대한 대지의 총 수요면적은 평균인구밀도 200인/ha로 볼 때 2,250km²가 산출되는바, 이 중 도로 및 공공시설용지 약 35%를 제외한 순대지면적은 1인당 9.75평에 불과하여 대지이용은 集約的 高度化가 이루어져야 한다.

1991년을 목표로 하는 제2차 국토계획의 대지에 대한 토지이용 전망을 보면 1980년의 대지면적 1,721km²에 대해 1991년에는 2,237km²로 보고 있어 앞으로 신규 대지로 500km²가 소요된다고 한다.

이상에서 도시화율·인구전망·대지의 수요면적·인구밀도 등을 새삼스럽게 나열하는 까닭은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의 관련에 관하여 좀 더 확실한 개념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흔히 건축의 자유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建築計劃을 수립함에 있어 지나친 규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는 자칫하면 외국의 예를, 그것도 토지자원에 여유가 있는 나라의 사례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려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향은 우리나라 國土利用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국토이용의 현황이나 국토이용계획을 보면 대지의 利用限界性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뚜렷하게 알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住居 및 商業用地로서의 대지면적은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국민 1인당 평균 純大地面積이 10평 이상은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재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도시계획은 土地問題부터 풀어나가야 하며 토지이용계획이 건축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 도시의 토지이용상황을 생각해 보자.

누구나가 느끼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토지이용은 난잡하고 무질서한 결과가 되고 있다.

이것은 토지이용계획이 불충분하며 토지정책의 빈곤과 근대적 도시정비의 근간이 되는 사회자본의 축적이 부족한 때문이다.

무질서한 시가지를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 바람직한 거주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다면 다른 긴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솔직하게 반성하고 새로운 도시계획의 틀을 준비해야 한다는 전환의식의 필요성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꿈을 지니지 않고 꿈이 실현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여건을 무시한 이상은 공존하기 마련이어서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토대로 실현 가능한 현명한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3. 建築의 自由는 可能한가?

건축의 규제는 각 나라의 사정에 따

라 많은 차이가 있으며 또 그 나라 안의 도시마다 각각의 특성이 고려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建築基準法에 도시에 따라 특성을 살리는 건축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도시개발계획과 건축계획은 마치 동전의 표리의 관계인 것 처럼 그 연계성이 필수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건축계획은 私的이익을 초월하여 公共 개념에 입각한 도시개발계획에 부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건축규제의 필요성이 생기고 그 규제의 취지는 공공성이 사적 이익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르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도시의 공공성에 부합하는 건축규제가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가지형성이 무질서하고 난잡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의 건축규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居住可能用地의 면적이 적고 상대적으로 토지이용의 고밀도화를 指向해야 하는 도시지역에서는 토지가 귀중한 자원이므로 그 이용을 토지소유자의 뜻과 시장구조의 지배에만 임의로 맡겨서는 안 될 일이다.

도시는 많은 사람이 모여 생활하기 때문에 자기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의 市民이 생활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생명·건강·안전·쾌적의 보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고 자기가 뜻하는 건축이 바람직한 시가지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각도에서 建築計劃을 조감하면 건축의 자유는 올바른 도시형성에서 비롯하여 설정되어야 한다는 당위론이 나온다.

작금 논의되고 있는 경기 부양책으로서의 건축규제완화라는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 그 상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나 만일에 경기부양의 미명울 내세워 도시환경악화의 방향으로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방향간격을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토지가격이 높아져 건축한 후의 분양가격도 고가이므로 경제사정이 나

쁜 요즘은 분양입주희망자가 적어 전세율의 규제를 축소조정하거나 용적율의 규제를 더 높게 책정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으리라 본다.

예를 들어 아파트건설계획의 실제면을 보면 주어진 면적·지형을 놓고 그 속에 어떻게 하면 住宅面積·戶數를 더 많이 배치할 수 있을까 하고 골몰하는 것 같다.

규제를 받고 있는 한계치 즉, 건축허가가 될 수 있는 최대 한계치를 찾는 데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용적율·전세율·인동가격·경제선에서 떨어져 할 거리 등, 시의 건축

조례에만 매달리다 보니 창의성이나 기술축적에 유능한 계획설계가의 지혜가 동원될 여지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생산성의 향상, 건축비의 절감을 지나치게 내세워 同一平面 이론바, 한 두 종류의 표준설계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런 획일성을 피해야 한다는提言은 여리차려 되풀이 되고 있지만 주택가격의 節減論優位性에 밀려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건축계획을 너무 얇이 하게 세우고 있고 한 단면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이나 다른 선진국이 100년을 걸쳐서 쌓아올린 집합주택의 계획 및 건설기법을 우리는 차질없이 그 原則的基法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불과 20년의 역사밖에 안되기 때문에 미숙한 점은 이해하지만 居住空間의 공지확보에 관한 한 초창기보다 오히려 후퇴되고 있는 경향이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計劃과 開發의 기술 및 관련제도는 경험을 토대로 발전시켜야 하며 건축의 자유도, 또한 건축규제의 문제도 공공성을 전제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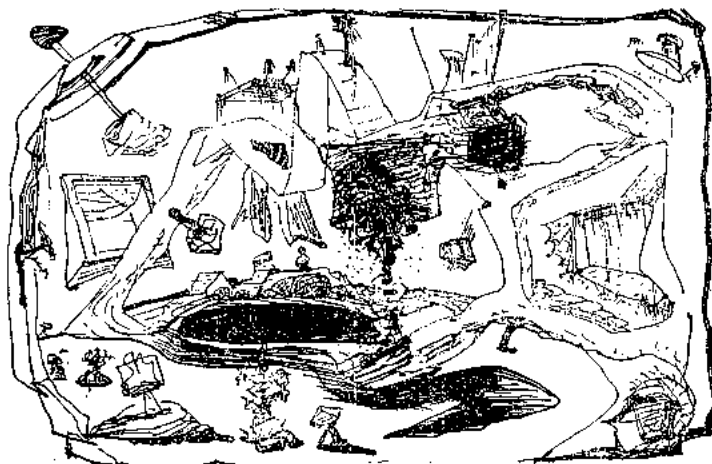
나는 공간적 형태를 디자인 했다. 그리고 화가인 듀상, 막스, 에른스트, 마타, 미로, 탄기와 조각가인 헤아, 마리아들을 초청하여 나의 플랜을 수행하도록 의뢰했다. 그들은 열성으로 협동했다. 나는 전체의 각 부분의 형식과 내용을 각기의 예술가들을 위해 계획했다. 오해는 전혀 없었다.

만일 全體性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잘못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엄격하게 나의 상호관계 계획에 따랐기 때문이다.

하나의 전문영역의 예술가 들에 의

해서가 아니고 건축가—화가—조각가와 시인(테마의 저자)의 그룹에 의하여 창조된 공동작품이 가령 실패로 끝난다고 할지라도 조형예술의 발전에 대해서 가장 자극적인 前途有望한 것이 될 것이다.

〈機能的 建築〉의 迷信인 衛生的 소비주의에 반대하여 나는 마술적 건축의 현실성을 주장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전체성에 뿌리가 박혀있는 것이며, 그 축복받는 부분이나 비난받는 부분에 뿌리내려 있는 것이 아니다.



魔術的 建築 / 후레데릭·키슬러 (Frederick Kiesler)

서울도심부 不良建築物과 再開發

朱 鍾 元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교수

THE BLIGHTED AREA AND URBAN RENEWAL IN THE CENTRAL PART OF SEOUL CITY

Chu, Chong Won —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Engineering

1. 不良度 判定方法

再開發地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物理的, 社會的, 經濟的인 諸要素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실제로 재개발지구를 선정할 때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대충지역의 경우에는 적절한 要素를 몇개 골라서 不良度를 調査하게 된다.

住宅地나 商業地에 따라 그 선정기준은 다르게 되며 일반적으로 이미 조사된 統計資料를 기초로 하여 불량도 판정기준의 요소를 고르는 것이 유리하며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직접 조사를 통해서 보충하게 된다.

不良度 判定方法은 罰點方法, 要素數方法, 절충방법 등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罰點方法은 몇개 요소를 택하여 나열하고 각 요소마다 최고별점을 정하여 그에 따라서 하나의 建物 혹은 그 街區의 평균적인 정도에 대한 별점을 주어 그 合計點數의 多少에 따라 불량도를 비교한다.

이 方法은 그 評價値가 평가자의 주관 및 경험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므로 평가하기 힘들고 다른 기준으로서의 변환은 처음 평가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다른 평가방법과의 비교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그 반면에 老朽度를 計量化함으로써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要素數方法은 그 지역에 알맞다고 생각되는 요소를 택하여 이들 요소 중 몇개가 해당되는가를 보아 不良等級을 나눈다.

투명한 地圖에 각 요소를 하나씩 그려 넣고 많이 겹치는 지역을 문제지역으로 삼는다.

각 요소마다 같은 비중을 주고 문제지역은 명확하게 지시해 준다.

정확하게 불량도를 추정할 수는 없으나 짧은 시일 안에 문제지역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절충方法은 그 지역에 적절한 요소를 몇개 택하고 그것에 해당하는 요소수로서 그 지역을 老朽度에 따라 몇개의 등급으로 나눈다.

이것에 기존의 토지이용도, 가로망, 鐵路, 기타의 물리적 환경을 검토하여 細部調査를 필요로 하는 지역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들 지역에 대해 별점방법을 적용하여 最終點으로 재개발지구를 설정한다.

이 방법은 세밀하게 老朽지역을 찾아낼 수 있으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 절충方法을 구체화한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이 경우에는 주거지역 분류 방법을 ①초기분석 ②세부분석 ③최종분석의 3단계로 나누고 있다.

※ 住居地域 分類方法 (美國)

I. 初期分析

- ① 住所 建물의 대부분이 35年 이상인 블럭(현장 조사에 의함)
 - ② 個人浴室이나 水道가 없거나 황폐하거나 1.51人 / Room 이상인 주택이 25% 이상인 블럭(U. S. CENSUS, BLOCK STATISTICS)
 - ③ 平均 住宅 임대료가 月\$40 이하이거나 주택의 평균가격이 \$4,000 이하인 블럭
 - ④ 주택의 30% 이상이 有色人에 의해 사용되어지는 블럭, 以上の 4 가지 要素에 의하여 3等級으로 나눈다.
- 4 가지 要素를 모두 포함하는 블럭 — 一級老朽지역
- 3 " " " " — 二級 "
- 2 " " " " — 三級 "

以上の 結果와 기존의 土地利用, 街路網, 鐵路, 기타의 物理的 環境을 고려하여 細部 調査지역을 設定한다.

II. 細部分析

住居要素와 環境要素로 나누어 각 블럭의 평균을 기준으로 罰點을 적용한다.

位 置: 블럭번호: 評 價 人: 날 짜:	罰 點	評價點
住居要素		
1. 構造物의 연령		
1900年 以前	12	
1901 - 1925	9	
1926 - 1940	5	
1941年 以後	0	
2. 構造物의 狀態		
철거 혹은 대폭수리가 필요	14	
소규모 수리 혹은 대폭유지 필요	9	
대폭유지가 필요	5	
결점이 없음	0	

3. 전폐율		
전폐율이 매우 높다(뜰이 매우 적다)	8	
앞뜰과 옆뜰이 없거나 적다.	5	
옆뜰이 없거나 적다.	4	
충분한 뜰이 있다.	0	
4. 住居 構造物의 用途변경		
1개 이상이 다른 용도로 쓰임.	6	
1개 이상이 공동세대 용도로 쓰임	3	
변경이 없음.	0	
住居點數 합 계 最大點數:	40	
評價點數:		
環境要素		
1. 非住居用 건물		
블럭內에 非住居 用途가 있음.	12	
블럭에 붙어서 非住居 用途가 있음.	9	
인근지역에 非住居 用途가 있음.	6	
非住居 用途에 의한 영향이 없음.	0	
2. 交通要素		
主幹선도로에 접하고 있음.	5	
교통량이 많거나 다른 지역의 駐車가 밀려 들어옴.	3	
가로망에 의해 커뮤니티의 요소로부터 격리됨.	1	
결점이 없음.	0	
3. 커뮤니티 시설의 적절성		
학교와 놀이터가 外部에 있다.	8	
학교 혹은 놀이터가 外部에 있다.	4	
적절한 시설을 갖고 있다.	0	
4. 설비의 적절성		
상하수도 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함.	8	
상수도 혹은 하수도 설비가 없다.	4	
적절한 설비가 있다.	0	
5. 街路의 상태		
車道와 人道가 포장 안되어 있음.	8	
車道가 포장 안돼 있고 人道는 한 쪽에만 있음.	4	
車道는 포장되어 있고 人道가 없다.	2	
적절한 상태에 있다.	0	
6. 地形 및 地質		
침수지역	5	
토양이나 地形이 不良	3	
결점이 없음.	0	
7. 住宅外部 상태		
먼지, 쓰레기가 쌓여 있다.	4	
뜰과 오픈 스페이스가 不良한 상태	2	
결점이 없다.	0	
合 計 最大點數:	50	
評價點數:		
住居要素에 대한 罰點	40	
環境要素에 대한 罰點	50	
住居要素와 環境要素의 총합계	90	

III. 最終分析

細部分析의 결과에서 유사한 점수의 블럭끼리 모아서 그 지역에 대한 평균블럭 점수를 얻는다. 지역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다음 기준을 일반적으로 적용한다.

罰點 19 이하: 安定(stable)

罰點 20~49: 保存(conservation)

罰點 50~59: 거의 老朽(near blight)

罰點 60 이상: 老朽(blight)

再開發 프로그램은 “老朽”로 분류된 지역에서 행해지며 일부 “거의 老朽”로 분류된 지역에서도 재개발 마스터 플랜에 따라 포함된다. 保存수단은 “거의 老朽”된 지역에서뿐 아니라 “保存”으로 분류된 지역에서 행해져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 都市再開發法 제 4조에 재개발지역의 지정은 건설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으로 재개발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① 그 지역 안의 土地面積(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다)의 $\frac{1}{2}$ 을 초과하는 부분이 最低高度地區이고 그 최저고도지구 안에 있는 총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frac{2}{3}$ 이상에 해당하는 建築物이 최저한도의 높이에 미달되어 미달되어 있을 때

② 방화지구로서 그 방화지구 안에 있는 총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frac{2}{3}$ 이상에 해당하는 建築物이 방화구조로 되어 있지 아니할 때

③ 그 구역 안의 건축물 중 耐火構造가 아닌 2층 이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지하층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그 구역 안에 있는 총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frac{2}{3}$ 를 초과하고 있을 때

④ 그 구역 안의 공공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建築基地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파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不良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⑤ 그 구역 안의 건축물이 老朽 또는 不良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價値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할 때

⑥ 그 구역 안에 인구, 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都市機能回復을 위하여 토지의 高度利用이 요청될 때 등으로 되어 있다.

한편 서울도심부의 現況을 분석하여 보면 토지이용면에서는

㉠ 筆地面積의 영세성(筆地當 平均面積 56.4坪이며 평균면적이 19.94坪이 되는 洞도 있음)

㉡ 도로의 제충적 배분 및 구조적 미비

㉢ 接近性이 곤란한 筆地가 많아 그 지역에 있어서 환경의 질의 저하초래

㉣ 불규칙한 筆地가 많아 토지이용의 효율의 저하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구조적인 면에서는

㉤ 建物狀態가 도심부 기능에 부적당하여 도심화재의 유발위험 및 도심미관의 저해

㉥ 건물배치의 무질서로 인하여 평균 전폐율의 저하에

도 불구하고 都心商街의 오픈스페이스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 도심부 주차시설의 절대량 부족과 그 배치의 연계성 결여, 공공주차시설의 절대량不足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할 때 서울都心部의 대부분을 재개발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다.

그런데 그 도심부의 토지면적이 2,786,853坪이고 總建築物 延床面積이 2,082,066坪이 되어 단기간 내에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시급한 곳, 시행하기 쉬운 곳, 효과가 크게 날 수 있는 지역을 먼저 할 수 있도록 優先順位를 定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再開發事業

都市에 있어서 空間構造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경제의 論理이므로 곧 도시공간은 경제공간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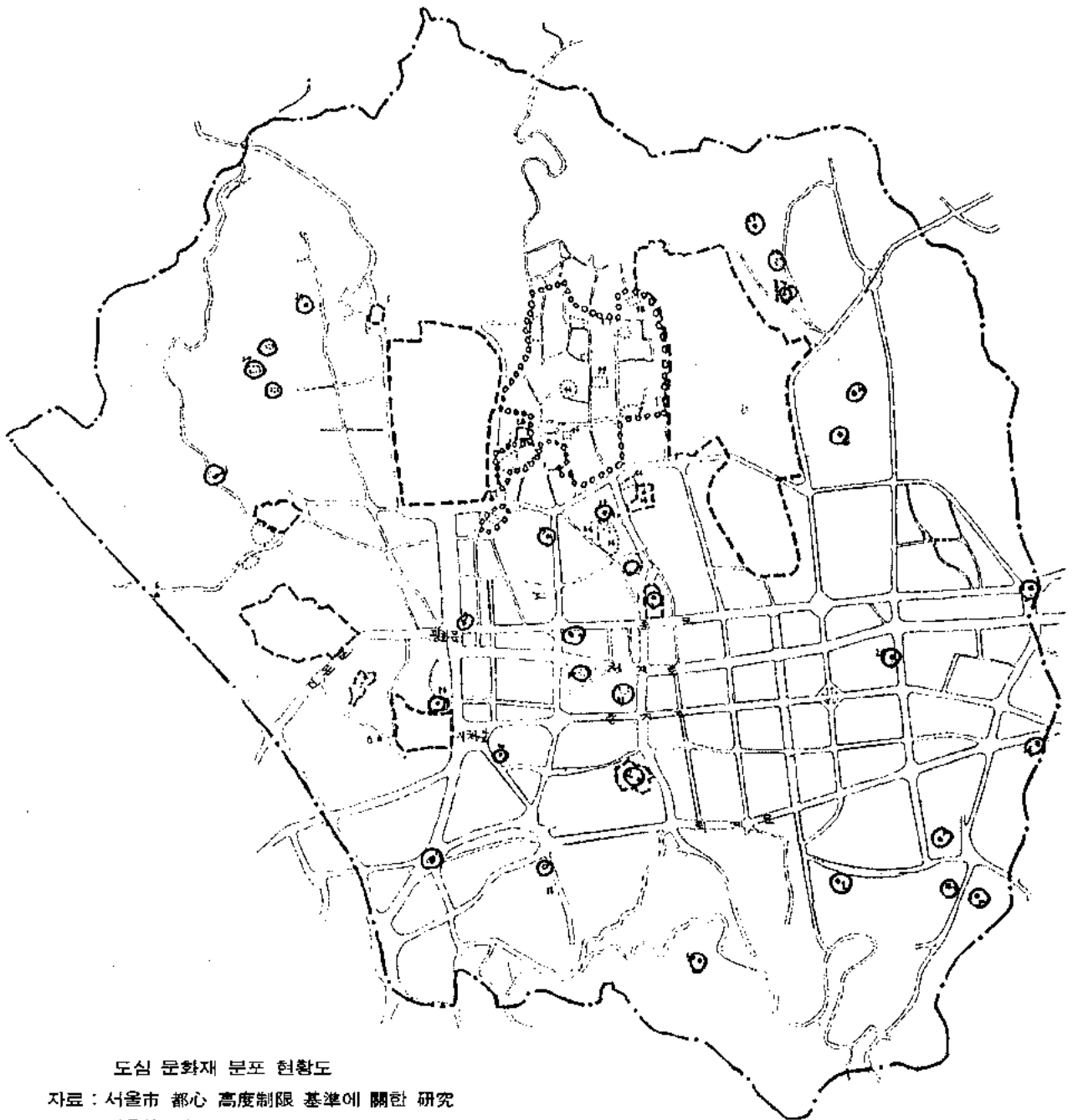
그러므로 도시공간에 있어서 아미니티(Amenity)가 결핍되기 쉽다.

① 文化遺産의 保護

도시를 재개발하는데 있어서 첫째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문화유산의 보호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서울도심지에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는데 재개발과정에서 그 가치가 손상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국보 제1호로 지정된 남대문 주변과 비원주변, 광화문



도심 문화재 분포 현황도

자료 : 서울시 都心 高度制限 基準에 關한 研究
서울特別市, 1981.

에 있는 비자 등을 고층화하려는 주변의 추세에 맞서서 여러차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하루빨리 이들 고귀한 문화재의 보호작업이 선행되어야겠고 도심부는 서울시의 산역사이고 박물관과 같은 역할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② 基本計劃 樹立

서울도심부 재개발구역을 지정하는데 있어서는 한 街區에 몇개의 구역으로 되어 있고 그 구역이 일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차에 걸쳐서 지정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

즉 한 街區內에서 동질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역지정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구역단위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불합리한 개발이 우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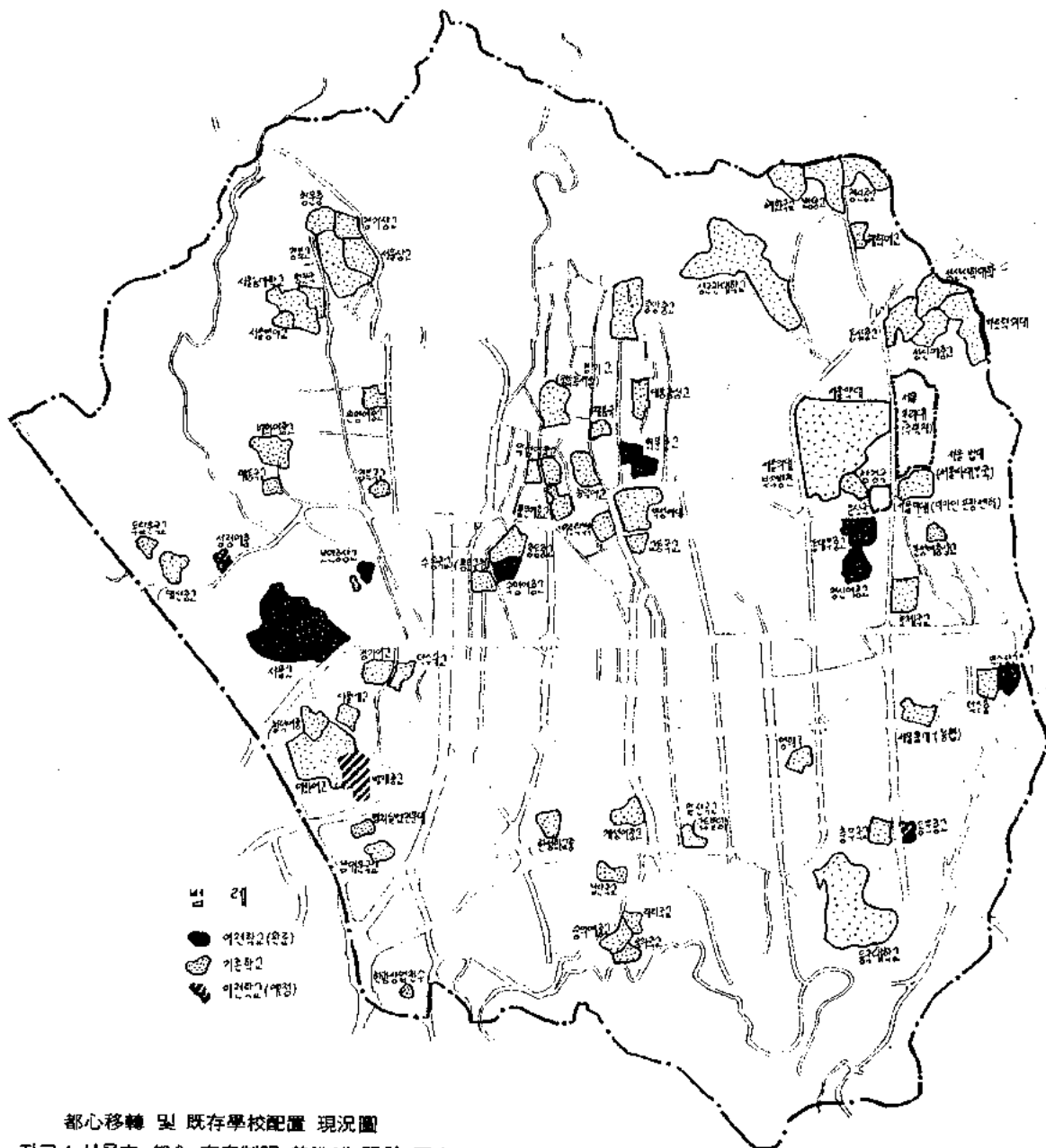
도심지재개발을 하는데 있어서는 도심지의 기본계획이 마련되어야겠고 街區別로 계획을 樹立하고 그 일부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문화유산도 보호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都市構造로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③ 이전적지이용

서울도심부 재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다른 곳으로 이전한 시설의 적지 특히 학교移轉적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바람직한 것은 도시의 아미니티(Amenity)를 높이기 위하여 공원이나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같은 문화시설을 建設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 적지를 재개발할 때 적지를 내포하고 있는 街區만의 계획이라도



都心移轉 및 既存學校配置 現況圖

자료 : 서울市 都心 高度制限 基準에 關한 研究.

서울特別市, 1981.

수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적지만을 고려하여 시행한 나머지 그 이웃과 어울리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都心部에는 많은 학교가 분포되어 있는데 住居기능이 도심부 밖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많은 학교의 이전이 예상된다.

이들 학교 이전적지를 잘 이용하면 바람직한 도시구조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이전적지를 대기업이 매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 아니라 우선 市當局이나 공공기관에서 매수하도록 하여 그 적지를 내포하고 있는 街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換地를 하면서 순차적으로 개발하면 연쇄적으로 재개발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④ 路線邊 開發보다는 街區單位 開發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도시개발을 시행하기 위하여 可觀圈에 속하는 부분부터 생각하기가 쉽다.

미관지구로 지정된 곳도 대부분의 경우 大路邊이 되고 있다. 시각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도시의 기능회복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外國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하여 大路邊만 아름답게 하고 뒷골목에 가면 너저분한 환경이 된다면 재개발의 의의를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路線邊 開發보다는 街區單位로 개발함으로써 表裏가 없는 기능적인 도시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⑤ 도심부에 주거기능 보존과 주거지역 중심으로 업무 및 상업기능의 誘致, 都市再開發 과정에서 도심부의 많은 주거기능이 업무 및 상업기능에 의하여 代替되고 있다.

그렇게 됨으로써 도심부의 晝夜間 人口의 차이가 심하게 되고 교통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즉 도심부에는 夜間人口가 거의 없어서 유령의 도시처럼 되는가 하면 낮에는 시설이용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 용량을 감당하기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심부를 재개발할 때 주거기능을 적절히 배치하여 시설이용에 불편없이 하고 교통문제도 완화되도록 하여 도심부에서 야간에도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그리고 업무 및 상업기능을 주거지역의 중심부 즉 區

廳이나 공공시설이 있어 核을 형성할 수 있는 곳에 유치함으로써 바람직한 도시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⑥ 再開發과 新開發의 병행

서울市에 산재한 공장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半月工業都市가 건설되고 있다. 自動車매매 및 부속품판매의 중심지를 장안평으로 옮기는 등 도심에 있지 않아도 되는 시설을 외곽으로 분산·설치하기 위한 신개발과 재개발사업을 긴밀하게 하여 환지나 기타 방법을 통하여 再開發事業을 보다 쉽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3. 結 論

서울은 1394년 이래 약 580여년간 수도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고도로 성장하고急變하는 기능적인 수요에 건물과 시설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8·15와 6·25라는 계기를 通하여서도 도시의 기본구조를 定立할 수 없었고 아직도 서울의 都市열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空地는 세분화되어 있고 건물은 조잡하여 재개발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는 實情이다.

이와 같은 여건하에서는 도심부의 기본계획 수립이 시급하며 그 基本計劃의 틀 안에서 재개발이 시행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再開發區域單位로 시행하면 모처럼 마련한 시설이 도시기능을 저해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86아세안게임, '88올림픽 등으로 국제적인 행사가 벌어질 서울은 表裏가 있어서는 안된다. 자금이 부족하면 資金이 充當할 수 있는 부분을 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벽면과 유리틀을 깨끗히 닦고 간판을 정리하는 등 돈이 들지 않고부지런하면 될 수 있는 것부터라도 먼저 착수하는 것이 좋겠다.

서울은 國際都市가 된지 오래고 지금도 많은 외국인이 서울 시내에서 활보하고 있다.

우리는 걸만 그럴싸하고 속이 빈 것보다는 깨끗하고 성실하며 알찬 우리의 정신력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이미지를 확고히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우리들은 結果를 평가하지 아니하며, 창조과정의 弊端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형태가 生에서 발견된 것이나, 혹은 그 自体를 위하여 發見된 것이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 建築에 있어서의 形態에 대해서 / Ludwig Mies van der Rohe (루트비히·미스·반·데·로에)

“理想的인 建築士憲章을 期待하며”

□生活信條로서의 憲章必要

人間은 누구나 그 時代 그 環境 속에서 항상 그때 그순간이 미숙하며 過渡期的이라는 생각을 갖게되고 또한 그렇게 여기곤 한다.

미숙하거나 과도기적인 개념이 곧 그시대 그 時間帶의 表像이고 그러한 순간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의 合成이 오늘 우리의 現實인 것이다.

오늘날을 생각해 볼 때, 내일의 복지사회,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過渡期的의 준비단계인 점을 감안할 때 나와 우리의 주변 환경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며 이를 어떻게 슬기롭고 참되게 오늘의 문제와 미완성의 사건들을 좀더 나은 理想的인 方向으로 指向할 것인가를 깊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建築法과 建築士法이 發効된 지도 벌써 20여년이 가까와지고 있어, 인간으로 치면 靑年期에 접어든 셈이다. 따라서 왕성한 情熱과 意慾, 폭넓은 지식과 전문적 武器의 비축이 必要하며 어떻게 未來指向을 할 것이며 또한 사회에 대한 奉仕와 國家나 愛國心에 대한 것은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곧바로 연상되는 것이 理想的인 建築士像을 위한 建築士憲章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바로 우리 建築士들의 生活指標요, 國家社會에 대한 우리의 生活信條이며 規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하루속히 建築士憲章을 성문화하기 위한 作業을 위해 관련人事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줄 안다.

물론 上法의 目的과 業務의 내용에是一部 明示가 되어 있으나 오늘의 時点에서 再確認하고 定立하여 精神의 指標로 삼고자 하는 뜻에서 憲章制

정의 必要性을 주장하는 것이다.

□새로운 추세에 앞장서야

韓國의 실정을 기술러올라가 생각해 보면 60년대 하반기에 움트기 시작한 工業化의 싹이 70년대 하반기까지 계속 성장하여 우리 歷史上 유례가 없는 급진적인 성장을 한 時期였으나 차츰 70년대 막바지 단계에서부터 8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國內뿐만 아니라 國際적인 경향은 脫産業化, 脫工業化의 時代로 접어드는 추세로 재정비되고 있는 실정이며 急成長보다는 內實을 기하고 정비·정돈을 하는 時期인 것이다.

쌓아온 經驗과 기술蓄積分을 情報기술로 정리비축하여 새로운 情報技術事業으로 轉換해야할 시기인 것이다.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 大型 建設會社가 엔지니어링化로 많은 特殊分野로 拡大海 가고 있는 實情으로 建築의 藝術性에까지 문제가 되기 쉬운 것이라고 筆者는 생각하며, 아울러 建築家라는 권위만을 가지고 안일하게 座視할 수 있는 時期는 이미 지나간 것 같으며, 우리 建築士가 確固不動한 자리를 굳힐 수 있는 길과 方案을 우리 스스로가 개척하기 위한 努力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筆者가 몇년전 外國여행에서 느낀 것 가운데 우리나라는 山水가 어느 나라 못지않게 수려하며 특히 서울의 경우는 都市를 둘러싼 산의 배경이 다른 나라 어느 都市에서도 볼 수 없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좋은 自然條件으로 산뿐만 아니라 漢江또한 전체의 조건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그러나 고가도로를 타거나 거리를

걸을 때는 차라리 먼 산을 바라보게 되며, 그러한 편이 훨씬 눈과 마음을 맑게 해주기 때문이다. 건축가의 책임을 항상 절감하면서 보이지 않는次元까지도 생각하고 신경을 써야 함에도 이 보이는次元의 創造者의 責任을 새삼스럽게 反省해 본다.

이제 88년도의 大祝祭를 대비하여, 外國의 경우 특히 프랑스의 세느江에서 夜間船遊 때 배에서 보이는 강변의 건물들과 늘어선 自然樹林, 그리고 열대여섯개나 되는 교량 측면의 물에 비친 造形 등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角度에서 새롭게 보이는 都市+自然의 美觀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現實을 생각하게 된다.

□使命感을 일깨우는 憲章

고층건물에서 내려다 본 건물의 屋上 풍경, 인적이 드문 골목길은 말할 수 없는 볼거움을 준다. 이제 우리는 모든 사물을 보는 눈이 2차적이고 3차적인데서 4차적이며 多次元的인 角度가 視野에 까지 온 현실을 알아야 한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소홀하게 넘길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건축은 보이지 않는次元보다 보이는次元, 보여주는次元, 보아서 느끼는次元, 보아서 머리 속에 오래 기억되는次元에 까지 유도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막중한 責任과 使命感으로 새로운次元에서 오늘을 슬기롭게 개척하고 참다운 建築士像 定立을 위한 憲章의 草案이 하루속히 成案되기를 기대한다.

(朴商浩)

公共「스페이스」의 바닥面 디자인

李 廷 德 — 高麗大學校工科大学建築工學科教授

FLOOR PATTERN DESIGN FOR PUBLIC SPACES

Lee, Jung Duk — Head, Department of Architecture KOREA University

1. 概 說

주택과 같이 오랜 역사를 통해 발전해 온 건축물에 있어서는 각 空間의 바닥재료와 바닥면의 意匠이 그동안 꾸준히 개량되어 왔다. 옛 전통주택에서 사용하던 방법이 그대로 남아오고 있는 온돌도 있으나 변소와 같이 사용기능이 格上되어 온 수세식 변소는 옛날의 맨흙바닥으로부터 이제 〈카펫〉으로까지 발전되었다. 이것은 그때그때의 生活樣式과 空間의 용도에 가장 잘맞는 바닥을 만들기 위해 그 시대의 기술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선택하여 온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주택에서의 바닥면의 새로운 개발은 거실이나 부엌과 같은 다른 室에서도 예를 볼 수가 있다.

이러한 私의空間에 비하여 많은 사람들이 共用하는 公共의 장소는 오늘날 사람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설계 (Optimum Design)로 공간의 바닥면 디자인을 하고 있는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주변의 건축물의 共用空間과 옥외의 步道나 보행광장 (Mall)은, 건립자의 의욕과 설계가의 관심 밖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곳이 아직도 많다.

우리는 3차원적 공간 속에서 자유로이 움직이며 산다고는 하지만 하나의 地點으로 움직여 가려면 어느 한 발자국도 바닥을 딛지 않고는 이동할 수 없다. 만일 이동하지 않는 동작이라고 해도 우리의 동작은 바닥면 위에서 행하여진다. 따라서 벽과 천정은 우선 무관하다고 하겠다.

이리하여 바닥면은 몇가지 중요한 특성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첫째로 바닥면은 안전해야 한다. 지나치게 미끄럽거나 표면의 凸凹이 없어야 한다.

둘째로 바닥면은 더딤촉감이 좋아야 한다. 바닥면으로부터 彈力과 接地力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세째로 바닥면은 즐거움을 주어야 한다. 건물에서는 실내 디자인 요소로서 옥외에서는 〈랜드스케이핑〉요소로서 아가자기한 시각적 對話가 생기도록 해야 한다.

2. 第 1 層 主出入空間

건축물의 주요공간의 장소는 1층 주출입구의 내·외부와 각종의 엘리베이터 홀·복도·계단실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공간들은 공간의 용도상 기능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바닥면이 갖추어야 하는 성질도 각각 다르다.

主出入口는 많은 사람이 출입할 뿐만 아니라 옥외공간과 인접하여 더러움과 습기와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됨으로 강인하고 청결하며 미끄럽지 않는 바닥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적당한 순으로 재료명을 적으면 다음과 같다.

- ① 대리석판
- ② 테라조판
- ③ 바닥용 타일
- ④ 화강석 물갈기
- ⑤ 인조석 깔기

대리석판은 우리나라에서도 신출되지만 西歐의 전통깊은 재료로서 현대건축에서도 가장 많이 바닥재로 사용하고 있다. 내마모성이 다소 적으나 미관이 좋고 특히 발의 接地力을 높여주어 걸을 때 상쾌하고 안정감을 준다. 테라조와 화강석 물갈기는 견고한 재료로서 板面の 粒子紋樣과 색채가 아름답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견고한 표면감각을 느끼게 하며 구둣발에서 接地力이 약해 미끄러운 점이 나쁘다.

최근에 건축된 고급 대형건물의 1층 홀에 고급 테라조나 화강석 물갈기로 바닥을 구성하여 놓고 그 위에 다시 울퉁불퉁한 시트 (Rugged Sheet)를 통로로서 깔아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바닥재가 앞에서 말한 안전성과 쾌적성을 주지못해 보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화강석은 석영·장석·운모의 입자로 구성되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풍화와 마찰 등으로 더러움을 잘 타게 되는 결점이 있다.

건물의 주출입구 내부와 외부는 전혀 다른 환경조건을 가짐으로 바닥의 설계도 달리 하여야 한다. 앞에서 말한 내부용 재료는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외부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주출입구 앞의 〈플랫폼 톱〉에는 화강석도 드라카들이나 자연석 깔기와 같이 내오염성이 높고 내충격성이며 겨울에 미끄럽지 않는 재료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옥외의 인조석 깔기가 적절하지 못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최근의 고급건축에서 화강석 물갈기나 테라조를 옥외에 사용하고 있으나 이것은 일본과 같이 겨울이 짧은 온대지방에 맞는 디테일이라 하겠다.

〈표 1〉 板石깔기 2형식의 성격

$\begin{array}{ c c } \hline c & d \\ \hline a & b \\ \hline \end{array}$ <A> $\begin{array}{ c c } \hline b & c \\ \hline & a \\ \hline \end{array}$ 		
돌 맞춰놓기	難	易
직선출발선	새로 및 가로 방향 모두 필요	가로방향만 필요
돌크기	同一	自由
視覺	靜的 (方向性 없음)	動的 (方向性 있음)

板石을 까는 형식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표에서는 두 형식의 성격을 비교하였는데 A형식보다 B형식이 월등하게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B형식을 基調로 한 여러가지 디자인을 창안해 나가야 하겠다.

A형식은 시공할 때 a·b·c·d의 4개 部品の 위를 동시에 맞추어야 함으로 어려운 것임에 비해 B형식에서는 a부품을 설치하면 그 a의 上端部에 의지하여 b와 c부품을 맞대어놓으면 된다. 또한 A형식에서는 가로줄눈과 세로줄눈이 각각 계속하여 일직선이 되도록 시공해야 하는데 비해 B형식에서는 오직 가로줄눈만을 직선으로 맞추면 된다. 시공 후, A형식의 줄눈은 조그마한 오차도 눈에 거슬리는데 비해 B형식은 그렇지 않으며 특히 세로 줄눈은 한꺼번에 나타남으로 직선적으로 일치하지 않아도 나쁘지 않다. B형식은 시공 후 보기에든 자연스러우며 따라서 後述하는 바와 같이 서구에서는 현대건축에서도 변함없이 이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3. 基準層 共用空間

기준층의 복도와 엘리베이터 홀, 그리고 계단실에는 가벼운 합성수지제의 고급 시트나 타일, 또는 인조석 깔기로 하는 것이 무난하다. 물론 호텔과 같은 1급 건축에서는 카펫이 적격이다. 요즘은 시판되는 합성수지제 재료는 그 색채와 문양이 이미 정해져서 건축적 디자인의 여지가 없으나 조석 깔기에서는 黃銅줄눈의 배치에 따른 바닥면의 구성적 디자인을 할 수 있고, 種石과 白시멘트의 여러가 配合比에 따른 각종 색채와 표면질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예를 들면 복도와 같은 動的空間에서는 靜的인 格子形式을 피하고 그림 1에서 예를 든 것과 같이 사람이 움직이는 방향에 어울리는 줄눈의 패턴 디자인을 하면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은 動的패턴은 계단참·엘리베이터 홀과 같은 공용공간 외에도 단일방향의 방향성이 있는 공간, 예를 들면 강당·극장과 같은 곳이나 또는 공간의 성격이 다이내믹한 볼룸·식당과 같은 곳에서도 활용될만 하다고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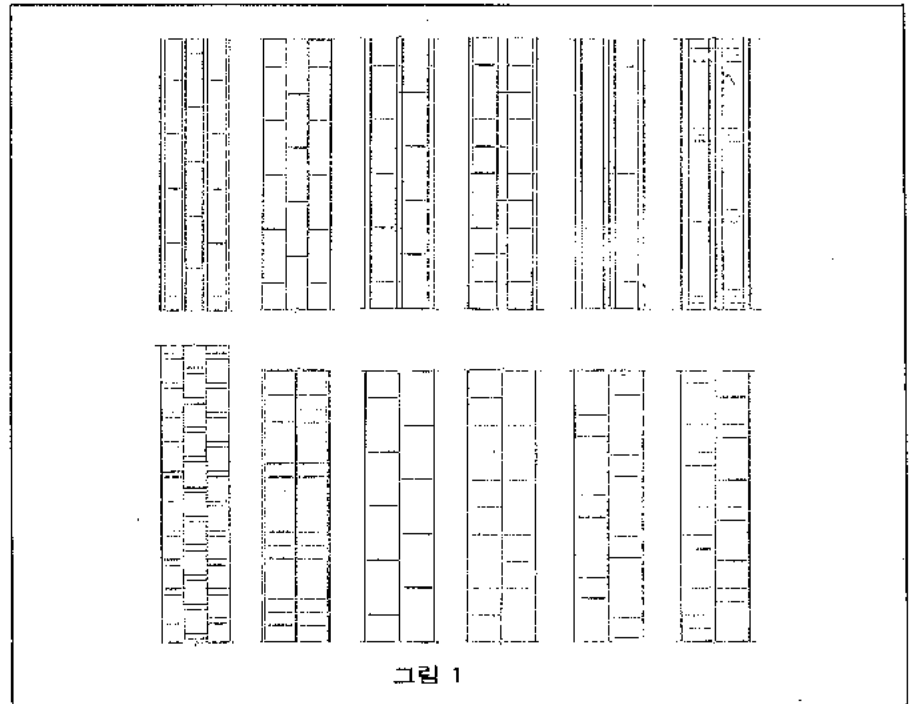


그림 1

각된다.

계단과 계단참의 바닥은 가장 안전성이 높게 설계되어야 한다. 일반 상용계단은 대리석·바닥용 타일*·인조석 깔기가 가장 적당하며 테라조板과 화강석 물갈기는 보기에는 좋으나 불안정하여 카펫과 같은 補助的 재료물 함께 써야 좋다.

피난계단의 바닥으로는 비닐타일과 인조석 깔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常用階段으로서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직 피난 목적기능에 맞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외국에서 보면 시멘트 모르타르 거친마감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공사비의 적절한 절감의 의의도 갖는다.

* 최근에는 이러한 용도의 原型타일이 나오고 있음.

4. 步 道

건물 밖의 외부공간은 넓고 多方向的이다. 따라서 사람이 어떤 목적지(Terminus)로 향해 갈 때 항상 진행하는 방향과 현재의 위치를 인식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제한된 境内空間에서나 큰 都市空間에서나 마찬가지이다. 방향을 알려주는 軸과 위치를 알려주는 節(Knot)의 기능이 항상 고려된다. (그림 2 참조)

도시에서는 광장·도시기념탑과 같은 랜드마크(Landmark)가 軸上에서

節을 이룬다. 古典의 예로 伽藍에서는 軸方向의 거리를 3등분법·5등분법 등에 의해 節을 두고 그 節點에 金堂과 塔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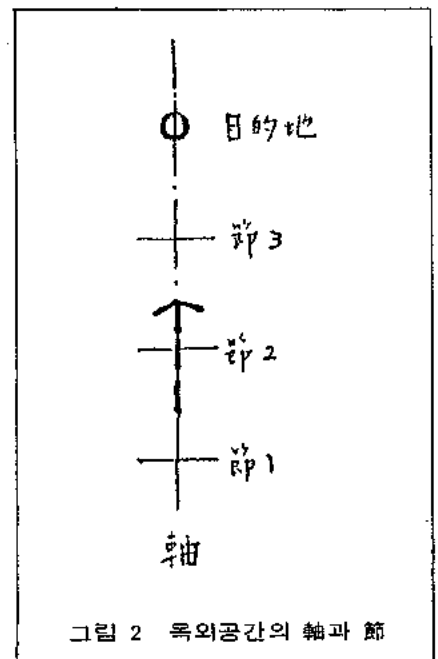


그림 2 옥외공간의 軸과 節

외국 도시의 예를 보면 주요광장과 기념탑이 等距離 또는 整數倍의 거리를 두고 축상에 놓여 있어 정리감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예로 파리의 Louvre미술관·Concorde 광장·Champs Elysées 광장·개선문 등은 La défence로 이어지는 1개 軸上에서 서로 1.2km씩의 거리를 두고 놓여 있으며, 와싱턴의 大記念塔은 이 도시의 가장 중심적 축상에서 서쪽의 링컨記念館으로부터는 1.2km, 동쪽의 국

회의사당으로부터는 2.4km의 거리를 두고 놓여 있다.

이러한 도시적 계획수법은 각 街區의 분할에서, 또는 가로수나 가로등과 같은 도시시설의 배열에서, 그리고 보도의 바닥면 텍스처 디자인에서까지 활용되고 있다. 이를테면 바닥의 줄눈은 사람의 진행방향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되어 있어 평행줄눈은 진행 방향에로의 <가이드 라인> (Guide Line)이 되고 가로줄눈은 節點의 리듬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보도블록을 斜線方向으로 깔고 있다. 이것과 사람의 진행방향과의 관계를 그린 것이 그림 3의 A이다. 같은 보도블록을 진행방향에 평행 및 직각이 되게 배열한다면 그림의 B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람의 이동과 바닥 텍스처가 잘 조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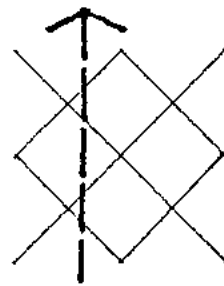
줄눈들은 <가이드>와 <리듬>을 갖게 된다.

이것을 좀더 意匠적으로 발전시키면 그림 4의 C와 같이 자연스러운 텍스처가 된다. 이 C형식을 다시 더욱 발전시키는 방법으로서 두가지 이상의 다른 크기의 블록으로 혼합시키는 방법과 C형식에서의 各四角形모듈 (Module) 범위에서 기하학적인 타일 디자인을 하는 방법이 있다. (예: 그림 7 및 그림 8 참조)

그림 4에서 A형식의 경우는 부품이 正方形과 三角形의 部品組로 구성되는데 이 경우 그림 5의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각형의 銳角부분이 충격이나 陳傷으로 깨어지기 쉽다. 따라서 그림 5의 B와 같은 組로 구성되는 형식(그림 4의 C형식)이 내구성이 있어서 더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의 B형식도 부품의 형태로 본 내구성은 좋으나 블록갈기의 형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상 4개의 블록이 한점(줄눈의 교차점)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시공이 어려울뿐더러 표면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충격이나 동결에 의한 위치변경에 저항력이 약해져 결과적으로 C형식보다 내구성이 적어지게 된다.

근본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溝板보도블록은 도시개발을 완전히 끝낸 곳에서는 부적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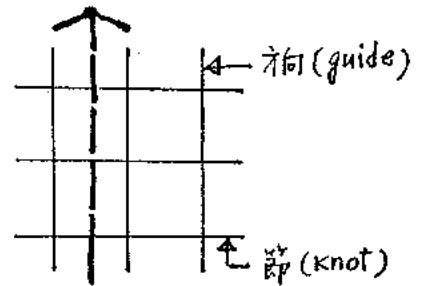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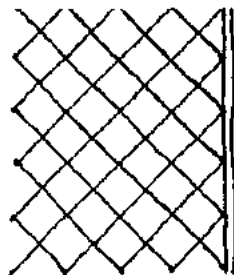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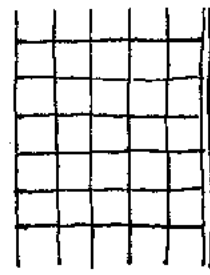


그림 3 바닥줄눈과 사람의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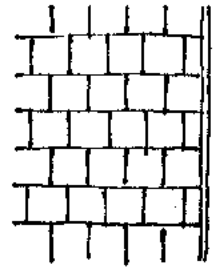
A

<기능> 나쁨
<시공성> 어려움
<내구성> 나쁨



B

좋음
보통
좋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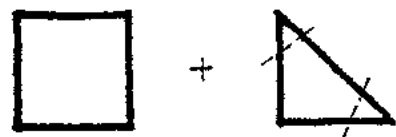


C

인간적
취향
더 좋음

그림 4 正方形블록갈기 형식 비교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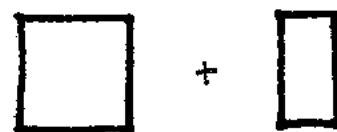


그림 5 部品組 두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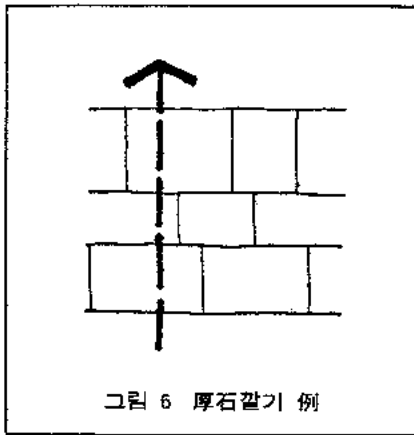


그림 6 厚石 깔기 例

격한 것이다. 이 블록은 값이 싸고, 줄눈으로 빗물排水가 되고 또한 손쉽게 취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지하매설물의 관리에 편리한점이 있으나 공동溝 등에 의해 下部시설이 완결된 곳에서는 보다 능률적이고 영구적인 재료로 대체해가야 할 것이다.

외국의 전통있는 大都市의 예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런던이나 파리와 같이 연륜깊은 완성된 도시에서는 두터운 硬石(Hard

Stone)을 그림 6과 같이 깔고 있다. 진행방향의 가로로 통줄눈을 두고 정연하게 大小의 직사각형 돌을 섞어 깔고 있어 극히 자연스러운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원래 돌을 素材로 하는 구조에서는 돌의 크기를 같게 한다는 것은 재료의 손실과 시간의 소모를 가져올뿐 아니라 意匠上으로도 단순반복성의 부자연스러운 감각을 느끼게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변화성 반복형식은 利點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에서는 厚石 깔기를 하면서 줄눈을 두께를 극소화시켜서 여성의 靴굽구두조차 편히 걸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고급건축물 근처 이외의 대부분의 보도는 콘크리트 현장붓기 시공으로서 줄눈이 없어 보행장애물은 없으나 자연재에서 느낄 수 있는 친밀감이 없으며 地表水도 곧 배수되지 않아서 비가 오면 물이 늦게 마른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의 경우는 퍼 인상적이다. 멕시코의 일반전

속도 특유의 創作慾과 造形愛를 나타내고 있지만 街區別 또는 동리별로 각양각색의 독특한 형태의 厚型블록을 깔아놓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어느 형식에서든지 블록제작의 기본 원칙을 잘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즉 첫째로, 블록은 어느 것이나 銳角部가 없으며, $90^{\circ} \cdot 120^{\circ} \cdot 135^{\circ}$ 의 〈도〉를 가진 각종의 기하학적 형태를 창안하고 있다. 둘째로 블록 표면은 견고하나 미끄럽지 않다. 세째로 표면착색에 의한 색채계획이 아니고 완전히 색을 넣은 콘크리트로 제작되어 있다.

이와 같은 예는 전부 도심지의 보도의 예이지만 각 나라의 공원이나 기념적 광장에 가면 우리나라 비원의 순환로에 시공된 것과 같이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백토 석인 강회다짐의 自然土質道路로 되어 있다. 이것이야말로 으뜸가는 기능을 갖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厚型보도블록의 디자인 試案(그림 7~9)과 옥외 플랫폼 품의 자연석 및 벽돌갈기의 대표적인 것(그림 10~12)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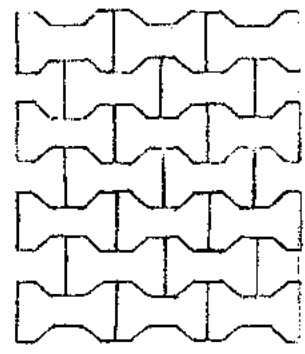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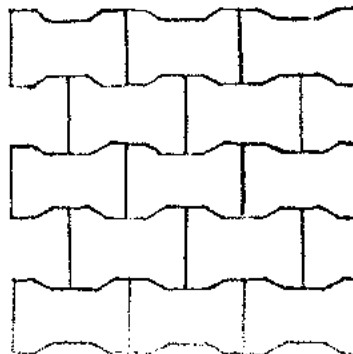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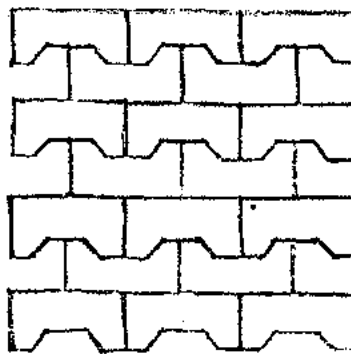


그림 7 보도블록 試案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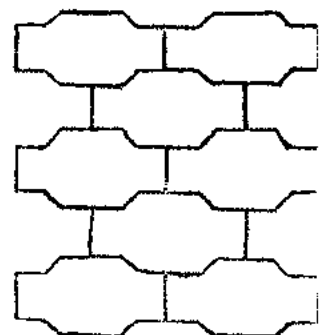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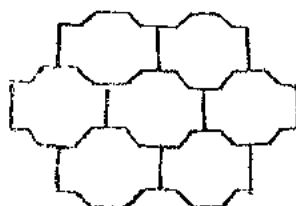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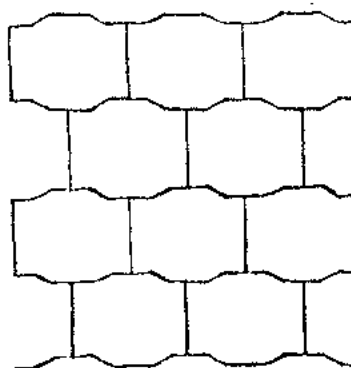


그림 8 보도블록 試案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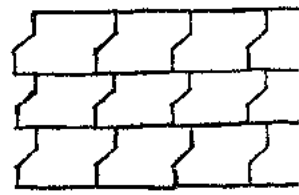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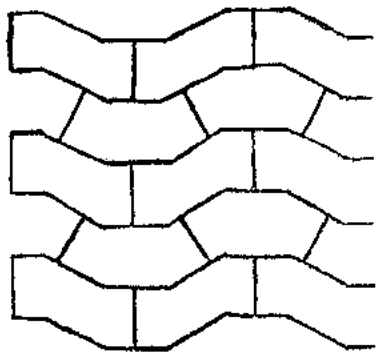


그림 9 모도블록 試案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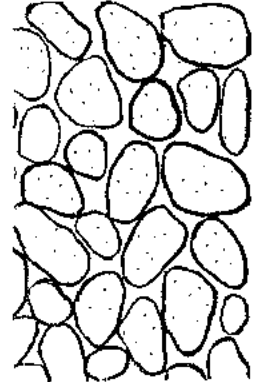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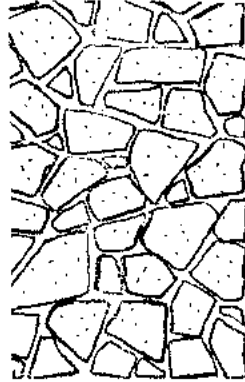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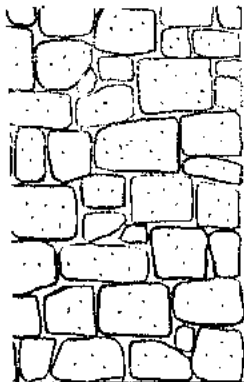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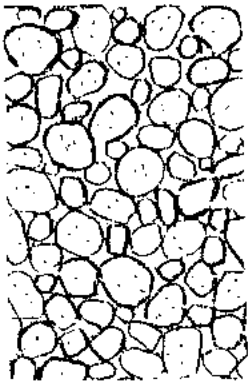


그림 10 자연석 깔기 例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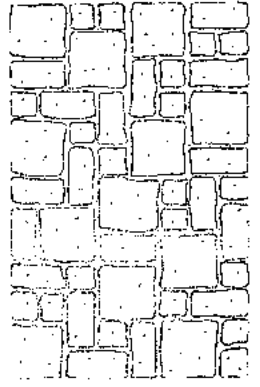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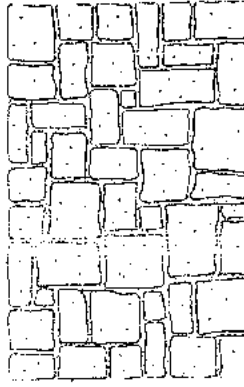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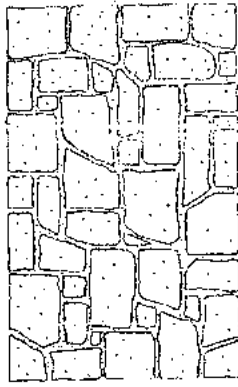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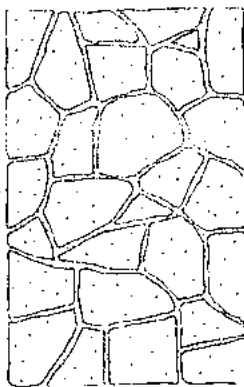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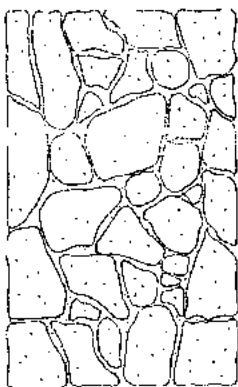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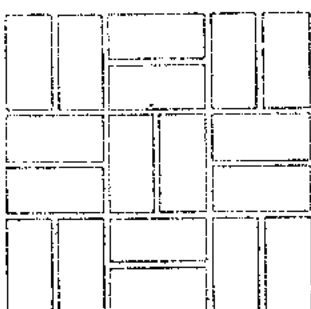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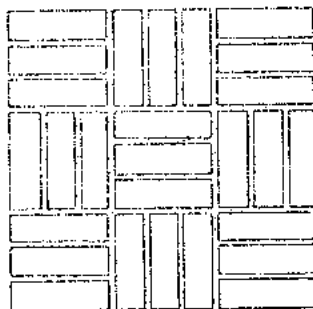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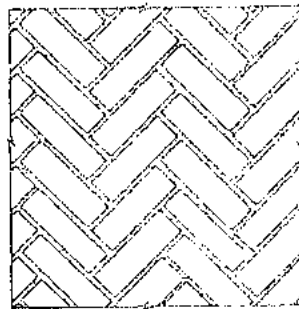
그림 11 자연석 깔기 例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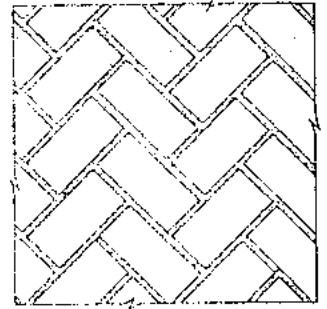
a. 엮어깔기



b. 옆세워깔기



c. 옆세워 빗깔기



d. 엮어 빗깔기

그림 12 벽돌 깔기 例

自然型太陽熱住宅의 當面課題와 그 對策

李 明 浩 — 中央大學校 工科學長

A PRESENT SUBJECT AND A COUNTER-MEASURE OF PASSIVE SOLAR HOUSE

Lee, Myong Ho — Dean of Engineering College Chung-Ang University

1. 序 言

1970년대 脫石油政策이 대두되면서 太陽熱住宅이 문자 그대로 태양과 같이 작광받는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보급이 부진한 것 같다.

「태양열주택은 과연 가능하며 또한 실용성이 있는가?」라는 궁금증을 풀기 위한 노력은 미국·프랑스·일본 등을 위시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역사 이래 에너지문제는 住居樣式이나 住居建築에 매우 큰 영향을 주어온 것은 사실이다.

즉 乾草, 나무, 연탄, 기름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로를 거치는 동안 建築構造, 住居形態 및 熱管理方法 등이 동시에 변화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태양 에너지가 새로운 暖房資源으로 등장함에 따라 一連의 새로운 건축수법이 요구됨으로써 건축가들의 임무가 한가지 더 추가되었고 열관리비 지출에 과민한 일반국민은 이에 대한 지식을 터득하려고 애쓰고 있으며 정책기관에서도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부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태양열주택의 보급이 부진하였고, 거기에 대한 불안과 불신요인이 있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가를 생각해 볼 때가 온 것 같다.

상식적으로 태양 에너지는

① 永久資源이며 풍부하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폐기물이나 매연이 없는 깨끗한 에너지로서 환경의 보존이 가능하다.

③ 취급이 편리하고 화재 등의 위험 부담이 全無하다

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으며 한편 다음과 같은 불안과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① 과연 經濟性은 얼마나 되는가, 즉 투자만큼의 暖房費가 절감되는가?

② 기술의 信賴性은 얼마나 있는가.

③ 外觀上 친밀감을 느낄 수 있고 또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는 주거디자인이 가능한가

등으로 집약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와서 設備型(Active System)에 대한 懷疑가 대두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관련 정책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는 주택에 관한 한 자연형(passive System) 태양열주택의 개발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게 됨 되었다.

그러면 자연방식의 開發背景과 開發價値는 어디에 있으며 기술적 접근 방법의 주요점은 무엇이고 그 확대 보급방향을 어떻게 취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概觀하기로 한다.

2. 自然型方式의 開發背景

둘러쳐 보면 대수로 미국·프랑스 등지에서 1973~1976년 기간을 건물 난방에서의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의 세계적 한계성에 대비하여 실비형 쪽에 무한한 관심과 기대를 갖고 연구개발을 지원함에 따라 中小規模의 太陽熱

産業體(Solar Industry)를 출현시키는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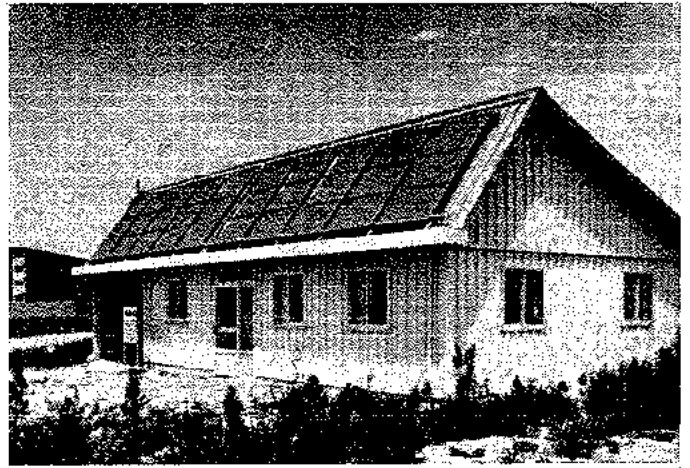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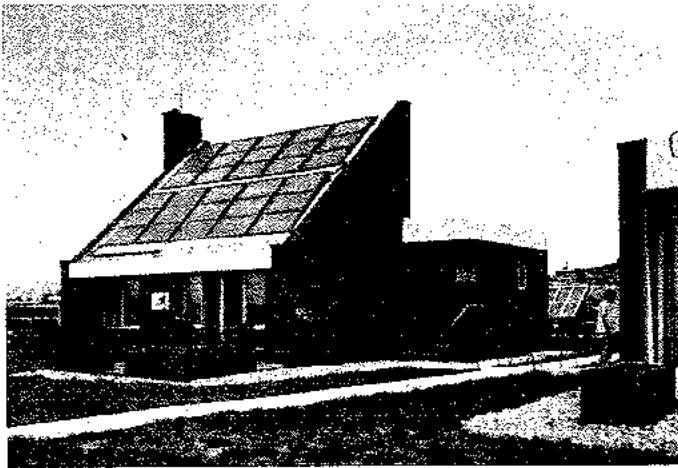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당초에는 設備型住宅에 대해서만 주택건설자금을 융자하였던 것과 같이 선진 제국에서도 실비형의 건설에만 치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自然型의 연구개발이나 보급이 억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비록 소규모이긴 하나 열의와 신념에 찬 소수의 研究그룹들이 세계 곳곳에서 자연형의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부단한 모임을 갖는 동안 7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各國의 에너지政策當局을 위시하여 건축가그룹, 일반대중, 대체에너지그룹, 생태학자들의 호응을 얻게 되었고 결국 75~77년에는 곳곳에 실험용 건물이 建設되었던 것이다.

그 후 이들 실험용 건물들은 計量分析的方法和 物理的 直觀的方法에 입각하여 각각 독자적으로 시험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76~79년 사이에는 대부분의 시험보고서나 정책이 자연형의 개발가치로 높이 평가되기에 이르렀고, 미국의 주택 도시성과 에너지廳은「自然型暖房+設備型給湯」의 주택 건설을 강조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그 후에 이러한 자연형 난방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요인들이 일본에서 나타났고 우리나라에서도 動力資源研究所가 大德에 독립주택 1個棟, 住公果川住居團地에 연립주택 3個棟(大林産業, 國際綜合建設, 曉星建設이 각각 1個棟씩 設計 施工)의 실험주택



을 건설하고 관련 정밀DATA를 기록, 수집 중에 있다.

住公果川團地の 실험주택에 대한 성능평가는 실험식을 적용하여 韓國太陽에너지學會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어 2~3년 후에는 이론과 실제의 차이점을 추출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設計接近方法, 施工技術 및 調整裝置 등에 대한 정확한 지표를 제시할 수 있으리라 믿어진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개발초기이니만큼 지역기후 특성에 부응되는 여러가지 유형의 실험주택을 전국 곳곳에 건설하여 주택으로서의 기능이나 성능을 평가, 검토 보완하여 초기단계에서부터 시행착오가 없도록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3. 自然型方式의 主要接近方法

自然型方式의 설계 및 技術의接近은 우선 자연형방식의 원리와 특징을 충분히 반영하되 어디까지나 주택으로서의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先決問題이다.

또한 서구적인 모방을 탈피하고 한국적생활양식과 주거형태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최소한 해결하고 살릴 수 있을 때 일반 국민들에게 자연형주택을 보급, 권장할 수 있으며 또한 건축가가 직면하는 당면과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① 建築計劃의接近

自然型方式에는 5가지의 기본원리가 있으나 그 가운데 어느 한가지만

採用하는 것보다는 建設立地, 氣候特性이나 空間構成에 따라 몇가지의 원리를 組合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으며 寒冷地인 경우에는 자연형과 설비형을 혼합하는 방식 (Hybrid)도 효과적이다.

예컨대 서울과 같은 기후권(南面集熱유리)을 통과하는 일사량이 60~80 Kcal/Degree Day. 月. m²)에서는 거실과 같이 개방감이 요구되는 부분은 附屬太陽室 (Attached Sun Space)과 直接式을 組合하고 침실과 같이 야간 이용도가 높은 공간에는 蓄熱壁式과 直接式을 組合하는 방식을 採用하여야 한다.

자연형방식은 열에너지를 자연적방법으로 취득, 공급되는 것이므로 집열장치, 축열장치, 輻射장치, 熱媒体の 流動調整裝置 그리고 단열보온장치 등을 통합해서 건축적 방법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특징인데 그렇다고 하여 난방부하가 열취득량과 相殺되게 집열규모를 취하는 것은 실제에 있어서 경제성으로나 건축형태상 난점이 따른다. 그러므로 通常 연간 50~70%의 태양열 이용율을 목표로하여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Trombe Wall이나 Water Wall방식인 경우 집열부분인 남측면이 폐쇄되는 단점이 따르므로 지역여건에 따라서 건물남측면의 폐쇄부분과 개방부분에 대한 適正面比의 산정이 중요하다.

② 經濟的最適規模의 設計

동일한 태양열 이용율을 갖게 되는 경우라도 태양열장치의 工費와 斷熱工事費의 합산액이 최저가격이 될 수 있도록 단열규모와 태양열장치 규모의 배합비율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자연형방식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적합한 규모를 추출하는 것은 최소의 투자로서 보조난방장치의 규모가 극소화 되도록 태양열장치 및 단열에 소요되는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다.

자연방식에서는 막연하게 斷熱性能을 크게 취한다든가 저성능의 단열 상태에서 태양열장치 규모만 크게 취한다고 해서 태양열 이용율이 좋아지고 경제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 경제적 최적규모의 산정에는 태양열전열비 (Load Collector Ratio)가 중요한 因子로 되며 최근에 연구된 산정식에 따라 건물의 적정열손실계수, 각 부위의 적정면적규모 등을 쉽게 결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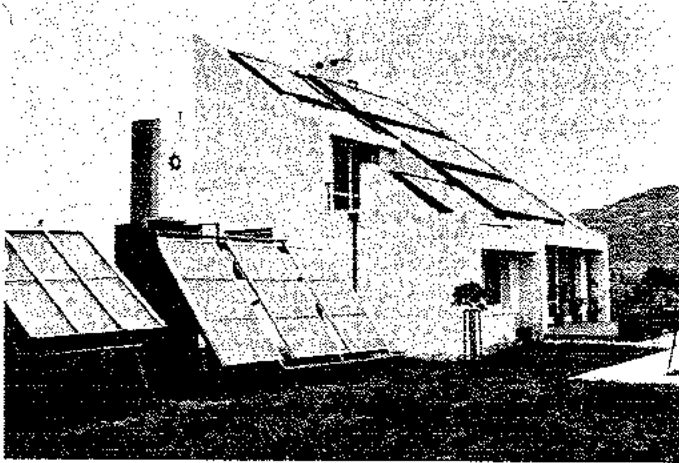
설계과정에서는 특히 이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建設費의 低廉化

자연형주택은 일반공법에 준하는 것이고 태양열장치 자체는 건축물의 Element로 취급되는 것이므로 일반건축재료인 유리, 벽돌, 콘크리트, 단열재 등의 熱的特性을 살리면서 공법상 단순화를 기하고 건설비를 낮출 수 있는 건설방식이 강구되어야 한다.

④ 室内熱環境의 快適性確保

자연형난방방식은 대형輻射 파넬에 의한 저온도난방방식이므로 주택내 각



부분에 균등한 속도로 均質하게 自然 對流를 促進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내공기의 積層, 停滯部分이나 冷橋部位를 배제하고 自然通風經路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입지여건에 따라 建物方位 開口部 및 채양 등의 적절한 처리로 여름철의 과열현상과 통풍장애를 방지하고 또 한편으로는 겨울철의 晝間集熱과 夜間蓄熱로서 건물전체의 열용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1일 실내온도 변화폭을 극소화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⑤ 住生活의 便利性和 美觀

태양열을 이용한다고 해서 주거기능이나 위생에 있어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겠으며 외관상으로도 미관에 저해되는 요인이 따라서서는 안 될 것이다.

집열벽의 색채, 집열유리의 형상, 돌출채양, 단열선택, Clerestory 등 Solar Element를 미적요소로 하여 적절하게 변화를 주고 조화시키면 미관상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디자인이 가능하다.

즉 집열유리는 반사성이 적은 색유리로 하고 집열창의 울거미재료를 기하학적으로 構圖함과 동시에 집열벽의 표면을 그래픽하게 채색한다면 현대적이고 신선한 맛을 느끼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법으로 접근한다면 설비형주택과는 별개의 패턴으로서 住居形態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

이다.

4. 擴大普及을 위한 建議과 對策

전술한 바와 같이 자연형주택은 열기구가 극히 단순할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가 간편하며 초기 투자도 설비형에 비해서 적게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급이 부진한 것은 아직 우리나라에 정착될 수 있는 적절한 모델의 개발이 뚜렷하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겠지만 정책적인 문제들 위시하여 설계, 시공 기술 및 홍보면에서도 그 원인이 있겠다고 볼 수 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원리적으로 광범위한 기초연구와 설계기술이 정립되기에 앞서 설비형만큼 보급, 장려하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태양열주택에 대한 국민의 호응을 얻는데 적지않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최근에 와서 자연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설계시공에 있어서 주택본연의 기능과 미관, 태양열기구 및 경제성 등이 균형있게 組識된다면 우리나라 기상조건이나 외국에서의 성공사례로 보아 자연형의 보급효과는 多大한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태양열주택의 適否는 일차적으로 입지조건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설계에 응용될 수 있는 열경계지도를 작성, 배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입지조건상의 주요점은 지형, 방위, 主風向이다. 지형은 南面傾斜地가 日射受熱, 北風防止, 남북간 隣棟거리의 단축이라는 관점에서 태양열주거용지로서의 개발 가치가 크며 입면계획에 있어서도 Skip Floor형을 취하면 건물의 對南向壁面積의 확보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건물의 보온성능도 높일 수가 있다.

따라서 방위각 30° 이내의 東南·西南 傾斜地는 행정 기술지도와 같은 방법으로 태양열주택지로 개발할 것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연형주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축열벽이나 부속태양실의 구성재는 채색시공법인 경우 정밀성의 결여로 소기의 성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구성재는 가급적이면 공장생산물로 제작하여 보급할 필요가 크며 단열성능을 고려한다면 外壁만이라도 PC 단열벽판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蓄熱材, 可動斷熱膜, 反射板, 換氣裝置 등 자재 및 조정장치의 개발도 시급한 과제의 하나이다.

결론적으로 太陽熱住宅의 개발과 보급문제는 어느 특정기관이나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단기일에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며 어디까지나 정책부서, 연구기관, 건축가 그리고 시공업체 등이 산업협동체제로 공동의 노력을 傾注하고 사회적 수용폭을 넓혀 나간다면 점진적으로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連載

韓國建築 概説〔Ⅱ〕

張 起 仁 (삼성건축)

SUMMARY OF KOREAN ARCHITECTURE

Chang, Ki In—Sam Sung Architects & Engineers

2. 벽체와 처마

① 벽체

한국 목조건물의 벽체는 기둥에 상중하인방을 건너 지르고, 거기에 새로 가로 중깃과 외를 엮어대고 안팎에서 찰흙을 바르고 매질 또는 회반죽바름을 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기 때문에 벽체에 비가 들이치면 벽흙이 씻기어 떨어지거나 붕괴되기 쉽다.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벽돌·돌쌓기 등의 우수(雨水)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쓰면 되겠지만 그를 접착하여 쌓는 재료가 진흙이라면 이 또한 붕괴될 우려가 있고 대개의 경우 고가로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처마추리(처마가 내민 부분)를 길게 내어 비를 맞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동양 건축에서 처마를 길게 내미는 기본적 사항이라 할 수 있고, 또 개구부인 창이나 문도 채광상 창호지를 바르기 때문에 이것도 처마를 길게 내어 비맞지 않게 하는 것이 상책이라 할 수 있다.

② 처마추리

처마(檐下, 檐牙)의 끝을 처마기슭이라 하며, 현장에서는 처마추리라고도 한다. 처마를 길게 내미는 방법으로는 다음 4가지 방법을 쓰고 있다.

(ㄱ) 처마서까래 (드러세연, 檐牙椽)를 길게 내민다.

(ㄴ) 부연(付椽)을 단다.

(ㄷ) 출목도리를 건다.

(ㄹ) 나비가 넓은 채양(遮陽)을 단다.

위와 같이 4가지 방법이 있더라도 서까래 굵기에 따라 처마 깊이는 한도가 있겠고, 따라서 출목도리(出目道理)를 거는 법이 가장 유리하다.

③ 처마서까래

처마 끝에 부연을 달지 아니하고, 처마서까래만을 걸어 지붕을 꾸민 것을 흘처마라 하고, 부연을 단 것을 겹처마(重檐牙)라 한다. 서까래는 그 굵기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배치간격은 30~40cm(1~1.3尺) 정도로 한다.

보통 민가에서는 서까래 지름을 9~15cm(3~5寸) 정도로 하고, 배치 간격은 30cm(1尺)로 한다. 따라서 서까래 내밀기는 60cm 이상 1.20m까지로 하며, 그 지름은 10.5~12cm(3.5~4寸) 정도로 하고 있다.

서까래 끝은 캔틸레버로서 휘어 내리는 것이 보통이며, 처마도리와 중도리 또는 마루도리에 걸쳐지는 길이는 처마내밀기보다 길어야 지붕하중에 반전될 우려가 없게 된다. 중도리 간격을 충분히 잡지 못할 때는 서까래의 위끝에 누리개 또는 적심목(積心木)을 확실하게 고정하여 반전을 방지해야 한다.

④ 부연(付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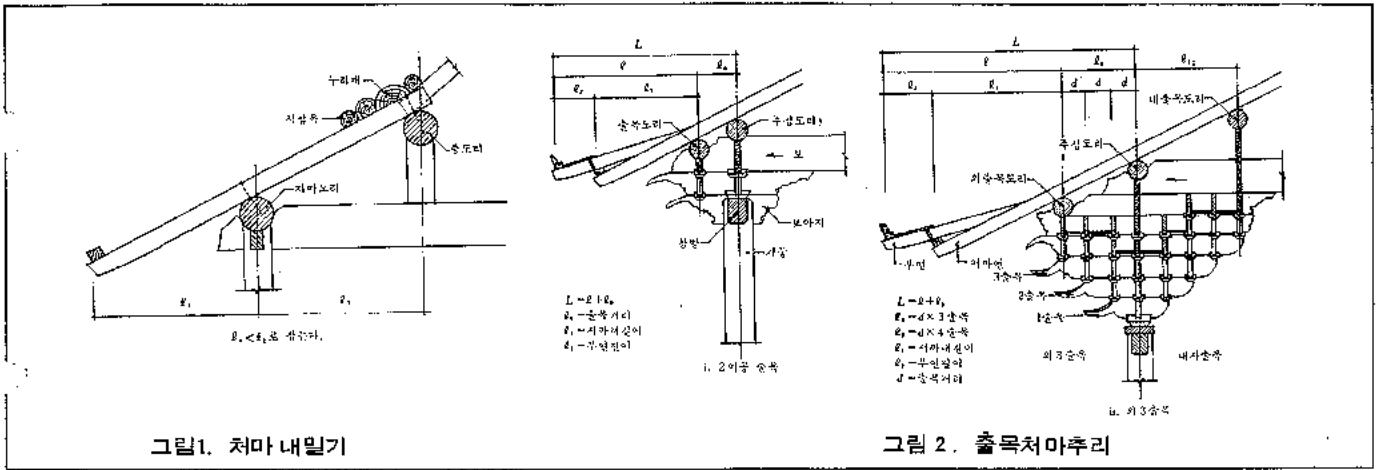
부연은 서까래만을 길게 내민 것보다는 처마끝이 들러

사진 1. 가회동 93-1 최 진호댁 안채



사진 2. 가회동 16-1 안채 처마





올라가서 명쾌한 기분과 미관을 주는데 특색이 있다. 부연을 단 처마내밀기의 총길이는 처마도리와 중도리의 간격보다 길어야 하는 것은 전항과 같다. 부연의 길이는 처마서까래 내밀기의 1/4~1/3 정도로 한다. 부연을 달은 처마내밀기의 총길이는 보통 1.50~2.40m 정도이고, 부연의 길이는 60cm 정도로 한다.

⑤ 출목도리 (出目道理)

처마내밀기의 길이가 2.40m 정도가 된다면 서까래의 지름은 그 길이의 1/12~1/10은 되어야 하므로 상당히 굵은 것을 쓰지 아니하면 곤란하다. 이것을 조절하기 위하여 주심도리 (柱心道理)의 바깥에 나 앉은 도리 즉, 출목도리를 설치하고, 서까래의 캔틸레버 간사이를 작게 잡는 것이 유리하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i. 2익공의 1출목과 ii. 외3출목의 공포여서 서까래 및 부연내밀기를 줄이고 나 앉은 도리 즉, 출목도리를 걸어서 처마추리 전체의 길이를 크게 한 것이다. 그림 i의 2익공에서 출목간격 $l_0=40\text{cm}$, 서까래 길이 $l_2=1.20\text{m}$, 부연의 길이 $l_3=45\text{cm}$ 라고 하면 서까래와 부연의 길이 $l=1.65\text{m}$, 처마추리 $L=2.05\text{m}$ 가 된다. 이렇게 하여서 서까래 자체의 내밀기를 짧게 하는 것은 부재의 절약에도 뜻이 있지만 보다 경쾌한 외관과 처마 밑의 장식적 안정감이 더하는 것이다. 그림 ii에서는 출목간격 $d=30\text{cm}$ 로 하면 출목도리 간격 $l_0=3d=90\text{cm}$ 가 된다.

사진 3. 사직동 262-8 건넌방 측면 부연처마



또 서까래 길이 $l_2=1.50\text{m}$, 부연 길이 $l_3=60\text{cm}$ 라 하면 서까래와 부연내밀기 $l=210\text{cm}$ 가 되고 출목도리 간격까지 합한 처마추리 $L=l_0+l=3.00\text{m}$ 가 된다. 이것은 큰 전각 (殿閣)이나 불우 (佛宇)에 쓰이는 처마내밀기의 최대 한도에 속하는 것이다.

그림 2는 출목도리를 받는 부분의 구조를 보인 두가지 예이지만 이외에도 여러가지 형식과 구성법이 있다. 즉 익공이나 공포부재의 구성은 이 출목도리를 받는 구조공법이다. 여기에 외관을 갖추하고자 외장 (意匠)을 쓴 것이 쇠서 (牛舌)와 첨차 (檐簡)로 표현되고 그것이 형식화 되어 계승된 것이 오늘의 익공과 공포의 양식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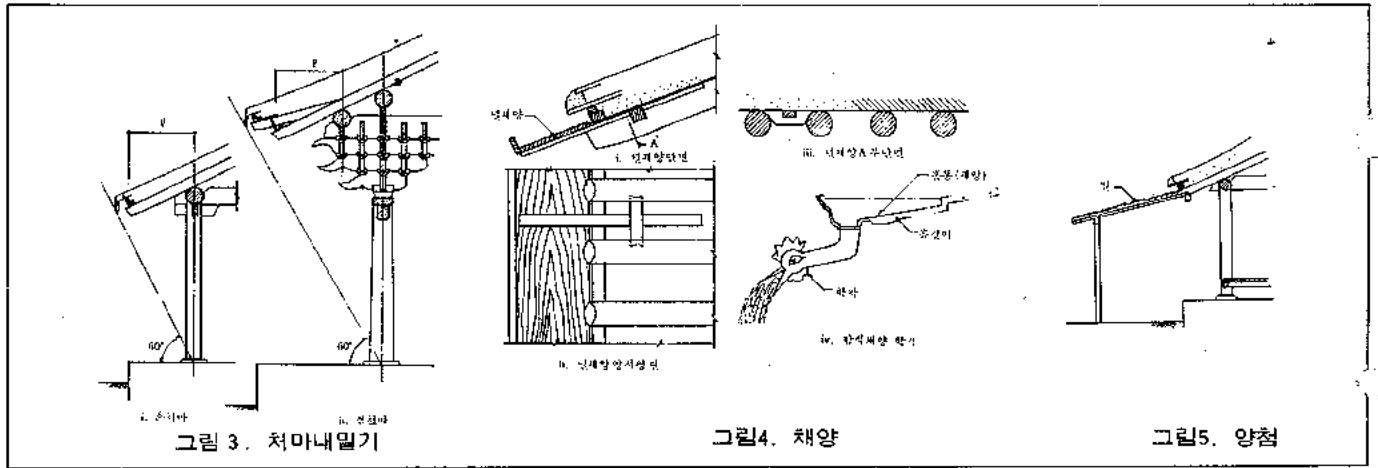
⑥ 적당한 처마내밀기

한 건물에서 처마내밀기를 얼마로 하면 가장 적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간단히 요약할 수는 없다. 건물의 규모·격식 (格式)·기둥높이 및 공포부재의 구성 또는 지형과 주위환경에 따라 다르게 해야 잘 어울리니까 일률적으로 말할 수도 없다.

민도리 소로 수장으로 하는 민가 (民家)에서 기둥높이를 2.70m (九尺) 이내로 부연도 닿지 아니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처마내밀기는 90~120cm 정도로 한다. 여기에서도 건물이 높은 축대 위에 있거나, 대지가 높은 경사면 바로 위에 있을 때는 수평지면에서 보는 것보다 처마내밀기가 소해보인다.

사진 4. 장교동 63-1 사랑채 부연처마





처마내밀기가 가장 알맞게 되는 것은 다음 그림 3과 같이 주춧돌 상면에서 수평에 대하여 60°로 그은 부분까지 내어 밀어지는 것이 좋다고는 하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 그림에서 i. 홑처마의 경우는 ii. 겹처마의 기둥과 같은 높이지만 ii의 공포는 기둥높이 위에 4재공(四齊工)으로 짜여지는 공포 높이(약 1m)가 있어 처마내밀기는 출목도리와 부연을 달아도 된다. 즉 처마서까래 내밀기를 같은 길이로 하여도 이와 같이 처마내밀기의 전체 길이는 달라지게 되어야 한다.

처마는 지나치게 길게 내어밀면 건물이 덩어 늘린 기분이 들고 처마 밑이 명쾌하지 아니하여 처마 끝은 들어 올린 듯이 되어야 좋다.

특히 건물의 모서리 추녀 부분에서는 처마가 처진 듯이 보이는 것을 교정하기 위하여 처마를 들어 올린 구조로 한다. 이것은 선자서까래로 잘 어울리게 하지만 들어 올린 만큼 처마가 짧게 보이니까 추녀부분에서는 평면투영상으로 일반면보다 더 길게 내어민다.

이것이 곧 처마곡선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 상하 입면상으로 그린 곡선을 처마하리, 평면상으로 그린 곡선을 처마안하리라 한다.

⑦ 처마

지붕의 처마추리를 더 길게 하고 처마 빗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처마 끝에 넓은 홈통을 대기도 한다. 이것은 임시

그림 4. 처마

그림 5. 양철

적인 시설로 볼 수 있지만 재료·구조 공법에 여러가지가 있다.

예전에는 함석이나 슬레이트·수지판(樹脂板) 등이 없었기 때문에 대개는 널빤지를 다음 그림 4와 같이 처마 끝에 매어 달았다.

근래에는 주로 함석으로 꾸미고 철물(홈거리라 한다)로 고정한다. 이때는 처마와 처마홈통을 접하게 되고, 또 선홈통에 갈테기홈통으로 연결하여 배수처리를 한다. 다만 처마가 깊고 갈테기 홈통을 달기가 불편할 때는 함각(鶴嘴)을 달아 외부로 방출시킨다. 서양에서도 이와 같은 것이 있는데 구스넥크(goose neck)라 한다. 학(鶴)과 백조(白鳥)의 차이가 있을 뿐 형태·구조 공법은 흡사하다.

햇볕을 가리기 위하여서는 나무로 틀을 짜고 발을 치기도 한다. 또 이것을 확대하여 기둥을 세우고 지붕 끝에서 발을 쳐서 꾸미기도 한다. 이것을 양철(涼機)이라 한다.

⑧ 처마밑

처마도리 밑은 소로수장·초익공 또는 공포부재로 장식된다. 이것들은 장식과 아울러 처마를 길게 내미는 구조법이 되며, 또한 기둥상부의 도리방향·보방향의 각 부재의 보강과 그 이름·맞춤새의 보강법으로 쓰인다. 바꾸어 말하면 부재상호간의 이름·맞춤과 횡가재(橫架材)의 휨 보강으로 되며 특히 출목도리 등을 받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익공 공포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사진 5. 江華 傳燈寺大雄寶殿



사진 6. 慶會樓 荷葉亭 2악공처마



特 輯

'82 春 季 會 員 作 品

地方行政會館

金壽根—공간연구소

LOCAL ADMINISTRATION BUILDING

Kim, Swoo Geun—Space Group of Korea

MBC여의도스튜디오

金正澈—주·정림건축

MBC YEUIDO T.V STUDIO

Kim, Jung Chul—Jung Lim Architects & Engineers

大田投資金融(株)社屋

朴弘雨—현장건축연구소

DAE JEUN INVESTMENT AND FINANCE CORPORATION BUILDING

Park, Hong Woo—Hyeob Chang Architects & Engineers

祥明師大人文社會學館

金琪碩—아름건축연구소

STUDY CENTER OF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ANG MYUNG WOMEN'S UNIVERSITY

Kim, Ki Sok—Aram Architects Atelier

半月市廳舍

李珪杓·韓英宰—주·엄&이 건축연구소

BAN WAL CITY HALL

Lee, Kak Pyo·Han, Young Jae—Aum & Lee Architect, Associates Co., LTD

오우선 관광호텔

尹承重·朴 鎔—원도시건축연구소

HOTEL OCEAN

Yoon, Seung Joong·Byun Yong—Archiban Architects Group

寶映빌딩

趙東榮—종합환경연구소 일건

BOYUNG BUILDING

Cho, Dong Young—Total Environmental Design Group IL—KUN

信用保證基金大邱支店

趙成龍—우원건축연구소

KOREA CREDIT GUARANTEE FUND DAE GU BRANCH

Cho, Sung Ryong—U-ONE Architects & Engineers

쇼핑센터 “太陽의 집”

金龜業—김중업합동건축연구소

SHOPPING CENTER “SUN'S PALACE”

Kim, Chung Up—Kim Chung Up and Associates Internatio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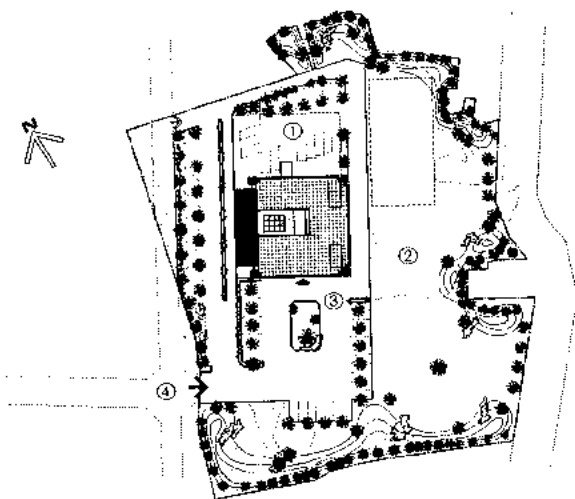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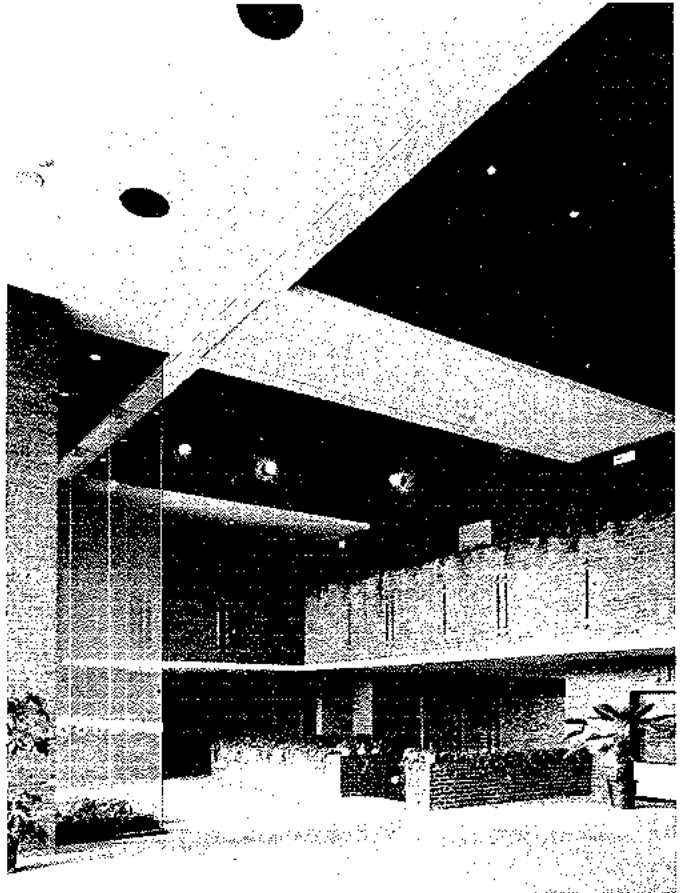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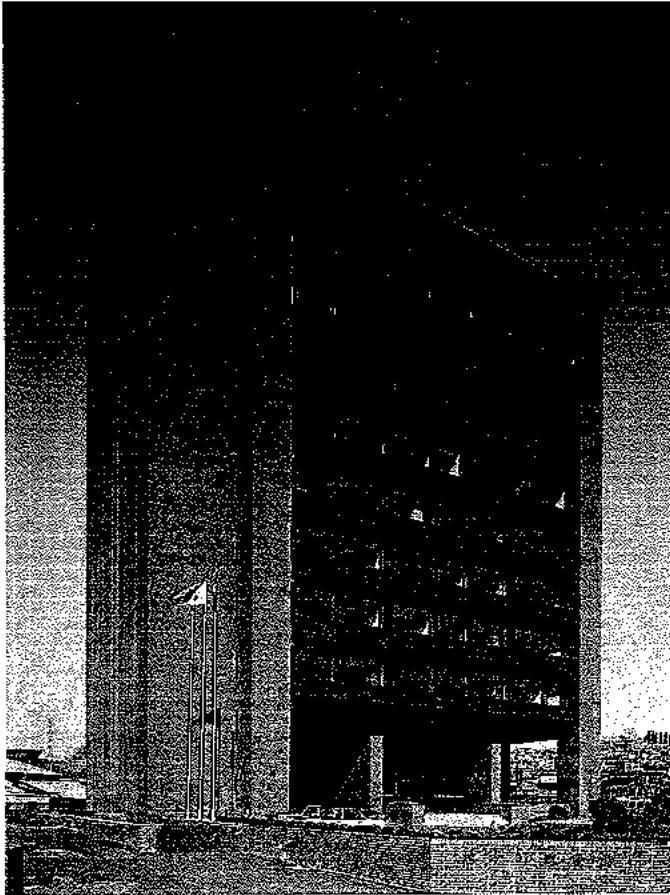
地方行政會館

金 壽 根 —공간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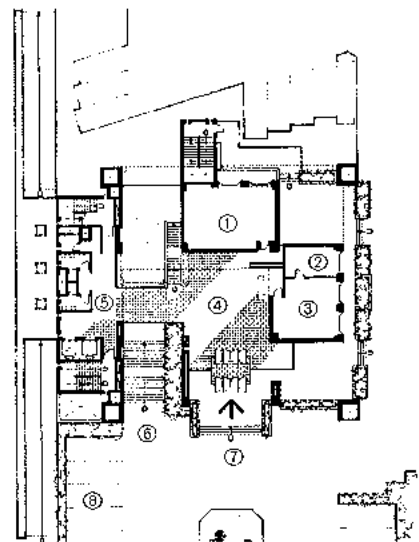


LOCAL ADMINISTRATION BUILDING

Kim, Swoo Geun —Space Group of Korea



배치도



1층 평면도

◆設計概要

地方行政의 센터로서 내부부 산하 공무원들의 교양증진·후생복지·지방행정 발전에 기여코자 본 건물을 건립함에 있어

- 본 회관이 사용자에게 신뢰 및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융통성·가변성 및 조직적인 목적을 갖도록 하며
- 대지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여 외부 소음으로부터

차단되게 하며, 도시적 LANDMARK가 되도록 하였다.

• 내부공간은 인간회복의 場으로서 활용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쾌적한 사무공간과 ENERGY SAVING을 목

소재지: 서울 마포구 공덕동

대지면적: 10,444. ⁹/₁₀₀㎡

건축면적: 875. ⁹/₁₀₀㎡

연면적: 9,818. ⁹/₁₀₀㎡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부재료: 변색벽돌, 치장쌓기, 알루미늄 캐스트

• 배치도

- ① - 주차장
- ② - 종주에정지
- ③ - 주출입구
- ④ - 주진입구

•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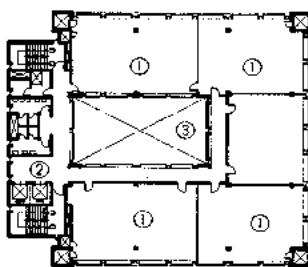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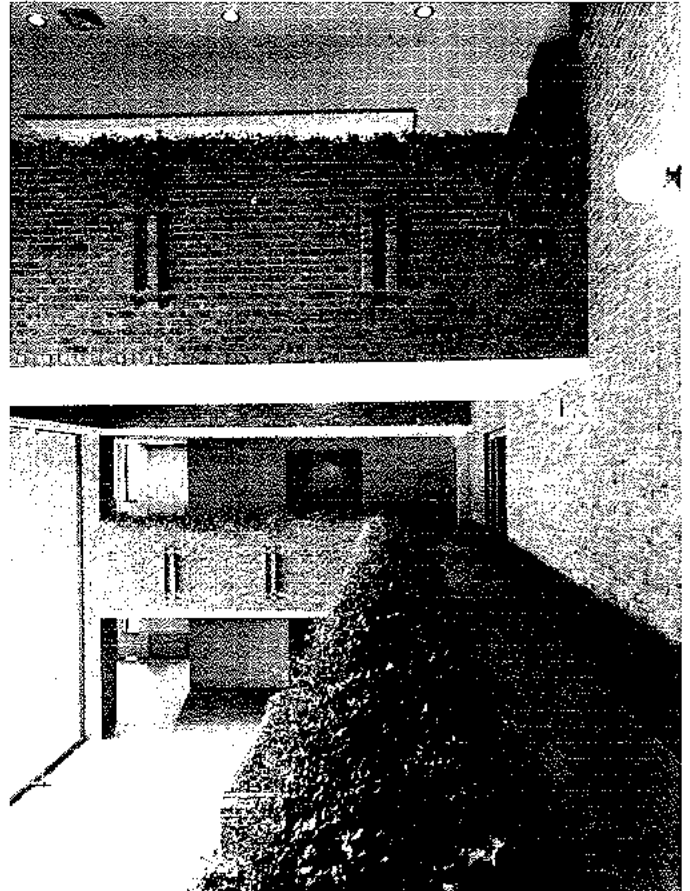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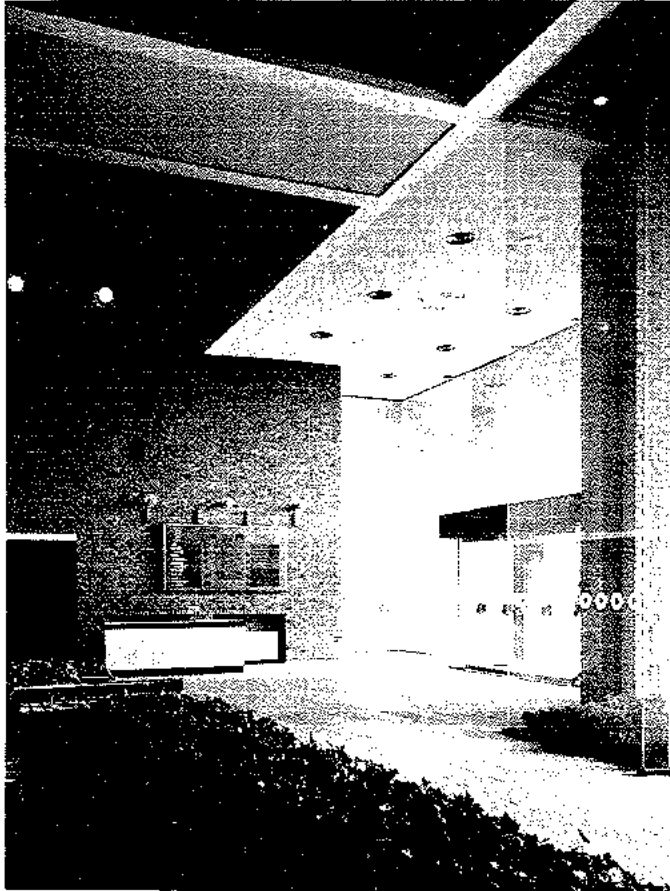
- ① - 자료실
- ② - 숙직실
- ③ - 관리사무실
- ④ - 현관홀
- ⑤ - ELEV. HALL
- ⑥ - 지하실입구
- ⑦ - 주출입구
- ⑧ - 주차장

•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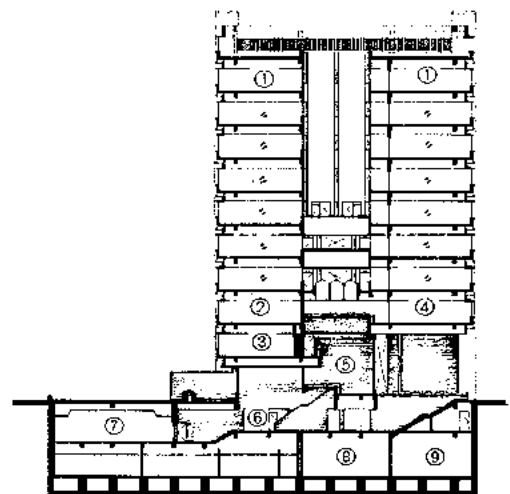
- ① - 사무실
- ② - ELEV. HALL
- ③ - 광장

• 주단면도

- ① - 사무실
- ② - 도량정자료실
- ③ - 자료실
- ④ - 화장실
- ⑤ - 현관홀
- ⑥ - 홀
- ⑦ - 대회의실
- ⑧ - 기계실
- ⑨ - 전기실



기준층 평면도



주단면도

표로 4층에서 10층까지의 건물 내부에 光庭(LIGHT WELL)을 설정하였다.

• 코어의 集約化로 전용 사무실은 물론 임대비율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남향에 커다란 창을 길게 뚫으므로써 E-

NERGY SAVING과 立面上의 문제를 해결토록 하였다.

• 외장재료로서는 과감하게 10층까지 변색벽돌을 사용하여 더욱 친밀감 있는 TEXTURE로서 반갑게 건물을 대할 수 있게 하였다.

• 건물의 4층부분에 TOP LIGHT를 두고 3층부분에 OVER BRIDGE를 두었으며 로비부분에 대형유리를 사용하여 드라마를 연출함으로써 로비空間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MBC 여의도 스튜디오

MBC YEOIDO T.V STUDIO



株式会社 正林建築

JUNG LIM ARCHITECTS & ENGINEERS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 815

대지면적 : 17,765.76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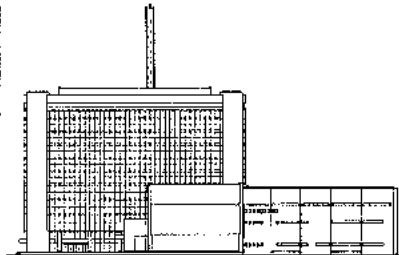
건축면적 : 8,593.83m²

연면적 : 44,313.66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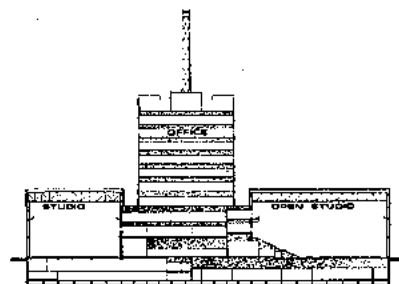
규모 : 지하 2층 · 지상10층 · 옥탑 1층

설계담당 : 전 찬진 · 양 진환 · 이 성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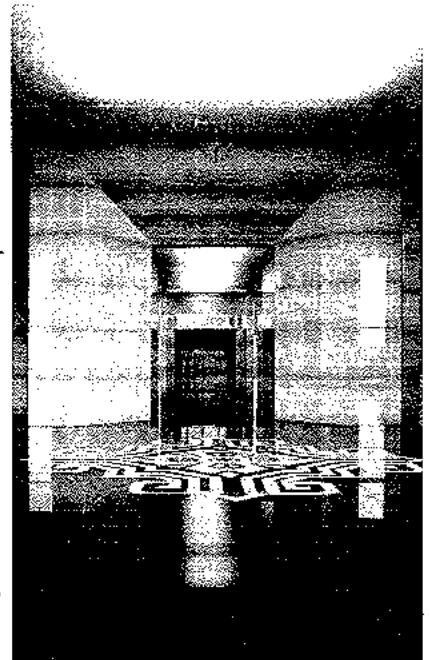
공사기간 : 1979년 1월 ~ 1982년 3월



우측면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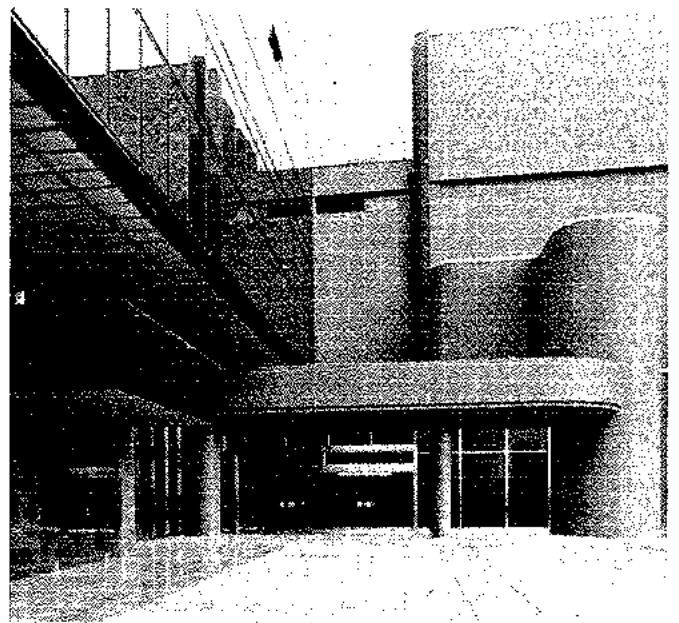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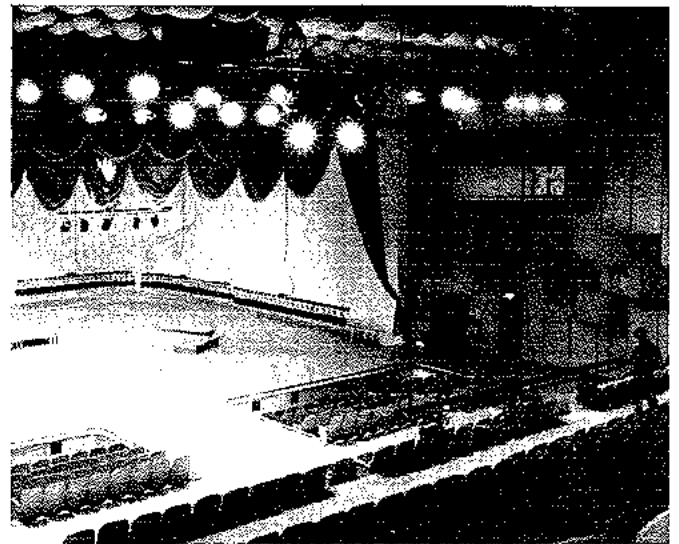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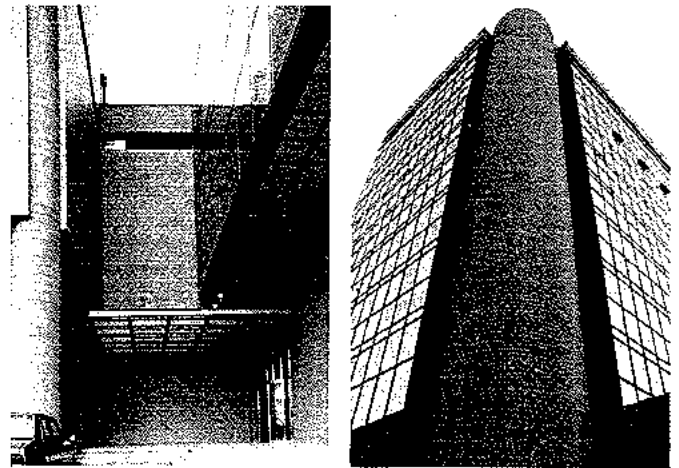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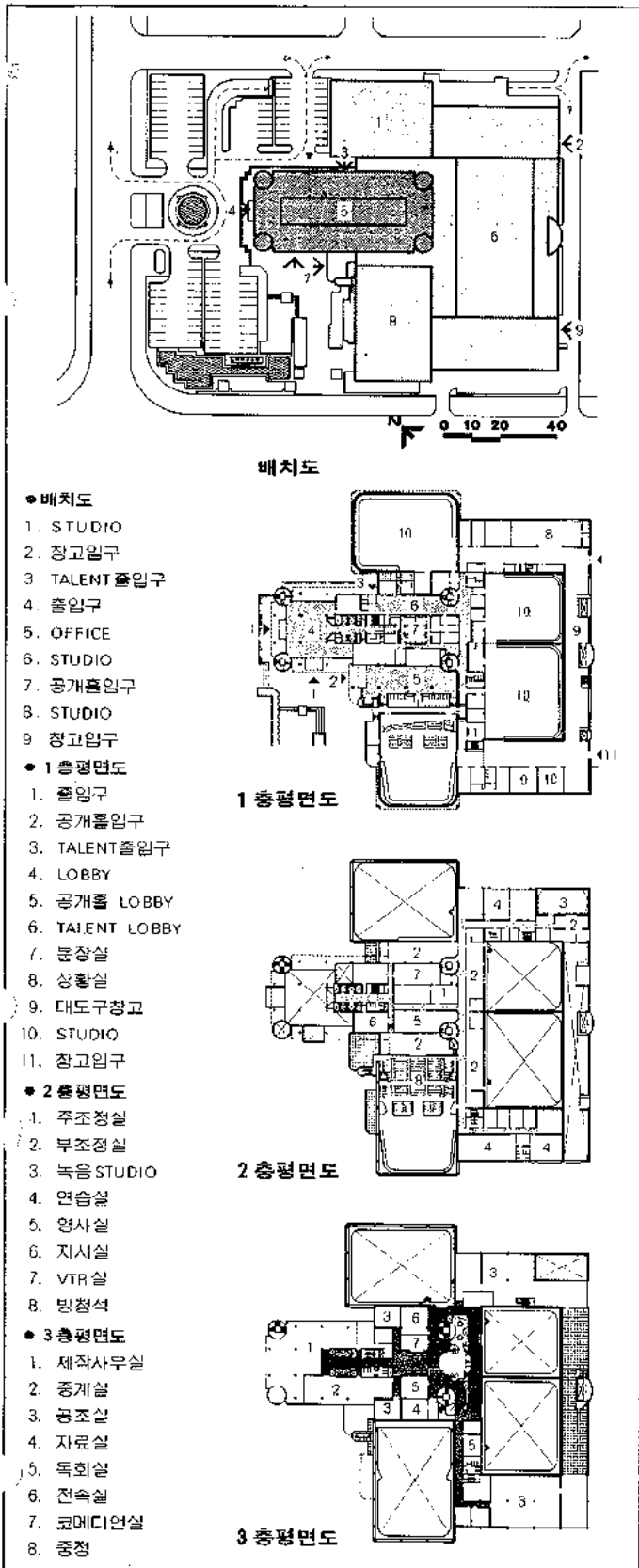


◆ 設計概要

본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인 제작부서 및 SET 제작, SET SUPPLY 등의 관련 동선이 기능적으로 처리되도록 하였으며 각 스튜디오에 대한 内外部에서의 음향처리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였다.

또한 기능성이 강한 건물에서 결여되기 쉬운 활기있는 内部空間을 확보하였고, 여의도의 무미건조한 街路 패턴에 변화를 주기 위하여 쾌적한 屋外空間 처리와 MIRROR GLASS의 도입으로 타 건물과의 사이공간을 넓게 보이도록 하였으며 시각적 변화를 나

타내도록 시도하였다. 그리고 MIRROR GLASS와 보라색 타일을 매치시켜 발랄하면서도 신선한 조형감으로 하여 콘크리트 숲속의 CRYSTAL이 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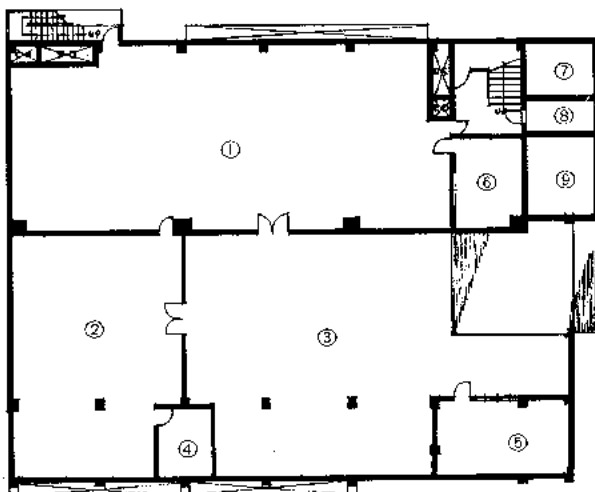
大田投資金融(株)社屋

朴 弘 雨 — 협창건축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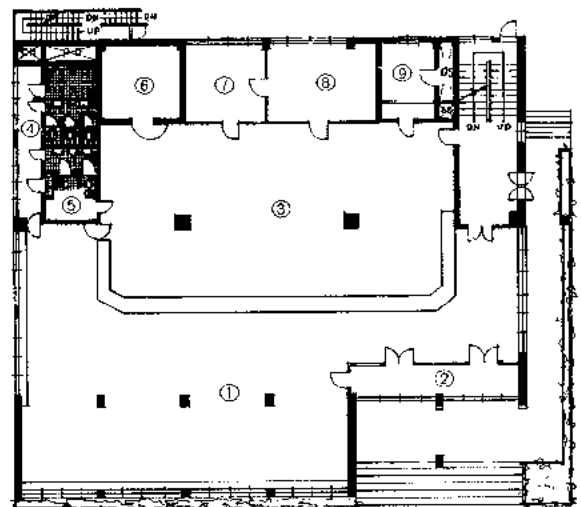


DAE JEUN INVESTMENT AND FINANCE CORPORATION BUILDING

Park, Hong Woo — Hyeob Chang Architects & Engineers



지하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소재지: 대전시 동구 원동 36-1

대지면적: 1,076㎡

연면적: 2,856㎡

규모: 지하 1층 · 지상 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지하층 평면도

- ① - 기계실
- ② - 전기실
- ③ - 주차장
- ④ - 축전지실
- ⑤ - 대기실
- ⑥ - 마루방
- ⑦ - B/C 실
- ⑧ - 점검실
- ⑨ - 경유탱크

• 1층 평면도

- ① - 휴게실
- ② - 전실
- ③ - 영업장
- ④ - 화장실
- ⑤ - 보일러실
- ⑥ - 금고
- ⑦ - 서고
- ⑧ - 영업부장실
- ⑨ - 숙직실

•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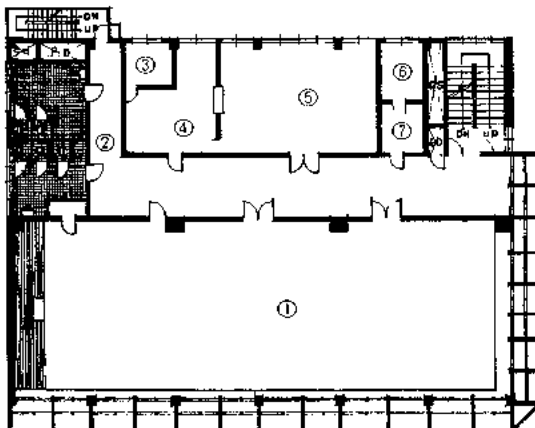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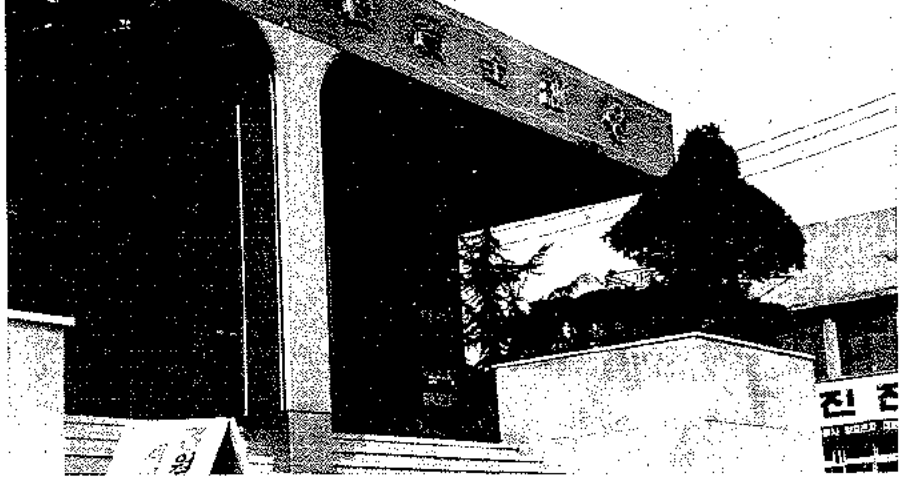
- ① - 회의실
- ② - 화장실
- ③ - 창고
- ④ - 주방
- ⑤ - 식당, 휴게실
- ⑥ - B/T 실
- ⑦ - 교환실

•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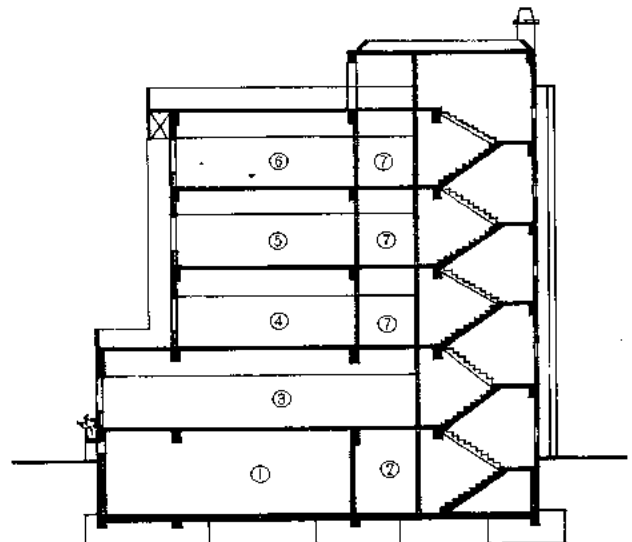
- ① - 전기실
- ② - 마루방
- ③ - 영업장
- ④ - 사장실
- ⑤ - 심사부
- ⑥ - 대회의실
- ⑦ - 복도

◆設計概要

금융기관 건물의 부지로서 대지의 폭이 좁아 평면계획상 애로사항이 많았다. 건물이 들어설 자리는 도심의 미관지구이다. 따라서 건물 외장은 컬러 알루미늄 시트판과 에폭시 본타일 후등석으로 조화시켜 보았으며, 건물의 최상부에는 아치형 돌출부를 두어 입면의 변화를 추구하여 보았다. 그리고 내부의 영업장과 객장의 벽은 우리나라 특산물인 취옥석을 사용하여 안정감을 주도록 시도하였다.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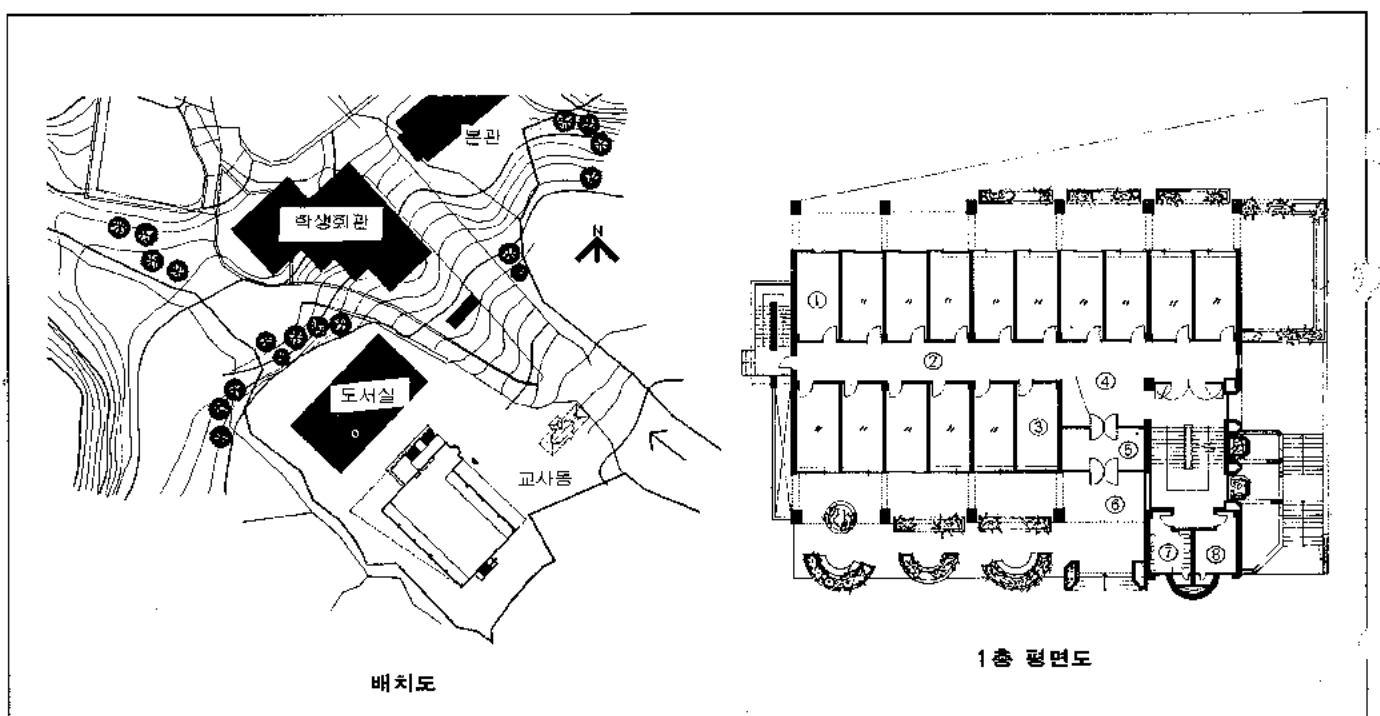
단면도

祥明師大人文社會學館

金 琪 碩 —아람건축연구소

STUDY CENTER OF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ANG MYUNG WOMEN'S UNIVERSITY

Kim, Ki Sok —Aram Architect's Atelier



소재지 : 서울 종로구 홍지동 상명학원내

건축면적 : 675.43㎡

연면적 : 3,290.45㎡

규모 : 지하 1층 · 지상 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벽 마감 : 변색벽돌 처장쌓기 · 백색치장줄눈

설계담당 : 변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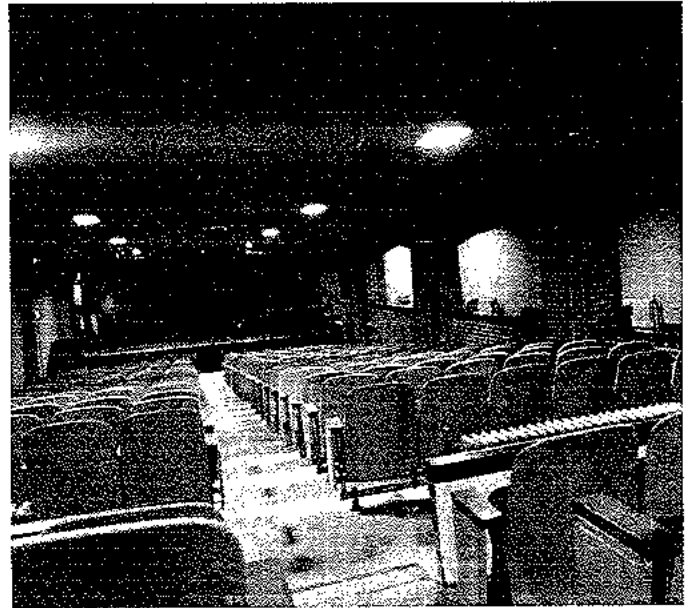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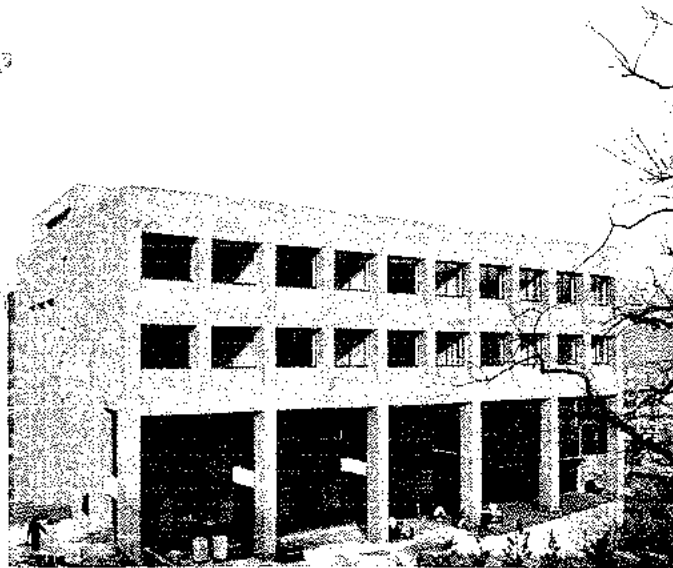
· 1층 평면도

- ① - 연구실
- ② - 복도
- ③ - 연구실
- ④ - 휴
- ⑤ - 방풍실
- ⑥ - 캐네피
- ⑦ - 화장실
- ⑧ - 탕발실

- ① - 준비실
- ② - 무대
- ③ - 조정실
- ④ - 예비실
- ⑤ - 소강당
- ⑥ - 무협
- ⑦ - 창고
- ⑧ - 식품고
- ⑨ - 교수라운지

· 일반 단면도

- ① - 강의실
- ② - 연구실
- ③ - 소강당
- ④ - 무대
- ⑤ - 준비실



◆設計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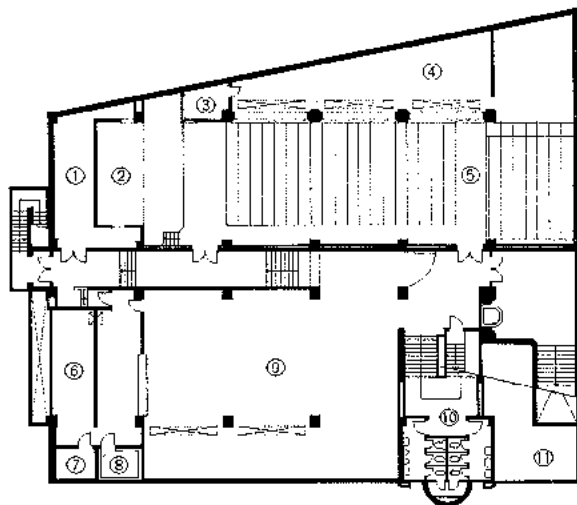
캠퍼스 진입로 좌측에 확보된 대지에 강의실 · 교수실 · 강당 · 휴게실의 내용을 지닌 건축계획의 과제를 부여 받았다. 대지는 진입로를 향하여 경사져 있으며, 곁에는 도서관이 있다.

본 건물의 입지는 연차적으로 정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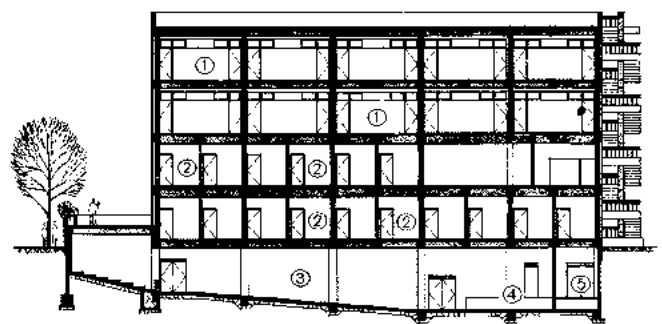
되어 가는 캠퍼스의 중심공간(광장)을 바라보게 하였으며, 좀더 구체적인 계획의 일례로서 도서관과 본 건물, 그리고 뒤쪽 경사면 위에 세워질 가능성 있는 지닌 미래의 행정관과의 관련성이 고려되었다.

벽돌로 마감될 건축의 停滯性을 상

승시키기 위하여 기하학적인 요소와 음영의 효과를 활용하였고, 아울러 시각적 쾌감 · 질감의 전달효과를 꾀하였다. 그리고 여성적인 맛으로 충만한 공간에 남성적 감각을 첨가하여 전체적 의미의 균형과 완능성을 연출하여 보았다.



지하층 평면도



일반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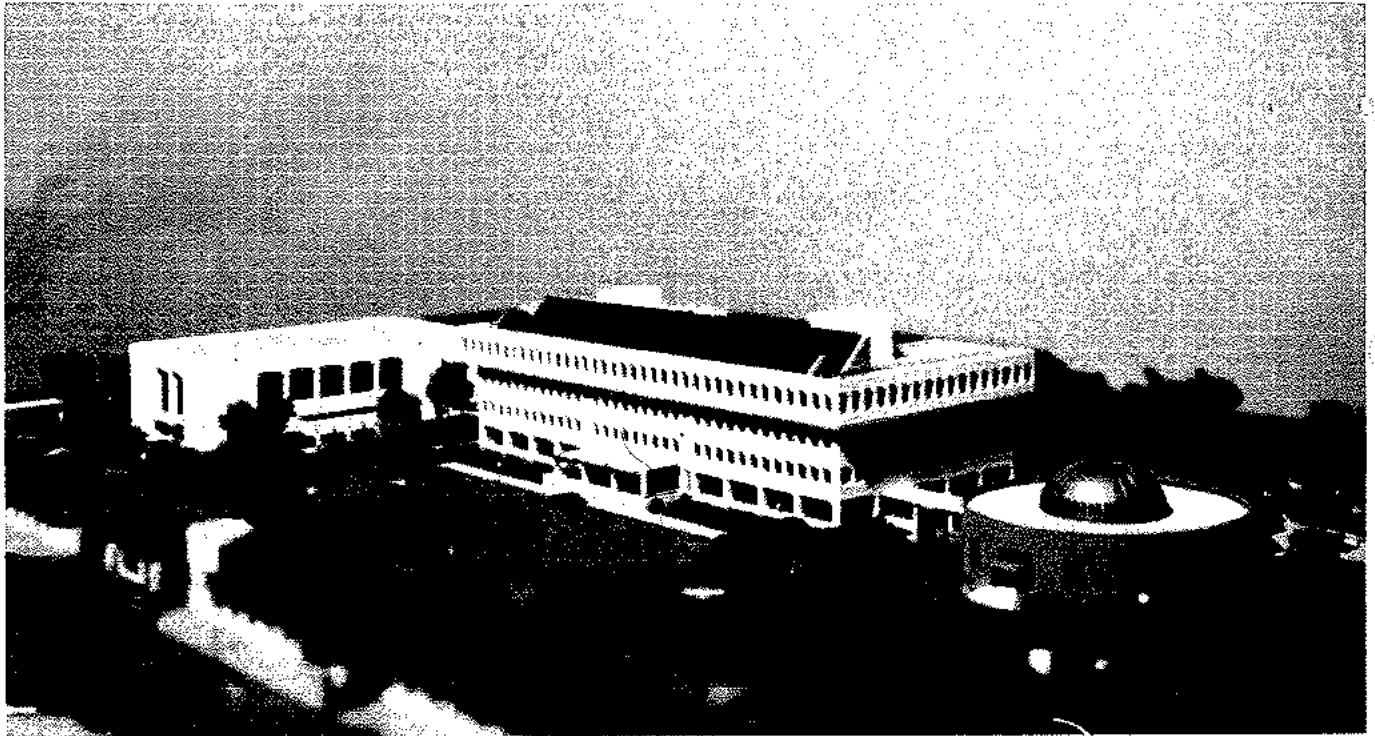
半月市廳舍

李 珏 杓 · 韓 英 宰 — 주 · 엄 & 이 건축연구소



BAN WAL CITY HALL

Lee, Kak Pyo · Han, Young Jae — Aum & Lee Architect, A Associates CO.,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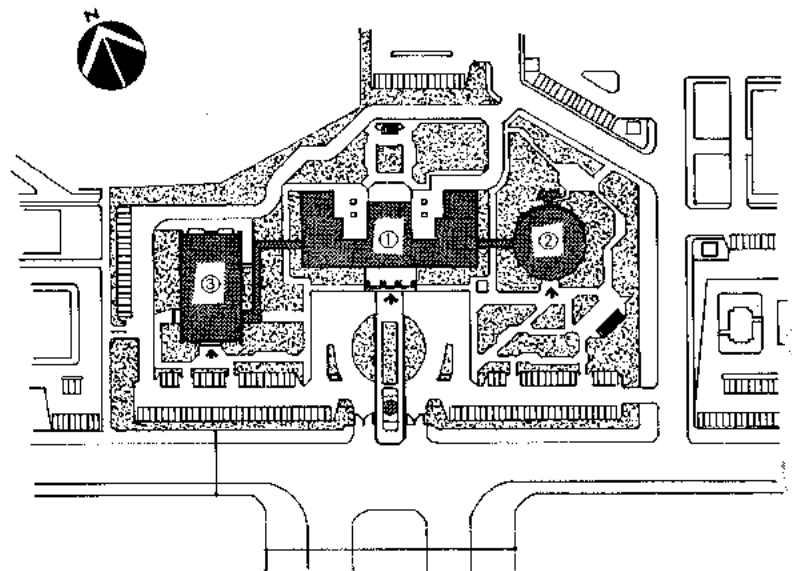
◆ 設計概要

3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시청사로서 신시가지라는 특성을 살려 계획되었으며,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본관의 2층 및 시민홀과 강당의 식당부분에 난방효과를 시도했다.

증축을 고려하여 본관 · 시민홀 · 강당을 분리시킴으로써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과 함께 시청을 찾는 시민들의 동선도 수평 분리시킴으로써 간결화했다.

원형의 시민홀은 신속한 행정과 관 · 민 간에 친숙함을 줄 수 있도록 배려했다.

현재 본관은 완공되었으며, 시민홀과 강당은 앞으로 증축될 예정이다.



배치도

정면도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신시가지 중심부

대지면적 : 71,403.12m²

건물면적 : 본관-7,390.09m² (지하1층·지상4층)

시민홀-850.95m² (지하1층·지상4층)

강당-2,020.97m² (지상2층)

기타-240.72m² (수위실·연결복도)

구조 : RC조 및 조적조 설비 : 태양에너지 집열판 설치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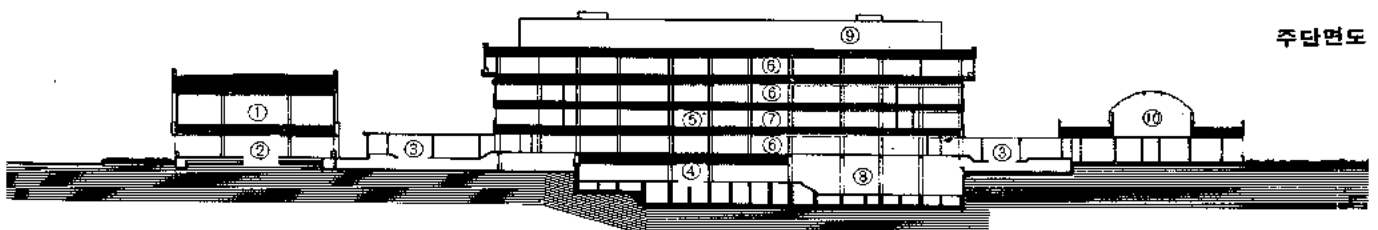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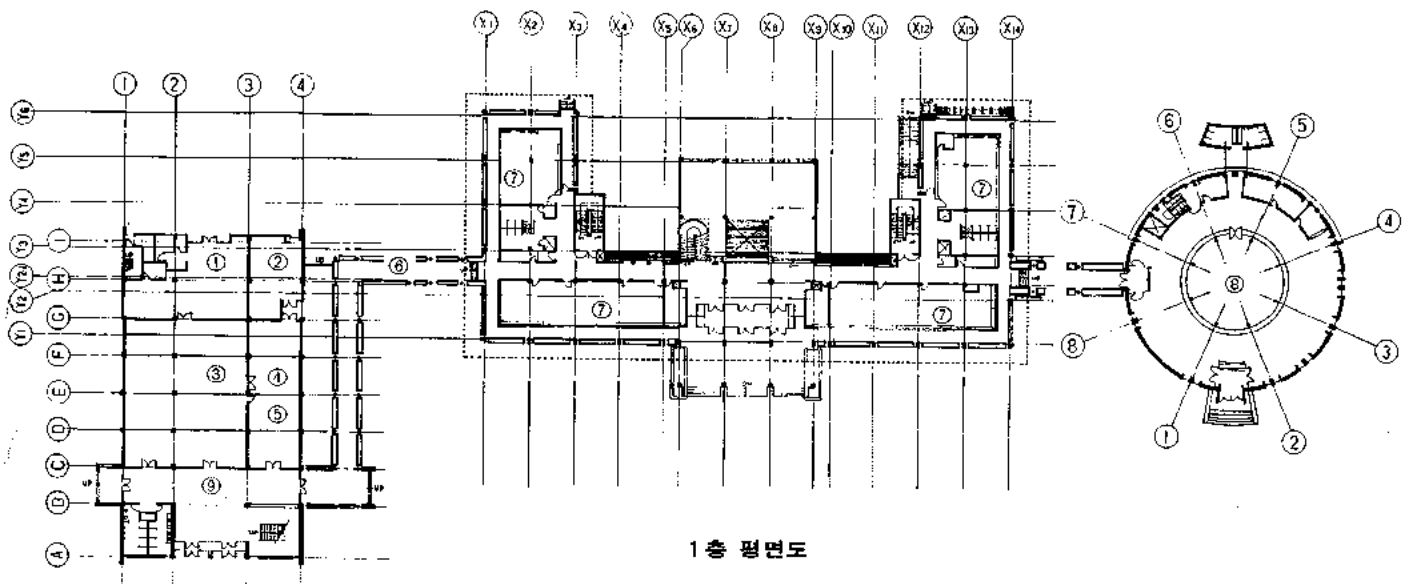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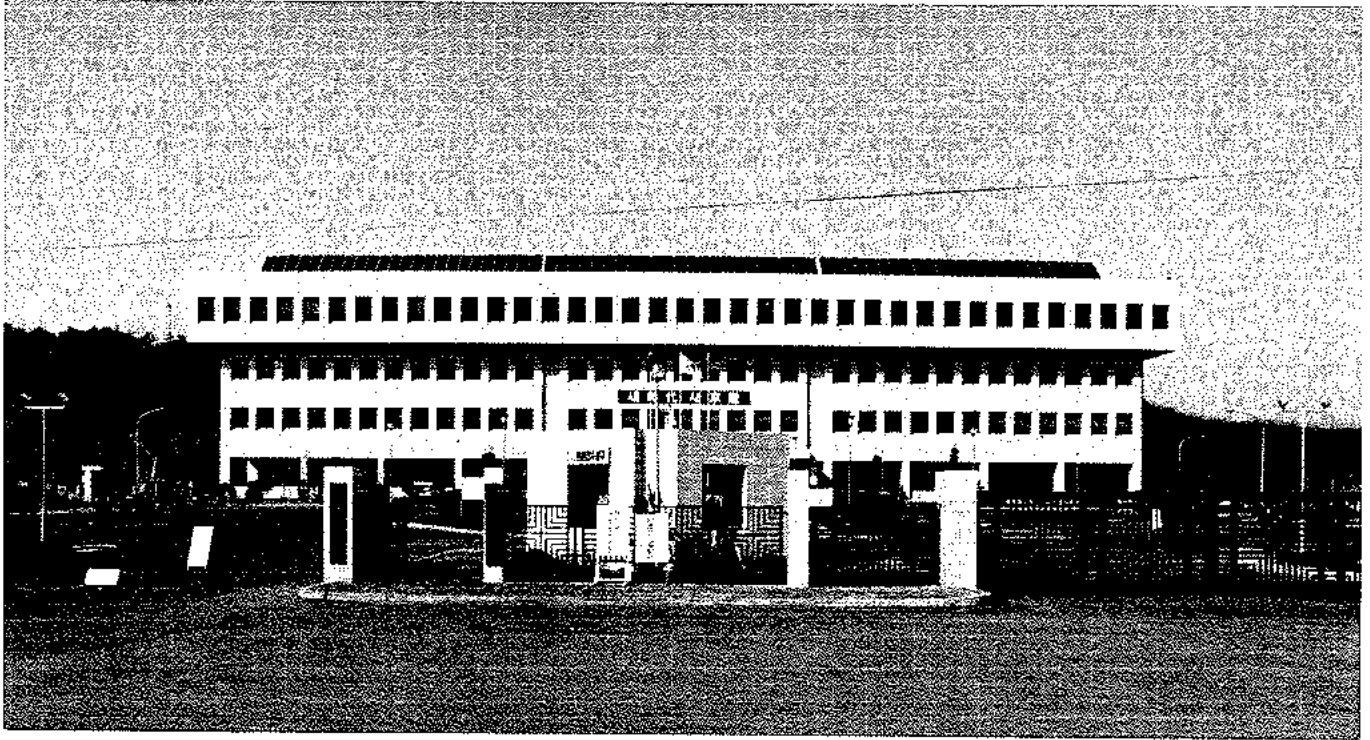
- ① - 본관
- ② - 시민홀
- ③ - 강당, 식당

• 1층 평면도

- ① - 주방
- ② - 공조실
- ③ - 식당
- ④ - 창고
- ⑤ - 간부식당
- ⑥ - 연결복도
- ⑦ - 사무실
- ⑧ - 시민홀
- ⑨ - 로비

•주단면도

- ① - 강당
- ② - 식당
- ③ - 연결복도
- ④ - 대피소
- ⑤ - 간부실
- ⑥ - 사무실
- ⑦ - 회의실
- ⑧ - 전기, 발전, 기계실
- ⑨ - Collector
- ⑩ - 시민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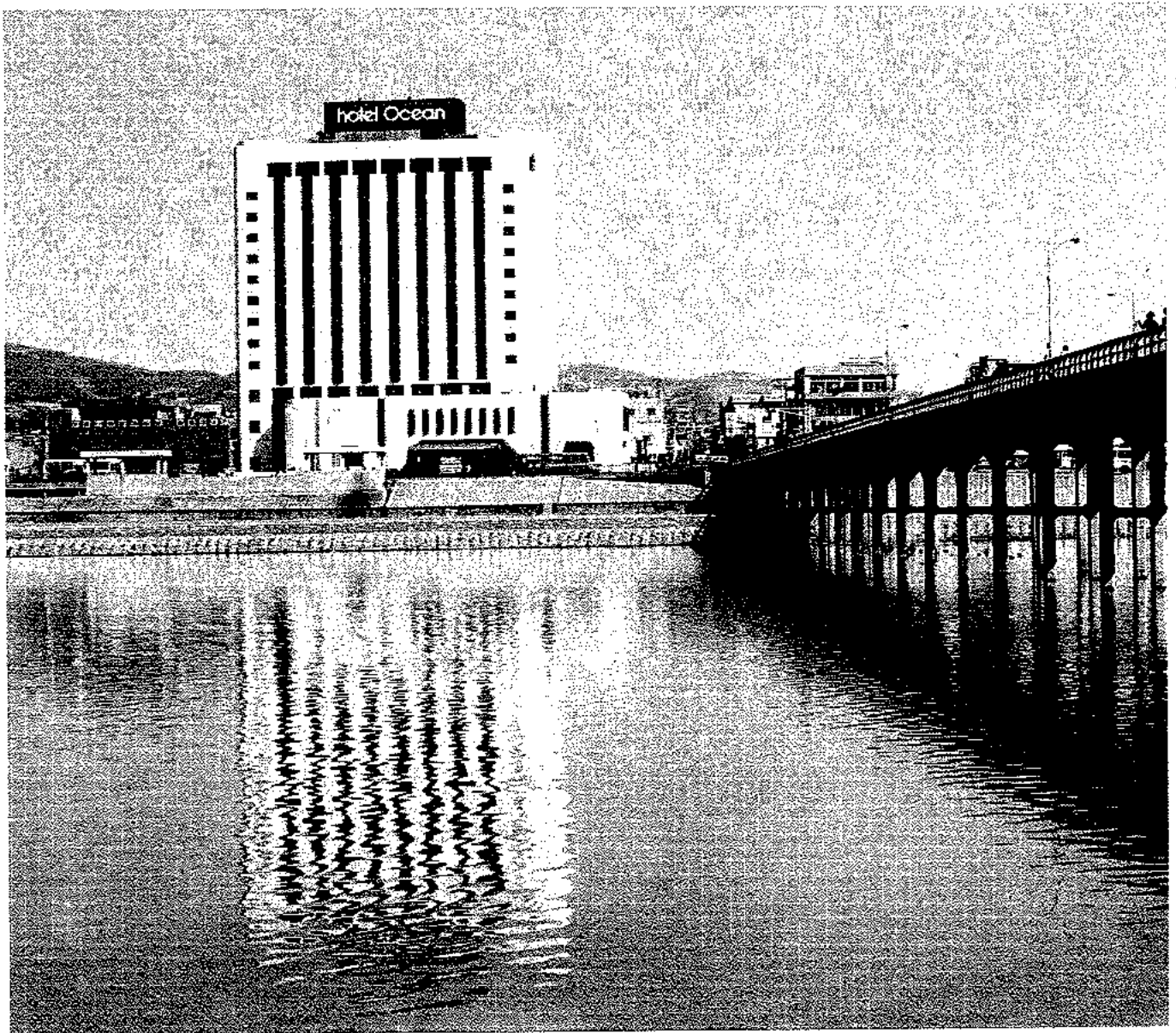
오우션관광호텔

尹 承 重 · 卞 鎔 - 원도시건축연구소



HOTEL OCEAN

Yoon, Seung Joong · Byun Yong — Archiban Architects Group



◆ 設計概要

이 호텔은 지방도시 도심지의 일반 호텔로서 도심지의 협소한 대지와 불량한 구시가지의 주변상황 및 전면도로보다 레벨이 4m 이상 낮은 불리한 조건에 어떻게 하면 도시의 랜드마크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며 어트랙티브한 상업건물로서의 기능을 다하여 상업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지역적인 의미에서 전체시민의 생활패턴의 향상을 위한 공공장소 제공 등의 역할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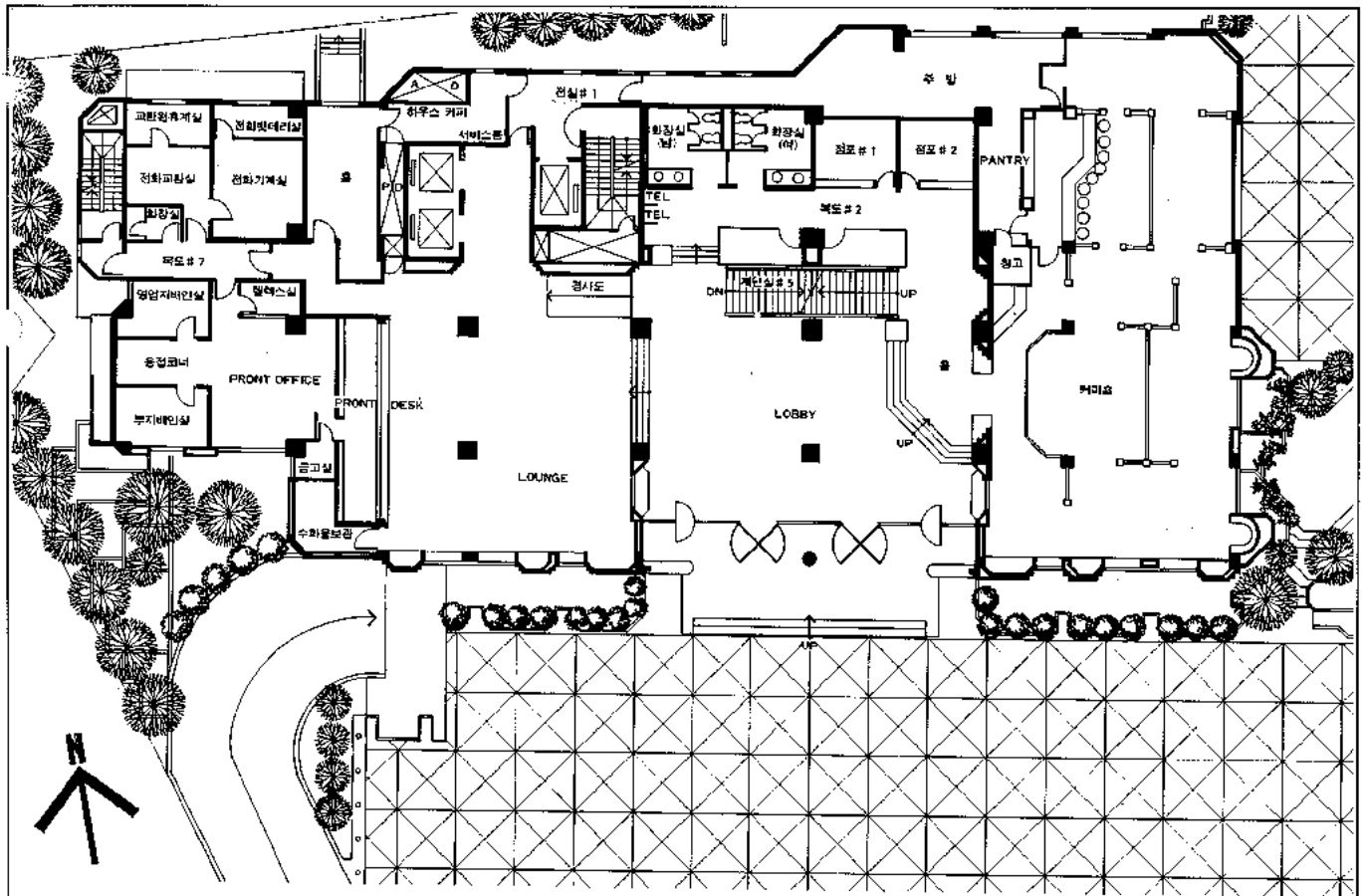
중요한 요소였다.

전면도로 레벨에서 로비레벨을 정하여 넓은 광장을 제공하게 된 점, 전면과 측면의 도로레벨 차이를 이용한 호텔 출입동선의 분리, 로비에서의 숙박객과 일반이용객의 동선분리, 좁은 대지면적에서의 서비스부분의 면적 프로그램과 동선정리, 150실 규모에 맞는 적절한 각종 설비 및 영업장비의 계획, 객실부분의 구조를 벽식 구조로 하여 객실부분의 구조체의 내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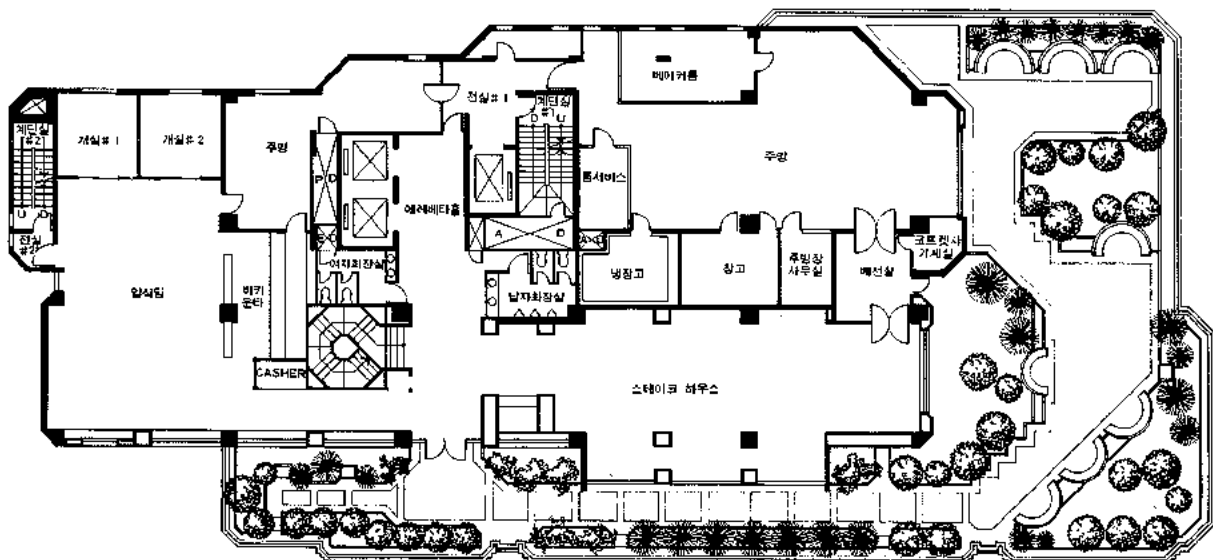
간 정리, 층고를 2.88m로 처리함과, 어트랙티브한 분위기를 주기 위한 객실 기준층의 수직 돌출창 등이 이 건물의 대체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상업적인 건물에 건축적인 의미를 부여해 보려는 시도와 함께 실내디자인 · 그래픽디자인 · 가구 · 영업장비 등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설계자의 의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소 재 지 : 경남 울산시 성남동
 대지면적 : 2,522m²
 건축면적 : 1,139m²
 1 면 적 : 12,864m²
 규 모 : 지하 3층 · 지상13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설계담당 : 민 현식 · 정 현화



배치도 및 1층평면도



3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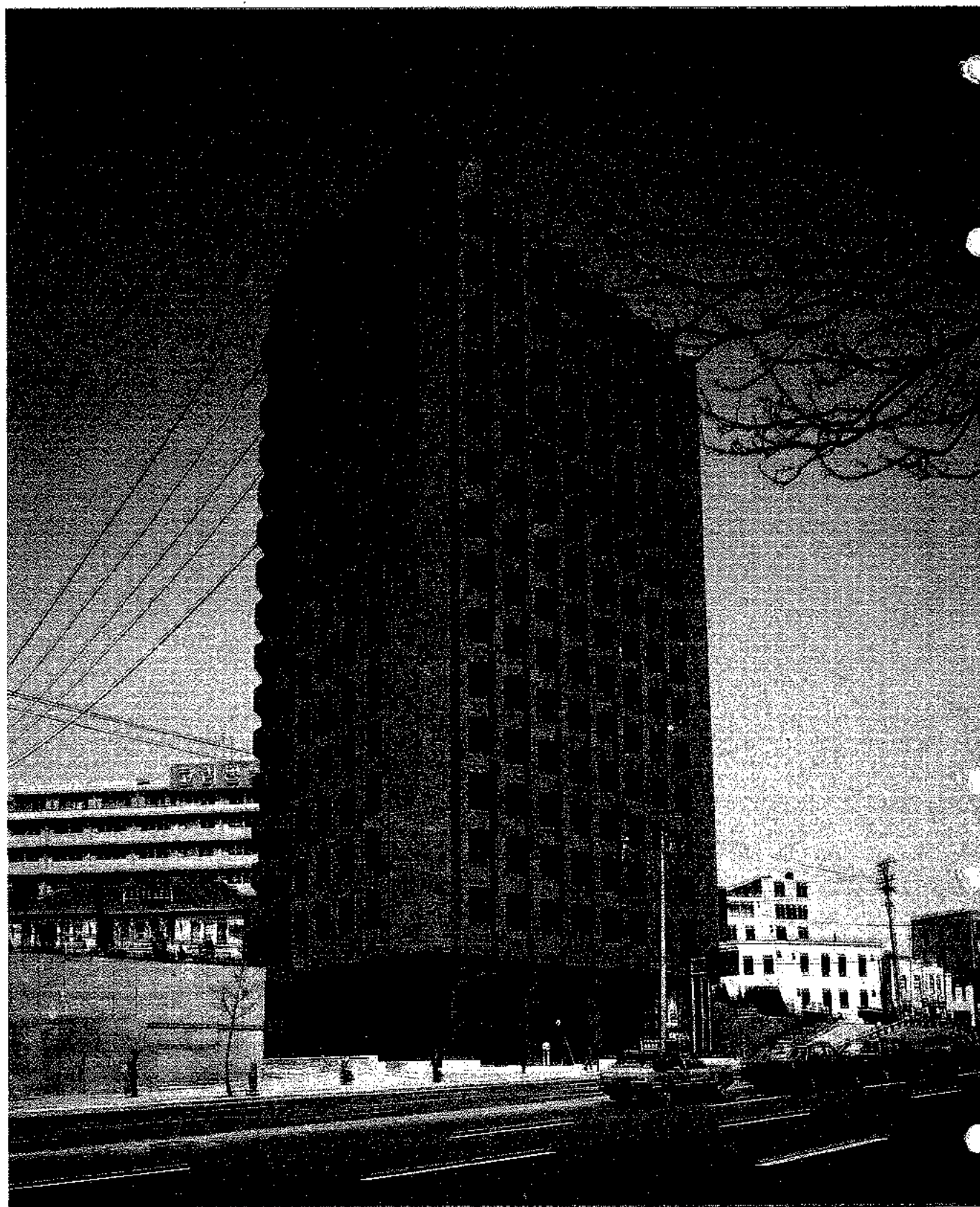
寶映빌딩

趙 東 榮 — 종합환경연구소 일건



BOYUNG BUILDING

Cho, Dong Young — Total Environmental Design Group IL — KUN



소재지: 서울 종로구 평동

대지면적: 3,430㎡

건축면적: 904㎡

연면적: 19,282㎡

규모: 지하2층·지상16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주요외장재: 외장타일·발색알루미늄 선팅시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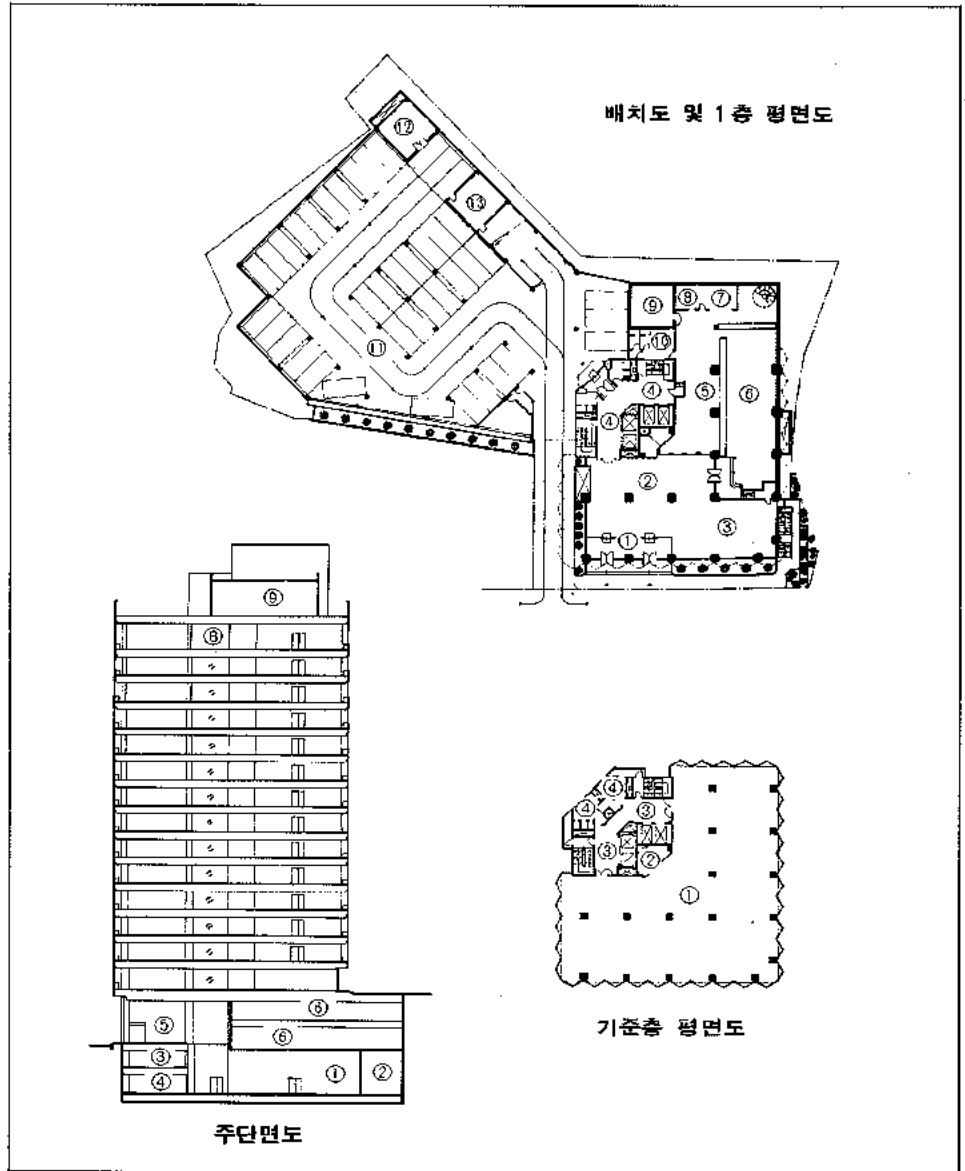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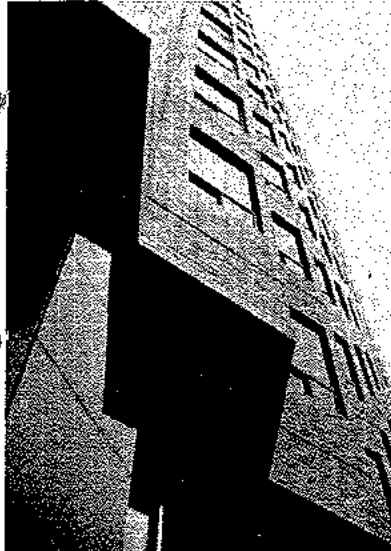
- ① - 품제실 ⑩ - 숙직실
- ② - 로비 ⑪ - 주차장
- ③ - 라운지 ⑫ - 기계실
- ④ - 엘리베이터 ⑬ - 기사대기실
- ⑤ - 영업장
- ⑥ - 객장
- ⑦ - 응접실
- ⑧ - 부속실
- ⑨ - 금고

•기준층 평면도

- ① - 사무실
- ② - A. D
- ③ - 엘리베이터
- ④ - 화장실

•주단면도

- ① - 기계실
- ② - 전기실
- ③ - 커피숍
- ④ - 식당
- ⑤ - 로비
- ⑥ - 은행
- ⑦ - 병원검사실
- ⑧ - 사무실
- ⑨ - 기계실



◆設計概要

광화문 네거리와 서대문 로우터리 사이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업무시설 용도의 건물로서 대지가 전면도로와 고저차(7.2m)를 가지고 있는 점, 인근에 위치한 타용도 건물(종합병원)의 기능 중 일부를 수용해야 하는 복합적인 기능의 처리문제, 그리고 특정 지역 可視部分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등이 설계의 주안점이었다.

대지와 전면도로와의 고저차는 필연적으로 2개의 主出入群을 형성케 하

여 전면도로에서의 것(일반적인 업무시설 및 옥내주차장)과 경사진 측면도로로 연결되는 후면대지에서의 것(종합병원의 일부시설 및 옥외주차장)이 명확히 구분되었다.

평면계획은 옥·내외주차장 및 인근 병원건물에서 본 건물로의 진입방향, 그리고 외관 View에 있어서 전면과 측면(광화문측)에 다같이 부여하고 싶은 同質性으로 인하여 전면도로와 45°의 각도를 갖는 대칭축을 형성케 되었으며 특별 피난계단 및 비상

용 승강기의 전설개념을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기준층에서 공용부분의 면적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다.

외관은 특정지역 가시부분에 대한 하나의 해결방안을 적극적인 전체외관의 디자인 요소로 채택하여 Mild한 느낌을 갖도록 시도하였으며, 단일화되기 쉬운 고층건물의 외벽색상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몇가지 유사한 색상의 외벽타일을 선택함으로써 명랑한 기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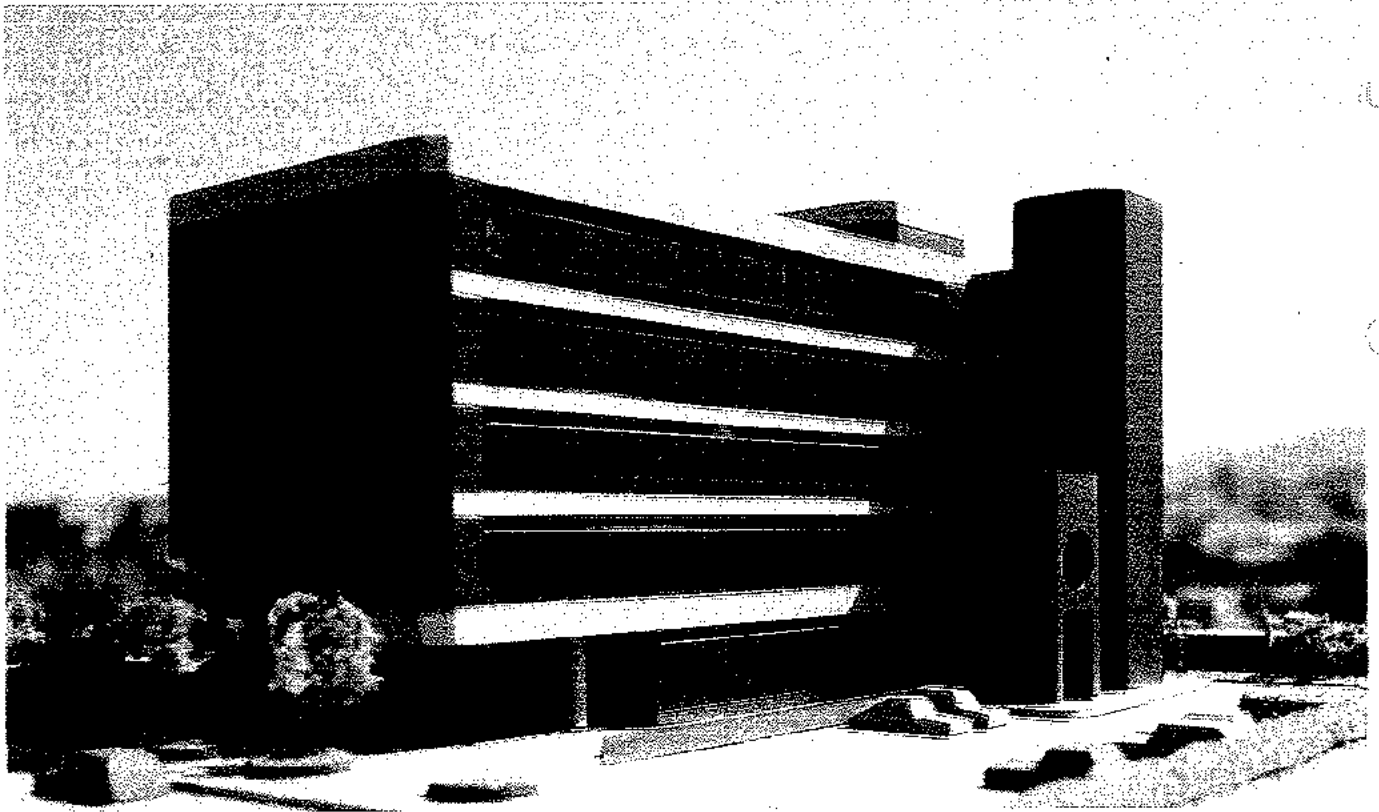
信用保證基金大邱支店

趙 成 龍 - 우원건축연구소



KOREA CREDIT GUARANTEE FUND DAE GU BRANCH

Cho, Sung Ryong — U-ONE Architects & Engineers



◆ 設計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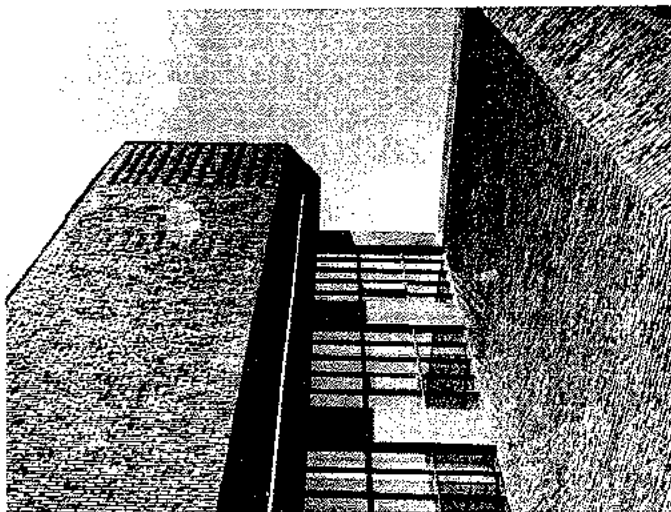
이 건물은 신용보증기금 자체와 임대은행을 위한 전용영업장·부속시설, 그리고 직원식당·임대사무실로 구성된 사무소 건물이다.

폭 12m, 8m의 모퉁이 대지의 특성을 고려하고, 장차의 도시계획에

응하기 위하여 건축선으로부터 후퇴된 변색벽돌의 이 건물은 특징없이 낮은 건물로 연속된 가로에 돌연 넓은 옥외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절점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45도로 절단된 건물의 모서리와 전면 현관부분의 높고 낮은 두개의 벽

돌담은 단조로운 도시에서의 標識性을 강하게 나타내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벽돌·유리·셋시·콘크리트면은 어두운 갈색톤으로 조정하는 반면, 내부는 옅은 회색조의 쾌적한 사무공간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소 재 지 : 대구직할시 중구 완전동

대지면적 : 3,934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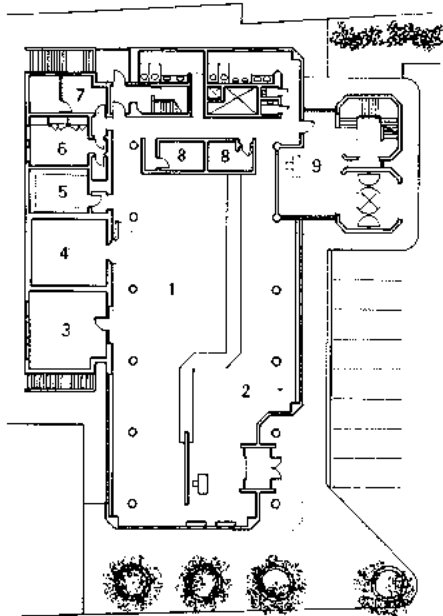
건축면적 : 914m²

연 면 적 : 4,709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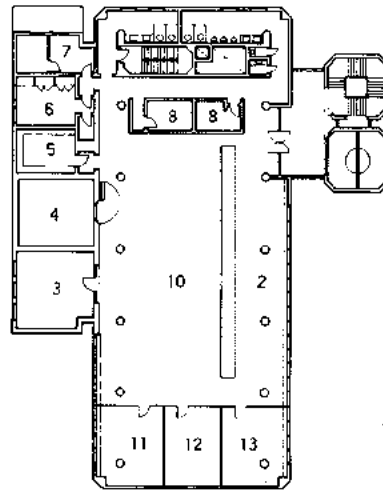
규 모 : 지하 1층 · 지상 5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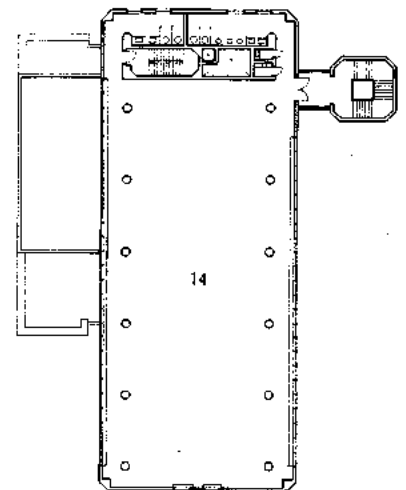
- | | |
|-----------|-------------|
| ① - 영입장 | ⑪ - 경영지도위원실 |
| ② - 객장 | ⑫ - 회의실 |
| ③ - 지정장실 | ⑬ - 상담실 |
| ④ - 금고 | ⑭ - 사무실 |
| ⑤ - 서고 | ⑮ - 테라스 |
| ⑥ - 숙직실 | ⑯ - 식당 |
| ⑦ - 전화교환실 | ⑰ - 주방 |
| ⑧ - 경위실 | ⑱ - 전기실 |
| ⑨ - 현관홀 | ⑲ - 기계실 |
| ⑩ - 영입장 | |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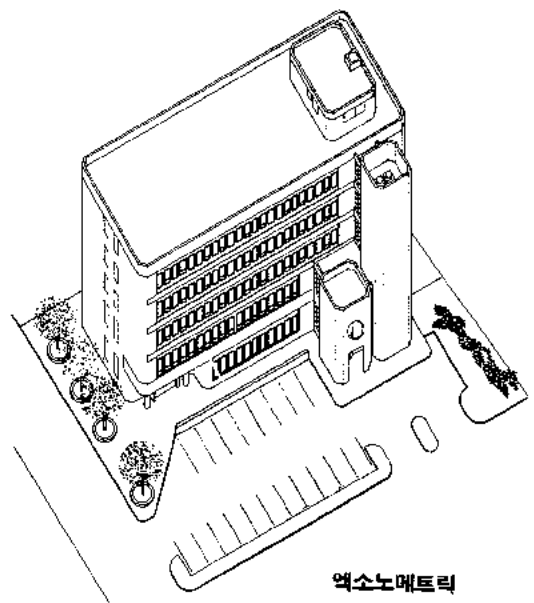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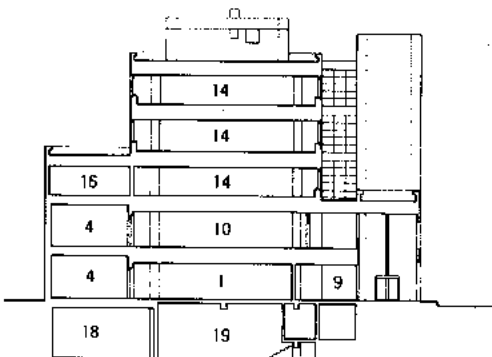
기준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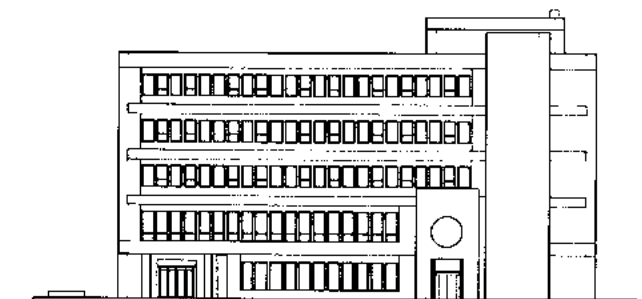
서측면도



역소노메트릭



단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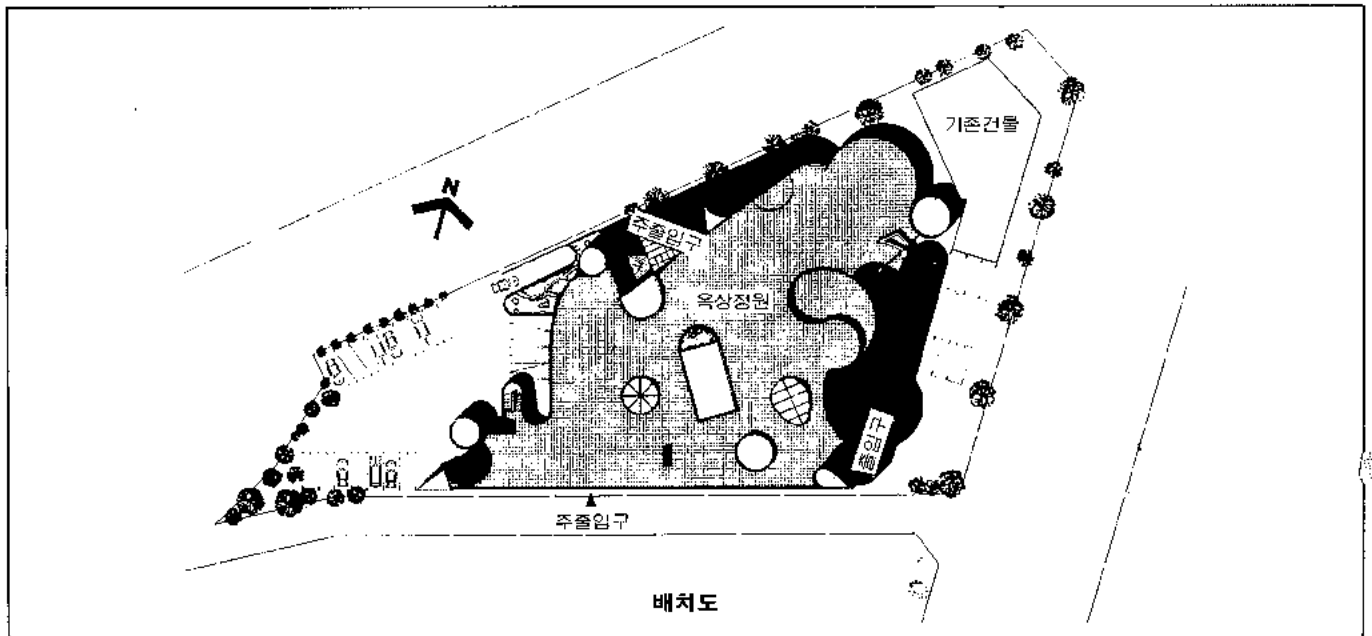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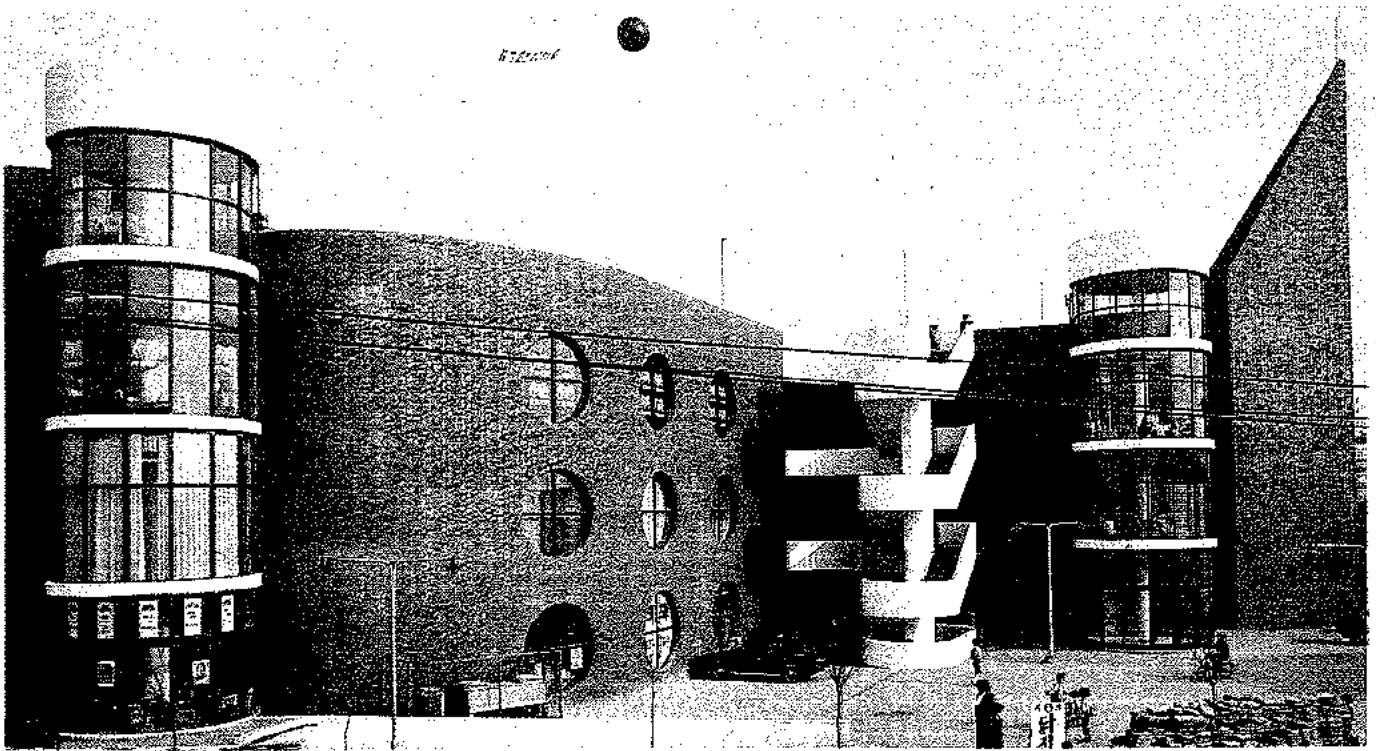
쇼핑센터 “太陽의 집”

金 重 業 — 金重業合同建築研究所



SHOPPING CENTER “SUN'S PALACE”

Kim, Chung Up — Kim Chung Up and Associates International



◆ 設計概要

지나치다 “확” 돌아보고 싶고 걸음을 멈추고 기웃거리려 보고 싶은 곳, 부담없이 들어가 경닐고 싶어지고 콧노래를 부르며 팔고 싶고 사고 싶은 곳. 장터를 바람과 비를 막아 아늑한 환경으로 새롭게 꾸민 곳. 서민적이면서

도 귀티가 나고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돋보이는 곳. 외국 살림에 쏘들리다가도 장터에 가면 무엇인지 모르게 웃고 싶고 이야기를 걸고 싶은 층동이, 또한 누구나가 친한 벗같이 느껴지던 감회가 이 작품을 아기자기하게

꾸미게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낯익지 않은 모습일런지 모르나 일렬로 놓인 상품들이 강압적으로 감정을 강요하는 서울 거리에, 이런 집들이란 기다려진 지 무척 오래다.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동

대지면적 : 5,659.74 m²

건축면적 : 2,728.15 m²

연면적 : 9,529.42 m²

규모 : 지하 1층 · 지상 3층

설계담당 : 최 주균

● 1층평면도

- ① - 상품진열대
- ② - 연못
- ③ - 매장
- ④ - 화단
- ⑤ - 방공실

● 2층평면도

- ① - 매장
- ② - 상품진열대
- ③ - 발코니

● 3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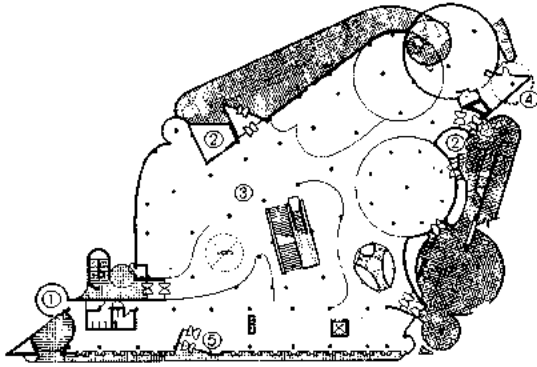
- ① - 매장
- ② - 상품진열대

●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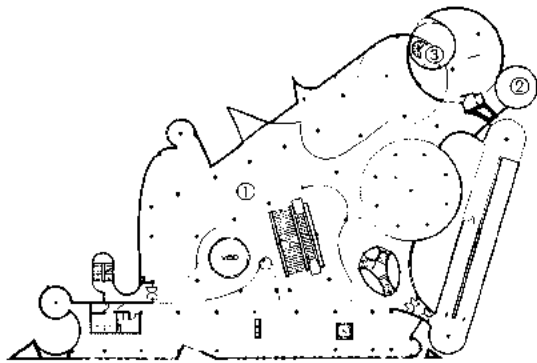
- ① - 물탱크실
- ② - 매상
- ③ - 기계실
- ④ - 상품진열대

●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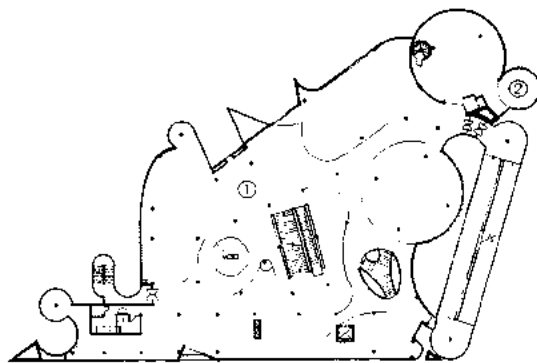
- ① - 매장
- ② - 현관
- ③ - 지하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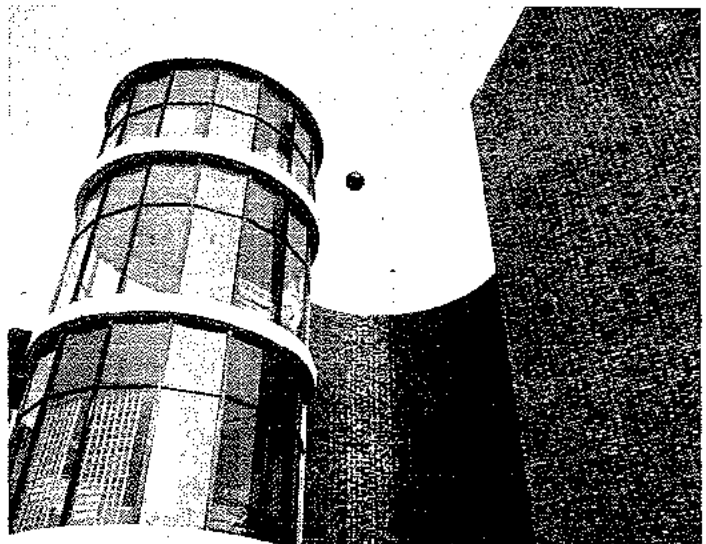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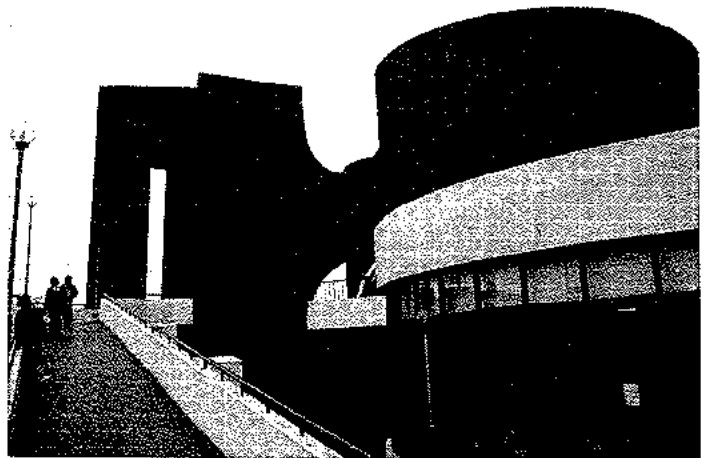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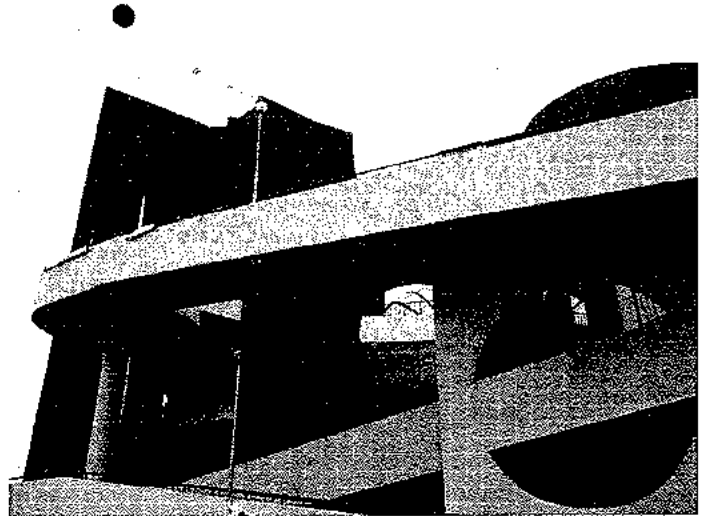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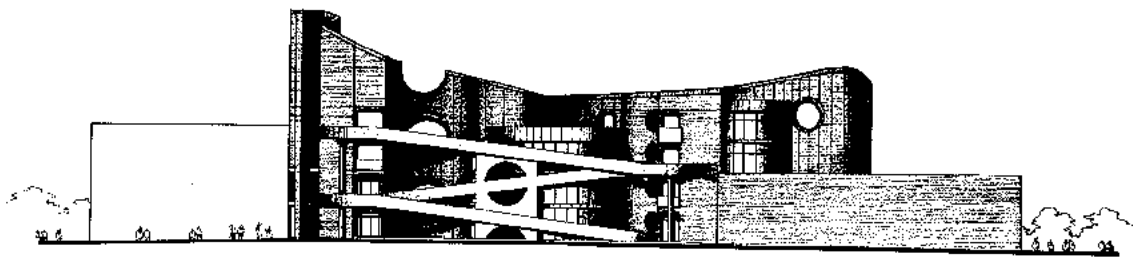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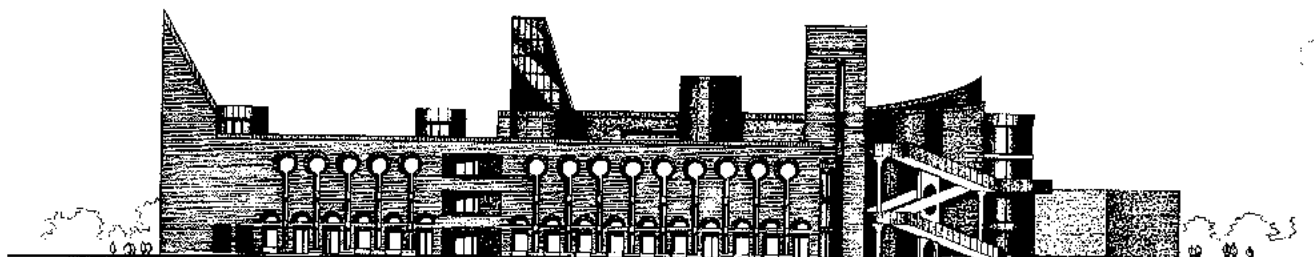


3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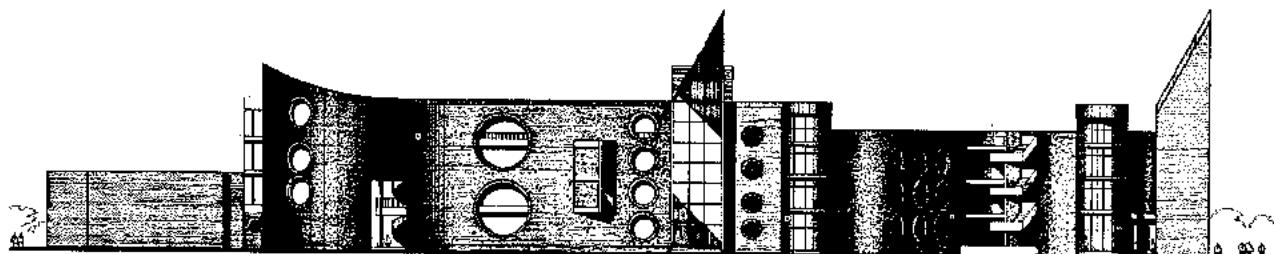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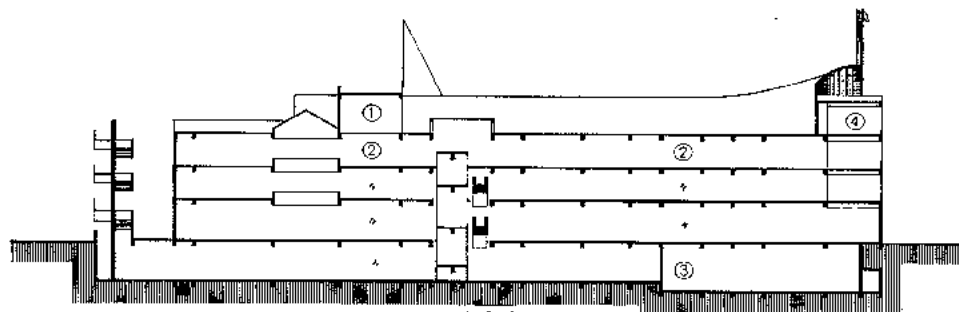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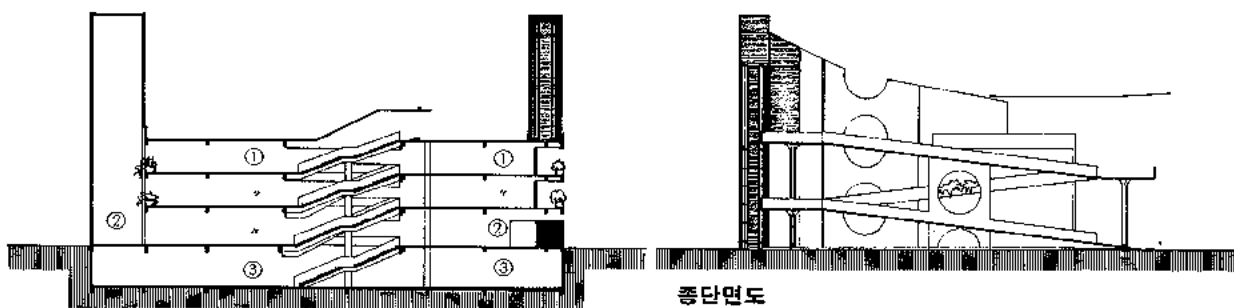
배면도



배면도



횡단면도



종단면도

連載:

韓國建築의 絶對特殊性에 関한 考察〔I〕

朴彦坤 — 弘益大學校工科大学建築學科 副教授

A STUDY OF UNIQUE CHARACTERISTICS OF KOREAN ARCHITECTURE

Park, Eon Kon — Hong Ik University Prof.

I. 外部空間 — 마당

1. 머리말

現代建築과 都市에서 심각하게 두각되고 있는 문제점이 오픈 스페이스의 구성이다. 건물과 인간, 도시와 인구, 유통과 사회조직 등의 상태가 유기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그 활동의 体系性を 필요로 함과 동시에 건축과 도시에서는, 건축물자체 이상으로 外部空間의 중요성이 실감을 주는 것이 현실 사회의 실정이다.

우리의 생활 속에 전통적으로 존재 하였던 〈마당〉은, 동양화에서 그려지는 소재와 함께 그려지지 않는 餘白이 가지는 중요성만큼 그 意義를 지니고 있다.

所有權意識・個人性保護 등으로 우리의 주택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울타리를 만들어 싸리문・매문・숫을대문 등이 만들어 지면서, 건물과 함께 오픈 스페이스인 마당을 적절히 구성해 왔던 것이다. 차츰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고유의 마당개념을 고수할 수 있는 여유가 사라져가고 있는데, 역으로 그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

近年에는 造景學이 건축과 도시에서 커다란 學問性을 띠고 주목을 끌게 된 것도, 바로 외부공간의 환경조성으로서 그 활용도가 생활과 인간, 그리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기본 바탕이라는 인식에서일 것이다. 여기에서

는 우리나라의 특이한 傳統的空間이 되는 마당을 고찰하면서 우리의 오픈 스페이스에 대해 새삼 알아보고자 한다.

2. 機能과 種類

건축물에 의해서 형성되는 마당과 儀式이나 특수 기능을 위해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마당 등, 2개의 형성 과정이 있겠다. 마당을 건축에서부터 고찰하면, 외부공간으로서 건물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며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건물을 보호하는 등, 마당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초가삼간에서부터 궁전・사찰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필수적으로 마당공간이 만들어져, 건물과 함께 서로 공존하면서 상호기능이 효과적으로 이용되어져 왔다. 마당공간을 생활과 건축을 중심으로 하여 구분해 보면

- ① 통로를 위한 마당
- ② 채광이나 통풍을 위한 마당
- ③ 작업・생산을 위한 마당
- ④ 공간을 구분하기 위한 마당
- ⑤ 정서를 조성하기 위한 마당
- ⑥ 의식을 위한 마당
- ⑦ 行政・公務를 위한 마당

등으로 구별할 수 있겠다. 편의상 우리나라의 주거를 중심으로 한 마당을 보자. 마을의 外部空間要素는 背山臨

川으로 자리잡은 산과 강, 그리고 논과 밭이 기본이 되며, 마을 내에서는 마을마당・마을우물공간・마을작업공간 등이 2차적인 외부공간이 되고 3차적으로는 주거 단위 내의 마당공간이 구성된다. 民家の 외부공간인 마당 구성을 바깥마당・평랑마당・사당마당・중간마당・안마당・뒷마당 등, 건물의 채(樓)나 기준이 되는 대상물, 기능의 명칭을 마당명으로 칭하고 있다.

궁전에서든 行政儀式을 위한 마당이 구성되고 사찰에서는 종교의식을 위해 마당이 형성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공간 배치는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보다는 건물에 따른 외부공간 면적이 월등하게 많다. 이같은 외부공간이 우리나라 특유의 마당으로 형성됨은 민족성에 그 원인이 있겠다.

3. 朝鮮朝의 住宅마당

우리나라와 같이 건물의 외부공간으로서 마당을 가지는 예는 그리 찾아보기 쉽지 않다. 마당을 싸고 있는 담장에 장식이 있고, 물이 빠지도록 배수구와 물받이, 그리고 더딤돌과 빗그루와 식수와 화초가 있으면 정원으로 불리우기 쉽다. 우리나라의 마당이란 정원과는 또 다른 물리적 특징과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평평하고 단단하게 구



민가의 마당 (안동)



창덕궁내 연경당 사랑마당



1. 바깥마당
2. 사랑마당
3. 중 마당
4. 안 마당



그림 1 함양군 지곡면 정 병호씨댁의 마당공간

획된 마당은 상류신분의 주택 내에서, 정원이 아닌 빈 공간으로서 떳떳하게 존재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조선시대의 신분제급에서 유교사상이 철저했던 兩班家에서는, 양반의 신분으로 호미나 삼을 들고 흙을 만지는 직접적인 작업을 기피하여 글을 읽는 학문을 본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특히 사랑마당은 권위의식에서 평면적 공간을 강조했다.

둘째, 유교와 도학사상은 동수지리를 추종하여 자연환경에 순응해야 하며 地勢를 人工化함을 금물로 여겨온 것이다. 주어진 환경에 동화함을 원칙으로 하여 하늘과 땅의 可視權을 내부에서 즐겼으며, 좁은 마당을 가공하여 세부적인 정원화를 하지 않았다.

셋째, 담장·배수로·기단·제단·굴뚝 등, 농촌민가의 마당구성과는 다른 기법으로 시설되어 있으나, 직선적이고 정연한 것이 바로 사대부의 생활신조의 반영이라 하겠다.

네째, 농경을 생활로 하는 농촌의 민가에서는 작업마당이 필요한데 반해, 대가족단위로 구성된 가부장제하의 양반주택에서는 관혼상제의 儀式空間으로 보다 넓은 마당을 필요로 했다.

다섯째, 조선의 후기에 도시양반주택공간이 철저하게 구분되는 행랑채·

사랑채·안채·별채 등을, 마당으로서 각 공간을 차단시키는 형태로도 이용되었다. 각 공간의 독립성은 곧 안전성이며, 이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고안됨은 당시의 사회 정세와 관련이 있겠다.

여섯째, 상류신분의 주택도 결국 농경의 작업이 행해짐으로 인해 거추장스러운 장식보다는 편편하고 단순한 마당을 필요로 했다.

이같은 조건으로 형성된 마당은 정원만이 아닌, 정원을 포함한 마당이라 하겠다. 민가 작업마당의 현실성보다는 정신적 의미를 강조한 오픈스페이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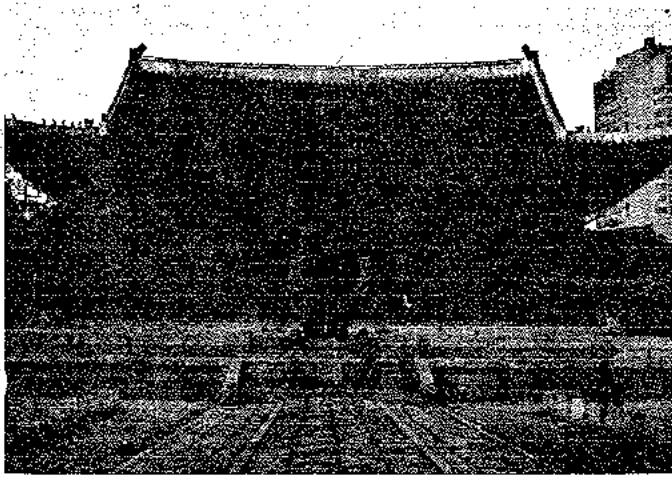
경북 함양군 지곡면 정 병호씨댁(그림1)은 집 밖의 바깥마당을 통해서 대문간으로 들어서면 사랑채를 마주보게 되고 사랑마당에 서게 된다. 사랑마당은 사랑채와 담장으로 둘러싸여 농가다운 작업마당을 만들고 있으나 상당히 정원화된 마당이다. 중문을 통해 진입하면 조그만 중문마당이 형성되어 안채와의 이중적인 차단 공간 기능을 만들어준 안식구들의 보호 또는 폐쇄성의 기능을 담당하는 셈이 된다.

계속 방향을 바꾸어 진행하면 안채에 의해 형성된 안마당에 들게 된다. 안채의 채광과 통풍을 돕는 안마당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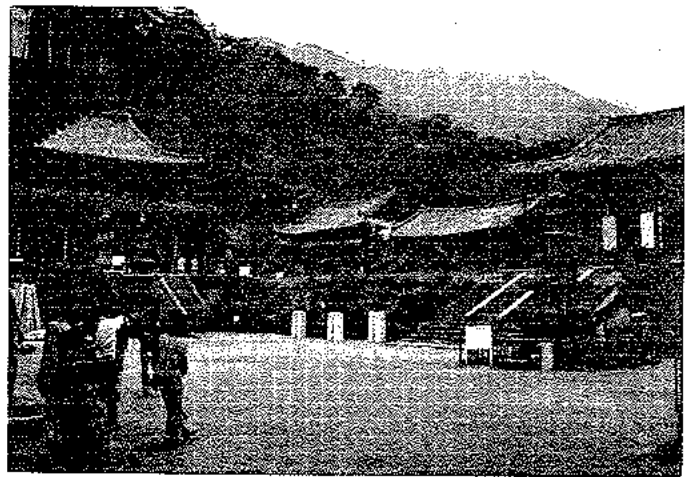
住居活動 환경을 쾌적하게 해주고 있다. 이들 마당은 각 공간을 철저하게 구분해 주면서, 상대하고 있는 건물에 적응하도록 마당이 계획되어 겹고 건물 이상으로 외부공간인 마당의 배려도를 충분히 이해시켜주고 있는 주택이다. 대개 정씨택보다 규모가 작은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농가에서는 통로와 작업, 그리고 위생환경을 중심으로 안채·사랑채·부속건물이 안마당을 구성해 준다. 농가에서의 마당은 다목적 외부공간으로서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은, 정원이 될 수 없는 생산수단의 공간이자 여유가 만끽한 비경제성 공간으로도 해석되는 점 등이 바로 우리 민족적인 마당의 특징이라 하겠다.

4. 儀式마당

궁전의 正殿은 왕을 중심으로 하는 상·하계급이 절대적으로 표현되고 위엄과 권위성이 농후한 의식공간이다. 개개인의 계급차에 의해 서로간의 거리간격이 주어지고 王과 臣의 엄격한 분리로 장엄한 마당을 만든다. 중국에서도 같은 구성을 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장군 또는 영주소유에는 외부공간형성의 여유가 없이 건축됨이 보통이며, 宮(천황 또는 장군)에서의 외부공간은 초목과 불·물 등으로서 정



경복궁 중화전 마당



화엄사 탐마당

원을 중점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와 같은 평평하고 눈에 띄는 수작성의 가공이 없는 마당을 일본인은 두지 않았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마당의 엄격한 계획성과 장엄한 분위기를 宗廟正殿에서 느낄 수 있다. (그림 2).

이 건물은 朝鮮歷代의 왕과 왕비의 神位를 봉안한 의식에 맞추어 계획한 건물이다. 正殿正面 25間, 측면 4間은 일반건물보다 방향이 깊고 측면이 정면에 비해 얇다. 25間과 南端에 月廊을 합친 길이를 대상으로 하여 만들어진 마당은 의식규모 및 사용빈도에서, 그리고 계획에 앞서 宮殿의 正殿과 왕과 왕비를 의식했을 것이다. 화려성을 피한 건물양식, 그리고 회랑 대신 담으로 둘러치고 마당바닥은 돌을 깔아 엄숙함이 감돈다.

정원이라는 자연가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지반조성으로의 높낮음과 넓다란 장방형 돌의 자연스러운 배열, 직선적인 전체계획만이 마당의 전부이다. 민가의 마당에서 상류주택의 마당, 궁전의 마당, 종묘의 마당 등, 이것들이 모두 한국의 특수한 外部空間이 되겠다.

儀式에서 형성되는 공간은 어느 나라나 종교에서 찾아낼 수 있다. 종교의식이 결국 建物構成을 결정지었으며 고대로부터 儀式建築이 전반 건축양식의 길잡이를 해왔다고 본다. 동양의 漢文化圈에서는 불교가 들어와 새로운 건축분야를 만들었으나 기존의 木造建築에 중국의 왕궁이 중심이 된 건축양식을 불교에 응용, 적용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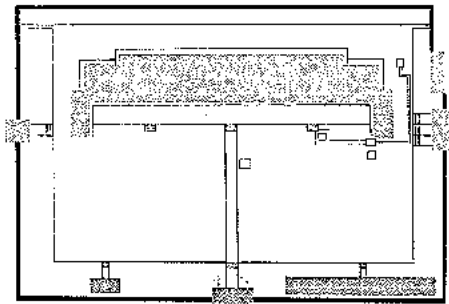


그림 2. 宗廟正殿과 외부공간

같은 불교와 같은 건축양식이건만 外部空間構成方法이 같아질 수는 없다. 현존하는 불교의식과 신도와 사찰과의 위치 중(僧)의 위치 등이 결국 서로 다른 외부공간을 연출시키게 한 것이다. 佛像, 즉 堂內空間에서 진행되는 의식에 못지않게 그대의 伽藍에서는 승려가 봉안된 탐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때, 불상의 출현 이전에는 상당한 의식이 외부공간 즉, 마당에서 이루어졌으리라고 보며, 우리나라의 古刹들은 바로 이 塔마당의 발전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도 고대 초기불교에서는 거대한 木塔이 있었으나 石塔으로 변화되어 본래 塔內部空間이 없어지게 되었다.

인도의 STUPA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伽藍이라면 불교의식의 상당수가 외부공간에서 행해졌을 것으로 간주된다. 석탑의 분화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마당의 이용도가 많았던 것이다.

신라시대 興輪寺에서 행해졌던 福會라는 의식을 살펴보면 本尊의 우측으로부터 좌측으로 돌며 마당으로 나가 佛塔을 중심으로 같은 방법으로 도는데, 이때 승려와 신도의 배치는 주지승이 제일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승려, 신도들이 차례로 서게되며 아무리 인원수가 많아도 모두

따라 돌게 되어 있다. 현재는 本尊의 주위를 도는 의식이 차츰 사라지고 불당 앞 탐마당에서의 탐돌이는 행해지고 있다.

그 외에도 직접 또는 간접의 종교성 의식이 사찰의 마당에서 이루어져 오고 있음은, 본연의 종교의식을 위해 마당의 구성을 필요로 했던 종교적 공통성이라 할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에서는 石塔文化와 함께 사찰의 마당이 더욱 발전되었던 것이다.

5. 맺음말

現代社會에서 우리의 마당의 가치는 인정이 되고 있으나 그 응용이 어려워진 실정이다. 동수지리나 도참설에 의해 택지와 向을 잡음에 따라 자연히 마당은 좋은 환경을 가지고 되면서 우리의 마당은 다른 나라와 같이 자연을 옮겨 놓은 듯한 정원화를 하지 않았다.

명승고적이 되는 사찰의 마당이 스님의 취미에 의해 잔디와 꽃·나무가 심어지고, 보도를 만들어 돌을 깔아 놓고 즐기는 塔마당에서 우리는 그들의 지혜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현상은 꼭 사찰마당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자연을 동경하는 마음의 영향이 住居內는 물론 곳곳에 정원화를 피하여 마당의 순수한 개념을 상실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비일비재하다. 현대의 조경학이란 정원화라기보다 마당화된 外部空間性이 크게 부각되어야 우리의 전통성을 계승받고 고수하는 건축 분야가 될 것이다.

連載：建築物の 断熱施工法〔完〕

李 鍾 寬 (會員・한국 건축기술 연구소)

제 9 절 건축법규로 본 건축물 열손실방지를 위한 조치

1. 주거용 건축물(주택 및 의료 시설, 숙박시설 기타 유사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외벽(난방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실의 외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에서 정하는 두께 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하여 단열시공하거나 열관류율의 값이 $0.9 \text{ Kcal/m}^2\text{h}^\circ\text{C}$ 이하가 되는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주거용 건축물이외의 건축물의 외벽은 별표에서 정하는 두께 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하여 단열시공하거나 열관류율의 값이 $1.8 \text{ Kcal/m}^2\text{h}^\circ\text{C}$ 이하가 되는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최상층의 반사(난방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실의 반사를 제외한다.)는 별표에서 정하는 두께 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하여 단열시공하거나 열관류율의 값이 $0.9 \text{ Kcal/m}^2\text{h}^\circ\text{C}$ 이하가 되는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4. 난방을 필요로 하는 최하층의 바닥은 별표에서 정하는 두께 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하여 단열시공하거나 열관류율의 값이 $1.5 \text{ Kcal/m}^2\text{h}^\circ\text{C}$ 이하가 되는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5. 주거용 건축의 외기에 면하는 창(난방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실의 창을 제외한다.)은 이중창으로 하거나 복층유리(페어글라스)로 시공하여야 한다.

6. 별 표

가. 별표에서 규정한 단열재로서 예시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대표적 단열재료를 지칭한 것은 아니며 동 규정중의 두께를 각 재료별 열전도율로 나누었을 때에는 제 25조 제 1호 및 제 25조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열관류율의 값이 되는 것임.

나. 질석, 구조토 등과 같이 별표상으로 재료명이 예시되어 있지 않은 단열재로서 동력자원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열전도저항의 값이 $0.8 \text{ m}^2\text{h}^\circ\text{C}/\text{Kcal}$ 이상이 되는 두께일 때는 명시된 재료와 같이 동일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다. 동력자원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은 단열재에 대하여는 포장단위별 또는 중량별 포장단위로 두께, 비중 또는 밀도, 열

전도율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열전도저항의 값을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임.

시멘트물탈 및 연탄재물탈 열전도율 (Kcal/mh°C)

배합비별종류	시멘트물탈	연탄재물탈	비 고
1 : 5	0.621 0.704 0.692	0.375 0.402 0.321	1. 시멘트 물탈 (모래+시멘트) 모래 : 표준압축 사로사용
평 균	0.672	0.366	
1 : 6	0.673 0.602 0.639	0.349 0.326 0.350	2. 연탄재물탈(시 멘트+연탄재) 물탈의 연탄재
평 균	0.638	0.340	입도 : 표준체
1 : 7	0.517 0.595 0.523	0.330 0.323 0.312	No. 4 (체준크기 5mm) 통과물 사용 3. 측정온도 20°C
평 균	0.545	0.324	4. 배합비 = 중량비

대한주택공사측정

연탄재물탈 단열효과 측정결과

배합비(용적비)	(열전도율(Kcal/mh°C))	열관류율(Kcal/mh°C)
1 : 5	0.366	2.04
1 : 6	0.337	1.96
1 : 7	0.324	1.90

대한주택공사측정(두께가 10cm일때)

제10절 난방도일

어느 지방의 연료소비량과 그 지방의 추위의 정도를 알기 위하여 도일(Degreedays)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도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어느날의 평

균외기온이 5℃이고 실내온이 16℃로 난방되고 있다고 할 때 실내기온과 외기온의 차는 11℃가 되는 것이다. 이때 그날의 도일은 11℃day인 것이다. 이와같이 하여 매일의 값을 난방기간중에 걸쳐서 가산한 것을 그 지방의 도일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을 난방도일수(Number of heating degree-days)라고하는 것이다. 이것을 H. D. 혹은 D라고 약기하는 것이다. 지금 실내 요소 기온을 T_i , 외기온의 일평균치를 T_o 라고 하면 $T_i > T_o$ 이며

$$DT_i - T_o = \sum (T_i - T_o) \text{ [}^\circ\text{C day]}$$

로 표기되는 것이다. T_o 가 T_i 이하의 날을 난방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난방일의 Total을 난방도수(Z)라고 한다. 그러므로 어느 지방의 외기온의 1년간의 변화도를 그리고 그 난방도일을 구하면 그림 1 (a)의 사선면적으로 표시되는 것이다. 그리고 외기온이 실내의 소요기온 T_i 보다 낮은 어느 일정한 온도 T_o' 이하로 강하한 날을 난방일이라고 하면 T_o 를 난방한계온도라고 부르며 또한 실내의 소요기온을 T_i 라고 하면 난방도일은 그림 1 (b)의 사선면적으로 표시되어 $T_i > T_o' > T_o$ 이며 난방도일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DT_i - T_o' = \sum (T_o' - T_o) + (T_i - T_o') Z \text{ [}^\circ\text{C day]}$$

단, Z는 외기온 T_o 가 난방한계온도 T_o' 이하의 일수로 하는 것이다. 즉, 난방은 T_o' 이하에 달할때 하니까 Z는 난방일수가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난방도일을 표시하는 계산방법에는 두가지의 종류가 있는 것이다. 전의 식에 의하면 외기온이 T_i 이하의 날에 실내의 일평균기온이 T_i 로 된 때까지 난방하는 것을 뜻하며 후의 식에 의하면 외기온이 T_o' 이하의 날에 실내기온이 T_i 로 되게 난방을 하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어느 것이나 T_i 와 T_o' 를 몇도로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다른 것이다.

여기에서 외국의 몇개 실례를 들어 참고로 해볼까 하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T_o' 는 집회장이나 큰 홀이나 공장들에서 10℃, 주택이나 사무실등에서는 $T_i=18-20^\circ\text{C}$, T_o' 를 12℃로 하고 후식에서 난방도일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미국에서는 주로 전의 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T_i=65^\circ\text{F}$ (18.3℃)를 취한 것을 표준난방도일(Normal heating degree-days)라고 하지만 공장이나 식고등의 건물에서는 전의식에서 $T_i=55^\circ\text{F}$ (12.8℃) 및 45°F (7.2℃)로 한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T_i=15-18^\circ\text{C}$ 를 취하는 있고 $T_o'=10$ 10℃정도일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T_i 가 낮으면 자연히 T_o' 도 이에 따라 낮게 취하고 있으며 M. Hottingeu씨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추천하고 있는 것이다.

$T_i(^{\circ}\text{C})$	20	18	15	12
$T_o'(^{\circ}\text{C})$	12	10	9	8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실내기온 T_i 를 몇도로 정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여기에 대한 실제 실험에 의한 한국인의 생리에 맞는 실내기온의 적용범위의 결정도 중요한 연구과제인 것으로 시로되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교수인 김 효경박사는 1960-1969년에 걸쳐서 $T_i=18^\circ\text{C}$ 를 기준으로 한 Heating degreedays와 $T_i=14^\circ\text{C}$ 를 기준으로 하는 난방도일의 표를 발표한 것이 있다. 그러나 여

기에서 T_i 의 적용범위에 대하여는 확정짓지 않고 있었으며 여기에 대한 연구 또한 기대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난방도일의 대소는 연간의 난방용 연료의 소비량에 비례되고 있으며 또한 각지방의 한냉도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원래 기온 T_o 에는 년편차(年編差)가 있으니까 각지의 표준기온에서 구한 난방도일과 어느 연도 어느 월별의 난방도일과 비교함으로써 그해의 그달의 추위의 정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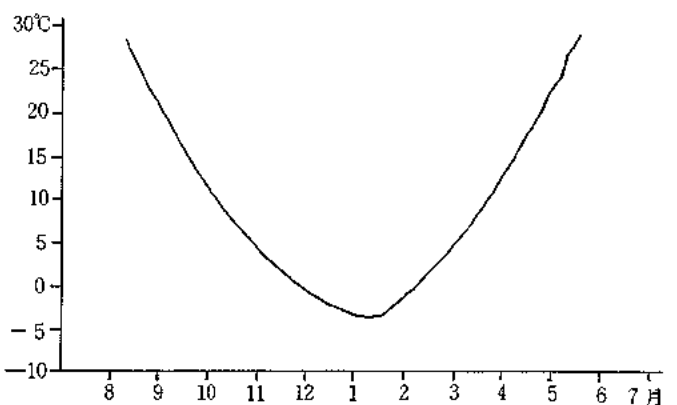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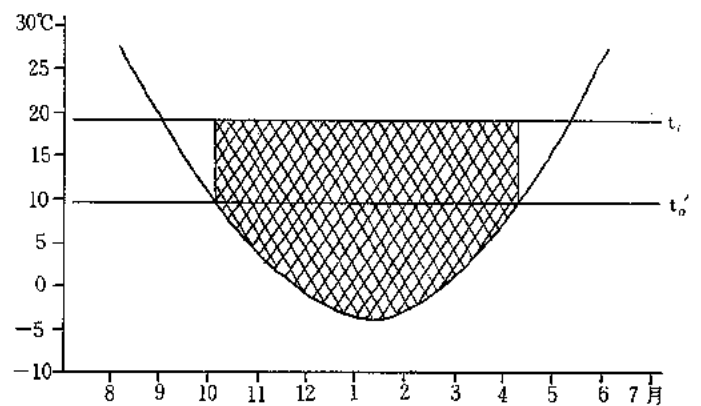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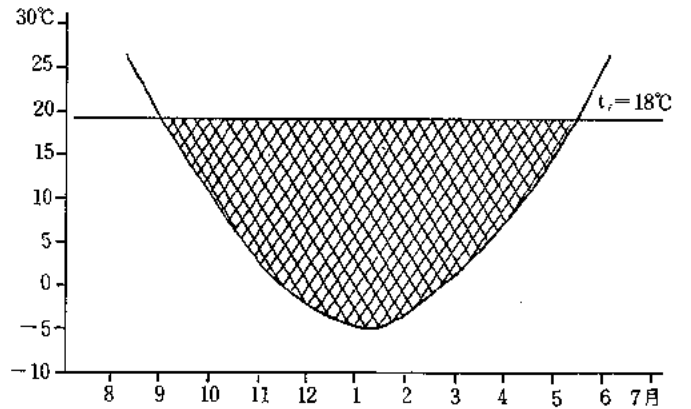


그림 1. 난방도일

그리고 난방도일의 표시방법은 아래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난방도일을 D로 표시하고 난방도일을 $DT_i - T_o'$ 로 쓴다고 하면 $T_i=18^\circ\text{C}$, $T_o'=10^\circ\text{C}$ 인때는 D 18-10이라고 표시하는 것이다. 그림 1과 같은 경우는 D 18-18이라고 쓰는 것이다. 더욱이 T_o 의 값으로서 일평균가, 반구평균치, 그리고 월평균치를 사용할 때의 난방도일을 각각 D' , D'' 그리고 D''' 이라고 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T_i=15^\circ\text{C}$ 의 예를 들면 월평균치의 $T_o'=9^\circ\text{C}$ 인때의 난방도일은 D'''_{15-9} 라고 표시하는 것이다.

제11절 단열부위의 계산

1. 열전도율 (Thermal Conductivity)

각 단열재마다 일정수치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서 단위 두께에 대하여 벽체의 양측 온도차가 1℃일때마다 단위시간에 얼마만큼의 열이 흘렀느냐의 비율을 표시하는 정도를 말한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식과 같으며,

$$\lambda = \frac{Q \cdot d}{(\theta_1 - \theta_2) \cdot F \cdot t}$$

단, λ : 열전도율 (Kcal/mh℃) d : 벽체의 두께 (m)

F : 벽체의 표면적 (m²) t : 시간 (hour)

Q : 열량 (Kcal) $\theta_1 - \theta_2$: 온도차 (℃)

건축재료별 열전도율은 다음표와 같다.

건축재료별 열전도율

번호	재 로	밀 도 (kg/m ³)	열전도 율 (Kcal/ mh℃)	번호	재 로	밀 도 (kg/m ³)	열전도 율 (Kcal/ mh℃)
1	구 리	8,300	330	35	아스팔트루팅	1,020	0.09
2	알 미 늄	2,700	204	36	아스팔트타일	1,830	0.28
3	황 동	8,520	83	37	리 늄 례	1,200	0.16
4	철 (강 철)	7,850	41	38	고 무 타 일	1,780	0.34
5	스테인레스강		22	39	베 크 라이 트	1,270	0.20
6	납	11,370	30	40	면 전 설 유 관	239	0.12
7	대 리 석	2,670	1.35	41	반 경 질 섬 유 관	494	0.12
8	화 강 압	2,840	1.87	42	경 질 섬 유 관	940	0.15
9	모 래	1,274	0.74	43	두 께 운 종 이	700	0.18
10	자갈	1,850	0.32	44	다 나 미	229	0.09
11	흙 (4 절)	1,622	0.92	45	모 직 토	320	0.11
12	흙 (적 토)		0.53	46	탄산마그네시아	233	0.07
13	흙 (점 토)	1,217	0.61	47	합 판	550	0.14
14	보통콘크리트	2,300	1.40	48	경 석	550	0.09
15	경량콘크리트	1,890	0.45	49	선 더		0.04
16	발포콘크리트	710	0.15	50	퍼 역 세 등	126	0.06
17	신어콘크리트	1,560	0.69	51	불 밤	200	0.11
18	모 르 더	2,020	1.20	52	양 모	140	0.10
19	회 반 죽	1,320	0.63	53	대 갯 망 (나왕)	131	0.062
20	물 라 스 터	1,940	0.53	54	대 갯 밥	921	0.24
21	벽 토 (흙벽)	1,280	0.64	55	기포콘크리트	710	0.16
22	벽 토 (흙벽)	1,390	0.51	56	기포콘크리트	350	0.075
23	석고, 석고보보드	863	0.18	57	질	140	0.043
24	시멘트벽돌		1.20	58	유 리 섬 유	200	0.032
25	8 인 치 블 록		1.18	59	석 면 압 면	200	0.038
26	석면, 시멘트판	1,680	1.09	60	폴리스티렌폼	50	0.033
27	프렉시블보보드		0.53	61	염화비닐폼	80	0.033
28	목조시멘트판	420	0.13	62	탄화코르크판	180	0.035
29	석 면 판	1,150	0.70	63	외라이트보온판	150	0.060
30	타 일	2,280	1.10	64	질 석 보 르 더	901	0.064
31	붉 은 벽 돌	1,660	0.67	65	석 면 홍 칠	250	0.036
32	내 화 벽 돌	1,950	1.00	66	규 산 칼 숯	200	0.042
33	창 유 리	2,540	0.67	67	규 조 토	400	0.081
34	아 스 팔 트	2,230	0.63				

참고서적: 열손실방지법 위한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연구
46p~50p. (전설부) 1978.

2. 열전달율 (Heat Transfer Coefficient)

공기층과 같은 유체와 고체사이의 열의 이동에 관한 비율의 정도를 말하며, 보통 외표면 열전달율 α_o 와 내표면 열전달율 α_i 의 값으로 구분 표시되며 그 값은 다음과 같다.

외표면 열전달율 (α_o)

α_o	20.0 (Kcal/m ² h℃)
$\gamma_o (1/\alpha_o)$	0.05 (m ² h℃/Kcal)

단, γ_o : 외표면 열전달저항

내표면 열전달율 (α_i)

수 직 면	α_i	8.0 (Kcal/m ² h℃)
	γ_i	0.125 (m ² h℃/Kcal)
수 평 면 (상부)	α_i	9.5 (Kcal/m ² h℃)
	γ_i	0.105 (m ² h℃/Kcal)
수 평 면 (하부)	α_i	6.0 (Kcal/m ² h℃)
	γ_i	0.167 (m ² h℃/Kcal)

단, γ_i : 내표면 열전달 저항

3. 열관류율 (Total Heat Transmission Coefficient)

건축물의 벽체, 천정, 바닥면등과 같은 고체를 통하여 공기층에서 공기층으로 열이 전하여지는 비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단위시간에 1평방미터의 단면적을 1℃의 온도차가 있을 때에 흐르는 열량을 말한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식과 같다.

$$K = \frac{1}{\frac{1}{\alpha_o} + \frac{d_1}{\lambda_1} + \frac{d_2}{\lambda_2} + \dots + \frac{d_n}{\lambda_n} + \frac{1}{\alpha_i}}$$

$$= \frac{1}{\gamma_o + \gamma_1 + \gamma_2 + \dots + \gamma_n + \gamma_i} = \frac{1}{R}$$

단, α_o : 외표면 열전달율 (Kcal/m²h℃)

α_i : 내표면 열전달율 (Kcal/m²h℃)

$d_1, d_2, \dots, d_n$: 각종 재료의 두께 (m)

$\lambda_1, \lambda_2, \dots, \lambda_n$: 각종 재료의 열전도율 (Kcal/mh℃)

$\lambda_1, \gamma_2, \dots, \gamma_n$: 각종 재료의 열전도저항 (m²h℃/Kcal)

R : 열관류저항 (m²h℃/Kcal)

4. 열전도저항 (Resistances of Heat Conduction)

각 단열재내부에서 어느 일정지점으로부터 다른 일정지점까지 열량이 통과할 때 이 통과량에 대한 저항의 정도를 말한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식과 같다.

$$\lambda = \frac{d}{\lambda}$$

단, λ : 단열재료별 열전도저항 (m²h℃/Kcal)

d : 각 단열재의 두께 (m)

λ : 단열재료별 열전도율 (Kcal/m²h℃)

5. 공기층의 열전도저항

건축물의 벽체내부에 공기층을 갖는 경우(예: 벽돌 조적식 공간쌓기등)의 열전도저항은 그 공기층의 두께보다는 밀폐의 정도로서 결정하는 것이며, 완전밀폐(페어글라스등의 진공층)의 경우 0.18m²h℃/Kcal, 반밀폐(통상의 건축벽체구조등)의 경우 0.09m²h℃/Kcal로 하여 계산한다.

제12절 FHA의 보온 권고사항

단독주택에 있어 보온에 관한 미국 F.H.A의 권고사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거실의 총 손실열량은 바닥면적(ft^2) 당 50Btu/hr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전열을 사용할 때는 손실열량이 바닥면적(ft^2) 당 40Btu/hr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나) 천정상부의 난방되지 않은 부분으로 유출되는 v 치는 0.1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만약 천정을 통한 Panel Heating 일때는 0.06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자봉구배가 3/12이하일 때는 Blowing 혹은 Pouring Type의 보온재를 사용할 수 없다.

다) 벽 (문과 창문포함)을 통한 총 열손실은 바닥면적(ft^2) 당 30Btu/hr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격간풍(隔間風)에 의한 열손실제외)

라) 바닥을 통한 총 열손실은 15Btu/hr· ft^2 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1년 난방도일(度日)($^{\circ}F \cdot Day$)이 2,800을 넘지 않거나 월난방도일($^{\circ}F \cdot Day$)이 650을 넘지않으면 보온재는 생략할 수 있다.

마) Crawl Space Plenum

Perimeter wall은 Return Plenum으로서 공기온도를 70°F ($-21^{\circ}C$) Supply Plenum으로 110°F ($=43^{\circ}C$)를 정할때 최대 열손실이 벽길이(ft)당 35Btu/hr이하가 되도록 보온하여야 한다.

경제적 보온두께의 산정

보온두께 t 가 증대하면 방산열량 q 는 다음과 같이 감소되는 동시에 보온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증대한다. 그럼으로 연간 방산열량가격과 보온공사비 상각액과의 화가 최소가 되는 두께를 고려하면 그 두께가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두께가 될 수 있다.

$$\text{즉 } X = A \cdot t \cdot N + B \cdot q \cdot h$$

여기서 X 는 연간의 총 지출

$A \cdot t \cdot N$ 은 보온공사비 연간상각액으로

A : 보온공사비 원/ m^2

년이를 n , 상각년수는 n 로서 표시하면

$$N = \frac{n(1+n)m}{(1+n)^m - 1}$$

제13절 ASHRAE 규격 90-75

머리말

건축물의 설계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원의 선택에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 여기에 제시된 규정에는 에너지원의 종류와 관련하여 이를 유효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건축건물의 설계에 관하여 설명한다.

ASHRAE는 연간 연료사용량이나,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에너지자원의 결정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려 하고 있는데, 현재 ASHRAE 규격 90위원회에는 이 문제를 취급하는 분과가 있어서 이것이 완성되면 제안할 것이다.

ASHRAE는 통상적인 운영을 탈피하여 기획위원회를 해산하고 해설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를 밝든지, 건축건물의 설계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사료되는 에너지절약문제에 있어서 기획위원회의 일부를 존속시키고 해

설위원회와 협동하기로 하였다. 이는 질의응답을 원활히하여 이 규격이 한층 실용적으로 되도록 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목 적

이 규격은 신축건물의 설계에 있어서 에너지를 유효하게 이용하기 위한 설계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 규격의 제조건은, 신축건물에 있어서 단열성이 높고 기밀성이 좋은 건물의 각의 설계와 더불어, 에너지를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 전기, 서비스 및 조명방식이나 기기의 설계선택에 쓰인다.

이 규격은 에너지를 유효하게 이용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과 기술을, 설계자가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다. 제10장과 제11장 또는 그중 어느 것에 지시된대로 특정조건에 따른 설계법을 사용하면 에너지를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규격의 의도는 신축 건물설계에의 사용이다. 또, 공사 착공전의 단계에 설계시방서, 도면, 계산서를 평가, 분석하여 이 규격에 제시된 조건들이 지켜지는지를 관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 규격은 인명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한, 어떠한 안전조건도 삭감된 것은 없다.

2. 적용범위

이 규격에서는 신축건물의 설계시 건물외각, 난방, 환기, 공조, 급탕, 전기배선 및 조명방식과 기계에 대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한다.

이 규격은 회관, 교육시설, 사무소건축, 상업건축, 공공건축, 창고, 주택, 공장의 사무실이나 거실들의 건물의 신축에 적용된다. 특기할 것은, 이 규격에서 사용되는 "건물"이라는 용어에는 보일러실이나 공장생산건축을 포함한다.

건물 또는 그 일부의 전 에너지사용량 최대치가 상면적 1 ft^2 당 1W (3.4Btu/ $ft^2 \cdot h$, 10.8W/ $K^{\circ}m^2$) 미만의 것, 또는 냉·난방시설이 없는 건물은 이 규격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설계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특수건물 또는 그 일부는 이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적용 제외사항은 이 규격의 각장에 명기한다.

이 규격에서는 건물의 운전, 보수, 사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3. 정 의

(생 략)

4. 건물외각

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신축건물외각의 열적설계의 최저조건을 설정한다. 여기나오는 식, 그림, 표는 이를 설명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건물설계에 시스템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이 규격의 제10장 및 11장 또는 그 어느 쪽을 적용한다.

총 칙

이 장의 목적은 에너지절약에 관한 건물외각구조의 최저조건을 부여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최저조건이란 에너지절약의 최저기준이 아니며 또 것처럼 해석해서도 안된다. 4.3은 2층이하의 호텔, 모텔을 포함한 1-2세대용 주택과 저층 점

한주택에 적용된다. 4.4는 4.3에서 언급되지 않는 모든 건물에 적용된다. 4.5는 전체의 건물에 적용된다.

여기에 정해진 규격 외에 설계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1) 건물의 방위
- 2) 건물의 형태
- 3) 건물의 어스펙트비(길이와 폭의 비)
- 4) 연상면적에 대한 층수
- 5) 건물의 열용량
- 6) 건물의 표면의 색
- 7) 인접구조물, 주위의 표면, 식물에 의한 그림자나 반사
- 8) 자연환기
- 9) 풍향과 풍속

ASHRAE Handbook of Fundamentals, 1972의 17-22장에 기술되어 있는 계산순서와 내용은 상기항목을 평가하는 지침으로 사용된다.

외벽의 총벽면적은 전체의 불투명 벽면적(기초의 벽, 정두리 벽부분등을 포함), 창면적(새시포함), 문면적을 합제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표면은 외기에 노출되고 난방이나 냉방된 공간을 포함한다.

지붕구조는 외각으로서의 지붕과 천정을 일체로하여 생각한다. 냉·난방을 할 경우 이를 통해서 건물의 열손실이나 열취득이 일어난다. 지붕구조의 전면적은 일체화된 구성요소의 실내측표면적을 말하며 천장을 포함한다.

천정의 환기플레넘(Plenum)으로 하는 경우의 지붕과 천정은 다음과 같다.

1) 열통과율의 계산에는 천정이나 천정플레넘부분을 포함하지 않는다.

2) 전면적은 천정플레넘상부의 표면적으로 한다.

냉·난방된 모든 건물은 제구성요소가 규정된 소요성능을 만족하도록 건축되어야 한다. 지붕과 천정, 벽이나 바닥등에 대하여, 어떤 U_0 값을 사용하여 계산한 외각에 대한 전열손실, 또는 열취득이 본 절에 정해진 U_0 값을 사용하여 계산된 값을 넘지 않는다면, 개개의 U_0 값은 정해진 값으로 한정된 것은 아니다.

본 장에서 요구되는 제상에는 다음의 온도를 사용한다.

	실 [°F]	내 [°C]	실 외 [%]
겨울	72	22.0	2.5 (계절위험율)
여름	78	25.5	2.5 (계절위험율)

주) ASHRAE Handbook of Fundamentals 1972, 33

장의 값

겨울철의 난방, 여름철의 냉방을 하는 건물에서, 값이 다른 경우에는, 본 장에서 규정하는 외각난방과 냉방용의 수치 가운데 높은 쪽을 사용한다.

에너지원절약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의 설계는, 절로에 의하여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A형 건물의 표준

A형 건물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A_1 : 1세대 및 2세대용 독립주택

A_2 : 기타 모든 주택건물(집합주택, 2층이하의 호텔, 보텔)

냉·난방의 기준

벽: 냉·난방된 건물 외벽면의 총합 열통과율은 1973 ASHRAE Handbook & Product Directory, System Volume 의 43장에 제시된 난방도일(Degree Day)을 수용하고 그림 2에 제시된 값을 넘지 않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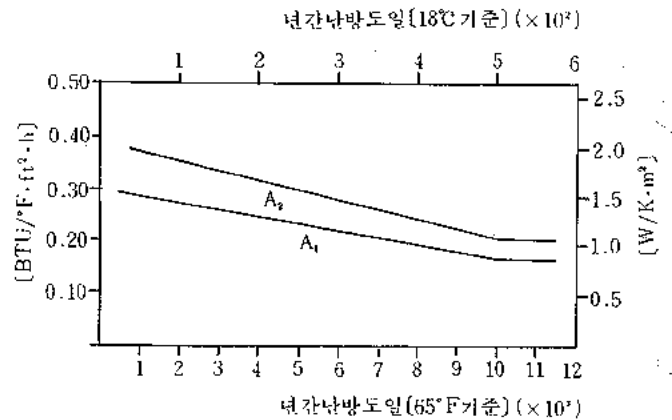


그림 2 A형 건물벽의 U_0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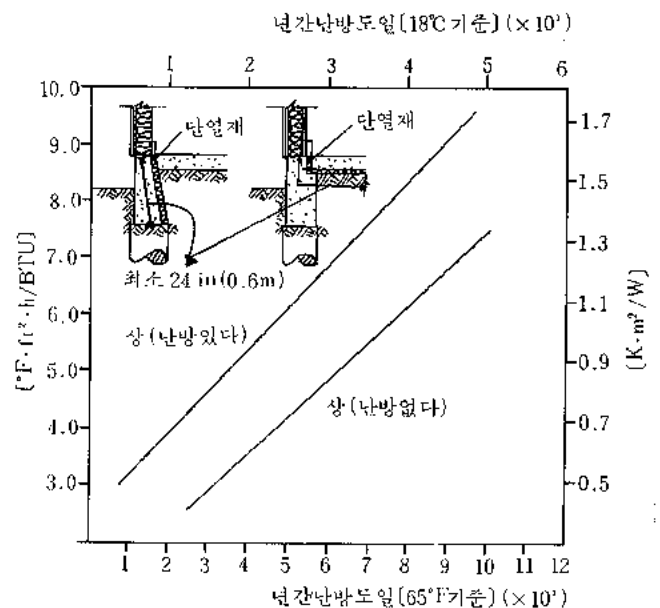


그림 3 률위에 친 바닥슬라브구조

식 10은 그림 2의 U_0 값을 만족하도록 벽, 창, 문등의 열통과율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다.

$500^{\circ}\text{F}\cdot\text{d}(278^{\circ}\text{C}\cdot\text{d})$ 이하지역의 U_0 값은 다음과 같다.

1) 난방만을 하는 경우, 값은 임의로 한다.

2) 냉방을 하는 경우, 값은 최대 $0.30 \text{ BTU}/^{\circ}\text{F}\cdot\text{ft}^2\cdot\text{h}$ ($1.70 \text{ W/K}\cdot\text{m}^2$)로 한다.

지붕과 천정: 냉·난방하는 건물의 지붕과 천정의 열통과율(U_0 값)은 $8,000^{\circ}\text{F}\cdot\text{d}(4444^{\circ}\text{C}\cdot\text{d})$ 의 지역에서 $0.05 \text{ BTU}/^{\circ}\text{F}\cdot\text{ft}^2\cdot\text{h}$ ($0.28 \text{ W/K}\cdot\text{m}^2$), $8,000^{\circ}\text{F}\cdot\text{d}(4444^{\circ}\text{C}\cdot\text{d})$ 이상의 지역에서 $0.04 \text{ BTU}/^{\circ}\text{F}\cdot\text{ft}^2\cdot\text{h}$ ($0.23 \text{ W/K}\cdot\text{m}^2$)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적용제외 : 대강당의 복조천정등 평지붕의 내부마감면이 천정을 적하는 경우, 난방도일에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값은 $0.08 \text{ BTU}/^\circ\text{F}\cdot\text{ft}^2\cdot\text{h}$ ($0.45 \text{ W}/\text{h}\cdot\text{m}^2$) 이하로 하여도 좋다.

식 (2)는 규정된 U_0 값을 만족하도록 지붕, 천장의 열통과율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비난방실 상부바닥 : 비난방실의 위층이 냉·난방된 경우 그 바닥의 값은 그림 6의 값을 넘지않도록 한다.

흙위에 친 바닥슬라브구조 : 이 구조의 주변부단열재의 열저항과 시공장소는 그림 3에 제시된바와 같다.

B형 건물의 기준

B형건물이란 A형건물이외의 모든 건물을 말한다.

난방기준

벽 : 난방하는 건물의 외벽면 총합 열통과율은 1973 ASHRAE Handbook & Product Directory, System Volume 43장에 제시된 난방도일을 사용하고, 그림 4의 값을 넘지않도록 한다.

식 (1)은 그림 4의 U_0 값을 만족하도록 벽, 창, 문등의 열통과율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지붕과 천정 : 난방하는 건물의 지붕과 천정의 열통과율(U_0 값)은 난방도일을 사용하고, 그림 5의 값을 넘지않도록 한다.

식 (2)는 규정된 U_0 값에 합당한 조합을 결정하는데에 사용한다.

비난방실 상부바닥 : 비난방실 위층이 난방되는 경우, 그 바닥의 U_0 값은 그림 6의 값을 넘지않도록 한다.

흙 위에 친 바닥슬라브구조 : 이 구조주변부의 단열재 열통과율과 시공장소는 그림 2와 같다.

냉방기준

벽 : 냉방하는 건물의 외벽면 총합 열통과량(OTTV)는 그림 7의 값을 넘지않도록 한다.

식 (3)은 그림 7의 값을 만족하도록 벽, 창, 문등의 열통과율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지붕과 천정 : 냉방하는 건물의 지붕과 천정의 열통과율(U_0 값)은 난방기준에 따라 결정된 값을 넘지않도록 한다.

공기누출 모든 건물

본 절의 규정은 실외와 공조공간을 격리하는 외각에 한정한다.

공기누출의 기준은, 25mile/h(11.1m/s)의 풍속효과에 상응하는 1,567 Lb/ft² (75 pa)의 압력차에서 ASTM E 283-73⁹ Standard Method of Test for Rate of Air leakage through Exterior Windows, Curtain Walls and Doors를 사용하여 결정한다.

규 정

창 ANSI A 134.1(10) : NWMA 1S - 2 (11) : MHMA 1 - 71⁽²⁾ : 창은 공기누출을 한정하도록 잘 설계되어야 한다. 틈새바람량은 새시의 틈새길이 1ft당 0.5ft³/min(1m당 0.77 dm³/s)을 넘지않도록 한다.

유리미닫이문 (주택의 Patio형) [ANSI A 134.2⁽¹⁾ : NWMA 1S - 3⁽¹⁾ : MHMA 1 - 71⁽¹⁾] : 유리미닫이문은, 공기누출을 한정하도록 잘 설계되어야 한다. 틈새바람량은 문면적 1ft²당 0.5ft³/min(1m²당 2.5dm³/s)를 넘지않도록 한다.

주택입구의 여닫이문(MHMA 3 - 74⁽¹⁾ 주택용입구의 여닫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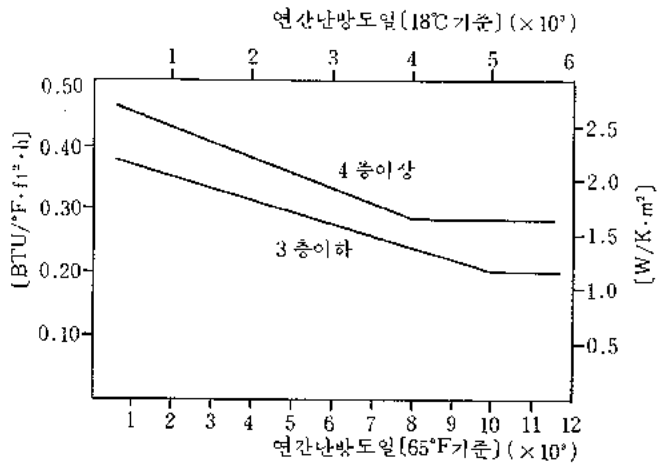


그림 4 B형의 건물벽의 U_0 값(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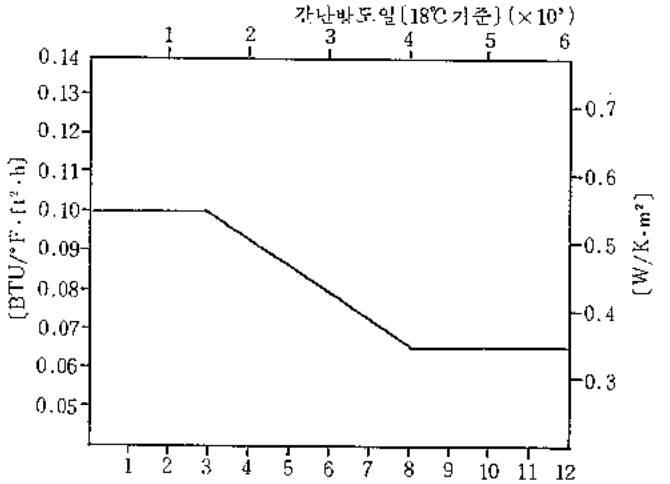


그림 5 지붕과 천정의 U_0 값(B형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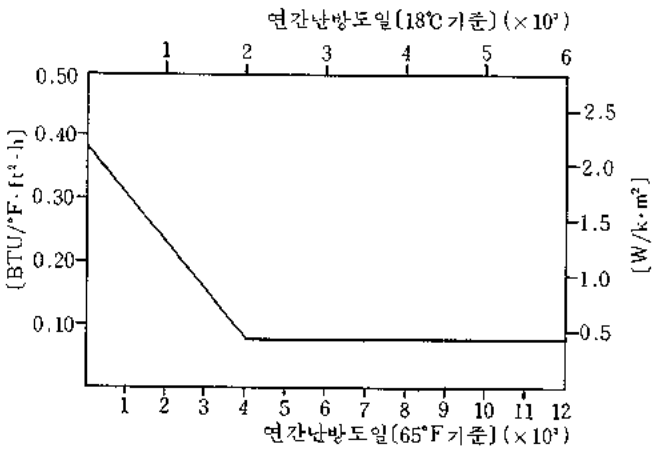


그림 6 비난방실 상부바닥의 U_0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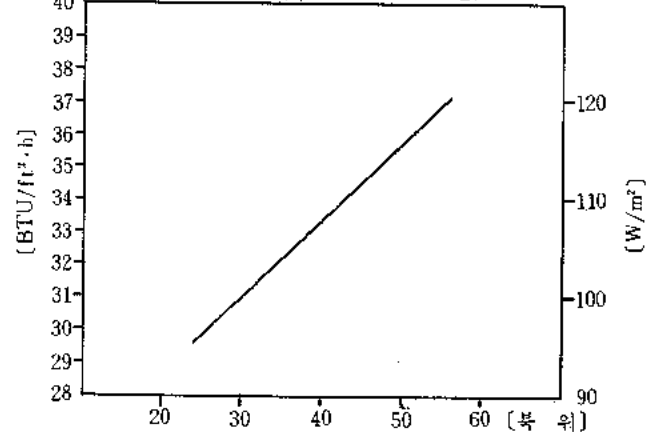


그림 7 B형 건물의 벽의 총합열통과율(냉방)

문은 공기의 누출을 한정하도록 잘 설계되어야 한다. 틈새바람량은 문면적 1ft²당 1.25ft³/min(1m²당 6.35dm³/s)을 넘지 않도록 한다.

주택이외의 여닫이문, 회전문, 미닫이문 : 이러한 문은 공기누출을 한정하도록 잘 설계되어야 한다. 틈새바람량은 문의 틈새길이 1ft당 11ft³/min(1m당 17dm³/s)를 넘지 않도록 한다.

코킹과 셀(Seal) : 창틀이나 문틀의 이용, 창틀, 문틀과 벽 사이, 각벽 패널사이의 이음, 기타 건물의각을 통과하는 닥트·파이프의 관통지점등은 코킹재, 가스켓, 문풍지 또는 기타의 셀(Seal)재를 사용한다.

$$[식] U_o = \frac{U_{wall} A_{wall} + U_{window} A_{window} + U_{door} A_{door}}{A_o}$$

.....(1)

여기서, U_o : 총벽면 평균 열통과율[BTU/°F·ft²·h(W/k·m²)]

A_o : 총외벽면적(ft²(m²))

U_{wall} : 불투명벽의 전요소 열통과율[BTU/°F·ft²·h(W/k·m²)]

A_{wall} : 불투명벽면적(ft²(m²))

U_{window} : 창의 열통과율[BTU/°F·ft²·h(W/k·m²)]

A_{window} : 창면적(Sash 포함)(ft²(m²))

U_{door} : 문의 열통과율[BTU/°F·ft²·h(W/k·m²)]

A_{door} : 문면적(ft²(m²))

단, 2종류이상의 벽, 창, 문이 사용되는 경우의 $U \times A$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야 한다.

$$U_{wall_1} A_{wall_1} + U_{wall_2} A_{wall_2} + \dots$$

$$U_o = \frac{U_{roof} A_{roof} + U_{skylight} A_{skylight}}{A_o} \dots\dots\dots(2)$$

여기서, U_o : 지붕과 천정의 평균 열통과율[BTU/°F·ft²·h(W/k·m²)]

A_o : 지붕과 천정의 전면적(ft²(m²))

U_{roof} : 지붕과 천정의 불투명적 전요소의 열통과율[BTU/°F·ft²·h(W/k·m²)]

A_{roof} : 지붕과 천정의 불투명면적(ft²(m²))

$U_{skylight}$: 천창의 열통과율[BTU/°F·ft²·h(W/k·m²)]

$A_{skylight}$: 천창면적(틀포함)(ft²(m²))

단, 2종류이상의 지붕과 천정, 또는 천창이 사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실시된다.

$$U_{roof_1} A_{roof_1} + U_{roof_2} A_{roof_2} \dots\dots\dots$$

$$OTTV = \frac{(U_w \times A_w \times TDEQ) + (A_f \times SF \times SC) + (U_f \times A_f \times \Delta T)}{A_o}$$

.....(3)

여기서, OTTV : 열통과량

U_w : 불투명벽면의 열통과율[BTU/°F·ft²·h(W/k·m²)]

A_w : 불투명벽면적(ft²(m²))

U_f : 창의 열통과율[BTU/°F·ft²·h(W/k·m²)]

A_f : 창면적(ft²(m²))

TDEQ : 배로면열전달율(°F(°C))(α_1)의 α_1

SC : 창의 차열계수

ΔT : 실내외의 설계온도차(°F)

SF : 일사량(그림 8참조)(STU/ft²·h(W/m²))

단, 두 종류이상의 벽이나 창이 사용되는 경우의 $U \times A \times TDEQ$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U_{w_1} \times A_{w_1} \times TDEQ_1) + (U_{w_2} \times A_{w_2} \times TDEQ_2) + \dots\dots\dots$$

온 도 차

벽의 구조-단위면적당 중량		TDEQ	
[Lb/ft ²]	[kg/m ²]	[°F]	[°C]
0-25	0-125	44	24.5
26-40	126-195	37	21.6
41-70	196-345	30	17.0
71이상	346 이상	23	13.0

주) 벽구조의 중량은 1972 ASHRAE Handbook of Fundamentals 22장에 의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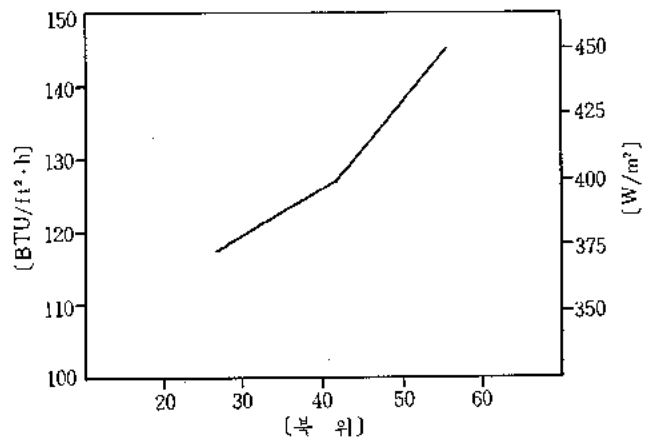


그림 8 일 사 량 (SF)

제14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방향 제시

1. 기본적인 방향

최근 주거용(기타용도의 건축물도 포함) 건축물에 있어서의 난방은 온돌이나 난방기기의 역할에 의한 것으로 단순히 생각하는 예가 전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거기에 의한 열량의 보급만을 생각하는 경향아래 지붕, 천정, 개구부, 벽, 바닥등의 불투명한 부분으로부터 열손실에 대해서는 망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설비비용이 전체 건축비에 큰 비중을 차지하며 또 설비기기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시공상 허점으로 인한 부실공사마저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하에 "단열"이라는 에너지절약의 기본방향을 어떻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시할 것인가가 문제점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뒤로 미루더라도 우선 열경계제를 위해서는 단열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기술적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은 수십년의 내구성을 가짐과 동시에 전 건축물을 대상으로 단시간내에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에너지수급동향을 감안해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2) 주거기능과 건축성능의 조화를 침해하거나, 조형예술을

망각해서도 또한 안될 줄 안다.

열관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설계, 구조, 설비등의 상호연관성을 충분히고려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난방에 관해서는 열원계획, 난방면적, 방열기의 능력, 설치하여야 할 위치, 벽, 바닥, 천정의 단열성능, 개구부의 채광과 환기 및 단열성능등의 요소가 연관되어 있고 단순히 벽 단열성만 고려해서는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2. 정부측면에서의 권고사항

- 1) 장기적인 차원에서 열관리가 설치가능도록 경사지붕 권장
- 2) 입법조치 : 주거용 건축의 단열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법적규제
- 3) 보급과 계몽 : 전향의 입법조치와 병행 또는 우선하여 범국민적인 계몽과 보급활동을 강력히 추진함과 동시에 에너지관련기술의 적절한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등을 검토(TV, 라디오에 시간 할애)
- 4) 기술개발등의 추진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기술개발방향을 설정하여 장기적인 계획아래 기술개발을 추진(구조체의 시공법개발, 단열재, 설비기기의 성능향상과 대체에너지개발등)
- 5) 세제상우대 : 단열재 제조업자, 단열건축물 시공시 시공자와 건축주에게 보다 많은 세제혜택부여
- 6) 융자혜택과 의무용도 : 전용자나 심의 건축물, 공동주택, 농촌취락구조사업, 재개발사업, 단지조성(10세대이상), 환지저주등의 주택에 대한 융자와 단열주택 의무적시공
- 7) 양질의 단열자재보급과 우량자재 생산업체선정 : 단열자재 판매확인증발부와 단열재 종합판매장개설

8) 설비기업체 지정 : 난방설비기기 생산업체와 우량업체를 지정하여 열량, 시공상주의사항, 시방관계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품토조성

9) 에너지연구기금조성 : 에너지관련업체에 대해 제품판매시 일정액의 에너지연구기금을 부과하여 장기적인 기술개발과 지도, 대체에너지개발에 투자하여 국민에게 환원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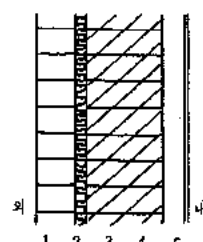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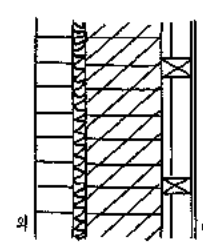
10) 에너지절약의 날 지정 : 에너지절약을 위한 범국민적인 계몽과 아울러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하기 위한 취지로서 에너지절약의 날을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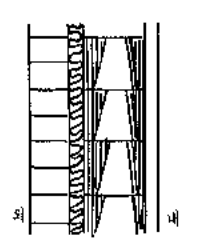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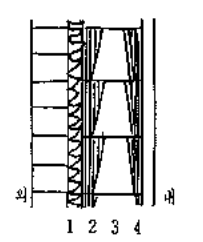
3. 문제점

전기에서 기술한 단열화를 위한 방법이나 이에 따른 기술적 기준제정, 입법조치와 계몽이 충분히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건축주 개개인이 과연 이 기준에 맞는 단열화된 건물을 시공하였느냐, 안하였느냐 하는 검사가 이루어져야만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적절한 열관류율측정기 및 열손실측정기등의 시험장비확보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시멘트제품(벽돌, 브릭, 기와)판매확인서첨부제도와 같이 허가 및 준공검사에 "열관류율계산서"와 "단열자재판매확인서"첨부, 준공후 시공현장에서의 비파괴검사법으로 열류계, 열전도율계 및 적외선 카메라등의 시험기구에 의한 성적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화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단열재의 사용장제나 규제이전에 단열재의 사용에 따르는 초기투자의 증액이 난방비의 절감등으로 보상되는 경제성등을 설명하여 건축주 스스로가 단열구조를 채택하여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국가에너지 절약정책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계몽, 선전교육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믿는다.

번호	구 조	재 료	두 ℓ m/m	λ	$\gamma = \frac{\ell}{\lambda}$
41		1. 붉은벽돌 0.5B	90	0.67	0.134
		2. 스티로폼 (유리섬유중류)	50	0.032	1.563
		3. 세멘트벽돌 1.0B	190	1.2	0.158
		4. 물 탈	18	1.2	0.015
		5. 벽 지	0.5	0.18	0.002
			348.5		0.125
		R = 2.047 K = 0.489			
42		1. 붉은벽돌 0.5B	90	0.67	0.134
		2. 스티로폼 (유리섬유중류)	50	0.032	1.563
		3. 세멘트벽돌 1.0B	190	1.2	0.158
		4. 물 탈	18	1.2	0.015
		5. 공기 층	20		0.09
		6. 이 장 합 판	4.5	0.14	0.032
			372.5		0.125
		R = 2.167 K = 0.461			

번호	구 분	재 료	두 ℓ m/m	λ	$\gamma = \frac{\ell}{\lambda}$
45		1. 붉은벽돌 0.5B	90	0.67	0.134
		2. 스티로폼 (유리섬유중류)	50	0.032	1.563
		3. 볼 력 6"	150		0.15
		4. 볼 탈	16	1.2	0.015
			306		0.125
		R = 2.037 K = 0.491			
		비 고			
46		1. 붉은벽돌 0.5B	90	0.67	0.134
		2. 스티로폼 (유리섬유중류)	50	0.032	1.563
		3. 볼 력 6"	150		0.15
		4. 회 반 죽	16	0.63	0.025
			306		0.125
		R = 2.047 K = 0.489			

連載：建築工事示方書の 発展的 体系〔完〕

李 龍 雲 (國立建設研究所建築基準課建築技佐)

目 次

1. 示方書の 意義
2. 示方書の 種類
3. 示方書の 構成
4. 示方書 作成에 대한 一般事項

5. 示方書 作成方法
6. 示方書の 作成資料
7. 가이드示方書와 그 利用
8. 結語

5. 示方書 作成方法

시방서의 작성은 다른 시방서의 인용이나 카다로그, 가이드
示方書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다른 종류의
문장을 작성하는 것과는 성질이 다르다. 示方作成의 내용은
거의가 다른 資料는 인용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시방서 자료는
인용을 위하여 준비되는 것이다.

가. 作成時期

가장 이상적인 작성시기는 施工圖가 완성된 때이지만 실제
로는 시간적 여유때문에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다. 시방서 작
성을 보다 촉진시키기 위하여 시방서 작성자는 施工圖 작성이
시작되면 바로 메모 작성을 시작한다. 平面 및 立面이 배락
확정된 후, 詳細圖의 작성, 창호, 마감 등 각종 일람표의 작
성 그리고 構造・電氣・機械의 圖面이 작성되는 동안 상당한
작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

시방서 작성자는 우선 일반사항, 토공사, 콘크리트공사, 철
골공사와 같이 設計進行過程에서 별로 변경이 없을 것같은 항
목에 대하여 먼저 작업을 진행시킴으로써 잡철물공사, 수상공
사, 창호철물과 같이 설계의 최종까지 변경여부를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위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설계의 진행에 맞추어 시방서 작성도 진행을 시키고 도면을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수정할 때에는 시방서도 마지막 점검을
하는 것이 좋다.

나. 메모(Note)作成

중규모 공사만 되면 시방서에 포함될 모든 항목을 머리 속
에 기억하여 編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며 보통은
메모를 해두는 것이 정확한 방법이 된다. 施工圖가 작성되고
수정되며 공법・재료・마감 등이 결정됨에 따라 示方作成者는
작성 때에 참고 또는 注意書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해
나가야 한다.

다. 일반적으로 메모를 하는 방법은 다음의 3가지가 있다.

(1) 圖面의 餘白을 사용

도면을 작성한 사람이 직접 시방서를 작성할 경우는 도면의
가장자리여백에 시방에 관한 메모를 하면 간단하고 편리하다.
이 방법은 소규모 공사에 대단히 적합한 방법이다.

(2) 노트 사용

항상 노트를 소지하여 메모를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각 章의 제목 밑에 메모를 정리할 수도 있고 언제
든지 첨가하거나 적당할 때에 체크해 둘 수도 있다.

(3) 낱장의 用紙나 카드使用

낱장의 용지나 카드에 메모를 하면 큰 이점이 있다. 메모는
사용할 때에 적당한 순서로 정리하게 된다. 작성된 각 文項들
이 동일한 크기의 종이에 기록되어 제 위치에 삽입되어 있으
면 다른 자료를 혼란시키지 않고 쉽게 재정리하거나 첨가 모
는 생략할 수가 있다.

라. 概要作成

도면을 검토하고 메모를 작성한 다음에는 필요한 章의 세운
을 뽑아 합리적으로 배열한 후 각 章에 필요한 항목을 순서
대로 정리한다.

마. 示方書作成

시방서 작성용 메모가 완전히 끝나면 타자를 칠 수 있도록
일정한 형태로 시방서의 草稿를 만들게 되는데 시방서의 전부
를 손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그만한 시간적 여유
도 없다. 따라서 시방서를 작성할 경우 직접 작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미리 준비된 자료(가이드示方書이든 類似工事に 사용
되었던 示方書이든)를 이용한 수밖에 없다.

시방서를 편집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 4가지를 들 수 있다.

(1) 舊示方書利用

類似工事に 대한 시방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 당해공사에 필

요치 않은 부분만 지우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첨가하여 타자를 칠 수 있도록 草稿를 만든다. 주의해야 할 점은 舊示方書에 當該工事に 포함된 재료·설비·공법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도 주의를 하지 않으면 이런 항목들을 看過하고 넘기기 쉽다.

(2) 오려붙이기方法

類似工事に 대한 시방서가 없을 경우 다른 시방서들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오려내서 새로운 공사에 맞게끔 적당한 순서로 다른 종이에 붙이고 그 사이 사이에 필요한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요구되는 시방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示方카드 또는 用紙利用法

날장의 용지나 카드에 항목별로 시방작성을 하여 철하여 두면 어떤 공사의 시방을 작성할 때에 필요한 부분만 빼내어 적절한 순서로 배열하고 누락된 내용이 있으면 추가작성하여 삽입함으로써 시방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용지는 후일 수정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공간의 2배가 되도록 여백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이 방법은 처음 개발할 때는 많은 시간이 요하지만 일단 준비가 되면 시방서작성에 매우 편리하다.

(4) 가이드示方書를 이용하는 方法

가이드示方書 중 당해공사에 필요한 章·節·項 등을 뽑아낸 다음 해당없는 내용은 삭제하고 필요한 내용은 적어 넣고 추가한 후 재편집함으로써 工事示方書를 작성한다.

(5) 特記示方書만을 작성하여 共通示方書에 전부하는 方法

공사시방서를 새로이 작성하지 않고 미리 작성되어 있는 공통시방서에 각 공사의 특징에 따른 특기시방서를 작성하여 첨가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작업량이 적다는 장점은 있으나 사용에는 불편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특기시방서에서 공통시방서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해 주어야 한다.

바. 示方書의 章·節의 分類

시방서 章의 분류는 이미 시방서의 구성에서 여러 형태가 있음을 보았거니와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미국의 시방서연구회(CSI, Construction Specification Institute)가 제시한 章의 분류를 소개한다.

第1章 一般事項(General Requirements) — 施工書類의 작성·시공조건·도면의 略字 및 記号, 주변보호, 工事標識板

第2章 土工事(Site Work)

第3章 콘크리트공사(Concrete)

第4章 조적공사(Masonry)

第5章 금속공사(Metals)

第6章 목재·프라스틱공사(Wood and Plastics)

第7章 단열 및 방습공사(Thermal and Moisture Protection)

第8章 창호공사(Doors and Windows)

第9章 마감공사(Finishes)

第10章 특수공사(Specialties)

第11章 설비공사(Equipment)

第12章 비품공사(Furnishings)

第13章 특수시공(Special Construction)

第14章 운송설비공사(Conveying System)

第15章 기계설비공사(Mechanical)

第16章 전기설비공사(Electrical)

(1) 節의 分類

節은 특정 재료·부품 및 시공방법을 나타내는 시방서의 基本單位로서 章의 구성요소이다. 節을 어느 정도 세분할 것이냐는 공사의 量, 공사의 複雜性에 따라 시방서 작성자가 결정할 문제이지만 總部給者の 입장에서 보면 下部給과 관련하여 세분된 工種을 몇개씩 묶어 工種數를 줄이는 것은 용이하지만 큰 덩어리로 분류한 것을 세분하여 시방서를 다시 작성하기는 힘들 것이므로 지나치게 크게 분류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節의 構成

節을 어떻게 분류하여 구성하느냐는 시방서의 작성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미국 시방서연구회(CSI)는 節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3부분으로 할 것을 제안 하였다.

第1部. 一般事項(General) — 作業範圍 / 示方書의 다른 부분에 기술되는 相關공사 / 相關 기준 및 표준규격(Code and Standards) / 施工業체의 직원 및 제조업자의 자격 / 제철용 제작도면 / 제철용 견본품 / 자료취급 및 보관 / 기타 다른 곳에서 다루지 않는 사항

第2部. 資材(Products) —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관한 사항 / 자재의 시공에 관한 사항은 다루지 않음

第3部. 施工(Execution) — 施工方法 / 實施해야 할 시험의 종류 / 다른 공사와의 조정 / 施工誤差 / 시공바탕의 승인 / 기타 모든 시공 相關사항

節의 구성을 위와 같이 일반사항, 자재, 시공의 3부분으로 나누어 작성함으로써

첫째, 標準樣式은 시방서 작성자에게 그 節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이 무엇이며 어디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체크리스트의 구실을 한다. 예를 들면 목록만 보면 작성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켜줄 것이며 필요한 사항은 포함시키고 필요없는 사항은 제외시킬 수 있다.

둘째, 각 節을 3부분으로 취급하기 좋은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각 부분 중의 특별한 어떤 사항에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시방서 작성자가 第2部에서 기술한 자재에 관한 시공사항을 第3部에서 기술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으로 해서 그가 자재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는 동안 시공에 관한 자료를 더욱 관심을 갖고 수집할 수 있다.

세째, 시방서 작성자의 입장에서 자료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각 節을 일관성있고 논리적인 형식으로 배열함으로써 자재 및 시공의 양면에서 언급된 사항을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네째, 시방서는 일반적으로 무미 건조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시방서를 읽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일관성있고 논리적인 일정한 형식을 택하는 것이 시방서를 읽는 부담을 줄

여 줄 수 있다.

사. 資材에 대한 示方作成方法

자재에 대한 시방을 작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1) 製造業者(Manufacturer)

제조업자에 따른 商品名 또는 모델번호를 기입하는 방법으로서 예를 들면 XYZ 회사의 ABC 형식 또는 건축가의 승인을 받은 동등 제품 등, 이 방법은 용이·신속·명확하며 실수가 적고 入札者에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특정 제조업자에게만 기회를 준다는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다.

(2) 標準規格(Reference Standards)

모든 자재는 ASTM, KS 등 지정 표준규격에 승격될 때 인정된다. 이것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단점으로는 표준규격이 요구조건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과 표준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자재도 있다는 점이다.

(3) 定額控除(Cash Allowance)

입찰자는 건축가가 후에 별도로 선정하게 될 자재의 구입 및 운반비로 일정액을 契約全額에 算入토록하는 방법이다. 상호 천물이나 조명기기와 같이 어떤 것들은 계획이 지연되어 늦어지거나 어떤 단계에 도달한 후에 선정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때 설계자 중에는 결정을 하지 않고 후에 천천히 제품을 고를 수 있도록 契約總額에 一定全額을 계상하도록 요구한다.

카펫트의 예를 들면 현지 소매상에서 카펫트의 가격을 조정하고 필요한 카펫트의 量과 패트의 量을 見積하여 대략의 金額을 산출한 후 이를 總金額에 계상토록 하는데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된다. 「계약 일반조건에 기술된 바와 같이 카펫트 구입 및 운반비로——원을 계약금액에 計上할 것」

工事中 적정한 시기에 건축주와 건축가는 카펫트를 선정하고 계약자에게 알리면 계약자는 지정된 카펫트를 구입, 시공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당초 計上된 금액과 차이가 있으면 정산 처리한다. 남용만 하지 않는다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남용하면 입찰자가 下都給 금액을 명확히 알 수가 없어 적정가격을 산출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공사마다 한두 개의 定額控除方法은 가능하나 그 이상은 입찰을 번거롭게 할 염려가 있다.

(4) 性能示方(Performance Specification)

商品名이나 모델번호를 지정하지 않고 제품의 성능 또는 특성을 기술하는 것으로서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많은 가능성을 부여하며 입찰자들에게 가장 개방적인 경쟁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만 承認基準를 설정하는 데는 고도의 기술을 요구한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資材示方으로서 제조업자의 参照規格을 사용하는 경우가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5%만이 定額控除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性能示方은 가능성을 개발하는 시도로서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표준규격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 드물게 商品名을 사용할 때도 있으나 대부분 2개 이상의 商品名을 제시하거나 ××同等以上으로 표현하여

선정의 여유를 두고 있다. 性能示方은 표준규격이 없을 경우에 設備資材의 購買示方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

6. 示方書 作成資料

시방서 작성자료라고 하면 건축, 기계, 전기설비 관계의 각종 법규를 비롯하여 표준규격, 既 시행된 공사시방서, 가이드시방서, 제조업자의 資材카타로그 외 여러 가지가 있다. 시방서 작성작업이 순수한 창작이 아니고 대부분이 既存資料를 인용하여 당해공사에 맞도록 편집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방서작성에 있어서 자료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가이드시방서를 사용할 경우에 가이드시방이 모든 경우의 시방을 전부 담고있지 못하며 공사의 특수성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시방을 작성해야 되는 경우가 있게 마련이다. 특히 共通示方書를 채택할 경우에는 特記示方書를 필연적으로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에 충분한 자료의 뒷받침이 없이는 곤란하다. 이런 목적을 위하여 국내의 자재 및 시공관계 문헌이나 자재 제조업자의 카타로그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정리하여 두면 유익하게 사용될 것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여기에 참고로 미국 시방서연구회(CSI)가 발간하고 있는 시방서 작성자료를 소개한다.

미국 시방서연구회가 발간하는 문헌으로는 實務便覽, 示方資料, 專門示方, 特別發刊物 등 4종류가 있다.

實務便覽(Manual of Practice Documents)은 MASTER SPEC.의 이용에 대하여 시방서 및 관련 계약서류의 양식을 소개한 것으로서 시방서 작성방법의 교과서적 역할을 하는 것이고 示方資料(Specification Document)는 工種에 대한 안내, 도면에 표시할 것과 시방서에 기술할 사항에 대한 明示, 시방서 작성자에 대한 주의사항이 포함된 가이드시방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방서의 節을 신설할 경우 참고자료로 이용된다. 또한 전문示方(Monographs)은 각 工種에 대한 전문가의 자세하고 간결 명확한 설명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特別發刊物(Special Publications)은 標準施工에 대한 索引, 학생들을 위한 實務編覽要約編, 기계, 전기의 기호 및 略号 등으로 되어 있다. 이 외에 미국 시방서연구회의 자료로는 건축자재 제조업자의 情報綴이 있다. 이것은 제조업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資料需要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서비스를 받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정보첩의 구성은 ① 製品名 ② 製造業者 ③ 製品說明書 ④ 技術資料 ⑤ 施工·設置 ⑥ 效果·性能 ⑦ 保証 ⑧ 維持管理(Maintenance) ⑨ 技術서비스 ⑩ 分綴하는 체계(Filing System) 등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을 마이크로 필름화 한 것도 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시방작성 자료를 살펴 보았는데 공통시방서에 특기시방서를 작성·첨부하는 방식을 주로 택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 특기시방서 작성이 형식에 머물고 있는 것은 설계자의 무성의나 인식부족도 있지만 시방작성을 위한 자료의 부족에도 그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가이드시방書와 그 利用

가. 가이드시방書

가이드시방서는 특정공사의 시방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工種別로 시방을 작성하고 편집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工示方의 작성에 가이드 역할을 하는 시방서이다. 우리나라에는 본격적인 가이드시방서라 할만한 것이 없지만 미국의 경우, 세계 2차대전이 끝나고 건축공사가 활발해짐에 따라 시공문제를 둘러싸고 설계자와 시공자 사이에 법정문제가 자주 일어나게 되어 설계자의 책임증가에 대한 자구책과 시공기준의 보강, 그리고 시방작성의 편의를 위하여 미국건축가협회(AIA)의 계열 회사인 PSAE(Production and Engineer, Inc)가 가이드시방서(MASTER SPEC.)를 작성하였다. 가이드시방서는 미국건축가협회의 시방서 외에도 수종이 있으나 그 중에서 AIA의 시방서가 널리 알려져 있다.

나. 가이드시방書의 利用

가이드시방서는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에 가이드로 사용할 수 있게 작성된 시방서의 샘플로서 대개의 경우 소정의 空欄에 필요한 말을 기입하여 넣거나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른 것을 삭제하면 곧 공사시방서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가이드시방서를 이용하여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당해공사에 필요한 章과 節을 가이드시방서에서 뽑아낸다.
- (2) 뽑아낸 章과 節을 복사한다.
- (3) 복사한 章과 節의 空欄을 기입하여 넣는다.

(4) 필요한 내용을 첨가하거나 수정한다.

(5) 가이드시방서를 인용할 수 없거나 가이드시방서에 없는 내용은 별도로 시방을 작성한다.

(6) 편집을 한다.

〈例〉 사우디 가이드시방서(SOGS, Saudi Oriented Guide Specification)

① 문의 밑판은 형식 J300(알루미늄) (황동) (스텐레스) (플라스틱-색) 크기로 한다.

② 여닫이대는 형식 J500(알루미늄) (황동) (스텐레스)로 한다.

③ 철판은 형식 J100(플라스틱-색) (알루미늄) (황동) (스텐레스)로 하며 板의 폭은 문의 폭보다 2cm 작게 한다.

~~~~~  
팔호내의 적용되지 않은 항목은 삭제할 것.  
~~~~~

8. 結 語

시방서 작성의 현재의 위치와 발전적 방향을 찾아 보고자 시방서의 개념, 체계, 작성방법, 그리고 가이드시방서의 구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국제적인 건설공사의 환경에서 시방서의 정확한 이해와 효율적인 작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이제까지의 시방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적 발전체제로서 전환을 도모하고 단기적으로는 우리 共通示方書의 미흡한 점을 보완토록 特記示方의 작성에 보다 충실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建設部, "建築工事 標準示方書", 1978
2. H. GRIFFITH EDWARDS, "Specifications", AIA, 1968
3. MEIER, "Construction Specification Hand Book", PRENTICE-HALL, Inc., 1975
4. Haul, Harold Dana, "Building Contracts for Design & Construction";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76

5. "Saudi Oriented Guide Specifications", The Middle East Division of the U.S. Army Corps of Engineer
6. PSAE, "MASTER SPEC 2, Basic Version", New York, 1979
7. PSAE, "MASTER SPEC 2, Narrow Scope Version", New York, 1980
8. 사우디 職業訓練院 工事示方書

MOSHE SAFDIE AND ASSOCIATES, INC.
Yeshivat Porat Joseph - Jerusalem, Isra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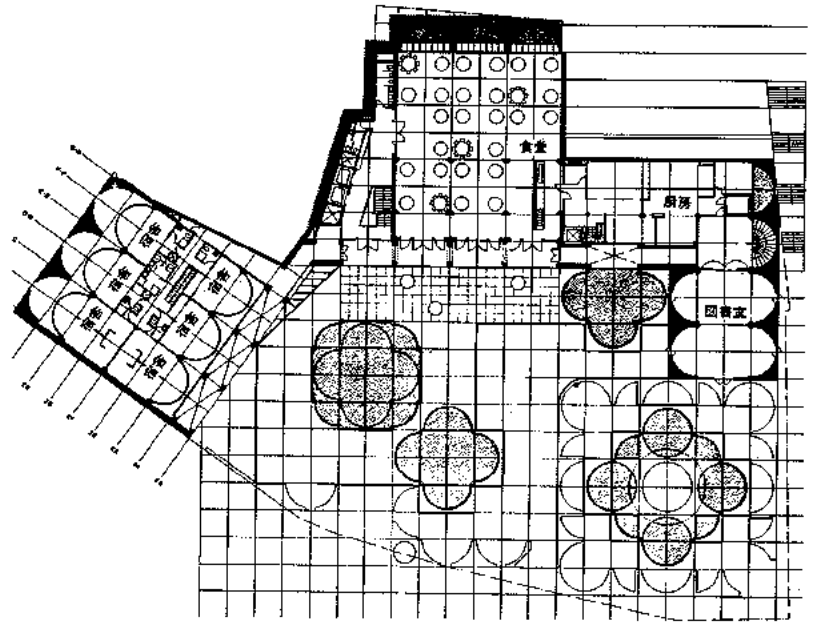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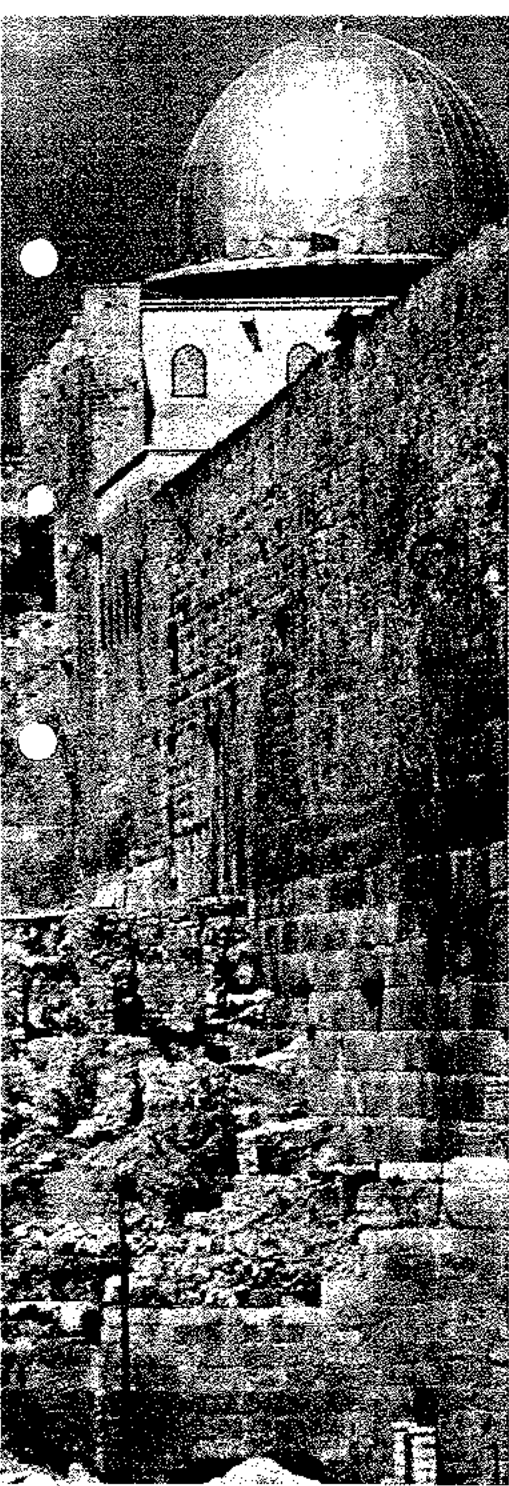


Yeshiva 는 율법박사가 되려는 학생들의 수도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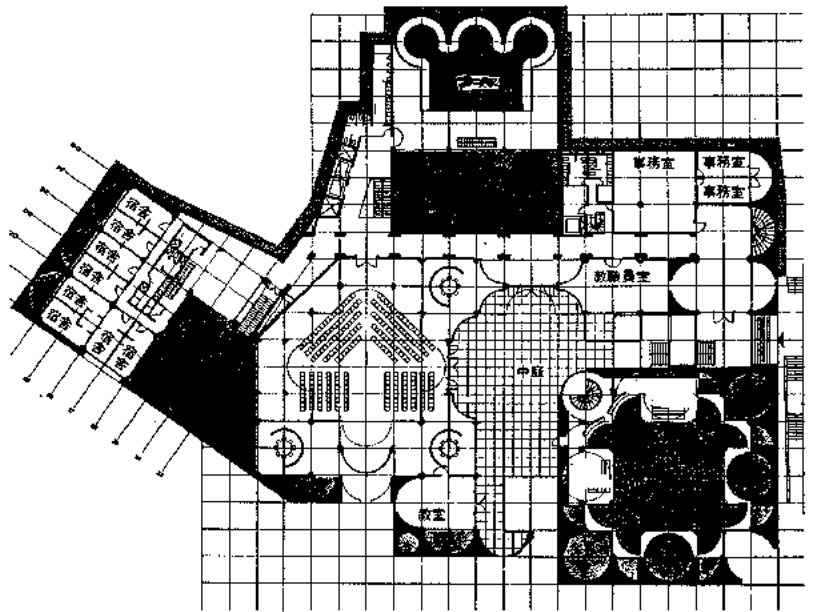
이곳에는 250명의 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고, 이곳 생활의 중심이 되는 기도실로도 쓰여지는 Beit Midrash와 다양한 크기의 강의실, 도서관, 체육관, 수영장 등을 포함한 웰스 센터, 300여명의 학생과 교수를 수용하는 식당, 교수와 학생을 위한 사교실, 사무실, 관리실, 200여석의 강당, 공동활동을 위한 회당 등이 있다.

이 수도원의 총 면적은 13만 스퀘어 피트로 예루살렘 구도시에 있는 유대인 지역의 2분의 1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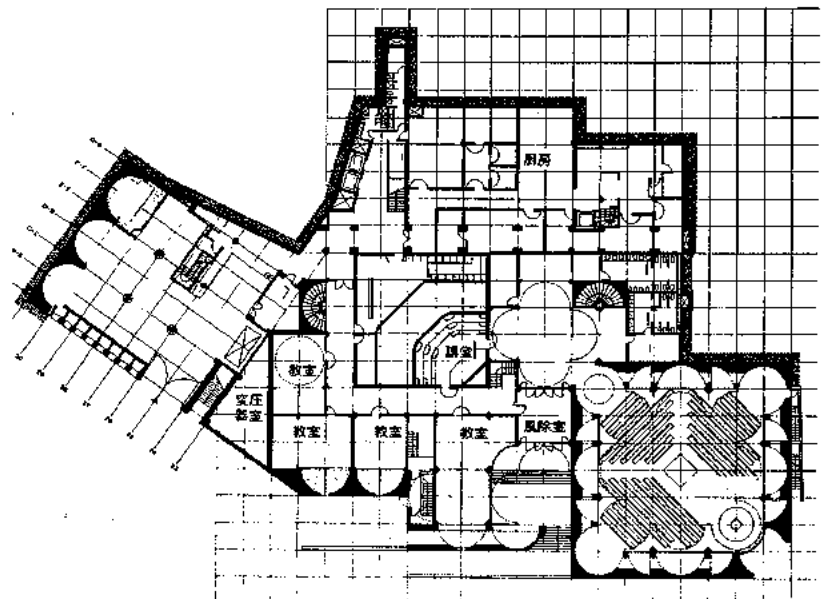
수도원은 서부 Wall Plaza에 면한 바위 벵랑 위에 자리잡고 있다. 북쪽에는 Western Wall과 더불어 유대인 지역에 연



Plan of level 7.



Plan of level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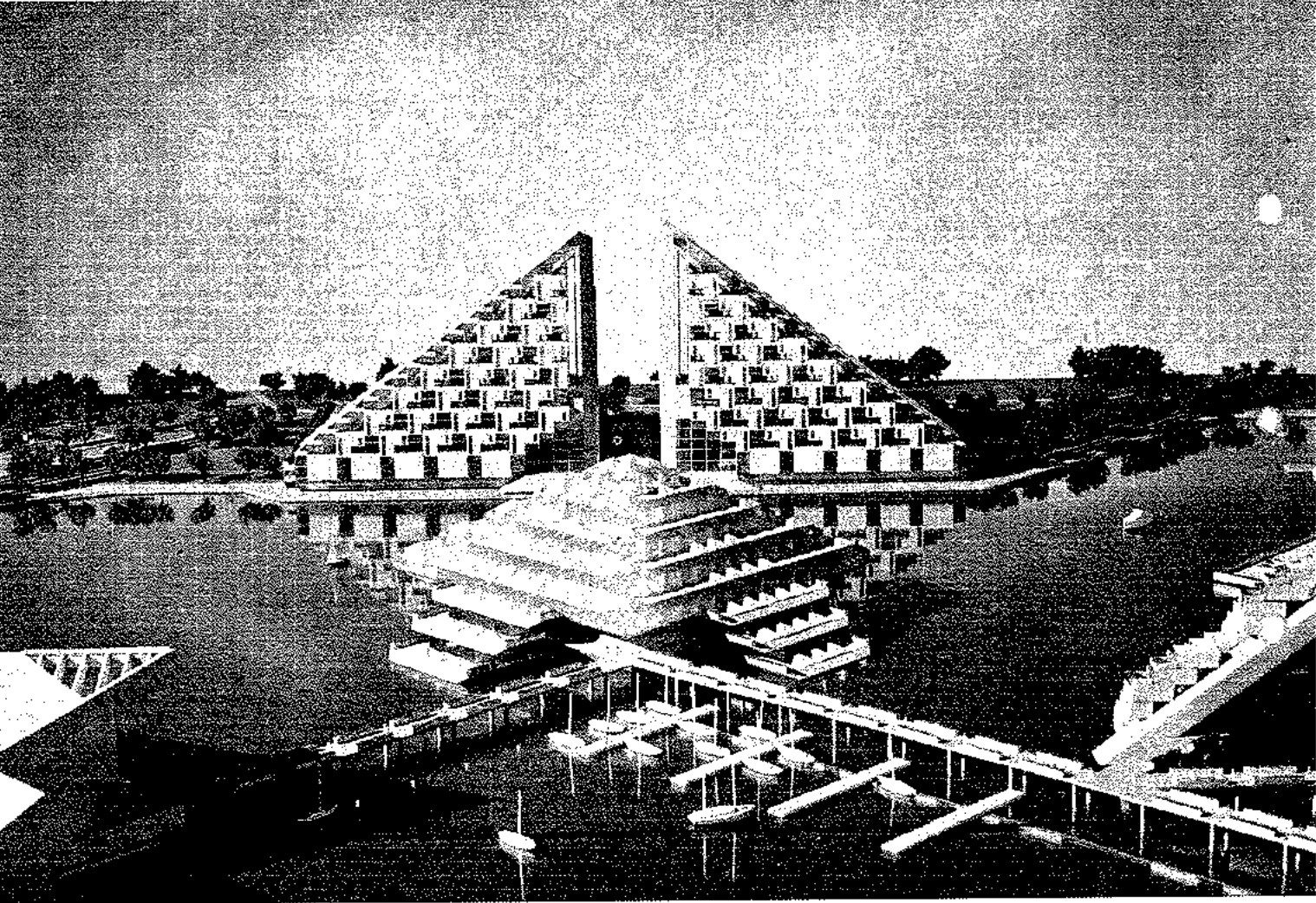


Plan of level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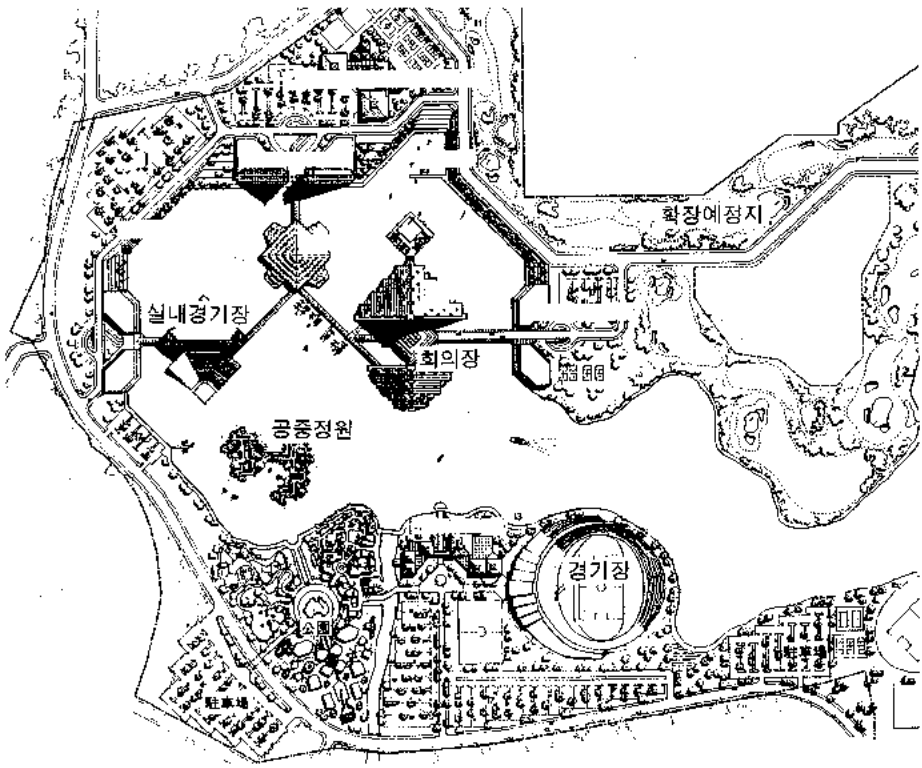
결되는 통행도가 있고 남쪽에는 City Wall
과 Dung Gate가 있다.

이 건물은 Western Wall에 면한 곳에
서는 6층이 된다. 복합건물은 75%가
완성되었다. 개원 기념식은 지난 77년 5
월에 회당에서 개최되었다.



남쪽 모습 / 섬 위쪽과 호텔 / 카지노

國際觀光시설과 카지노 Queensland, Australia



배치도

이 설계는 카지노를 포함한 세계 수준의 관광시설들을 포함하고 있다.

위치는 새 Robina 개발지역의 북서쪽 끝 수면에 자리잡게 된다. 이 지역은 인공호수를 만들고 Robina 지역을 확장시키며 수상오락시설을 위해 파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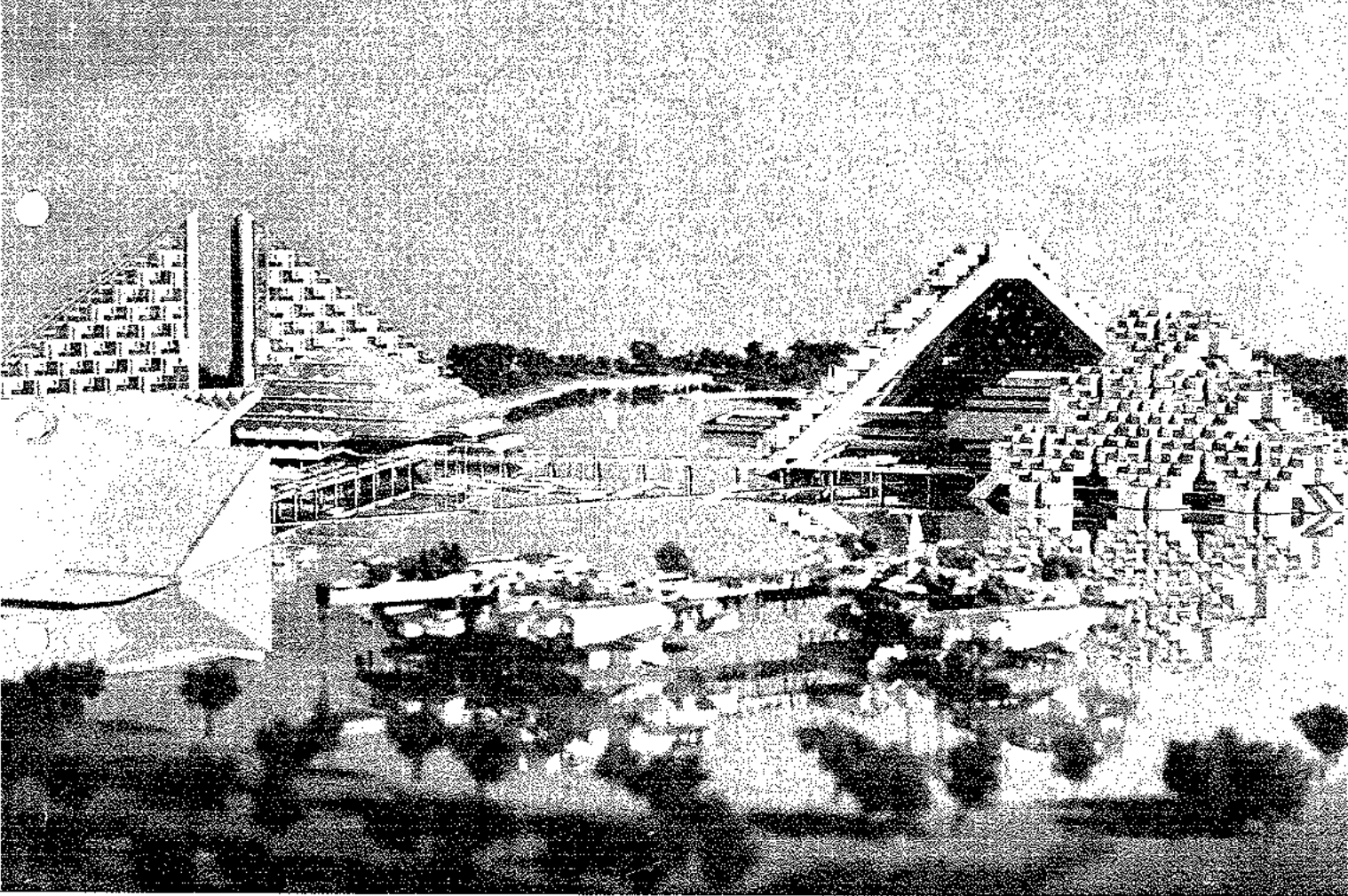
호수에는 4 개의 섬이 만들어지게 된다. 세계의 섬은 각각 본섬에 다리와 방축길로 연결될 것이다. 섬 하나는 카지노 시설이 들어가게 되며, 둘째섬은 재래의 시설물을 갖춘 6 백실의 호화 호텔이 세워질 것이다.

세째 섬은 5 백명의 관중석을 가진 실내 경기장이 자리잡게 된다. 나머지 섬은 본섬이나 다른 섬들과 연결되지 않고 오직 배를 타고 가야만 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환상적인 공중 정원이 만들어 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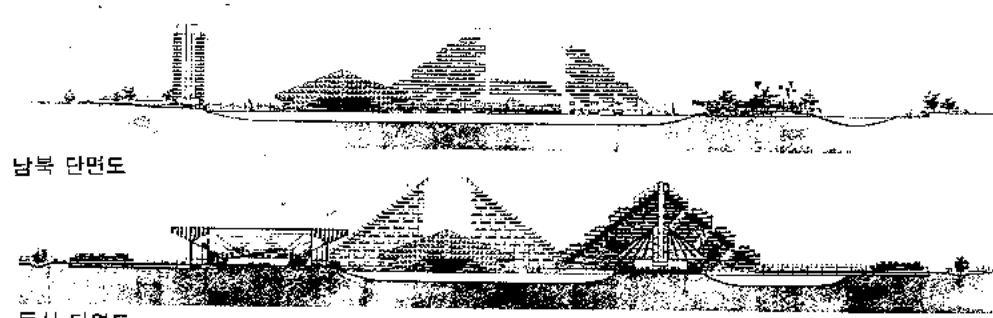
두번째 6 백실의 호텔이 본섬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호텔의 양쪽 두 날개는 모든 복합건물로 가는 상징적 관문을 형성하게 된다.

나머지 호수지역에는 오락과 위락시설물들이 들어시고 여러가지 다양한 유흥물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필요한 주차장으로 쓰여질 것이다.

본섬에 있는 여러가지 시설물에 연결되는 호수 앞 산보길에는 망아지와 자전거 길이 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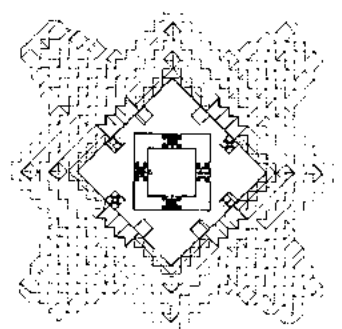


남서쪽 모습 / 회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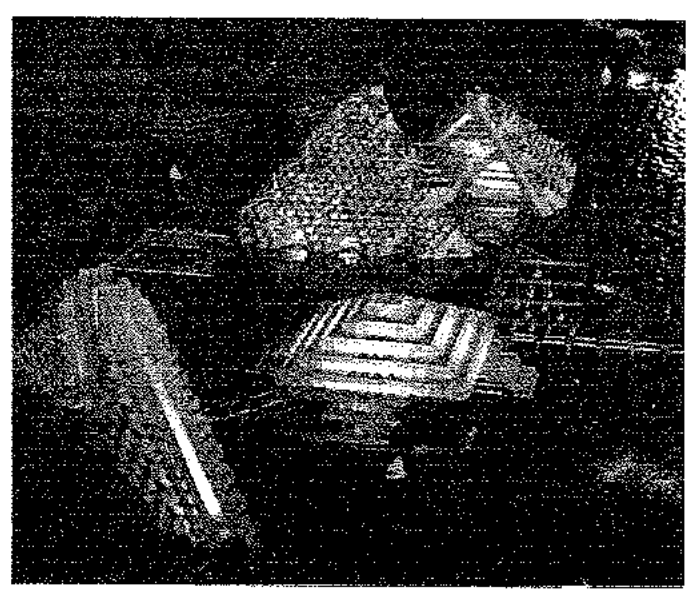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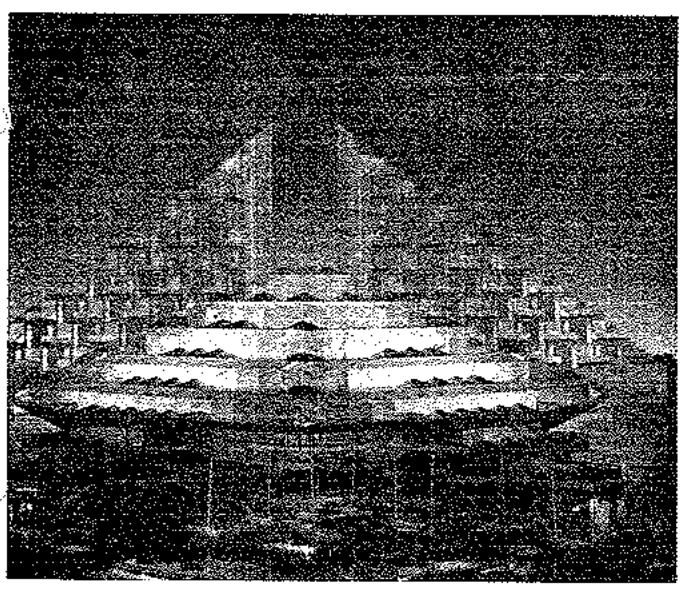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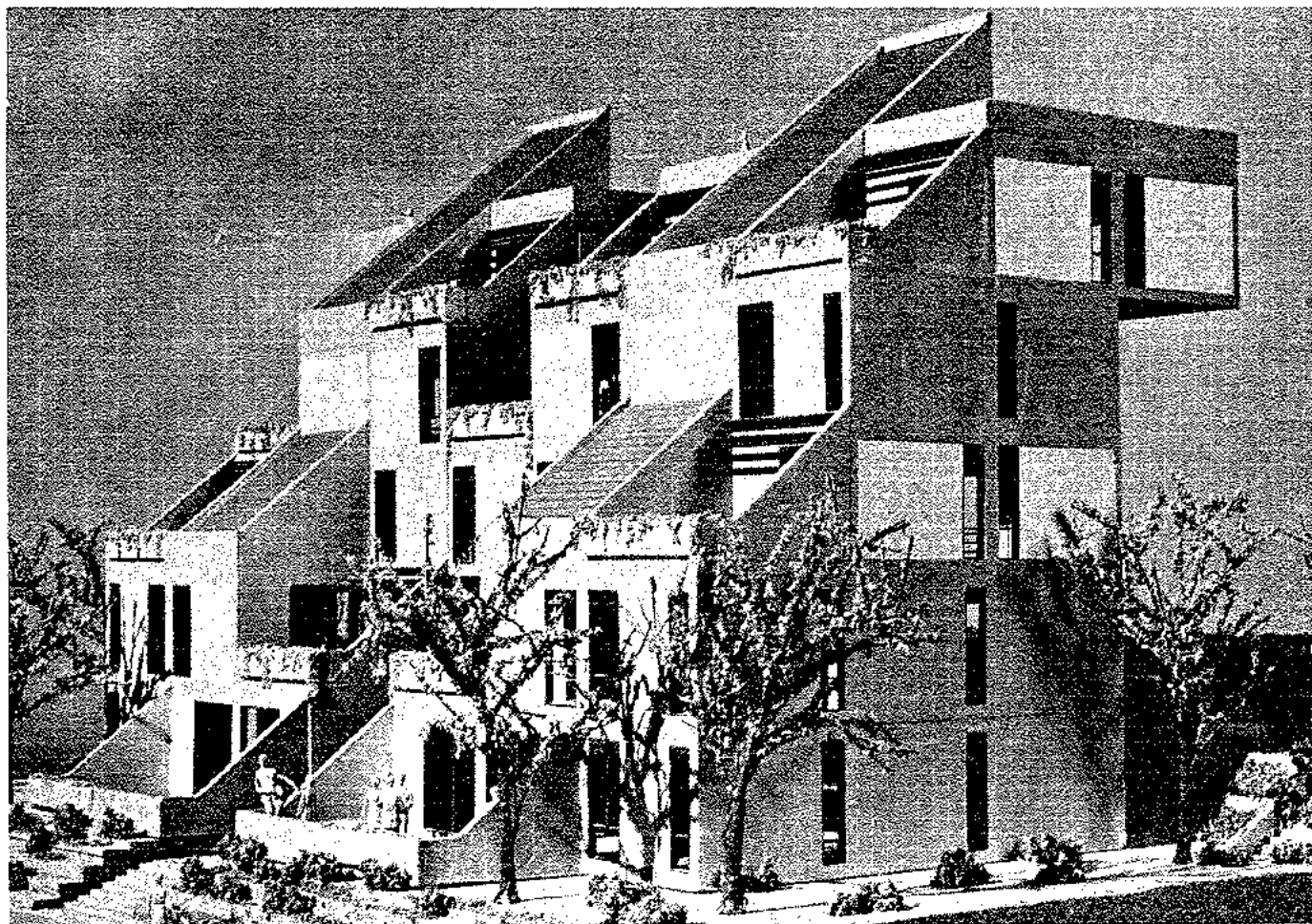
남북 단면도

동서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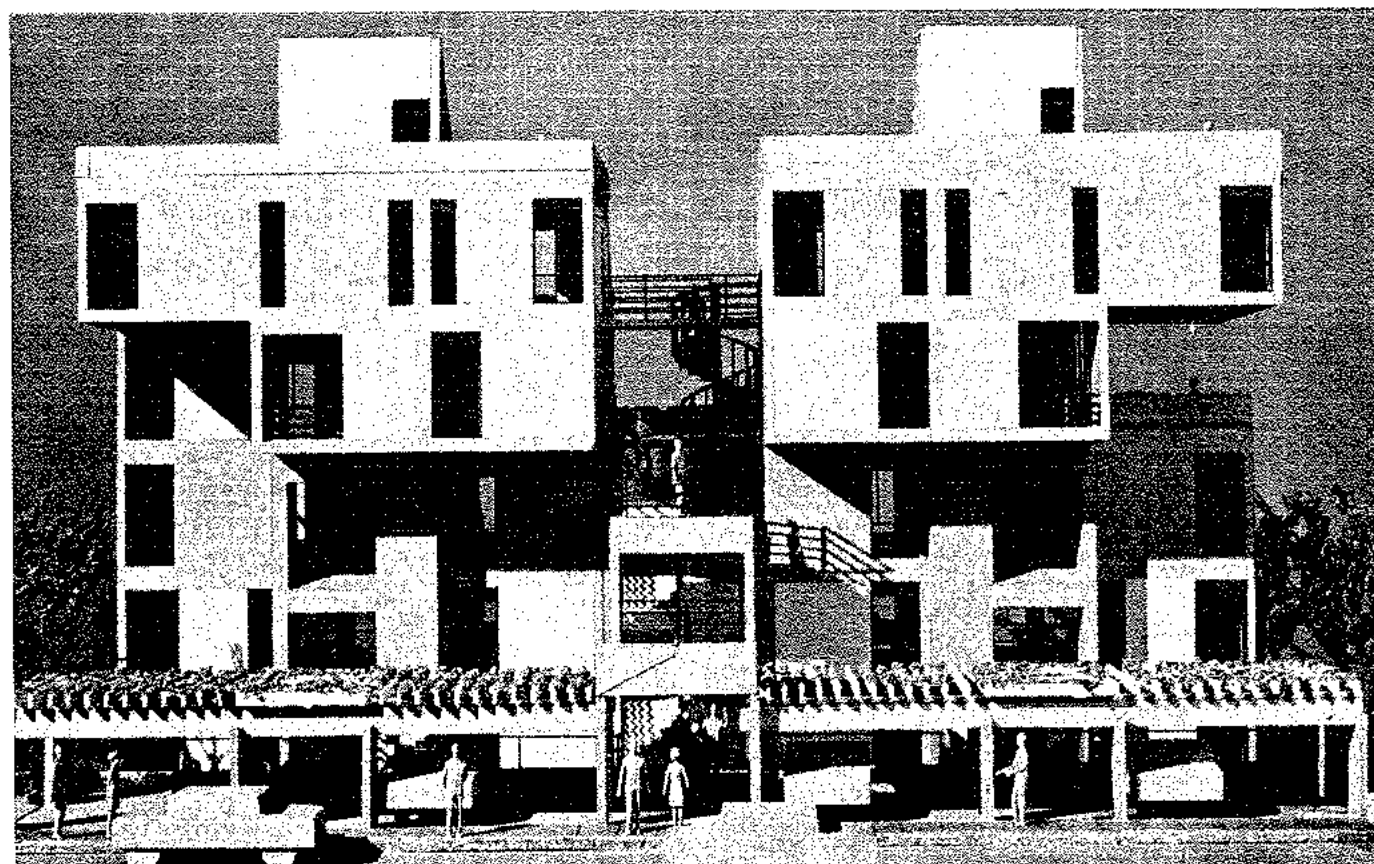


카지노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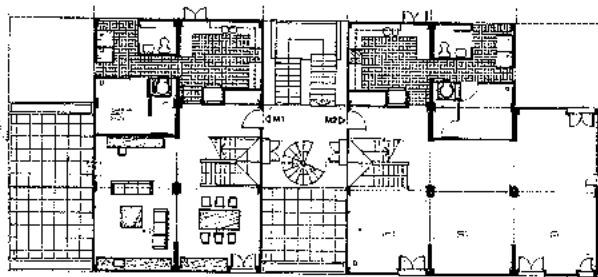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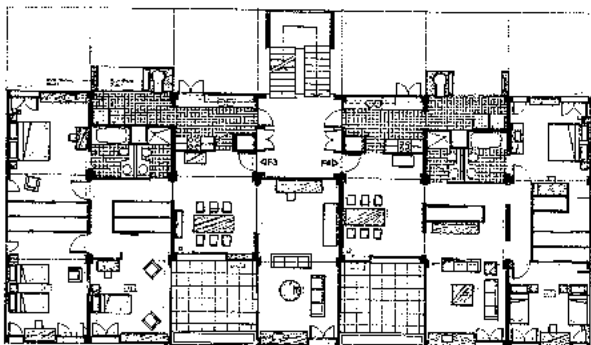
건물군 (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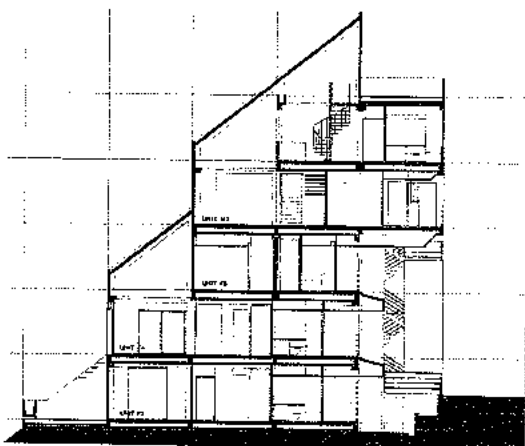
주거군 (群)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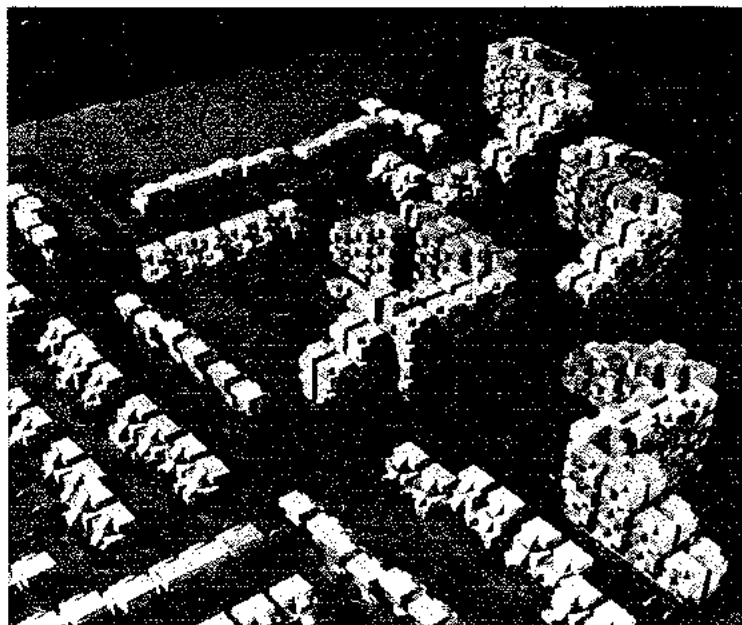
4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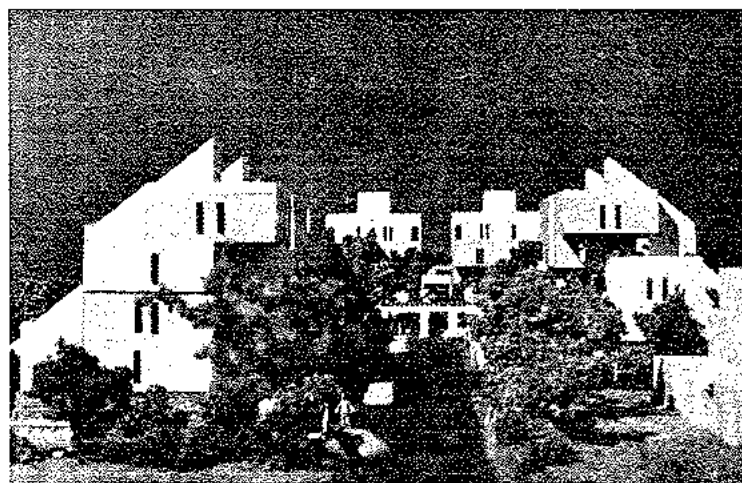
2층평면도



단면도



Total planning.



A cluster of units.

이 계획은 싱가포르의 중심가에서 15마일 떨어진 곳에 45에이커의 땅에 건설된다.

싱가포르의 Tampines 지역은 1981년 개항된 이 나라의 제2공항이 자리잡고 있고 또 한편 불가피하게 이 지역으로 옮겨오지 않으면 안될 용역회사때문에 이 개발계획이 이번에 이루어지게 된 주요 이유가 된다.

이 지역 중심부에는 채석장이 있어 싱가포르의 다른 지역의 매립을 위해 이곳에서 사암이 파내져 왔다.

채석장 주변에는 많은 인공 연못이 생기게 되었고 그 물은 채석작업을 하는데 이용되어 왔다.

건축을 하기에 앞서 우선 펌프로 연못의 물을 펴내고 금후 채석장과 연못에 연결되어 있는 부대 건물들을 없애고 정지작업을 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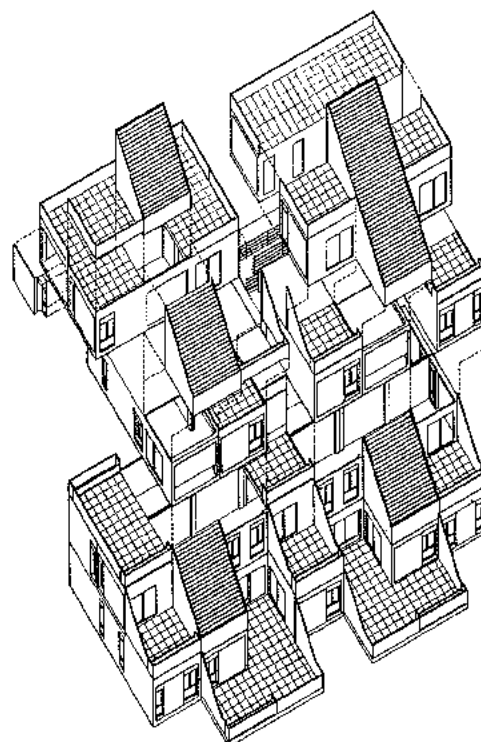
채석장과 연못이있던 곳은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곳으로 사용 될 것이다, 두가지 기본 건물 양식이 설계도로 채택된다.

첫째는 4~5층의 공동주택군과 한 건물에 외형적으로 6~8층 단위의 작은 집으로 구성된다.

정사진 부분에서 볼 때, 위, 아래쪽에 있는 건물들은 뒤쪽 건물 위층에 있는 양쪽 건물의 주차장 위로 연결되게 된다.

평면에서 보면 그 건물들은 물을 형성하며 모여 있다. 공동주택들은 각 층 사이에 주요공간을 설계하여 건물의 공지에서 환풍이 되도록 했다.

이 설계는 총 1천세대로 이루어지며 세개의 방면으로 건축하게 된다. 각 건물에는 오락장과 쇼핑시설을 갖추고 있다.



Axonometric.

건축계 뉴스 / 정보

다음은 건설부가 마련한 「1982년 주요業務計劃解説」 가운데 주요정책 방향만을 뽑아 옮긴 것이다. / 편집자 /

'82년은 第2次國土綜合開發計劃과 第5次經濟社會發展計劃이 同時に 着手되는 해로서 建設部가 管掌하고 있는 國土開發政策面에서 볼 때 意義가 매우 큰 한해가 되고 있다.

이와같이 重要的 時點에서 '82년에 建設部가 펴나갈 主要施策方向은 다음과 같다.

첫째, '80年代 民主복지社會에 對應하는 國土政策의 強力한 推進이다. 이를 爲해서 國土의 均衡開發을 主眼으로 하는 第2次國土綜合開發計劃('82~'91)을 새로 着手하고 國土利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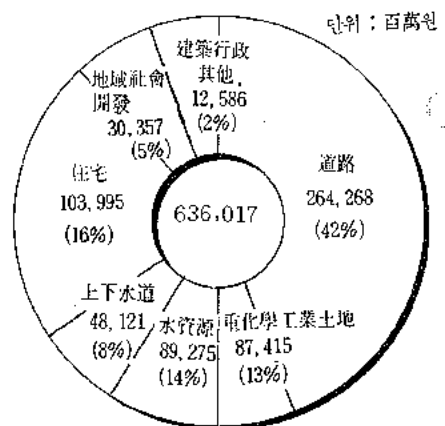
管理의 合理化和 地價의 安定化를 圖謀하는 한편 經濟, 社會與件變化에 對應하여 既存 都市計劃을 全面 再整備하고 自然環境의 開發과 保全을 調和시켜 나가는 데 力點을 두고자 한다.

둘째, 國民生活의 基本需要 充足을 爲하여 低所得層을 爲한 中小規模 國民住宅의 建設을 擴大하고, 中小都市 生活用水供給施設과 下水道施設을 整備 擴充하고자 한다.

셋째, 經濟建設을 爲한 基盤構築事業을 工程計劃에 맞추어 繼續推進하겠으며 이를 爲하여 重化學工業基地 建設事業을 繼續推進하고 水資源의 多目的 開發事業을 積極化하는 한편 輸送效率의 增大을 爲한 國道의 整備擴充에 力點을 두겠으며, 또한 海外建設 輸出의 內實化를 爲하여 諸般 支援施策을 強化하고자 한다.

네째, 建設技術 開發을 促進하고, 올림픽 關聯事業을 積極 推進하겠으며, 마지막으로 깨끗한 建設風土의 造成을 爲하여 總力을 傾注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建設施策의 具體的 推進을 뒷받침하기爲한 建設部 豫算은 '81年 豫

算 4,798億원에 比하여 1,562億원이 增額된 6,360億원으로서 이를 事業別로 보면 道路事業費 2,643億원(42%) 重化學工業基地支援事業費 874億원(13%), 住宅事業費 1,040億원(16%), 水資源開發費 893億원(14%), 上下水道事業費 481億원(8%), 地域社會開發費 304億원(5%), 建設行政其他 126億원(2%)로 構成되어 있다.



'82豫算	'81豫算	増△減	對比(%)
636,017	479,780 (追更62,506包含)	156,237	133

建設部 李圭孝次官 강연

아랍 文化會館에서

李圭孝건설부차관은 지난달 27일 한 국아랍친선협회(회장 장 성환) 82년도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강연회를 겸한 이날 동 協會定總에서 李차관은 「한국건설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한시간에 걸쳐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현실과 장래에 대해 연설했다.

동 협회는 아랍권 국가와의 유대를 강화, 상호 문화교류를 비롯한 경제협력모색을 위해 각종사업을 벌여 민간 외교의 큰 몫을 하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동 협회는 협회지방 간사업을 위시해서 아랍語 연수교육, 각종문화전시사업, 방문외교전개, 중동자료실 공개운영등 사업을 벌여 성과를 얻기도 했다.

건축법·건축사법 국회建設委 통과

건축허가업무장구 一元化

국회建設委는 건축허가장구의 一元化를 내용으로 한 건축법 개정안과 建築士試驗資格基準을 完備한 건축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3월11일 하오 국회 建設委를 통과한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은 건축허가에 부수되는 민원서류를 建築課에서 일괄접수 처리케 하고 건축에 관련된 각종 認·許可業務를 건축허가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게 했다.

또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용적율 등, 건축규제를 지방실정에 맞게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條例에 위임하고 기존시설에 환경오염방지 설치시는 건폐율 및 용적율의 초과를 허용토록 했다.

건축법 개정안은 또 특수건물을 중점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5층 이상, 연면적 330평 이상 건축물에 대해 매 2년마다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유지관리상태를 폐지, 국민부담을 해소하게 했다.

한편 건축사법 개정안은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고쳐 대졸자의 경우 현행 졸업 7년 이후에서 5년 이후로, 전문대 졸업자는 9년에서 7년으로, 고졸자는 12년에서 10년으로, 기타 실무경험자는 16년에서 14년으로 각각 2년씩 단축했다.

또 국가 또는 지방의 건축직 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중 소정의 응시자격이 있는 자는 건축사면허취득의 특례를 인정하여 건축직 공무원의 離職을 방지하고 사기를 높여주기로 했다.

부동산경기 好轉예상

공공건설 조기발주 등으로

공공건설사업의 조기 발주와 건축 허가 면적의 증가 등으로 오는 4~5월의 부동산경기가 호전될 전망이다.

부동산경기동향을 조사한 토지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중 부동산경기는 적으나 일부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거래가 한산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국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부동산경기에 대한 기대가 증가되고 있어 4~5월경부터는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도매물가와 소비자물가 등이 안정되고 민영주택자금 대출금리가 인하됐으며 국민주택자금 대출금리 역시 2~3% 인하되어 부동산에 대한 투자유인이 다소 증가될 것이라 점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에 토지개발공사는 공공주택의 저렴화와 대량 공 이 가능한 건물의 척도조정법을 도입키로한 것은 주택의 생산성 향상에 괄목할만한 조치로 평가하고 이같은 노력이 부동산 경기의 회복을 위해 더욱 경주해야 할 것으로 밝혔다.

垜地面積 20%이상 나무심는 「新築」

옥외 주차장 15%로

대지면적 20% 이상에 나무를 심는 신축건물은 25%로 돼있는 옥외주차장을 15%까지 축소시킬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대형건물주변 조경을 강화하기 위해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 나무를 심은 대지면적 만큼 옥외주차장 외부면적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는 건물주변에 의무조경기준 이상의 나무를 심으려해도 옥외주차장 외부면적에 묶여 심을 수 없는 현행 조례를 현실화시킨 것이다.

이 조례는 또 3백평 미만의 건물을 4m 이상 도로(종전까지는 6m)변에 지을 수 있도록 허용, 소형건물의 건축허가 조건을 완화시켰다.

無許 건물 陽性化심의

서울 시내 7만 8천여동의 무허가 건물이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양성화 심의를 받게 됐다.

서울시는 무허가 건물 양성화 계획을 마련, 15만 4천여동의 무허가 건물 가운데 1백 52개 불량주택재개발지구안의 4만 9천여동과 도시계획지구안의 2만 7천여동 등 7만 6천동을 제외한 7만 8천동을 양성화대상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특별건축물 정리에 관한 조치법 시행령에 의해 상습재해지구 및 환경보전지구에 포함된 무허가 건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로 양성화 심의를 받게 될 무허가건물은 7만여동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습재해지구는 침수 지역이나 위험 주택 지역이고 환경보전지구는 고속도로, 철도연변, 관광지 사적지 주변인데 이같은 지역은 대부분 불량주택재개발지구에 묶여 있어 대상무허가건물이 많지 않다는게 서울시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자기가 살고 있는 건물이 재개발지구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구청에서 발급하는 도시계획확인원으로 알 수 있다.

서울시는 6월말까지 국-공유지상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토지불하조건 등을 규정한 조례와 시행지침을 마련, 7월 1일부터 양성화신청을 구청단위로 접수할 계획이다.

양성화 신청시에는 건축사가 만든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야하는데 구청에서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적합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심의위는 특조법의 입법취지에 불여 법에서 제한한 폭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았거나 건축선을 침범한 건물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돼있다.

특조법상 양성화제한은 소방도로 등 도로확보 때문으로 이 규정에 맞도록 집을 고쳐 재심을 거치면 준공검사받을증을 발부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양성화신청에 몰릴 것에 대비, 7~8월에는 주 1회의 심의를 열

어 신속하게 처리 하고 현재 평당 1만 원 정도를 받고있는 설계도서등 작성비를 2천~3천원으로 낮추도록 건설부와 협의 중이다.

新築되는 모든 건물

외관·조경 엄격심사

앞으로 신축되는 모든 건물은 건축허가 심의과정에서 외관, 조경 및 주위환경과의 조화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받게 됐다.

서울시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 대비, 서울을 국제적인 도시로 가꿔 나가기 위해 건축심의기준을 강화하고 대지면적, 건물높이 색깔 및 형태, 조경계획 등 건축심의의 심사대상이 되는 제반요건을 보다 엄격히 해석, 건축물의 외관을 아름답게 꾸미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미관지구 종로, 의주로, 태평로 등 도시설계구역에 세워지는 건축물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31층 이상 건물 등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사대상에 대해서는 미적(美的) 기준을 강화했다. 즉 이제까지는 대지면적이 기준의 70% 이상만 되면 주위환경과의 조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가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역제키로 했다.

조경계획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대지면적에 비해한 조경면적을 산출, 그 범위내에서 나무를 심으면 되도록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식수위치 수종(樹種) 규격등을 건축계획서에 상세히 명시해야만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건축물의 모양이나 색깔규제도 강화, 건축선을 이웃건물과 평행되도록 권장하는 한편 수준 높은 외장재를 사용하고 주위와 색깔을 통일시키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그밖에 주차여건 및 차량 진입로도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를 규제할 방침인데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 70~80%에 이르던 건축심의 통과율이 최근들어 30~40%선으로 떨어지는 등 심의가 엄격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再開發地域 일부해제

서울·부산 100여만평

정부와 民正黨은 전국의 再開發 지역 중 서울지역의 22개구역 1백만평과 釜山의 4개구역 6만6천평을 재개발대상에서 해제, 이들 지역에 있는 무허가건축물을 양성화하기로 합의했다.

羅頌昊 民正黨정책위의장은 『지난 9월 정기국회에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써 재개발지역내의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가 어렵게 됐으나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일부재개발지역의 건축물을 양성화하기로 관계당국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羅의장은 이어 民正黨은 앞으로도 나머지 재개발지역의 무허가건축물양성화를 위해 관계당국과 계속 협의하는 한편 재해상습지역 또는 국가공익상 양성화가 어려운 지역은 별도 移住제

획을 세운뒤 재개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개발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중 서울의 경우 2백8개구역 4백90만평, 釜山은 6개구역 12만4천평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정부와 民正黨이 합의한 再開發해제지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22개지역·발호안은 면적·단위 m²)

▲鍾路구=①樓上동 1일대(3만4천) ②三清동 2의10(2만3천) ③松月동 2(6천8백)

▲龍山구=西氷庫동24의39(7천2백)

▲城東구=沙斤동 309(2만)

▲東大門구=新設동92(6천)

▲道峰구=①彌阿동860(7천) ②彌阿 6지구 791(8만1천) ③上溪동

山80(1만) ④中溪동 288(1만4천) ⑤中溪동 3지구 426(1만5천)

▲恩平구=①水色동 150(11만7천)

②응암동397(12만5천)

▲西大門구=①弘濟동40(9만4천)

②弘濟 7지구 7(1만9천) ③北加路동100(1만9천)

▲麻浦구=上岩동 2의21(5만4천)

▲江西구=①新月동169(8만2천)

②新井 1지구 31(8만3천)

③新井 2지구 414(5만6천)

▲永登浦구=堂山 1지구 1(8천)

▲銅雀구=舍堂 1지구 산11(4만5천)

▲釜山(4개구역)

▲凡一동 1지구(4만)

▲佐川 2동(1만4천)

▲新仙 1동(2만3천)

▲東光동(1만4천)

잠실運 주변 35만평 종합정비

建築許可 기준도 強化

서울시는 88년올림픽에 대비, 잠실 종합운동장 주변의 정선여중-고, 우성아파트단지, 주공아파트단지 주위 35만여평을 종합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건축규제를 강화한 지역은 선수촌부지 7만9천4백평을 비롯, 건축심의 강화지역 15만7천여평, 도시설계 적용지역 4만5천8백평 등이다.

선수촌부지에서는 일체의 건축행위가 통제되며 선수촌부지 남쪽의 건축허가 유보지역은 올림픽조직위원회의 개발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건축허가가 일시 유보된다.

주공 3단지과 도시설계지역에 둘러싸인 건축심의 강화 지역은 ▲종전 규정에서 취급하던 건축심의를 본청에서 처리하고 ▲건축이 가능한 매지면적을 종전 최소 27%에서 50%으로 높이고 ▲식수 등 조경도 다른지역의 경우 매지면적의 5~15%인데 비해 15% 이상으로 강화했으며 ▲전물외관은 타일이나 벽돌 등 고급외장재를 사용토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합운동장과 선

수촌부지 주변을 도시설계구역과 건축심의 강화지역으로 나뉘, 도시설계구역은 설계가 확정될 때까지 허가를 유보하고 건축심의 강화지역은 허가기준을 강화시켜 허가를 내주게되나 건축허가 유보지역에서는 올림픽조직위원회의 방침이 아직 확정되지않아 개별건축행위를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함께 이 지역내의 보도블럭과 가로등을 고급화하고 전선, 전화선을 지하화하는 등 도시시설물도 함께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불란서 現代建築 강연회

마리옹 두르농-브랑리여사

불란서 퐁텐블로의 미국 미술학교 교장인 마리옹 두르농-브랑리여사 초청 강연회가 4월2일 오후 6시에 불란서 문화관에서 열렸다.

불란서 문화관 주관과 홍익대학교 후원으로 열린 이날 강연회에는 건축관계 인사와 건축과 학생들이 참석하여 브랑리여사의 강연을 관심있게 경청했다.

이날 "불란서의 현대건축"이라는 주

제로 강연을 한 브랑리여사는 1955년에서 1980년 사이의 불란서 건축물을 슬라이드로 보여 주면서 현대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브랑리여사의 강연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불란서의 현대건축은 1940년에서 1944년 사이, 불란서 보자르학교에서 배운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우 엄격성이 있다.

보자르학교는 19세기 말에 건립되었는데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어느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학교에서는 각 분야의 예술을 좀더 가깝게 종합시키기 위해 특히 노력했다. 19세기 말, 미국에는 건축대학이 없어서 카고 학파 등의 많은 미국학생들이 보자르에 와서 교전건축양식을 공부했다. 그들은 미국으로 돌아가 뉴욕을 비롯한 대도시에 대규모 건물을 많이 건립했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의 60세 이상의 건축대학 교수들은 거의가 불란서 교수들에게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중 한사람이 루이 칸이다. 루이 칸은 보자르에 대해 좋은 평을 할 것이다.

그러나 보자르에 대해 비판적인 세력이 생겨난다. 르 꼬르뷔제와 그로 피우스가 그 대표적인 건축가들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수가 갑자기 많아져 1968년의 학생사태로까지 구체화되게 되었다. 보자르의 아카데미즘에 대한 반대자들은 만족할지 모르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결국 미술만이 보자르에 남고 건축은 보자르에서 밀려나고 말았다.

그리하여 건축대학이 9개 그룹으로 나뉘게 되었다. 정부는 9개 중, 5개 대학을 신도시에 배치했고 4개 대학은 파리 근교로 분산시켰다. 결과는 많은 학생, 많은 아이디어들이 보자르를 폭발시키고 파리까지 폭발시킨 셈이다. 그것이 안타깝기만하다.

불란서의 현대건축은 정말 의외가 깊다. 그것은 시간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대건축은 연속성·절단의 증인일 수도 있다. 특히 절단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긴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현대건축을 저해하는 요인은 광고가 아니라 획일성이다. 획일성을 탈피하는 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큰 문제 중의 하나일 것이다."

美國서 태양열 技術 발표회

6월 1일부터 5일간

태양열기술 발표회와 국제박람회가 오는 6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동안 미국에서 개최된다.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매년 미국 상무성이 수입업자를 위해 기획하고 있는 이 박람회는 태양열에 관한 기술을 비롯해서 관련 산업과 자재 등을 총망라해서 세계적인 수입업자와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개최한다.

한편 이번 박람회를 위해 주한미대사관에서는 관심있는 관람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국제교역센터를 설치하고 이의 이용을 바라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 관해 문의하고자 하는 분들은 미국대사관 상무담당관제자이 근덕씨(전화 722-2601)나 교환(4583)으로 연락을 바라고 있다.

□ 新刊書評

U. I. A 이슬람 回教文化센터

國際懸賞應募作品集

本書는 지난 1981년 6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되었던 제15차 U. I. A (國際建築家聯盟) 總會에 韓國代表團長으로 참가한 弘大의 羅相紀교수가 寄贈받은 圖書를 번안한 것으로서, 국내의 既成 建築人은 물론 建築學徒들에게 참고자료로서 出刊된 것이다.

本書의 내용은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市에 건설하기 위한 이슬람 回教文化센터 國際懸賞應募作品 455점을 수록하였다. 특히 이 작품집은 U. I. A. 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한 입선작과 더불어 세계 71개국에서 2,000여명의 建築家들로부터 접수된 455점의 작품 중에는 韓國建築家會員인 姜석원·정진수 兩氏의 작품도 수록되어 있기에 兩國際懸賞 設計에 뜻있는 建築家會員을 물론 力量있는 숨은 建築人과 學徒들의 研究資料로서는 더없이 좋은 책이라 믿는 바이다.

◇ 羅相紀 譯 ◇ 技文堂 發行 25,000원

(新版)空間·時間·建築(I·II)

本書의 著者인 S. Giedion이 M. I. T 와 스위스聯邦工大, 그리고 하바드大學 등 教授職을 두루 역임하면서 講論한 내용을 集大成한 것으로서 서양의 많은 대학에서 教材로 사용되어온 名著中の 名著이며, 르·꼬르뷔제, 월터 그로피우스를 비롯한 세계 제1의 建築家들과 더불어 近代建築의 발전과 人間環境의 調整을 위하여 一線에서 殫精竭慮한 實踐을 기울인 力書로서 建築의 바이블이라고까지 할만큼 큰 名譽를 지니고 있는 本書를 國際建築社會에서는 灵感을 불어 넣는 行動的인 論評書라고 絶찬하고 있는 바, 우리의 建築界에서도 꼭 한번은 읽고 넘어가야 할 名著이기에 自身の 立場을 再論証해 보는 뜻에서도 愛讀한 수 있을 疑無한 바이다. 〈心象〉

◇ 産業圖書 發行 ◇ S. Giedion 著
◇ 9,000원 ◇ 崔昌奎 訳

“住宅設計”발간

건축사·학생·일반인에 도움

주택을 설계하려는 건축사나 건축학도, 또는 주택을 지으려는 일반인들이 두루 참고할 수 있는 「住宅設計」책자.

朱鍾元(서울공대 건축과)교수가 쓴 이 책자는 全6章과 부록으로 꾸며져 있으며, 1장에서는 사전조사에 대한 설명, 2장은 주택의 유형을 분류해서 특색을 설명했고 3장에서는 각실의 설계부터 창호설계 등 주호 설계방법을 설명했다.

4장은 설비설계, 5장은 주거환경 조성, 6장은 설계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또한 주택설계에 참고가 되는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 형설출판사 발행/322P/5,500원

建築施工學 / 벽돌 두권

본회 회원인 張起仁(삼성건축)씨가 올들어 두권의 책을 출간했다.

全訂版인 “建築施工學”과 한국건축대계Ⅱ로 “벽돌”一.

이미 널리 알려진 건축시공학은 건축시공상의 모든 분야를 상세하게 담고 있으며 이번 개정판에는 과거의 시공법을 정리하고 오늘날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工法을 기술한데 이어 유망시되는 재료, 구조 및 공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편 韓國建築大系시리즈 두번째로 발간된 “벽돌”은 우리나라 벽돌의 역사, 재료, 조적법, 구조, 시공 외에 세계제도법 등 벽돌의 모든 것을 학문적 체계로 기술해 놓은 책이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벽돌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제조법이나 조적공법도 거의 동일하지만 독자적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1800년대(구한말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서양의 제조술과 공법이 쓰이게 되었다”고 우리나라 벽돌의 역사를 약술하고 있다. 〈用〉

□ 全訂版 建築施工學 / 보성문화사/7,900원

□ 韓國建築大系Ⅱ 벽돌/보성문화사/6,000원

“어디로 많이 갔나?”

'82년도 건축과 졸업생 (10개 대학)

□ 절대다수가 건설업체로 55.2%

'82년도 전국 10개 종합대학의 건축과 졸업생수를 종합한 결과 총 7백34명에 달했다. 물론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대학교를 총 망라한 것은 아니지만 주요 대학교로 서울대를 비롯해 연대, 한양대, 홍익대, 건국대, 인하대, 부산대, 동아대, 영남대, 전남대 등을 대상으로 해서 집계했다.

졸업생 수를 집계한 까닭은 내일의 한국건축계를 이끌어 나갈 건축공학도들의 분야별 취업현황을 점검해보고, 추이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밝혀 보고자하는데 있었다.

먼저 건축과 졸업생들의 취업율은 타 전공분야 졸업생에 비해 역시 높아 약 63%(대학원진학·유학·군입대·미확인제외)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이 가장 많이 몰린 취업부문은 예년과 다름없이 건설업체로서 약 55%가 편중되고 있다.

그밖에 취업을 아닌 분야(대학원·유학·군입대·미확인 등)의 약 37%를 제외한, 설계사무소, 공무원, 교직 가운데, 즉 남은 프로페지언 약 8%에서 설계사무소를 직장으로 택한 졸업생 수가 6.1%이고, 다음이 공무원 1.2%, 교직을 택한 수는 0.1%로 분류되었다. <별표참조>

위에서와 같이 취업부문 가운데 건설업체 다음으로 설계사무소를 선택한 졸업생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차이는(건설업체와 설계사무소) 4백5명대 45명으로 거의 10대 1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꽤 대조적이다.

□ 설계사무소에는 6.1%에 불과 理由 - 영세성 / 낮은 출세 / 생활보장 어려워

건축문화의 측면에서, 한 나라의 건축계 장래를 이끌어 나가는 요체는 우수한 창조적 작품설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선진국의 예를 들지 않아도 학교에서 받은 학문을 바탕으로 보다 높은 理想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능력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의 실천도장으로서 역시 현실 집착적인 시공분야보다는, 보다 전문적이고 창의성 개발이 가능한 설계분야에서의 자기훈련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나타난 졸업생들의 취업분야 기호도는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장래를 다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되게 하고도 남음이 있다.

□ 전문가로서의 사명감 심어 줘야
이들이 건설업체 쪽으로 몰리는 까닭은 알려진 바와 같이 우선 생활보장이 된다는 것과, 어떠한 이유로든知名度가 높다는 것, 그리고 소위 출세가 빠르다는 現實安住심리에서 연유된 것으로 풀이 되고 있다.

이를 뒤집어 보면 설계사무소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는 까닭이 쉽게 밝혀진다. 즉, 생활보장이 쉽지 않다는 것과(다 그런 것은 아니라 해도), 오랜동안 이른바 출세를 하기가 어렵다는 점, 또 능력을 쉽게 발휘할 수 없다는 점, 知名度가 훨씬 뒤진다는 점, 등을 그들은 들고 있다.

한마디로 이들에게 건축학도로서의 사명감이나 원대한 理想이 없다고 볼아 부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더 깊이 헤아려 보면 또 다른 해석이 뒤따르고 있다. 즉,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의식결여, 혹은 사회여건상의 문제, 나가서는 제도적인 문제 등등 그들의 시야를 보다 더 넓혀 줄 수 없는 제약조건들이 있다고 하겠다.

물론 직업선택에 있어 어느곳이 좋고 어느곳이 나쁘다는 式의 얘기는 말도 안되지만 전문인으로서 배운바를 더욱 높게 이룩하는 데에는 그 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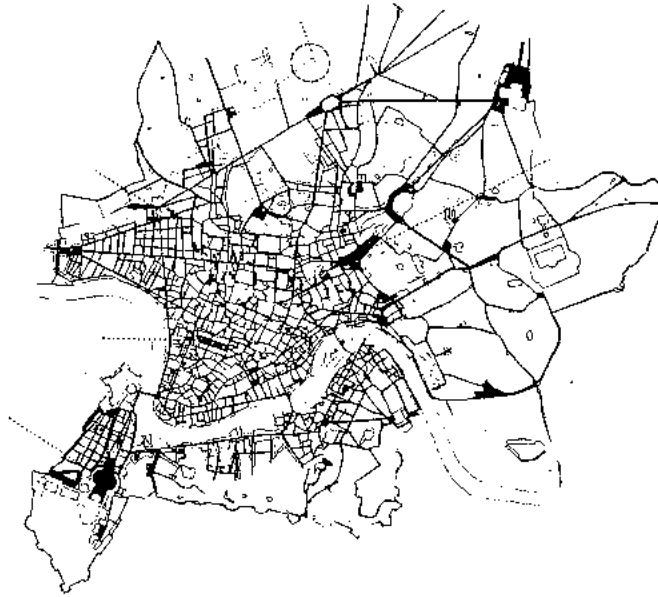
하긴 당장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설계사무소에서 첫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뭔가 불안하고 다른 곳과 비교할 수 밖에 없으리라고 여기지만, 보다는 젊은 건축학도들이 정열을 쏟아 이 나라의 건축문화의 꽃을 만발하게 꽃피우겠다는 사명감을 심어주는 그 어떤 작업이 이제부터라도 시작되어야 하겠다. <*>

82년도 건축과 졸업생 취업현황

(3월말 현재)

구분	학교명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홍대	건대	인하대	부산대	동아대	영남대	전남대	계	비율(%)
82년도 졸업생		45	73	193	100	62	53	37	40	103	28	734	734
건설업체		15	45	129	39	29	42	27	21	44	14	405	55.2(%)
설계사무소			3	11	13	5	3	2	4		4	45	6.1(%)
공무원				2	4			1		2		9	1.2(%)
교직					1							1	0.1(%)
대학원진학		24	9	16	10			2	5	9	6	81	11.0(%)
군입대		3	9	23	19		7	5	7	21	2	96	13.1(%)
유학			7									7	1.0(%)
미확인		3		12	14							29	4.0(%)
기타						28			3	21		52	7.1(%)
							1			6	2	9	1.2(%)

건축행정 / 질의응답



□ 시·도지부 문의

㉠ 철근 콘크리트조 지상 3층의 학교 건축물로서 각 층고가 3.3m이고(각 실 바닥면적) 50㎡ 이상 교실바닥에서 직상층 바닥판 밑까지는 3.18m이며, 교실바닥에서 보 밑까지는 2.7m일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동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교실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교실의 규모 및 구조상 세움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회신이 불가하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 규정의 취지는 채광, 통풍을 위한 실의 적정체적을 최소한 확보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므로, 천정면적에 비하여 가로 또는 세로로 걸쳐 있는 보의 수평면적이 현저히 적고, 또한 보의 수직 높이가 심하게 크지 않을 때는 이로 인한 실의 체적 감소가 경미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의 반자높이 산정은 직상층판 밑까지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부)

㉢ ① 주거지역 내 단독주택 1동의 기존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동일 필지 내 공중목욕탕을 별동으로 증축코자 할 경우와

② 상업지역 내 건축법 시행 이전에 별동으로 단독주택 2동의 기존 건축물이 있는 동일 필지 내 상업용 건축물을 별동으로 증축코자 할 경우 판변법에 적용할 때 증축가능 여부?

㉣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에 계기한 부속 건축물만의 건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건설부)

㉤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상대농지에 동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 농가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다음 철의사항에 대한 귀견여부?

① 농가 주택이라 함은 농가 단독주택 외에 농가 연립주택도 포함되는지?

② 농가 단독주택 및 농가 연립주택의 건축을 위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규정은?

㉥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농지를 임의 전용할 수 있는 농가주택이라 함은 영농을 위한 농촌주택을 지칭하는 것으로 도시형 연립주택은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를 득한 후가 아니면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농수산부)

㉦ ① 건축법 시행령 제96조(방화구획)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화구조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를 넘을 경우는 1,0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② 동령 제91조(특수 건축물 등의 내장)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스프링롤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바닥 면적은 그 3분의 2를 감한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라고 되어 있는바 동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도 이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단서 전단의 규정은 동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서도 적용됩니다. (건설부)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하는바

이 목의 “계단탑”과 동조동향 제 5호 다목의 승강기탑, 장식탑 등은 높이 산정에 따른 “계단실”과의 건축법 해석상의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상 정의는?

(서울지부)

㉠ 건축법 시행령 제 3조 제 1항 제 3호 라목의 “계단탑”은 면적산정시 사용하고, 제 5호 다목의 “계단실”은 높이 산정시 사용하는 용어로 유사 용어입니다. (기술부)

㉡ 건축법 제 5조 및 기타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도중 관계법의 개정이 있고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설계변경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당초 건축허가 당시의 제규정에 의해 이미 상당히 공사가 진척된 상태로 개정법의 제규정에 적합하게 완공이 불가능하나 변경사항이 있어 설계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만 개정법에 적합하게 규정함은 부당하다고 사료 되는바 귀견 여부?

㉢ 건축허가후 공사중 법령의 개정이 있을시는 동건축물에 대하여 개정 건축법에 의하여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중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기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개정법률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건설부)

㉣ 주차장법 제 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부설하는 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

① 소요 주차장을 옥내로 하여 만족할 경우에도 반드시 옥외 주차장을 설치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② 옥내 주차장의 승강로를 기계설비 형식의 주차장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③ 당해 건축대지에 소요 주차장 면적이 부족하여 인접대지에 동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2개의 대지를 합필하여야만 하는지의 여부?

㉤ ① 주차장법 제 1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 정비지구 내에서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옥내 및 옥외에 설치할 주차장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옥내 및 옥외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차장 정비지구 외에서는 옥내, 옥외 구별없이 동법 시행령 제 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설치하면 가능한 것이며,

② 건축물에 부설하는 주차장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한다면 주차하는 계층까지 운반을 위한 기계식 승강 장치의 설치에 건축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며,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기준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4조 제 2항 제 3호 내지 제 10호의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③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동법 시행령 제 6조 제 1항의 규정에 그 건축물 또는 대지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접대지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2개의 대지를 합필하여야 설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건설부)

㉥ 건축법 제 39조 (건폐율) 제 1항 본문에서 대지면적이란 합은 자연녹지, 생산녹지 지역 등의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이 허가된 면적인지 아니면 토지 자체의 면적인지의 여부?

㉦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포함)에서 토지형질 변경한 대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폐율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형질변경이전의 일단의 토지 범위 내 면적까지 포함하여 대지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건설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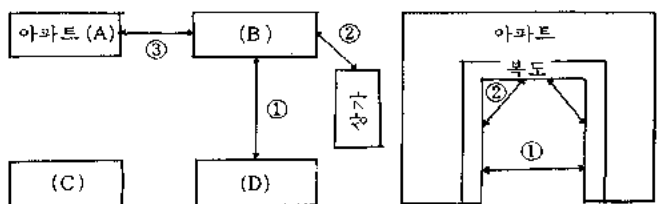
㉧ 건축사법 제 22조의 2 (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 계속)규정에 의하면 폐쇄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따른 계약의 한계란, 건축주와 건축사간에 서면계약 체결된 때를 말함인지나, 건축사 협회에 도서등록을 끝낸 때를 말함인지나, 건축허가 신청접수된 시기를 말함인지의 여부?

㉨ 건축사법 제 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 계속에 있어서의 한계는 서면계약 (수탁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사무소 등록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일 이전 체결된 업무에 한하여 건축주의 해계 조치가 없는 한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설부)

㉩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 17조 제 1항 별표 3, 제 8호에 의하면 지하실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상인 경우 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바, 지하실 면적이 48㎡, 주거전용 면적이 82㎡, 제 130㎡인 경우 주택채권 매입 여부와 지하실의 일부에 차고, 기계실 등으로 복합되어 있을 경우 지하실이란 순수 지하실을 의미하는지의 여부?

㉪ 건축허가시 국민주택 채권 매입 기준은 주거전용 건축물인 단독주택의 경우 지하실 부분 면적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 지하실 부분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이 85㎡ 이하인 때에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만, 이 경우 지하실의 일부가 차고 또는 기계실로 사용되더라도 국민주택 채권 매입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지하실 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건설부)

㉫ 건축법 시행령 제 167조 제 3항의 본문 중 “동일대지 내에서 공동주택 등의 높이는 다른 건축물 또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의 대향부까지의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에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의 대향부”의 용어에 대한 귀견과 다음 그림과 같은 경우 대향부까지의 수평거리는 어느 것인지의 여부?



(그림 1)

(그림 2)

㉬ 건축법 시행령 제 167조 제 3항 중 “대향부까지의 수평거리”라 함은 정면으로 마주보는 부분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하므로 그림 1의 경우는 ① 및 ③, 그림 2의 경우는 ①의 거리가 됩니다. (건설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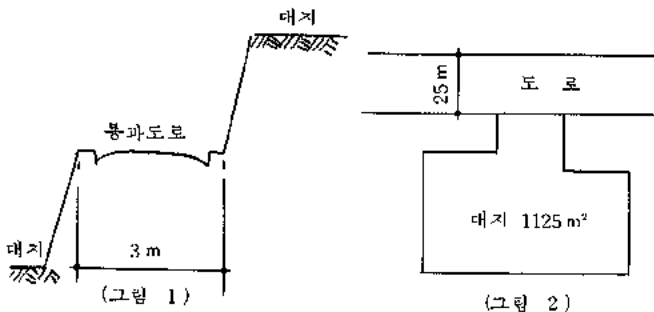
㉔ 현관의 효과를 살리기 위하여, 현관의 채양구조를 철골조로 골격을 구성 “캔틸레버”로 하고 상부를 유리로 덮어 햇빛이 투영하여 일조에 지장이 없을 때도 이부분(벽체에서 3m 돌출됨)을 건축 면적에 산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㉕ 질의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3-1)m×길이”의 면적을 건축면적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기술부)

㉖ 곡물 또는 비료 등을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서, 창고법에 의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개인의 농·임업용 창고, 새마을 공동창고, 단위농협 창고 등 비영업용으로 건축하는 경우 및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건축물로서 가사용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득하는 경우 중 어느 것이 건축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특수건축물이라 지칭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㉗ 창고의 개념 및 범위·규모 등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규정하바 없으나 물품의 보관 또는 저장 등을 하기 위한 용도의 건축물은 영업용·비영업용을 막론하고 건축법 제2조 제3호의 창고로 간주되며,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건축물로 가사용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의 경우와 같이 주건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속창고는 건축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특수건축물이 아닙니다. (기술부)

㉘ ㉑ 건축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림 1)과 같은 조건의 도로와 대지의 관계일 경우 건축선의 지정여부는?



㉙ 상업지역 내 (그림 2)와 같은 여건의 대지에 점포·사무실·공동주택 등의 복합건축물(1~3층: 점포, 사무실, 4~5층: 공동주택)을 1~5층까지 바닥면적을 동일하게 건축코자 하는바 연면적의 과반 이상이 점포·사무실이므로 남측대지 경계선에서의 이격거리 적용은 건축법시행령 제167조제2항을 적용함이 타당한지의 여부?

㉚ ㉑ 도로의 양측에 고저를 두고 접한 질의상의 대지는 각 대지 공히 반대측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소요폭을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을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여야 하며,

㉛ 상업지역 내에서 복합용도로 건축되는 귀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건설부)

㉜ 건축허가 신청자가 건축사라 할지라도 국무총리 훈령 주택건축허가 절차 개선책에 의거 연대책임 건축사 책임하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건축허가 신청서가 반려된 경우에 대한 타당성여부?

㉝ 건축사 면허 소지자가 본인의 주택을 직접 설계하여 건축하는 경우 도서신고 및 연대책임 건축사의 연서 절차 없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㉞ 주택 건축허가 개선책에 의거 주택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청에서 건축허가의 일부절차는 끝났으나 건축주가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하지 못하여 건축허가서를 수교치 못한 상태(면허세 등 제공과금도 미납)에서 건축사에게 착공할 의사를 통보치 않고 임의착공하여 설계상에도 없는 지하실 축조공사 중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건축허가 신청당시 공사감리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허가 신청서에 서명 날인한 건축사에게는 사고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

㉟ 귀 질의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사감리자는 동 업무에 관련되는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공사감리에 임하여야 할 것이나, 절차, 현지 여건 등으로 보아 공사 착공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이 판명 되었을 경우에는 건축사가 책임질 수 없을 것입니다. (건설부)

㊱ 지역지정 이전 적법한 기존건물로 용도는 공장(2,000㎡)으로 공부상에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실제 용도는 공해(소음·분진)가 극심한 석분공장으로 인근 주민의 진정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동 석분공장을 봉해공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거지역 내의 주거환경을 보다 순화시키고자 할 때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귀견여부?

㊲ 지역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건축한 석분공장이 주거지역의 지정으로 건축법상 용도제한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순화를 위하여 이 건축물을 현 석분공장보다 공해요소가 적은 봉해공장으로 그 용도 변경탄을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건설부)

㊳ ㉑ 현재 주거지역으로서 도시계획 재정비지역이고, 산에 인접하여 지목상 전(田)으로서 정부 융자금으로 양곡보관창고 1동 연면적 660㎡를 신축코자 하는 경우 현행 제규정으로는 적법하나, 허가 관청의 행정지시로 도시계획 재정비기간 중 당해지역의 건축허가를 유보하여 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지의 여부?

㊴ 건축설비(옥내전기, 난방, 급수·위생, 소화설비 등)의 설계감리를 할 수 있는 자격자의 한계는?

㊵ ㉑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이라 하더라도 허가권자가 행정지시로 당해 지역의 건축허가를 유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㊶ 건축설비의 설계감리는 소방 및 전기 등 관계법령에 제한규정이 없는 한 건축사의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건축사가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설부)

□ 건축법시행령

㊷ 연립주택 18세대의 택지의 일부가 임야인데 건축이 가능한지요? (회원전화)

㊸ 2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은 대지이어야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가능합니다.

㉔ 경사진 지반의 도로상에 건축물의 지하층이 노출되어 개구부를 설치할 경우, 1층으로 간주하는지요?

(회원방문)

㉕ 지하층은 지하에 2/3 이상 묻혀야하므로 4면 중 1면의 일부라도 노출되었다면 1층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㉖ 10×10×10m 정도의 물탱크를 지하에 설치코자 하는데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지요?

(시민전화)

㉗ 물탱크를 지하에 설치하게 되므로 바닥면적에는 산입되지 않으나 허가는 받으셔야 합니다.

㉘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겹쳐있는 대지로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의한 건축 중 어느지역에 적용하여야 합니까?

(회원전화)

㉙ 건축법 제52조에 보면 도로에 떠모양으로 인하여 지정된 상업지역에서는 그들 지역지구에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건축할 때는 상업지역으로 봅니다.

㉚ 주택에 지하실 차고를 설치코자 하는데,

가. 반자높이는 얼마로 해야 하는지요?

나. 견폐율, 용적율 산정이 되어야 하는지요?

다. 허가나 신고를 꼭해야 하는지요?

(시민방문)

㉛ 가. 23m 이상.

나. 산정되지 않습니다.

다. 허가나 신고를 한 후 공사하여야 합니다.

㉜ 동일대지 내 2동 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시 대지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시민전화)

㉝ 당해 지역지구 내 대지최소면적에 건축코자 하는 주택동수를 곱한 면적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㉞ 주거지역 제1종미관지구에 건축법 제52조 규정을 보면 떠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와 기타의 지역지구가 겹치는 경우 건축물이 이들 지역지구에 걸칠 때 그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하여 상업지역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내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주거지역 제1종미관지구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주거지역 관계없이)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회원전화)

㉟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시행령 부칙) 별표 2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건축법 제52조 규정에서와 같을 경우라면 상업지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주거지역과 1종미관지구가 겹쳐 있는 경우 지역에서 규제되고 있는 건축물은 지구규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㊱ 바닥면적 1,100m²의 학교건축물 계획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는지요?

(회원전화)

㊲ 바닥면적 1,000m²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합니다.

㊳ 일조권에 저촉되는 기존 건축물에 수직증축은 가능한지요?

(회원전화)

㊴ 증축코자 하는 부분에 대한 높이제한 규정은 적용해야 합니다.

㊵ 일반공장인 경우도 대지 안의 공지규정에 의해 건축선으로부터 6m 이상 띄워야 하나요?

(시민전화)

㊶ 일반공장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㊷ 지하층은 모든 건물에나 확보해야 하나요?

(시민전화)

㊸ 건축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㊹ 옥탑으로서 건축면적의 1/8을 넘을 때 층수 및 면적산입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회원전화)

㊺ 물탱크 등 설비를 위한 구조물 등이 건축면적의 1/8을 넘을 때 면적은 제외되나 층수에는 산입됩니다.

㊻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복합 건물입니다. 이 경우 건물의 주용도는?

(시민전화)

㊼ 건물의 주용도는 건물전체의 1/2 이상 차지하는 용도가 주용도가 됩니다.

□ 건축조례

㉔ 여의도 지역인데 제1종 집단미관지구라 함은 서울시 조례 어느 지구의 규정에 따릅니까?

(시민전화)

㉕ 건축조례의 제1종 미관지구 조례에 따르면 됩니다.

□ 기타규정

㉔ 전설업법상 시공자 선정 기준이 변경되었다는데 그 규모와 범위는?

(시민전화)

㉕ 전설업법 제4조에 의하면 주거용 건축물은 200명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150평 이상이면 전설업자를 선정토록 82. 7. 1부터 변경 시행됩니다.

㉖ 스프링클러시설은 어떤 이유로 설치하게 되나요?

(회원전화)

㉗ 대형건축물의 방화, 내화 등을 필요로 설치되는 것입니다.

㉘ 미급수지역인데 자가 수도 개발의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시민방문)

㉙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지하수 개발업체로부터 용량 및 수질검사를 득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하나 연립주택등은 규제되고 있습니다.

㉚ 연립주택을 신축시 견폐율과 대지최소 면적은 규정되어 있는지요?

(시민전화)

㉛ 견폐율은 20세대 이상 사업승인일 경우 30% 이하, 20세대 이하는 40% 적용하고, 대지 최소면적은 20세대 이상 사업승인일 경우 2,000m² 이상되어야 합니다.

㉜ 비상저수조는 학교인 경우 증축할 때 변동이 없어도 증축부분에 대한 저수조 설치의 필요합니까?

(회원전화)

㉝ 비상저수조 설치의 학생수의 변동이 없어도 시설면적이 증가하므로 면적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주차장법

㉔ 기존 건축물 옥상에 Parking을 계획 할려고 하는데 기제식으로 가능한지요?

(시민전화)

㉕ 할 수 있습니다. 단 설비부분은 견폐율 용적율 등 관계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㉔ 단독주택 78평인 경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시민전화)

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4장 제12조 기타용도로 보아 250m² 이상이면 주차장 설치 대상입니다.

㉖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서 자동차의 주차시설을 위한 면적 중 1개층이 주차장과 코아부분만 있다면 실주차부분만 해당되는지요? (회원전화)

㉗ 1개층에 주차장과 코아부분 이외의 거실이 없다면 1개층 전체가 주차 시설을 위한 면적으로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㉘ 옥탑부분이 건축면적의 1/8 이상으로 층수에 산입되면 주차면적 산정시 포함되는가요? (시민전화)

㉙ 옥탑부분이 계단실과 물탱크 설치를 위한 구조물만 있다면 주차면적에서 제외됩니다.

㉚ 주차장 정비지구 외의 지구에 학교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를 얼마나 하여야 합니까? 지역지구는 학교시설용지입니다. (회원전화)

㉛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의 건축물에 부설하는 주차장 시설기준에 따르면 연면적 2,000m²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연면적 400m²마다 주차대수 1대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㉜ 주차장 경사로에서 회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 경사로 경사를 어느 쪽으로 기준해서 설치하면 됩니까? (회원전화)

㉝ 주차장 경사로는 경사부의 종단구배가 17%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므로 회전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중심선으로 설치하면 17%가 초과되는 부분이 있어 규정에 부적합하게 됨으로 가장 경사가 급한 부분이 17% 이하하여야 됩니다.

□ 건축행정

㉞ 개축과 증축을 동시에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는지요? (시민전화)

㉟ 가능합니다.

㊱ 잡종자 300정을 소유하고 있는데 형질변경 허가없이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나요? (시민전화)

㊲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후에 건축허가를 신고하면 됩니다.

㊳ 건물에 위법부분이 발생하여 공사 감리자는 행정처벌을 받고 공사 중지명령을 받았는데 건축주가 계속 공사를 강행할 경우 공사감리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회원전화)

㊴ 공사 중지명령은 위법부분 사정을 위한 조치이며 공사 감리가 중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 공사를 할 경우 위법 건축물 발생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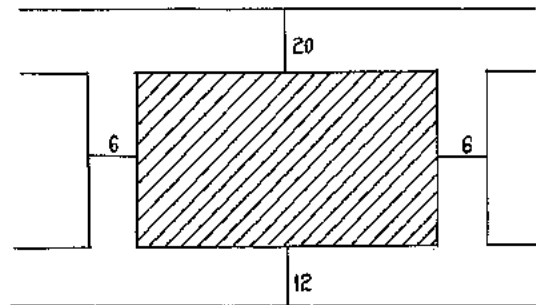
㊵ 주거지역 풍치지구를 형질변경을 하여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은 대지 면적 1,000m²라면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인 경우는? (회원전화)

㊶ 풍치지구 내 형질변경은 대지면적의 3/10 이내에서 가능하며 도로 및 부대시설도 포함됩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함.

㊷ 담장의 설치는 어디에 하여야 합니까? (회원전화)

㊸ 일반주택과 주택 동의 사이에 설치하는 경우라면 대지 경계선에 설치할 수 있으나 미관지구 등 건축선이 후퇴되어 있는 경우는 건축선 후퇴 부분에 설치할 수 없으므로 건축선 후퇴 이외의 부분에 설치해야 함.

㊹ 아래와 같은 경우 건축법 시행령 163조의 적용에 대하여 몇가지 알아보겠습니다.



가. 35m 이내로서 수평거리 2배 이내일 때 전면도로는? 나. 상기 경우 도로에서부터 건물 외곽선까지의 거리가 다른 경우의 높이 적용은?

다. 그렇다면 도로가 있으므로 오히려 불리해지는군요. (회원방문)

㊺가. 도시 중 가장 넓은 도로는 20m 도로이므로 6m·12m 도로도 다같이 20m 도로폭으로 간주하여 높이 산정 나. 가장 가까운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후퇴선 거리에 가장 넓은 도로폭을 합산한 거리에 따른 높이를 산정합니다.

다. 예, 도로가 두개 이상 있으므로 하여 불리한 것을 다소 완화시켜 주기 위한 것이나 도로가 없을 경우 보다는 불리합니다.

㊻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축할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피어야 할 거리는? (시민전화)

㊼ 건축법 시행령 167 및 동 168조의 2를 적용받게 됩니다.

㊽ 음식점의 계단내부 치수에서 엘리베이터가 있을 경우의 완화는? (회원전화)

㊾ 음식점 계단의 내부치수는 2m 이상이나 엘리베이터를 시설하였을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㊿ 자연녹지 지역과 공업지역에 걸친 대지일 경우 어느지역 내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습니까. (시민전화)

㊿ 건축법 제52조에 의하면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구역, 지역 내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자료〉

개정법령

- 주택건설촉진법
- 도시계획시설기준
- 건축법

- 건축사법
-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개정령 (개정 3. 20일)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호를 삭제한다.

영 제3조제3호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복리시설) 영 제4조제6호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공동시청 안테나
2. 공동저탄장 시설
3. 노인복지 시설

제4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① 영 제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는 주민등록초본과 재산평가조서. 다만,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고용하고 있는 건축분야 또는 토목분야 기술자격취득자(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자격취득자를 말한다)의 자격증 사본 및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실적증명서
3. 건물등기부등본·건물사용계약서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4.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건설부장관이 그 시기를 결정하여 실시하되, 지역사정이나 주택건설현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달리 등록시기를 결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영 제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등록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⑤ 영 제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한 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업자가 개인인 때에는 상속의 경우에 한하여 등록된 사업자 명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제7항중 “취소”를 “말소”로 하고, 동조 제8항중 “영 제9조 제6항”을 “영 제9조의2 제3항”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사업실적 및 계획서의 제출) ① 등록업자가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할 당해 연도 사업실적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고, 다음 연도 사업계획은 별지 제10호의2 서식에 의한다.

② 도지사가 영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할 등록업자의 사업실적은 별지 제10호의3 서식에 의하고, 사업계획은 별지 제10호의4 서식에 의한다.

제10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택건설사업실적 또는 주택건설공사도급 실적은 증명하는 서류(주택건설사업실적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과 준공검사필증사본을, 주택건설도급실적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4. 기술자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축분야 및 토목분야 기술자는 도지사가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기술자격면허증사본, 전기분야·기계분야 및 안전관리분야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증사본,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면허증사본을 말한다)

제10조 제4항중 “매년 10월말까지”를 “매년 12월말까지”로 하고, 동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업자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국민주택기금조성 및 운용상황보고) ① 한국주택은행장이 영 제14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매월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보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②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영 제14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상황보고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③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영 제14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주택자금의 분기별 조달 및 운용상황보고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 2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위탁수수료) ① 영 제1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는 월별로 산정하되, 국민주택기금의 매일의 자산(국민주택기금의 관리계정·대조계정 및 이연계정의 금액은 제외한다)에 1만 2천분의 22를 곱한 금액을 1월동안 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당해 월의 위탁수수료로 한다.

② 제 1항의 위탁수수료는 분기별로 지급하되, 당해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20일을 지급일로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부터 3월의 범위 안에서 위탁수수료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주택의 단위규모 산정방법등) ① 영 제30조제 1항에 규정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한다.

② 영 제30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건물과 분리된 창고 및 변소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 3조 제 1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복도, 제단·옥탑·전기 및 기계실·보일러실·지하실·관리사무실 및 경비실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공공시설용 대지의 확보) 3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에는 동사무소·파출소 및 우체국을 설치하기 위한 대지를 각각 150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우체국의 설치를 위한 대지는 7천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때까지는 그 확보를 유보할 수 있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등) ① 사업주체가 법 제3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2조 제 2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8호의 2 서식에 의한다.

③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영 제32조 제 2항제 3호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도서”라 함은 별표 2의 도서를 말한다.

⑤ 영 제32조 제 2항 제 7호에서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의 서류를 말한다.

1. 간선시설설치계획도(축척 1만분의 1 내지 5만분의 1 도면)

2. 건축대지증명서

3. 토지등기부등본(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토지사용승락서(사업주체가 당해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⑥ 사업주체가 영 제32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계획의 내용중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제 5항 각호의 서류이외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도면(축척 1만분의 1 내지 5만분의 1 도면)

2. 지적도(도시계획시설이 표시된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도면)

3. 도시계획시설 설치 계획도서

⑦ 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변경 승인의 경우를 포함한다), 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결과 보고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의 2 및 제19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 2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신청등) ① 사업주체가 법 제33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2조제 4항제 1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8호의 2 서식에 의한다. (

③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영 제32조제 4항제 2호의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는 별표 3과 같다.

⑤ 영 제32조제 4항제 2호 단서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라 함은 별표 3의 도서중 대지조성공사 위치도·지형도·평면도 및 부대시설의 설계도를 말한다.

⑥ 영 제32조제 4항제 4호의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는 대지의 용도별·공급대상자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지의 위치 및 면적

2. 공급대상자

3. 공급시기·방법 및 조건

⑦ 영 제32조제 4 항제 5 호에서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간선시설설치계획도(축척 1만분의 1 내지 5만분의 1 도면)를 말한다.

⑧ 제19조제 6 항 및 제 7 항의 규정은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의 3 (사업계획승인의견서) 영 제32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서울특별시장과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가 건설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할 의견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등) ① 법 제33조 제 1 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서를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 1 항의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32호의 2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사업주체가 입주가 모집의 공고를 한 후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업주체의 변경. 다만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파산하거나 합병·사업자등록말소·영업정지 기타 당해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비의 증액

3.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의 단위규모 변경

제21조 제 1 항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의 조정(영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간선시설의 설치비 상환계약) 영 제35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 상환계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내역

2.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명세

3. 상환 기간 및 상환방법

제24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 2 (국민주택의 전매신청등) ① 법 제38조의 3 제 1 항에서 “최초로 공급한 날”이라 함은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의 3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또는 전매에 대한 국민주택사업주체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의 4 서식에 의한 국민주택전매·전매동의신청서에 영 제37조 제 2 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국민주택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37조제 2 항제 3 호에서 “장기간”이라 함은 2년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④ 영 제37조제 2 항제 4 호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세대주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국민주택사업주체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민주택의 전매 또는 전매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국민주택사업주체가 법 제38조의 3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민주택을 우선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매입시기와 금액을 같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제 2 항제 1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등) ① 법 제44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 설립인가(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의 2 서식에 의한 주택조합설립 인가신청서를 관할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42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0호의 2 서식에 의한다.

③ 시장·군수는 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의 3 서식에 의한 주택조합 설립인가 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42호의 4 서식에 의한 주택조합 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44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시장·군수에게 주택조합의 설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의 5 서식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가 주택조합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2호의 6 서식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42호의 7 서식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2조의 2 를 삭제한다.

제33조의 2 에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5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립식 주택부재성능인정의 표시는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다.

제33조의 3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 3 (조립식공법에 의한 주택건설) 법 제45조의 4 제 2 항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한 자”라 함은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1 인과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분야 기술자(기술계 자격종목중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를 말한다) 1 인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별표 6] 및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 2 호서식], [별지 제 6 호서식] 내지 [별지 제 10 호의 2 서식], [별지 제 21 호서식] 내지 [별지 제 23 호서식], [별지 제 33 호서식], [별지 제 34 호서식], [별지 제 36 호서식] 내지 [별지 제 41 호서식], [별지 제 42 호의 2 서식] 내지 [별지 제 42 호의 4 서식] 및 [별지 제 46 호서식]을 각

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8호서식] 내지 [별지 제20호 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 27 호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10호의 3 서식], [별지 제 33호의 4 서식], [별지 제42호의 5 서식] 내지 [별지 제42 호의 7 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3·31일)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설에는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이 포함된다.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과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단일구조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시장 및 운동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설치가 토지 이용상 합리적이어야 한다.

제1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규칙에서 “자동차정류장”이라 함은 자동차정류장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특수자동차운송사업(화물 적하용자동차운송사업 중 콘테이너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용 자동차정류장을 말한다.

제19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화물자동차정류장: 화물의 적하를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정류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트럭정류장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특수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정류시킬 것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자동차 정류장을 말한다.

제20조 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여객자동차정류장의 소유권에는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상업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에 한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내버스여객 자동차정류장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허받는 노선의 시·종점에 인접한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자연녹지 지역에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 제2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송 능률을 높이고 모든 교통시설과의 연결이 쉽도록 인근의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상업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도시의 토지이용 계획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역간을 연결하는 주된 간선도로나 고속국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주택자재생산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1982년12월31일까지 별표 6의 개정규칙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압축강도시험기 및 시험실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따로 그 시기를 정한다.

〈별표·별지생략〉

도와의 연결이 쉬운 인접지역에 2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집단적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자연녹지 지역에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환경오염 방지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자동차정류장의 설치기준) ① 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자동차정류장법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자동차정류장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식당·다방·매점·약국·이미용실·휴게실
2. 간이주유시설·변전실·보일러실·공해방지시설
3. 차고·세차장·종업원용 휴게실·목욕실·기숙사

제21조의 2 내지 제21조의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 2 (자동차점사시설) 이 규칙에서 “자동차점사시설”이라 함은 도로운송차량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사장을 말한다.

제21조의 3 (자동차점사시설의 결정기준) 자동차점사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수집차량의 접근이 쉽고 교통이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2. 수집차량의 출입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발생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상업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이어야 한다. 다만, 토지이용 계획상 부득이 하고, 환경오염 방지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연녹지 지역에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의 4 (자동차점사시설의 설치기준) ① 자동차점사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6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자동차점사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매점·식당
2. 휴게실·다방
3. 종업원용 기숙사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 (항만) 이 규칙에서 “항만”이라 함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법 제2조제2항의 항만시설 중 다음의 것.
 - 가. 외곽시설
 - 나. 계류시설 중 안벽·물양장·돌제물양장·선양장
 - 다. 임항교통시설 중 도로·교량·철도·궤도·운하

라. 여객시설

마. 보관시설

바. 선박보급시설

2. 어항법 제2조제2항의 어항시설 중 다음의 것.

가. 외곽시설

나. 계류시설 중 안벽·물양장·선착장·선양장

다. 수송시설

라. 보급시설

제47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원지의 소음원에는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상업지역·준주거지역·자연녹지 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4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유원지 안에서 유원지의 이용에 자장이 없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전주·전선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3. 도로·철로·케도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치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 시설을 하여야 한다)와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방화용저수조

6. 통신시설·축성시설

7.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를 위하여 설치하는 임시 가설공작물

제5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사무소·주차장

2. 식당·약국·다방 등 시장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6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유통업무 설비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차장

2. 간이주유시설

3. 휴게실·식당·약국·다방 등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종업원용 기숙사

제5장에 제91조의2 내지 제9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 (문화시설) 이 규칙에서 “문화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문화시설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문화관

2. 극장·음악당

3. 박물관

4. 미술관

5. 기념관

6. 전시관

제91조의3 (문화시설에 대한 결정기준) 문화시설에 대

한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의 접근이 쉽고 주거생활의 평온에 장애가 없는 곳이어야 한다.

2. 주요시설물의 인근지역이나 인구밀집 지역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주거전용지역·전용공업지역·생산녹지 지역 이외의 지역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박물관 및 미술관은 주거전용지역에 결정할 수 있다.

제91조의4 (문화시설의 설치기준) ① 문화시설은 문화의 창조 발전과 시민의 문화의식의 고취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어야 한다.

② 문화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차장

2. 식당·다방·매점·약국·휴게실

제95조 (저수지) 이 규칙에서 “저수지”라 함은 발전용수·수도용수·공업용수 또는 농업용수의 공급이나 홍수조절을 위한 댐 또는 제방, 기타 당해 댐 또는 제방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높이는 시설 또는 공작물과 공유수면을 말한다.

제9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6조 (저수지에 대한 결정 및 설치기준) 저수지에 대한 결정과 그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제62조와 하천법 및 특정다목적댐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3조 (하수도) 이 규칙에서 “하수도”라 함은 하수도법 제2조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및 종말처리장을 말한다.

제1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6조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이 규칙에서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오물처리업자가 설치하는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으로서 오물청소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종말처리시설 및 쓰레기종말처리시설과 환경보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산업폐기물 종말처리장을 제외하여, 이하 “산업폐기물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27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구밀집지역 및 공공기관·학교·연구시설·의료시설·종교시설 등과 근접하지 아니하고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분뇨종말처리시설 및 쓰레기종말처리시설은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 산업폐기물 시설은 공업지역·준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에 각각 결정하여야 한다.

제1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8조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의 설치기준)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오물청소법 제9조 및 환경보전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거나 설치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建築法中改正法律 (4.3 일)

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 第3號를 削除하고, 同條第4號중 “國旗揭揚臺,” 다음에 “共同視聽안테나,”를 挿入하며, 同條第7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15號 나目中 “釜山市長”을 “直轄市長”으로 하며, 同條第18號를 削除한다.

7. “主要構造部”라 함은 벽·기둥·바닥·보·지붕 및 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間壁·갯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遮陽·屋外階段 기타 이와 類似한 것으로 建築物의 構造上 重要하지 아니한 部分은 제외한다.

第3條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第3章 내지 第5章(第28條 및 第41條를 제외한다)의 規定은 都市計劃區域 이외의 區域(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하여 指定된 工業地域 및 聚落地區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區域을 제외한다)에서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4條의 題目“(職權의 委任)”을“(權限의 委任)”으로 하고, 同條 第1項 및 第2項중 “釜山市長”을 “直轄市長”으로 한다.

第5條 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 第4項을 第5항으로 하며, 同條 第2項 및 第3項중 “第1項”을 각각 “第1項 또는 第2項”으로 하여 이를 第3項 및 第4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2項 및 第6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① 都市計劃區域·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하여 指定된 工業地域 및 聚落地區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區域안에 있어서의 建築物과 기타 區域안에 있어서의 延面積 200 平方미터 이상이거나 3層이상인 建築物을 建築(増築의 경우에는 그 増築으로 인하여 당해 建築物의 延面積이 200 平方미터 이상이 되거나 3層이상인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大修繕하고자 하는 者는 미리 市長 또는 郡守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市長 또는 郡守는 建築士法 第23條의 2의 規定에 의하여 미리 建築士의 調査 및 檢査를 받아 許可를 申請한 것에 대하여는 建設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調査 및 檢査 調査에 의하여 이를 許可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市長 또는 郡守에게 申告함으로써 許可에 갈음한다.

1. 바닥面積의 合計가 30 平方미터 이내의 増築·改築·再築 또는 大修繕
2. 이미 建築許可를 받은 建築物로서 바닥面積의 合計가 30 平方미터 이내 또는 延面積의 10분의 1 이내의 바닥面積의 増減을 위한 設計變更이나 大修繕에 해당하는 設計變更

⑥ 建築物을 建築 또는 大修繕하고자 하는 者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1. 第47條第2項에 의한 工事用假設建築物의 築造申告
2. 道路法 第40條에 의한 道路의 點用許可
3. 下水道法 第24條에 의한 排水施設의 設置申告
4. 汚物清掃法 第15條에 의한 汚水淨化施設 및 同法 第16條에 의한 糞尿淨化槽의 設置申告

第6條 第1項 중 “第4條의 規定”을 削除하고, 同條 第2項 중 “建築士法 第4條의”를 “이 法에 의하여 許可를 받아야 할”으로, “해당”을 “建築士法에 의한”으로 하고, 同條 第7項 중, “第1項”을 “第2項”으로 하며, 同條에 第8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⑧ 建築主가 당해 工事監理者 또는 工事施工者를 變更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市長 또는 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7條의 題目“(건축물에 관한 검사 및 사용승인)”을“(竣工檢査등)”으로 하고, 同條第1項중 “第5條第1項”을 “第5條第1項 또는 第2項”으로 하며, 同條第4項을 第5項으로, 第3項을 第4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3項 및 第6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 第2項의 경우에 市長 또는 郡守는 建築士法에 의하여 建築士事務所를 登録한 者가 同法 第23條의 2의 規定에 의하여 竣工에 관한 調査 및 檢査를 행한 建築物에 대하여는 建設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調査 및 檢査 調査에 의하여 竣工檢査畢證을 交付할 수 있다.

⑥ 建築主가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査畢證을 交付받은 때에는 다음 各號에 의한 竣工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汚物清掃法 第18條에 의한 汚水淨化施設 또는 糞尿淨化槽의 竣工檢査
2. 電氣通信 工事業法 第2條에 의한 工事 중 構内通信線路設備工事의 竣工檢査

第7條의 2중 “제2 조제 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 건축물(화장장·도살장·진에 및 오물처리장을 제외한다)이나”를 削除한다.

第7條의 3第2項을 削除한다.

第8條중 “建築物을 建築하고자 할 때”를 “第5條第1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建築物을 建築 또는 大修繕하고자 할 때”로 한다.

第9條의 2第2項중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를 “서울 特別市·直轄市·道 또는 地域의 特殊性을 고려하여 建設部長官이 指定하는 市·郡의 條例(이하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라 한다)”로 한다.

第10條第2項중 “第5條第1項 本文”을 “第5條 第1項”

으로 하고, 同條에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構造耐力의 基準 및 構造計算의 方法등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部令으로 定한다.

第11條 第2項 但書 中 “大統領令”을 “建設部令”으로 한다.
第12條를 삭제한다.

第17條의 題目 “(特殊建築物의 耐火構造)”를 “(建築物의 耐火構造)”로 하고, 同條本文中 “特殊建築物”을 “建築物”로 한다.

第18條 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居室의 窓 기타의 開口部로서 採光을 위한 部分의 面積은 그 居室의 바닥面積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建設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照明裝置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9條를 削除한다.

第20條 第2項 中 “汚物淨化槽”을 “汚水淨化施設 또는 糞尿淨化槽”로 한다.

第23條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3條의 2 (建築物의 內裝) 5層 이상인 建築物, 醫療施設, 宿泊施設, 觀覽集會施設, 慰樂施設, 共同住宅 등 大統領令이 定하는 建築物의 屋內部分의 內裝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防火上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第23條의 3 第1項 中 “대통령령”을 “建設部令”으로 하고, 同條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溫突의 安全한 施工을 위하여 溫突施工者의 資格과 施工方法 기타 필요한 事項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할 수 있다.

第24條 中 “建築物의 安全 또는 防火을 위하여 필요한”을 “建築物의 安全, 衛生 또는 防火을 위하여 필요한”으로 하고, 同條 中 “및 構造計算의 方法”을 削除하며, “建築設備의 設置 및 構造에 關하여 필요한 事項”을 “建築設備의 設置 및 建築物의 用途別 構造, 瑕疵補修 등에 關하여 필요한 事項”으로 한다.

第31條의 2를 削除한다.

第33條 中 “필요한 사항은” 다음에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插入한다.

第39條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 第3項을 削除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市長 또는 郡守는 都市의 過密化 防止를 위하여 第1項의 規定보다 建蔽率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 建蔽率의 最大限度을 따로 定할 수 있다.

第40條 第1項 本文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에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① 建築物의 延面積 (垜地에 2이상의 建築物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延面積의 合計로 한다)의 垜地面積에 대한 比率 (이하 “容積率”이라 한다)은 다음 各號의 범위 안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다만, 地域의 特殊性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地域의 容積率은 大統

領令이 定하는 基準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할 수 있다.

③ 市長 또는 郡守는 建築主가 建築物을 建築하는 경우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基準에 따라 당해 建築物에 隣接하여 道路, 公園, 廣場, 公共空地 등 公共施設을 設置하는 때에는 당해 建築物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基準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하는 범위 안에서 容積率에 關한 規定을 完化하여 許可할 수 있다.
第41條 第4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住居專用地域, 住居地域 및 商業地域 안에서 建築하는 建築物과 共同住宅 또는 寄宿舍의 높이는 그 建築物로부터 隣接垜地境界線까지의 거리 및 同一垜地內의 다른 建築物 (單獨住宅, 共同住宅, 寄宿舍에 한한다)까지의 거리에 따라 大統領令이 定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第42條 第3項에 但書を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住宅에 한하여 市長 또는 郡守가 期間을 定하여 그 사용 또는 營業 기타 行爲를 許可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44條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建設部長官은 主務部長官이 國防 또는 經濟上 특히 需要하다고 인정하여 要請한 경우와 地域計劃 또는 都市計劃上 특히 需要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期間을 定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市長 또는 郡守의 建築許可를 제한할 수 있다.

第45條 第1項 本文 中 “부산시장”을 “直轄市長”으로, “시장, 군수”를 “市長 또는 郡守”로 하며, 同條 第1項 第1號 中 “제12條 第1項”을 削除하고, 同項 第3號를 削除한다.

第45條 第2項 中 “第31條의 2”를 削除한다.

第46條의 題目 “(災害地區에서의 建築制限)”을 “(災害區域에서의 建築制限)”으로 한다.

第49條 中 “高架水槽” 다음에 “地下待避壕”를 插入한다.

第52條 本文 中 “構造 또는 建築設備”을 “構造, 建築設備 또는 用途”로 하고, “표하는”을 “걸치는”으로 하며, 同條 但書を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建築物의 全部 또는 一部가 美觀地區 또는 高度地區에 걸치는 경우, 그 建築物 및 垜地의 全部에 대하여는 美觀地區 또는 高度地區 안의 建築物 및 垜地에 關한 規定을 適用한다.

第53條의 2 第2項 中 “오물정화조”를 각각 “汚水淨化施設 또는 糞尿淨化槽”로 한다.

第53條의 4의 題目 “(同前)”을 “(다른 法令의 排除)”로 하며, 同條 中 “液狀廢棄物淨化槽”을 “汚水 淨化施設 또는 糞尿淨化槽”로, “汚物淸掃法 第14條”를 “汚物淸掃法 第19條”로 한다.

第53條의 7 第2項 中 “都市計劃施設의 設置로 인하여”를 “都市計劃施設의 設置 또는 土地區劃整理事業의 施行으로 인하여”로 한다.

第55條 第1號 中 “第7條 第3項”을 “第7條 第4項”으로 한다.

第56條 第1號 中 “第5條 第1項 但書”를 “第5條 第2項”으로 하고, 同條 第2號 中 “또는 第7條의 3 第2項”을

削除한다.

第56條의 2第2號중 “第7條第4項”을 “第7條第5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4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4. 第6條第8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偽申告를 한 者

第7章의 題目 “雜則”을 “補則”으로 한다.

第2條 第15號 나目, 第5條第2項 및 第4項, 第6條第3項 및 第4項, 第7條第1項·第2項 및 第3項, 第7條의 2, 第7條의 3第2項, 第8條, 第9條의 2第3項, 第12條第2項, 第26條第1項 및 第2項, 第29條, 第30條第2項 및 第3項, 第31條의 2, 第33條의 2第2項 및 第3項, 第33條의 3第1項·第3項 및 第4項, 第42條第1項·第2項 및 第5項, 第42條의 2第1項, 第44條第1項, 第44條의 2第1項, 第46條第1項 및 第2項, 第47條第1項 및 第2項중 “市長·郡守”를 각각 “市長 또는 郡守”로 한다.

第355條, 第56條 및 第56條의 2의 題目 “(同前)”을 “(罰

則)”으로 한다.

附 則

① (施行日) 이 法은 198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5條第6項第4號·第7條第6項第1號·第20條第2項·第53條의 2第2項 및 第53條의 4의 改正規定은 法律 第3,554號 汚物清掃法改正法律의 施行日로부터 施行한다.

② (既存建築物에 관한 經過措置) 許可應은 이 法 施行日 현재의 既存建築物에 熱併合發電設備 또는 環境保全法에 의한 環境汚染防止施設을 設置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建蔽率 및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容積率을 緩和하여 그 設置를 許可할 수 있다.

③ (適用制限) 第53條의 7第2項중 土地區劃整理 事業의 施行으로 인하여 第3章 내지 第5章의 規定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地等에 대한 許可緩和規定은 이 法 施行日 전에 그 事業이 完了된 分에 한하여 이를 適用한다.

建築士法中改正法律(개정 4.3일)

建築士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 第2號중 “機械.” 다음에 “에너지.”를, 同條第3號중 “建築士가” 다음에 “자기 責任下에 建築法 第2條第21號의 規定에 의한”을 挿入하고, 同條第4號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築士가 자기 責任下에”로 한다.

第4條 (設計 또는 工事監理등) ① 建築法の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아야 할 建築物을 建築하거나 大修繕하는 경우의 設計는 建築士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② 建築法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監理者를 정하여야 하는 建築物의 建築이나 大修繕의 경우의 工事監理는 建築士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③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部長官이 作成하거나 인정하는 標準設計圖書 또는 特殊工法을 適用한 設計圖書에 의하여 建築物을 建築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5條 中 “釜山市長”을 “直轄市長”으로 한다.

第11條의 題目 “(免許의 取消)”을 “(免許의 取消등)”으로 하고, 同條第1項중 “取消할 수 있다”를 “取消하여야 한다”로 하며, 但書를 削除하고 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하며, 第5號를 削除하고, 同條第3項중 “免許證”을 “免許證 및 免許手帖”으로 한다.

2. 第9條第2號 또는 第3號에 해당하게 된 때.

第14條중 “7年”을 “5年”으로, “9年”을 “7年”으로 “12年”을 “10年”으로, “16年”을 “14年”으로 하고, 同條第5號를 削除한다.

第16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建築職公務員으로 7年 이상 근무하고 있는 者로서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應試資格이 있는 者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銓衡試驗으로 建

築士의 免許를 할 수 있다.

第23條 第2項중 “機械.” 다음에 “에너지.”를 挿入한다.

第23條의 2第3項중 “合同으로 建築士事務所를 登録한 者 및 綜合建築士事務所를 登録한 者”를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士事務所를 登録한 者(이하 “建築士事務所開設者”라 한다)”로 한다.

第24條 中 “拒否할 수 있다”를 “拒否하여야 한다”로 하고, 同條但書를 削除하며, 同條에 第5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5. 2이상의 建築士事務所를 登録하는 者.

第25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 技術用役育成法の 規定에 의한 用役業體에 소속된 建築士로서 建設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部長官에게 申告를 한 者가 特殊工場建築物의 設計 또는 工事監理를 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建築士事務所를 登録한 者가 이를 행하는 것으로 본다.

第26條 中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録을 한者(이하 “建築士事務所開設者”라 한다)”를 “建築士事務所開設者”로 한다.

第28條 第1項第5號중 “第23條第2項”을 “第23條第4項”으로 하며, 同項第7號 및 第10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偽의 보고를 한 때 또는 檢査를 拒否·방해 또는 忌避한 때.

10. 이 法 또는 建築法에 의한 命令 또는 處分에 違反하거나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이 法 또는 建築法の 規定에 違反한 때.

第30條의 題目 “(報告 및 檢査)”를 “(보고·檢査등)”으로 하고, 同條에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 建築士事務所開設者는 그가 작성한 設計圖書 등을 建設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備置·保管하여야 한

다.

第5章에 第30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30條의 2 (建築士補修教育) ① 建設部長官은 建築士事務所를 登録한 建築士에 대하여 技術 및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補修教育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建設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修教育의 施行을 第31條의 建築士協會 기타 建築關係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第31條 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建築士事務所開設者는 建築士의 品位保全·業務改善 및 建築技術의 研究·開發을 통한 建築物의 質의向上과 建築文化의 發展을 기하기 위하여 建築士協會를 設立하여야 한다.

第32條 第2項 중 “서울特別市·釜山市 및 各道에”를 削除한다.

第33條 第2項 및 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에 第4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 建築士로서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事務所의 登録을 하지 아니한 者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築士協會의 準會員이 될 수 있다.

③ 會員 및 準會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築士協會에 會費를 納付하여야 한다.

④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士의 免許가 取消 또는 消滅되거나 建築士事務所의 登録이 取消 또는 抹消된 者는 建築士協會의 會員 또는 準會員의 資格을 喪失한다.

第34條 第1項 중 “理事 5人과”를 “理事 5人이상 9人 이하와”로 한다.

第40條의 題目 “(同前)”을 “(罰則)”으로, 第41條의 題目 “(同前)”을 “(過怠料)”로 한다.

第43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43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建設部長官이 第23條의 2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한 調査 및 檢査業務등에 종사하는 建築士事務所開設者는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公務員으로 본다.

附 則

이 法은 198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개정 4월 3일)

제1조 (목 적) 이 규칙은 특정지역 종합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획사업) 영 제2조제1호 카목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1. 수렵장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사업
2. 스키장 및 부대시설의 설치사업
3. 승마장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사업
4. 콘도미니엄 및 부대시설의 설치사업

제3조 (기초조사) 영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관광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2. 위락·관광·문화시설에 관한 사항
3. 건축시설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에 관한 사항
5.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지구지정에 관한 사항
6. 토지의 소유형태에 관한 사항
7. 주변생태계의 현황에 관한 사항

제4조 (지구지정신청서) 영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시행중인 사업등의 현황조사보고 등)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중인 사업등의 현황에 관한 조사보고는 개발촉진지구 또는 개발규제지구의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하되, 지구지정전 다른 법률에 의한 지정·고시·결정사항의 현황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 지구지정전 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현황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하나의 개발사업계획구역 면적의 20분의 1 미만인 구역의 변경을 말한다.

제7조 (지구지정대장)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지정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개발규제지구안에서 시행중인 공사 또는 사업의 신고) 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또는 사업의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는 주민등록표초본) 1부.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그 첨부에 갈음할 수 있다.
2. 허가·인가·면허증등의 사본 각 1부
3. 개발사업계획서 또는 공사설계서 1부
4. 잔여공사(사업) 추진계획서 1부

제9조 (토지형질변경의 범위)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농림·수산업을 위한 개간과 축산을 위한 초지조성
2. 임목의 벌채 및 재식
3. 토지수용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이를 위한 토석의 채취(부대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4. 하천구역에서의 토석 및 사력의 채취
5.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다음의 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

종	별	기	준
석	탄	연간 3만톤 이상의 생산규모로 7년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금	연간 50킬로그램 이상의 생산규모로 5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중 석	연간 30톤(Wo70%) 이상의 생산규모로 5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동	연간 1천톤(Cu 6%) 이상의 생산규모로 5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철·연·아연	연간 2만톤(Fe56%, Pb·Zn각각 50%) 이상의 생산규모로 5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활석·옥석·수정	연간 6만톤 이상의 생산규모이거나 연간 생산액 1억원 이상으로 5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은	연간 1천킬로그램 이상의 생산규모로 5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납 석	연간 6천톤 이상의 생산규모로 5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6. 녹지조성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위한 토지 형질의 변경

7.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원묘지의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의 변경

8. 제10조 제3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취락구조 개선 사업에 따른 대지조성 및 시설을 위한 토지형질의 변경

9. 경작중인 전답의 환토·개토용 토석의 채취 및 전답의 개답·개간(경사도 5도 이하로서 무임목지에 한한다)에 수반되는 골재의 채취와 저수지 및 수원지의 준설에 따른 골재의 채취

10. 학교(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설치인가를 받은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증축(개발규제지구안 또는 개발규제 지구의 인접지에 이미설치된 학교로서 그 인접지에 시설확장의 여지가 없어 개발규제지구안에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나 개발규제지구안에 이미 설립된 학교의 경우에 한한다)과 국민학교분교장의 설치(법·교칙도로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학구 개편으로 통학이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11. 제10조제3호 자목의 시설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의 변경

제10조 (건축물 공작물의 종류 및 규모등) 영 제 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공작물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농림업 또는 수산업용 건축물과 공작물

가. 축사 : 1가구(개발규제지구 안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하는 농림업에 종사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당 기존 축사면적을 포함 하여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

나. 초지조성을 필요로 하는 우마등 사육용 축사 : 초지조성면적과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합제한 면적의 1천분의 5 이하인 것.

다. 퇴비사 : 1가구당 기존 퇴비사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

라. 잠설 : 상전조성면적 2천제곱미터당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마. 싸이로 : 우마등의 사육(낙농을 위한 사육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최소한도 인 것.

바. 창고·개발규제지구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저장(저온저장고를 포함한다)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그 토지면적의 1천분의 10이하(기존창고의 면적을 포함한다)인 것.

사. 관리용 건축물 : 파수원·초지·유실수단지·원예단지안에 설치하되, 생산에 직접공여 되는 토지면적의 1천분의 5 이하로서 66제곱미터이하(기존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한다)인 것.

아. 농수산물 건조실 : 농산물(염연초를 포함한다)의 재배면적 또는 수산물의 양식면적의 1천분의 5 이하(기존 농수산물 건조실의 면적을 포함한다)인 것.

자. 버섯재배사 : 1가구당 기존 버섯재배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

차. 양어장 관리용 건축물 :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주택 및 부속건축물

가. 주택의 증축 : 기존 주택면적을 포함하여 100 제곱미터 이하인 것. 다만, 지하층에 대하여는 나목의 부속건축물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나. 부속건축물의 건축 :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건축물의 부속건축물에 한하되, 기존 부속건축물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인 것.

3. 공공시설 및 공용시설 등

가. 토지수용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관리용 건축물.

나.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다. 보건소, 경찰관파출소, 초소, 읍·면·동사무소 및 예비군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라. 제9조제10호의 학교시설과 동부대시설로서 증축된 시설 및 국민학교 분교장

마. 이축 및 증축되는 교정시설

바. 공익사업·부락공동사업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철회되어 개발규제지구안의 인근대지로 이축되는 건축물 및 공작물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원(관광사업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를 포함한다) 시설중 등산로·공중변소 및 66제곱미터 이하의 간이휴게소

아. 공원묘지(기존 공설묘지를 포함한다)안의 그 운영에 필요한 대기실·휴게소·사무소·장제소·납골당 및 조상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화장장 및 그 부대시설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녹지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설치하는 탐 또는 기념비(전적비·충화탑 등)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종축장 및 그 부대시설

4. 부락공동시설

가. 새마을회관

- 나. 공동작업장·공동창고·공동목욕탕·집하장 및 어린이놀이터 등 부락 공동시설
- 다. 기존정미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증축
- 라. 농업협동조합 또는 축산업협동조합이 설치하는 공동구판장·하치장·창고·농기계수리소·농기계용유류판매소 및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이 설치하는 공동구판장·하치장·창고·신착장 및 불양장
- 마. 상여보관소
- 바. 양수시설보호를 위하여 설치하는 17제곱미터 이하의 간이급수용양수장
- 사. 해배·미역등의 중요생산을 위한 100제곱미터 이하의 중요배양장(기존 중요배양장의 면적을 포함한다)
- 아. 정자동 간이휴게소
5. 광공업용 건축물등
- 가. 개발규제지구지정 이전부터의 공장으로서 그 지정이후에 증축되는 수출품의 생산 및 가공공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공장 기타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는 공장과 그 부대시설. 이 경우 증축되는 공장과 그 부대시설의 면적은 기존시설 연면적의 2분의 1 이하로 하되, 증축을 위한 토지형질의 변경은 증축할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나. 개발규제지구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50인 이상인 공장의 부대시설로서 새로이 건축되는 부대시설. 이 경우 새로운 대지 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기존 공장부지안에서의 건축이어야 한다.
- 다. 개발규제지구안에서 생산되는 농림·수산·광물을 원료로 하는 농외소득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중소기업공장
- 라. 제 9조제 5호의 행위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
- 마. 화약류 및 유류의 저장시설과 그 관리용 건축물
6. 기타 건축물 및 공작물
- 가. 동일용도 및 동일규모안에서의 개축·재축 및 대수선되는 기존 건축물
- 나. 제 9조제 5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용시설 및 공용시설의 설치와 제 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및 유류의 저장을 위한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과 그 공사에 소요되는 부력·시멘트·벽돌·쇄석·해미콘 및 아스콘등을 생산하는 임시시설물
- 다. 용도변경되는 다음의 건축물 및 공작물
- (1) 건축물(개발규제지구의 지정당시에는 그 건축에 건축허가권을 요하지 아니한 특정용도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른 용도로 변경되는 건축물
- (2) 다른 종류의 공장으로서 업종이 변경되는 공장. 이 경우 변경후의 업종은 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오염물질등의 배출 기타 공해의 정도가 변경

전의 업종의 정도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 (3) 공장·주택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 및 공작물을 근린생활시설(일용불소매점·간이음식점·대중음식점·다과점·다방·이용원·미용원·세탁소·목욕탕·사진관·목공소·의원·조산소·동물병원·간이수리점·취사용가스판매점·방앗간 및 장의사에 한한다)·사회복지시설(탁아소·양로원등을 말한다)·유치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 및 공작물

라. 개발규제지구지정 당시 이미 그 노선의 시점과 종점을 동 지구안에 두고 있는 버스운수업체가 기존정류장에 설치하는 안내양 후생복지시설·자가주유소 및 간이정비시설

마. 사회복지시설(고아원·양로원등을 말한다)의 운영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바. 개발규제지구지정 당시의 종교시설로서 증축되는 건축물. 이 경우 증축을 위한 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증축면적은 개발 규제 지구지정 당시 기존 종교 시설 연면적의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사. 농업용 자재의 생산·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신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

아. 환경오염방지를 위한시설

제11조 (건축물의 최소대지면적 등) ①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규제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최소대지면적,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및 건축면적의 토지형질변경 면적에 대한 비율등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의 최소대지면적은 9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을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은 100분의 60이내,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은 100분의 300이내
3.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의 건축면적에 대한 비율은 100분의 200 이내, 다만, 다른 법령에서 건축물과 관련하여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개발규제지구안의 간이공작물의 설치) 영 제 16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의 경우에 한하며, 이하“시장 또는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간이공작물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설치와 해체가 용이한 것을 말한다.

1. 간이잠실
2. 비닐하우스
3. 간이농수산물건조장
4. 간이퇴비장
5. 탈곡장
6. 온 실
7. 망 실

제13조 (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등) ①영 제 19조 제 2항의 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 6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 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시행법위 및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기본도) 1부
2. 인감증명 1부
3.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4. 사업계획서(자금조달계획을 포함한다) 1부
5. 영 제19조제 1항 각호의 해당사항을 증명하는서류 각 1부

③ 전설부장관이 영 제19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 7호서식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 (토지의 매수·수용 및 손실보상업무의 위탁료 산정기준) 영 제20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수·수용과 이에 따른 손실보상의 업무에 대한 위탁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 (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21조의 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 8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 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부
2. 별지 제 9호서식에 의한 토지세목조서 2부
3. 별지 제 10호서식에 의한 건물세목조서 2부
4. 지적도 2부
5. 계획평면도 2부
6. 개발사업실시설계도서 2부
7. 조경 및 원상복구계획서 2부

③ 도지사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 사업실시 계획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 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전설부장관에게 수송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사착수보고서) ① 영 제22조제 2항의 공사착수보고서는 별지 제 12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 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계도 1부
2. 월별예정공정표 1부
3. 현장대리업체증명서 1부
4. 사업비산출내역서 1부
5. 노동동원인원 및 노임지급월별계획서 1부
6. 착공전 사진 1매

제17조 (선매자지정신청서) ① 영 제25조제 1항의 선매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 1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 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시행자신청서(사본) 1부
2. 개발사업시행법위 및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기본도) 각 1부
3. 사업계획서(목적 및 개요, 시행기간, 자금조달 계획, 시행방법등을 포함한다) 1부

제18조 (수익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등) ① 영 제29조 제 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한 개발사업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개발사업시행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로 한다.

② 수익자부담금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개발사업의 준공공고일(이하 “부과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그 토지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제19조 (수익자부담금의 면제기준)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익자 부담금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1. 토지등의 3분의 2 이상을 당해 개발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하였거나 수용당한 자 및 그 포괄승계인
2. 토지등의 5분의 1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금액을 당해 개발사업을 위하여 기부한 자
3. 개발사업시행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안에 1만제곱미터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4. 개발사업시행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안에 하나의 주택과 그 건물바닥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5. 개발사업시행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안에 3천300제곱미터 이하의 위토와 그 토지상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6.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분양받은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등의 매도·수용에 따른 대토 등으로 취득한 토지등의 소유자
7. 다른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한 자

제20조 (수익자부담금의 면제신청 등) ① 시장 또는 군수가 수익자부담금부과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부과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수익자 부담금면제신청을 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수익자부담금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과기준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별지 제 14호서식에 의한 수익자부담금면제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매계약서 사본 1부
2. 등기부 및 토지대장의 등본(가옥의 경우에는 가옥대장등본) 각 1부
3. 기부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을 받은날로부터 1월 이내에 면제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부과기간) 수익자부담금은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22조 (납부통지) 사업시행자·시장 또는 군수는 수익자부담금·이용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 및 손피자부담금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부담금의 종류·부담금액·납부기간·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기한 2월전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분할납부) 사업시행자는 부담금의 일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리 5분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기로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준공인가신청서 준공필증 등) ① 영 제33조의 준공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로서(착공전사진과 준공후 사진을 첨부할 것) 2부
2. 실측평 면도 구적평 면도 및 조서(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다) 각 2부
3. 신·구지적대조도 2부
4. 소유자별 면적조서 2부

③ 법 제29조제2항의 준공인가필증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④ 법 제2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용지 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부
2. 사업현황도 2부
3. 토지 및 시설의 배치도 2부
4. 토지 및 시설의 사용현황도 2부

제25조 (보존자원) 법 제41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제26조 (보존자원신고서등) ① 영 제41조제2항에 의한 보존자원의 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존자원신고서

에 의한다.

② 도지사가 보존자원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보존자원지정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7조 (보존자원반출신청서등) 영 제41조제4항의 보존자원반출(재반입)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고, 반출(재반입)증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 (관광토산품생산업등록신청서등) ①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토산품생산업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감증명 2부
2.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부

③ 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토산품 생산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 관광토산품생산업 등록증은 별지 제24호서식, 관광토산품생산업등록사항변경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3항의 관광토산품생산업등록사항변경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서 사본(양도·양수의 경우에 한한다) 2부
2. 인감증명 2부
3.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토지의 매수·수용과 이에 따른 손실보상업무의 위탁료산정기준표(제14조 관련)

매수·수용금액별	위탁료 산정 기준	비	고
10억원 이하	매수·수용액의 3.5% 이내	1. "매수·수용액"이라 함은 용지매입비, 시설의 매수 및 이전비, 권리보상비 및 지장물보상비와 이주위자료의 합계액을 말한다.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수·수용액의 3.2% 이내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등 법정수수료는 위탁요율의 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매수·수용액의 2.8% 이내	3. 개발사업 완공후 준공 및 관리처분을 위한 측량, 지목, 변경, 관리이전을 위한 소유권변경의 절차를 위한 관리비는 이 기준 요율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50억원 초과	매수·수용액의 2.5% 이내	4. 지역적인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 위탁요율을 상호협의하여 증감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종 류	명 칭	지정보존자원	보 존 구 역
광 물	석 회 석	제주도 일원	제주도 일원
동 물	제 주 마	"	"

비고: 광물의 경우는 광업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별지서식생략>

● 건설부공고제25호(82. 3. 19일)

건축법시행령 제6조의3 제3호의 규정(문화재주변 건축허가 사전승인)에 의한 대상문화재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한다.

○서울특별시

종별	지정 번호	명칭	수량·면적 보유·종별	소 유 자 보 유 자	소 재 지	지정일자
사적	275	延世大學校 스립스관	1동3,490평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81. 9. 25.

"	276	延世大學校 언더우드관	1 동819평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55	"
"	277	延世大學校 아펜젤라관	1 동502평	"	"	"
"	278	舊서울大學校本館	1 동493평,	한국문화 예술전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 130	"
"	279	舊工業專習所本館	1 동302평	국 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199- 1	"
"	280	韓國銀行本館	1 동2, 633평	한국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3가110	"
"	281	中央高等學校本館	1 동729평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	"
"	282	中央高等學校西館	1 동180평	"	"	"
"	283	中央高等學校東館	1 동196평	"	"	"
"	284	서울驛舍	1 동2, 006평	국 유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 2 가 122	"
"	285	高麗大學校本館	1 동975평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 가 1 - 2	"
"	286	高麗大學校舊圖書館	1 동1, 237평	"	"	"
○부산직할시						
사적	273	東來福泉洞 古墳群	5, 894평 (107 필지)보호구 역7, 204평 (182 필지)	사 유	부산직할시 동래구 복천동	81. 6. 9
○대구직할시						
사적	290	大邱 桂山洞聖堂	1 동301평	재단법인대구 교구천주교회 유지재단	대구직할시 중구 계산동 2 가 71	81. 9. 25
○인천직할시						
사적	287	仁川沓洞聖堂	1 동307평	재단법인인천 교구천주교회 유지재단	인천직할시 중구 담동 3 - 1	81. 9. 25
○경기도						
사적	292	德浦鎭	14, 760평 (14 필지)	김포군	경기도 김포군 대곶면	81. 9. 25
○충청북도						
국보	205	中原 高句麗碑	1 기	국 유	충북 증원군 가급면 웅전리	81. 3. 18
○전라북도						
사적	272	萬人 義塚	12, 038평	남원시	전라북도 남원시 향교동	81. 4. 1
"	288	全州 殿洞 聖堂	1 동205평	재단법인전주 교구천주교회 유지재단	전라북도 전주시 전동1가200-1	81. 9. 25
"	293	全瑋準先生故宅地	65평 (1필지)	정읍군	전라북도 정읍군 이평면 장내리458-1	81. 11. 28
"	294	南故山城	지정 14, 500평 (1 필지) 보호구역 35, 021평 (18 필지)	국유 및 사유	전라북도 전주시 동서학동 산228	81. 12. 11
사적	295	黃土峴戰蹟地	33, 428평 (33 필지)	사 유	전라북도 정읍군덕천읍 하학리	81. 12. 10
○전라남도						
사적	289	木浦市立圖書館	1 동181평	목포시	전라남도 목포시 배외동 2가 1-5	81. 9. 25
○경상북도						
보물	730	佛影寺 應眞殿	1 동	불영사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81. 7. 15
○경상남도						
사적	291	鎭海 郵遞局	1 동137평	국 유	경상남도 진해시 충신동	81. 9. 25

納稅組合이란 어떤 것인가?

—組合結成을 앞둔 운영안내—

김기찬 - 본회 전문세무사

1. 납세조합은 어떤 법에 규정되어 있는가?

소득세법 제17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에 납세조합의 조직과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어떤 사업자가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가?

- 1)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판매하는 업자
- 2) 노점상인
- 3) 무연탄 판매업자
- 4) 담배 판매업자
- 5) 자유직업 소득이 있는 자
- 6) 기타 국제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3. 납세조합 제도의 주요 목적은?

1) 자진신고 납부의 유도

조합원 각자의 사업실적을 조합을 통하여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무풍토를 조성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2) 조세마찰의 해소

각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각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개별적으로 조사, 결정하여 그 결정 결과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공무원과 주소지 관할 세무공무원의 중복 조사를 받게 되어 있어 간혹 조세 마찰을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하나, 납세조합에 가입된 사업자의 수입금액 조사는 납세조합을 관할하는 한 세무서에서 전체 조합원의 수입금액을 일괄 조사 결정하게 되므로 개별적인 조세 마찰을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것임.

3) 조세 부담감의 완화

매월의 실적에 대한 세금을 매월 수시로 납부하게 되므로 일시에 많은 세금부담을 하지 않게 되며 따라서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된다.

4) 동업자의 과세 권형(權衡)유지
한 세무서에서 전체 조합원의 수입금액을 조사 결정하게 되므로 자연히 수입금액 조사 방법이 동일하고 또한 동업자 권형이 유지된다.

4. 납세조합의 가입과 탈퇴

사업자(납세의무자)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따라 임의로 가입이나 탈퇴를 할 수 있다.

5. 납세조합은 어떻게 조직하는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납세의무자 30명 이상이 법에서 규정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조합 소재지(조합,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납세 조합원이 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가?

1) 납부세액의 10% 공제

매월 납세 조합을 통하여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하여 매월 납부하게 된다.

2) 낮은 소득 표준을 적용 (10% 경감) 납세 조합원에게 적용하는 소득 표준율은 기본 소득 표준율의 90%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된다.

<예>

(가) 연간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일반업자... 수입금액×27% = 소득금액
조합원... 수입금액×24.3% = 소득금액

(나) 연간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의 사업자

일반업자... 수입금액×29.7% = 소득금액
조합원... 수입금액×26.73% = 소득금액

7. 조합의 운영과 육성

조합의 업무 운영을 돕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납세조합에서 징수 납부한 세액의 5%~10%(평균 7%)에 상당한 교부금을 지급하여 납세조합의 운영을 도와주게 된다.

8. 조합의 주기능

- 1) 납세 조합원의 납세 관리
- 2)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 납부

9. 조합의 임원

- 1) 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 2) 그 선임과 해임은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 3) 보수는 무보수로 하되 다만 실비의 거마비는 지급이 가능함.
- 4) 실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교부금에서 보수를 지급 할 수 있다.

10. 결 론

결론적으로 납세조합 제도는 정부세무 행정의 일부를 납세조합에 위임함으로써,

- 1) 국가예산(징세행정비)의 절감을 기대하고,
- 2) 매월 세금이 국고에 일찍 들어오며
- 3) 납세의무자와의 조세 마찰을 해소하며
- 4) 세금의 제납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한편,
- 5) 납세자의 자진신고 유도과
- 6)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완화하는데 그 목적과 의의가 있다.

따라서 납세조합은 결코 절세의 방법으로서만 활용될 수 없는 것이며 진실한 실질과세와 확실한 절세 방법은 모든 사업자가 성실하게 세무기장을 하여 납부금액과 모든 경비를 기장에 의하여 자진 신고 납부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방안이 되고 명랑세정의 지름 길이다.

창호 자재의 종류와 시공법

(1) 알루미늄 샷시

짜임새 있는 設計와 合理的인 生産工程으로 多種으로 多量 생산할 수 있으며 防風, 防水, 防寒性이 우수한 물론 개폐시 소음을 없애기 위한 나이론 로라의 사용동 기능이 완벽하며 간편한 운반, 손쉬운 組立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특징 및 시방서]

(가) Sash의 主材料는 내식 알루미늄 합금 KSD 6759-5 종과 판재는 알루미늄판 KSD 6701-3 종을 사용하며 칼라용은 특수 합금을 한 Billet를 사용한다.

(나) 부속품은 내마모성이 우수한 Acetal劑의 Roller, Stainless製 Sus 27 종의 Screw, 볼트·넛트, Crecent를 사용하고 기밀재로는 염화비닐을 사용한다.

(다) 표면처리는 KSD 8301이 S₂ 이상의 양극화 피막처리 또는 칼라 처리를 하여 18μ 이상의 경질 피막을 형성시켜 봉공처리를 한후 製品의 表面에 내알카리성, 합성수지 계의 크리어 락카를 도장한 후 건조처리 한다.

(라) Screw에 의한 組立을 원칙으로 하고 형태에 따라서 리비팅(Riveting), 웰딩(Welding)을 병용하며 치수의 허용차는 높이 및 폭±1.5mm 이하 후레임 대변치수는 2.0mm 이하로 제작한다.

(마) 샷시의 용도는 70mm/m, 80mm/m, 100mm/m, 원도우, 도어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2) 메탈 루비칼라 알루미늄 새시

아노록(Anolok)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메탈 루비칼라」는 一次電解에서 알마이트 皮膜을 만들고 다음의 교류에 의해 二次電解에서 金屬 또는 金屬 酸化物을 析出시키고 発色하므로 皮膜의 두께엔 관계없이 任意로 色調를 만드는 特長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수한 耐蝕性과 안정된 色調는 영구적으로 變色되지 않으며 아무리 복잡한 形態, 큰 板材에서도 얼룩지지 않는다.

種類	記 號	기 계 적 성 질		
5 種	Al ² E ⁺ - T ⁺	引張強度 15kg/mm ² 以上	延 伸 率 8% 以上	耐 力 10kg/mm 以上

(3) 알루미늄 새시窓 欄干

도난방지의 효과가 완벽한 슬라이딩 록크 즉 안전 버튼 장치가 있는 크리센트로 되어 있으며 現代的인 감각의 組立式 欄干이다.

(4) 輕量 鋁骨天井

不然 鐵鋼製이므로 火災의 우려가 없으며 輕量이고 合理的인 구조로 設計되어 있어 工期의 단축을 꾀할 수 있

다. 또한 아연도금 및 防鏽처리가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5) 가라리 도아(gallery door)

通風機能을 가지면서도 通風口로부터 비가 들이치는 것을 막는 특수 설계된 製品이다. 直射日光을 차양하는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施錠은 완전한 보턴식의 완·터치·록이므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동 제품은 獨自의 技術로 開發한 下戸車方式이므로 한번밀면 미끄러지듯이 開閉가 용이하다. 형태로는 여닫이 型, Sliding 型 Fixed 등이 있다.

[용도]

(가) 住宅 및 아파트 사무실의 창문 및 덧문

(나) 환기용 開口部

(다) 창고등의 출입문

(6) 파이프(그릴) 섀터

店舖의 品位를 높여주며 閉店後라도 쇼·윈도우의 기능을 가지며 아울러 도난 방지의 역할도 된다. 현대식 디자인으로 도시美를 더해주며 복잡한 中柱조작이 불필요하므로 시공이 容易하며 消音具가 부착되어 있어 開閉時 消音 및 부드러움을 더해준다. 材質은 스틸 및 스테인리스이다.

[용도]

店舖, 아파트, 住宅, 백화점, 회의실, 전시장

(7) 섀터(스프링 섀터)

간단하고 경제한 조작, 완벽한 방청처리 및 특수 도금으로된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되며 마찰음 방지장치가 되어 있다.

(Bracket Size)

H	A	B
1,500~2,000	280	300
2,000~2,500	300	320
2,500~3,000	330	340
3,000~3,500	350	360

(8) 증기건조 목재 창호

전설부 제정 규격창호

기 호	수평(W)	수직(H)	허용치수	기 호	수평(W)	수직(H)	허용치수
$\frac{5 \times 6M}{W}$	600mm	600mm	±5mm	$\frac{7 \times 18}{D}$	700mm		±5mm
$\frac{10 \times 15}{W}$	1,000	1,500	"	$\frac{18 \times 21}{D}$	1,800		"
$\frac{18 \times 12}{W}$	1,800	1,200	"	$\frac{21 \times 22}{D}$	2,100		"

서구 고전식(크라식 도-어) 및 한국 고전식 완자, 격자도 생산한다.

(9) 홀딩도아(하모니 도아)

항가레일이 알루미늄 합금으로 알마이트 表面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녹슬지 않고 大型의 도아도 경제히 조작되며 半永久的인 견고성을 지니고 있다.

[용도]

주택의 거실과 식당, 병원, 회의실, 응접실, 사무실, 홀, 교회, 유치원, 관청, 은행, 호텔, 학교등에 적합함.

(10) 콘크리트 문틀

特殊工法에 의하여 製造된 콘크리트 문틀은 表面이 천연 대리석과 같이 비려하고 강도 또한 우수하다. 색거나 변질되지 않으며 門틀과 壁面 물탈이 完全 結着되므로 原形의 不變은 물론 수시 洗滌만으로 본래의 美麗度가 반영구적으로 保存된다. 여하한 재질(木材, 알루미늄, 鐵製)의 문짝도 달 수 있으며 조화가 잘되고 조립 시공이 간단하다.

(11) 진카트 새시

完全 Roll 成型으로 寸數와 각도가 정확하며 대량 생산이 가능하여 가격이 저렴하다. 色彩가 美麗, 우하며 防鏽效果가 완전하며 특히 摩耗 耐藥品性이 良好하므로 수명이 반영구적이다. 또한 바람막이 부분이 이중 연속 成形되므로 견고하며 조립가공이 가능하며 청소시 편리하다.

(12) 하이새시

하이새시로 施工한 창문은 밀폐효과가 우수하므로 냉난방 에너지의 流失이 재래식 창문의 $\frac{1}{4}$ 로 줄어 들었으며 우수한 密閉效果는 외부로부터의 소음, 빗물, 먼지의 침입을 봉쇄하는 효과와 햇볕(자외선), 습기공해, 개스, 해풍등에서도 변형, 변색, 부식의 염려가 없다.

(13) 복층 유리

2매 또는 그 이상의 특수한 유리를 일정하게 절단하여 4주변의 사이에 공간제를 끼워넣고 강력한 전조제를 투입한후 4주변을 탄력성 있는 특수제로 봉입시킨 제품으로 내부, 공간에는 맑은 공기가 봉입된 제품이다.

[특징]

소음방지는 물론 높은 단열효과로 연료비 절감 16m/m 복층 유리는 100m/m 두께의 콘크리트 벽보다 우수하며 건축비 절감과 -35°C 이하에서도 유리표면이 不凍인 점이 특징으로 되어 있다.

[제품규격]

길이	나비	두께	중량(kg/m ²)	색상
		12(유리 3 + 공간 6 + 유리 3)	15.3	유리색 그대로
		16(" 5 + " 6 + " 5)	25.3	"
		18(" 3 + " 12 + " 3)	15.5	"
		22(" 5 + " 12 + " 5)	25.5	(Gray)

[용도]

빌딩, 학교, 고급아파트, 병원, 체육관, 추운지역의 가옥 등.

(14) 안전 접합 유리

고급 판유리 2매 또는 그 이상의 유리사이에 중간 합성수지 필름을 넣고 130 $^{\circ}\text{C}$ 의 고열로 강하게 접착시켜 만

들어진 제품으로 충격에 의하여 파손될 경우 유리의 파편이 비산되지 않아 고층건물 등의 창에 최적이다.

[특징]

유리(중간막) 사이는 합성수지 필름을 사용하여 강하게 접착시킨 제품으로 저항력이 우수하며 내열성, 투시성이 우수하다.

[제품규격]

길이	나비	두께 m/m	중량(평 / kg)	색상
		4	0.96	투명 (Clear)
		5	1.20	다 색
		6	1.44	다크브라운
		8	1.92	핑크
		10	2.40	부루우
		12	2.88	그린

[용도]

빌딩, 호텔, 은행, 상점, 병원, 백화점 등.

(15) 안전 강화유리

특수판 유리를 일단 연화점까지 加熱한 후 냉각공기로 양면을 급냉 강화시킨 판유리이다. 때문에 강한 충격이나 하중 및 급격한 온도변화에 대해 강도가 크다.

[특징]

보통판 유리보다 3 - 5 배의 강도를 지니고 있으며 내열성과 미적 효과가 크다.

[제품규격]

길이	나비	두께 (m/m)	중량(kg)	비고
		5	평당 0.48	
		6	0.58	
		8	0.77	
		10	0.96	
		12	1.15	

[용도]

건축용 all글라스도어 그라스 스크린, 개폐구.

(16) 자동도어

강력한 모터와 감속기의 動作으로 特殊한 開閉特性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징]

(가) 초능력: 자동도어 용으로 특별 설계한 모터를 사용하여 자동개폐에 우수하다.

(나) 속력: 400cm/sec로 속력을 낼 수 있는 개폐 특성이 있으며 속력은 자유로이 조절 가능하다.

(데) 개폐구: V. Belt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격 완화의 효과가 크며 밀봉된 배아링을 사용하여 먼지가 끼지 않으며 오일이 외부로 흐르지 않아서 반영구적이다.

[용도]

백화점, 병원, 호텔, 은행, 고급아파트 및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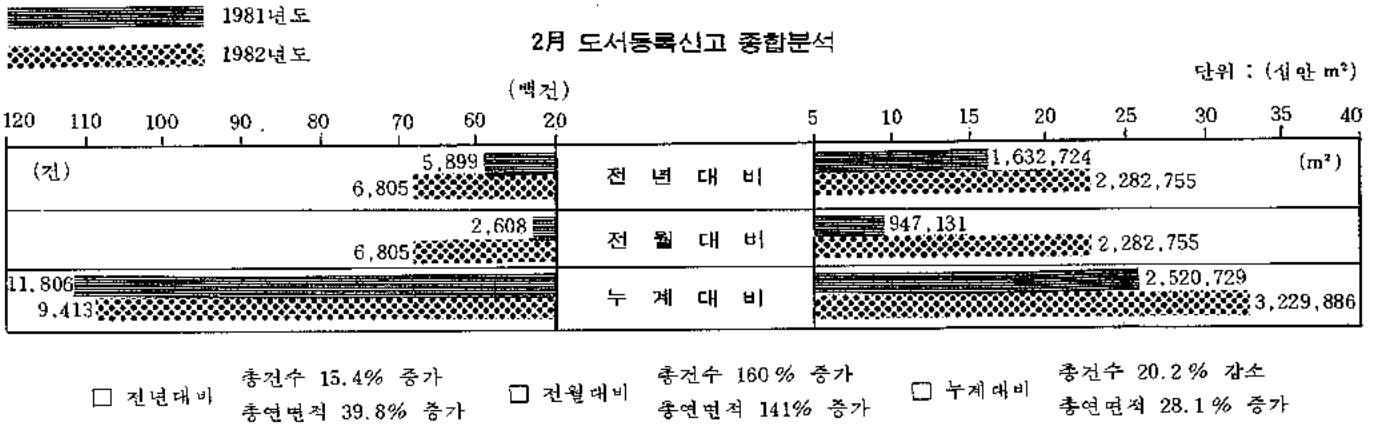
(17) 도어 록(door lock)

強度와 耐久性, 열쇠의 종류, 作動의 원활, 외관상의 품위가 장점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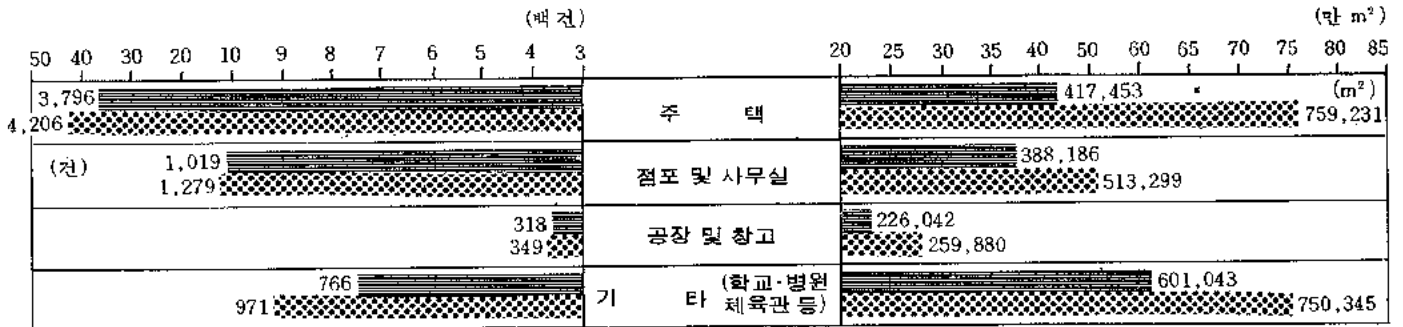
□ 新 건축자재 소개

제 품 명		알미늄 손스침 (ALUMINUM HAND RAIL)				
機 質	主機	KSD 6579 · A6063S-TS알미늄		素 地	최적 콘크리트 210kg/cm ² 이상	
	皮膜	KSD 8301 양극산화피막				
응 도		발코니 · 옥상 · 계단 · 난간 · 울타리 부재				
품질 및 품질성능시험결과	인 장 강 도	15 kg	mm ²	시 공 예	1982. 4. 시판예정	
	내 력 강 도	11 kg	mm ²			
	연 신 율	8 %				
	내 식 성	KSD 8314				
	내 마 모 성	KSD 8315				
	※ ASTM · BS · JIS 등 국제규격에 적합한 품질유지 ※ 중동 · 사우디 현지 합작조립 공장완성 진행 중 ※ 실용신안 및 의장특허 출원 중			공 종 :		
특 징	- 부식이 되지 않으며 내산 · 내알칼리성이 좋다. - 표면이 미려하고 변색 · 퇴색이 없다. - 공장조립생산으로 품질의 균일이 보장된다. - 공장양산으로 공사기간이 단축된다. - 타 공사와 복합됨이 없어 타 공정과의 마찰이 없다. - 녹물로 인한 도시경관 훼손 및 환경오염의 공해가 없어진다. - 녹물로 인한 재도장이 필요없어 경제성이 매우 높다.			주 요 사 항		
				●현장 사정에 맞는 SHOP, DWG. 제출 및 승인 조치 ●SHOP, DWG에 의한 견본제작 제출 승인조치 ●현장실측하여 제작척수 결정 및 물량산출 ●알미늄 BILLET를 押出金型을 사용하여 성형한다. ●성형된 제품을 화학적 성분으로 분석한다. 척수 및 기계적 성질을 만능재료시험 硬度器를 사용, 측정분석한다. ●양극 산화피막처리를 자동전압 조절장치로 하여 색채를 균일하게 한다. ●피막의 내식성 · 내마모성을 분석한다. ●定尺척수에 의해 자동절단기로 절단 후 DIE SET로 정확히 가공하여 조립한다. ●운반시 및 현장반입 적재시 손상이 없도록 적절한 포장을 하여 출하한다. ●앵카 볼트 구멍은 주위의 콘크리트 손상없이 정확하게 뚫는다. 앵카 볼트와 기둥 고정용 TRQUE WRENCH로서 定壓하여 강력하게 고정한다. 공격에는 코팅처리 한다. 마지막 보호보장으로 손상을 방지 한다.		
사 진				가 격		
				발코니난간 1m당 약 20,000원 계 단 난 간 1m당 약 15,000원 울 타 리 1m당 약 17,000원		
생 산 원	(株) 富林칼라알미늄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133-37 TEL. 555-2437 공장 : 경기도 화성군 오산읍 원리 551 TEL. (1332) 3436-9			총판 및 시공	富 建 社 본사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28-7 TEL. 828-3674 공장 : 경기도 화성군 오산읍 원리 551 TEL. (1332) 34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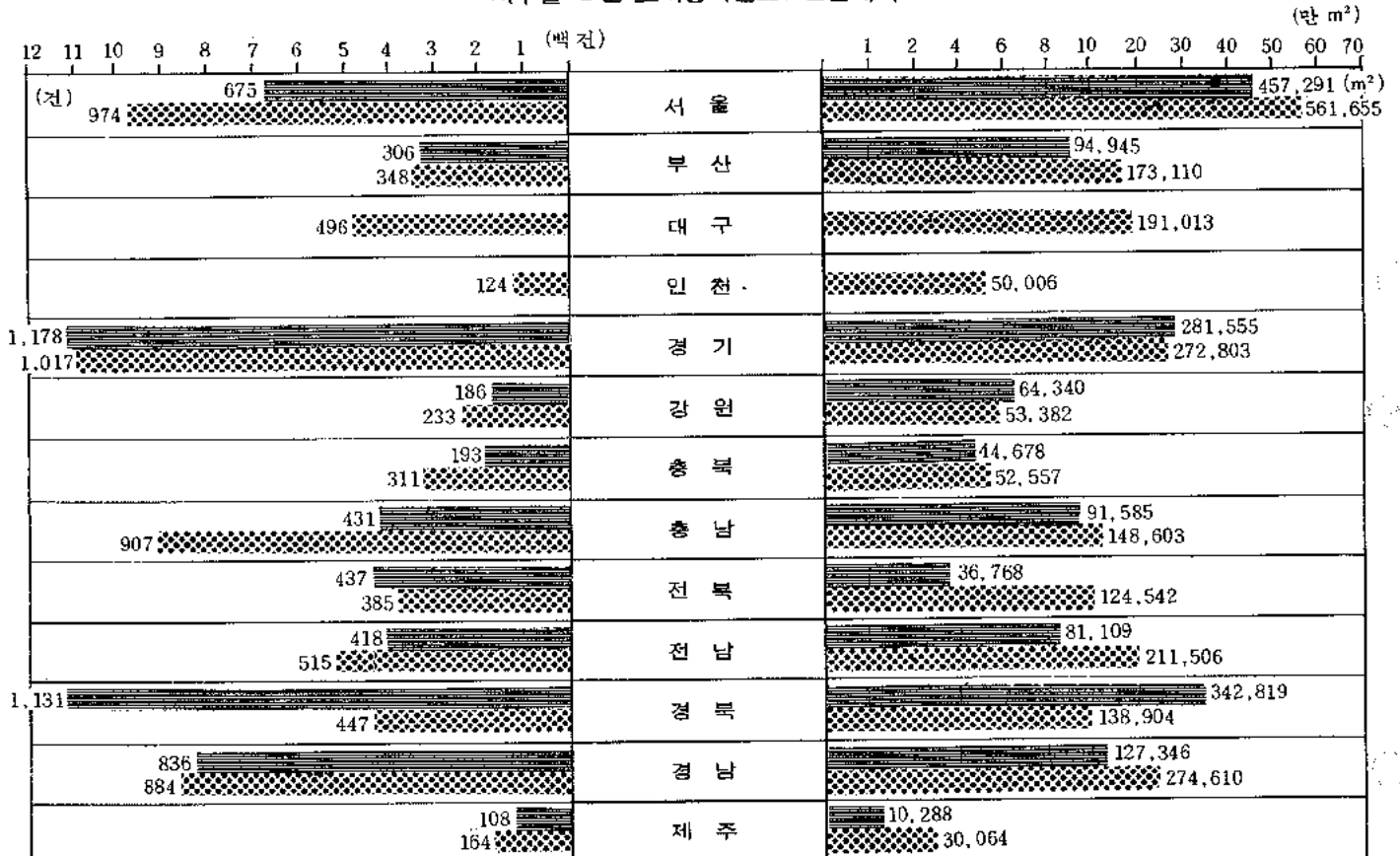
2월중 건축허가 도서등록신고 현황



용도별 2월중 도서등록신고 / 전년대비



지부별 2월 도서등록신고 / 전년대비



新 入 会 員

□康景植 / 전북 / 22·4·17 일생 /
전주공립공업학교 / 동아건축설계
사무소 / 군산시월명동140-23 / 3
-3305



□金祺桓 / 서울 / 23·5·22 일생 /
경성공업전문학교 / 가정건축 / 서
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32-6 /
567-6534

□이석규 / 경기 / 42·7·4 일생 /
한양대 건축공학과 / 신태양석전합
동건축설계사무소 / 서울강동구 잠
실1동 43-2 / 423-6027



□丁海雄 / 서울 / 44·10·20 일생
/ 한양대 건축공학과 / 태안종합건
축설계사무소 / 서산군 태안읍남문
리 576-2 / 3102

□宋明奎 / 부산 / 45·3·20 일생 /
동아대건축공학과 / 심원건축설계
사무소 / 부산시 중구 중림동355 /
23-8117



□鄭求榮 / 경기 / 46. 10. 19 일생
/ 한양대건축공학과 / 동성종합
건축연구소 / 경기도수원시 매산로
3가 35-7

□金炳泰 / 전남 / 47·5·28 일생 /
한양공고 건축과 / 강성건축 / 서울
구로구 구로동 409-78 / 62-2808



□姜永浩 / 전남 / 48. 11. 27 일생
/ 전남대건축공학과 / 전일건축 기
술단 / 서울중구을지로4가 310-68
/ 260-0381

□李興來 / 서울 / 50·2·12 일생 /
성동공고 건축과 / (주)삼도건축 /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65-427 /
792-0126



□盧運基 / 전남 / 50·5·10 일생 /
전남대 건축공학과 / 대일건축연구
소 / 광주시동구대의동 2-6

□曹泰鍾 / 서울 / 50·9·17 일생 /
부산대 건축공학과 / 동인건축그룹
/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18 /
795-2751-3



□李明煥 / 강원 / 53·6·21 일생 /
신기건축설계사무소 / 강원도 태백
시 황지동81-7 / 2-2640



會員動靜

□전남지부 = △정병문 회원 / 반도대우건축연구소/광주시 동구 금남로 4가9/33-6456 △임종기 회원 / 반도대우건축연구소/광주시 동구 금남로 4가9/34-8575 △김두천 회원 / 근대건설합동건축사무소/목포시 호남동 1 / 2 - 0591 △오용갑 회원 / 근대건설합동건축사무소/목포시 호남동 1 / 2 - 3348 △박종대 · 강형재 회원 / 대동화신합동건축사무소/목포시 대안동 1-1/2-3713 · 3-0591 △김영식 · 송양식 회원 / 국제한미건축설계공사/광주시 동구 금남로4가9-1/33-1302 · 33-9516 △정전주 회원 / 성하건축설계사무소/광산군 송정읍 송성리 829-16/9-0350

□경남지부 = △김천철 회원 / 철우서진건축연구소/마산시 창동 8-15/2-1676 △안팔경 회원 / 창원건축설계사무소/마산시 중앙동3가 4-9 / 6

-5314 △박영호 회원 / 창원건축설계사무소/마산시 중앙동 3가4-6/2-01

14
□경기지부 = △권태량 회원 / 중앙대지합동건축연구소/화성군 오산읍 원리53/3333 △최영식 회원 / 중앙대지건축연구소/화성군 오산읍 원리253/4027 △김종택 회원 / 북음경일건축연구소/수원시 매산로 3가48-1/2-8588 △엄태웅 회원 / 북음경일 건축연구소/수원시 매산로 3가 48-1 / 2-4709 △박상두 회원 / 삼원건축설계사무소/안양시 안양동 676-141/ 3 - 7613

□제주지부 = △백형철 · 김백교 회원 / 진일건축연구소/제주시 이도 이동 1768-27

□서울지부 = △염덕문 회원 / 심원건축설계사무소 / 중구 중림동 355/등록번호 합중1/면허번호 454/3·8일 △홍단기 회원 / 남양건축연구소/종로구 관철동 252 (대신빌딩 805) / 등록번호 단중6/면허번호 663

“축하합니다” □경기지부 = △신현수 회원 영식 / YM

CA/3·27일 △이재덕 회원 영식 / LCI/3·19일

□서울지부 = △주영근 회원 장녀 결혼 / 신혼예식장 / 3·10일 △김동표 회원 본인 결혼 / 세종대왕기념관 / 3·26일 △경석구 회원 차남결혼 / 영빈예식장 / 3·30일

□충남지부 : △허정욱 회원 / 결혼 / 3·20일 2시/서울백악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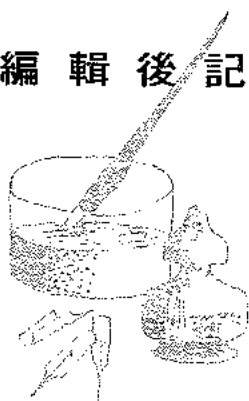
“만수무강을 빕니다.” □서울지부 = △윤여옥 회원 모친 / 3·3일 / 자택 △이춘상 회원 모친 / 3·8일 / 자택 △김환기 회원 부친 3·21일 / 자택 △김보현 회원 본인 / 3·22일 / 자택

“병복을 빕니다” □경기지부 = △신현범 회원 부친 별세 / 3·17일 별세 △한이연 회원 부친 별세 / 3·24일 발인 △조병원 회원 부친 별세 / 3·28일 발인

□서울지부 = △정의용 회원 모친 별세 / 3·22일 △이성일 회원 부친 별세 / 3·22일 자택

□충남지부 : △류조형 회원 모친 별세 / 3·23일 / 대덕군 신탄진읍

◆編輯後記◆



□四月이 되면 꽃이 흔해 진다. 맹종 맹송한 가지에 그토록 신비롭고 경이로운 꽃들은 어김없이 피어 난다. 혹독한 추위와 풍상을 겪고 외연히 피어 오르는 꽃, 꽃들... 그래서 한층 더 아름다와 보이고 소중하게 여겨진다. 해서 꽃을 피운다는 것은 비록 작은 일이라해도 꽤 어려운 작업이 숨겨있게 마련이지... 〈用〉

□개나라가 도시를 노랗게 물들이고, 목련이 터지는 소리에 키가 간지럽다.

켄지 나들이하고 싶은 날 아침, 반가운 소식에 눈이 부신다.

“鄰心部 대형빌딩의 임대사무실 연기가 어퍼워지고 있다”는 신문기사.

4월 들어 처음 만나는 활기찬 소식에서 경기회복을 알리는 종소리를 듣는 듯 하여 가슴 설렌다. 〈京〉

□지금 거리에는 개나라전달래 또, 하얀 목련이 한창이고 조금 더 있으면 진한 라일락의 향기가 코를 자극할 것이다. 이렇듯 모든 것의 시작이 생기있고 싱그러우니 나 또한 더욱 활기찬 마음으로 일에 임해보리라 다짐한다. 〈宙〉

□봄과 함께 기대했던 경기 회복은 확연치 않다. 건축 경기또한 3월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작은 어려운 실정이다. 회원님들의 작품 활동에 조금이라도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호 작품을 쥘러로 하여 특집을 꾸며 보았다. 얼마 전 T.V 방송에서 로마군과 유대인의 전쟁사를 그린 “마사다”의 내용에 마사다 성벽을 파괴하기 위한 로마군의 육중한 장비의 공격에 부드러운 흙을 사용하여 충격을 완화시켜 성벽을 보호함으로써 공격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지혜를 볼 수 있었다. 어려운 경기 속에 이러한 지혜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회지로 말미암아 모두가 단결하여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대화의 광장이 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基〉